

2017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PART. 4

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수입규제 조치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우리 경제는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무역규모도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하여 전 세계 수출 6위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발전시켜 2018년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4강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대일로”, “신형대국관계”를 기치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이나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면서 ASEAN과 인도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이 Pivot to Asia 전략에서 한발 물러선 사이 러시아는 “新동방정책”을 통해 극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냉철히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新남방·新북방정책 등 새로운 경제협력 비전과 산업·에너지·통상을 연계한 통상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 한·미 FTA 개정협상,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도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무역장벽보고서(제1권)와 분야별·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된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해외현지 공간으로부터 수집된 전 세계 94개국 통상제도와 동향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각국의 제도가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본서를 읽고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과 최신 정보 공유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 윤 규**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Contents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PART. III 아시아·대양주

PART. IV **아메리카**

PART. V 유럽

PART. VI 아프리카·중동

• 과테말라	2
• 니카라과	45
• 도미니카공화국	72
• 멕시코	91
• 미 국	122
• 베네수엘라	173
• 볼리비아	195
• 브라질	208
• 에콰도르	238
• 엘살바도르	259
• 온두라스	273
• 우루과이	292
• 자메이카	322
• 칠 레	372
• 캐나다	389
• 콜롬비아	418
• 파나마	456
• 파라과이	515
• 페 루	540
• 아르헨티나	578

4

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수입 및 수출 정책

관세 장벽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 공동시장(CACM, MCCA)¹⁾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년 2월 27일부로 중미 경제 통합 사무국(SIECA)²⁾의 중미관세제도(SAC)³⁾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과테말라는 현재 멕시코, 미국, 대만, 콜롬비아, 파나마, 칠레, EU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2006년 7월 발효된 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으로 대미 수입 품목 대부분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대만과 콜롬비아, 칠레, EU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멕시코에 비해 무세화 수준이 낮다.

1)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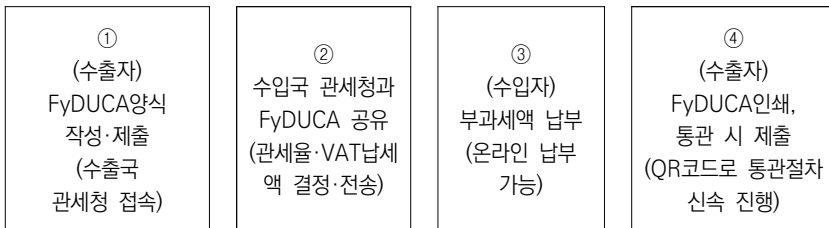
2) Secretari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3) 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우리나라는 2015년 6월부터 중미경제통합체제(SIECA)의 회원국인 총 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총 9차례의 한·중미 FTA 협상을 진행하여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는 협상을 타결하였으나,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분야 등에서 이견으로 2017년 3월 가서명에 불참하였다. 따라서 한-중미FTA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체 정식서명을 거쳐 2018년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향후 국내산업계의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한편, 우리와의 추가 양자 협상을 통해 정식 발효 이후 조속히 FTA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5월 4일,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등의 지원 하에 과테말라-온두라스 양국이 관세동맹에 대한 공동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양국 세관전산망 통합 및 통합 세관청사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7년 6월 26일 양국간 관세동맹 및 단일세관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중미지역 총 교역량의 52%를 차지하는 공동시장이 탄생되며 중미경제통합의 발판을 마련되었으며, 온라인 통관시스템(FyDUCA) 적용으로 세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관세행정상 기술적 진전도 이루어졌다. 한편 엘살바도르도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간 관세동맹 가입을 추진 중인데, 2017년 하반기 중 실무협상을 거쳐 2018년 초에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FyDUCA 온라인 통관 프로세스



대의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 생산 소비재 20%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껌(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과테말라의 평균 수입 관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총액)은 1.80% 수준이었다.

SAC의 품목분류체계는 지난 2016년 8월 중미공동관세체계 6차 개정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8자리에서 10자리로 세분화되었다.

관세평가는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평가 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관세율 찾는 법

과테말라 관세청 사이트(www.sat.gob.gt) 접속 > e-SAT 클릭 > Autoconsultas Aduanas 메뉴 > Arancel integrado 메뉴 > Consultas del arancel integrado 클릭 > “Posicion Arancelaria”(관세정보) 란에 HS CODE#의 2자리 또는 4자리 수를 입력하고 “Buscar”(찾기)를 클릭. > 원하는 정확한 HS CODE# 6자리를 클릭. > “Derechos e impuestos”(관세 및 세금) 버튼을 클릭. > “Origen/Destino”(원산지/목적지) 란에 수입국가를 선택. > 해당 수입국가로부터의 적용 관세율을 확인 할 수 있음.

➡ 2017년 과테말라 수입관세율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5%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30%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제품, 식용 지방: 0~15%
제4부 식료품, 음료 및 주류와 와인, 담배 및 조제 담배 모조품: 0~40%
제5부 광물성 생산품: 0~15%
제6부 화학 공업 생산품 및 연관 산업 생산품: 0~15%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0~15%
중략
제17부 운송 장비: 0~20%
제19부 무기, 탄약 및 부속품: 15%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5~10%

수출장려정책

과테말라는 그간 WTO협정⁴⁾에 근거, 마길라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 수출진흥법⁵⁾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경제부의 허가를 득한 수출기업들에 대해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었다.

그러나 2007년 과테말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과테말라 정부에 동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유예기간(2015년말)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마길라산업과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한편,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 중심의 마길라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 혜택 폐지 시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철수에 따른 고용 및 수출 감소를 우려

4) 최빈개도국(1인당소득 1천 달러 이하)에 대해 수출보조금의 예외 허용

5)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na

하여 관련 기존 법령(마길라법 29-89 및 자유무역지대법 65-89)의 대체 입법인 긴급고용법(19-2016)을 마련하였다. 동 법은 2016년 2월말 국회 통과하여 3월말 공식 발효되었고 관련 시행령 또한 시차를 두고 2017년 1월 발표되었으나(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후속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어 투자기업들의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동 법은 마길라 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지원조건 중 수출요건을 삭제하고, 섬유산업과 콜센터 산업에 한하여 수출과 내수기업의 차별 없이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WTO 보조금협정 저촉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수입부과금 등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신고 서류상의 하자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테말라는 2014년부터 자동차의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최초등록세(세율은 차량가액의 5~20%)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자동차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과테말라에서 최초등록세는 사실상 수입관세나 수입부과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등록세는 차량 가액에 기초해서 산정되므로 수입가격이 훨씬 높은 신차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신차 수입을 억제하고 중고차 수입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 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되는데, CIF기준으로 500달러 이상의 수입물품은 반드시 통관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세 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Invoice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를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엔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보통 하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관직원들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컨테이너 헤드 부족 등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일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다. 신고 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붙여진다.

과테말라에서는 범죄조직들이 밀수에 개입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 범죄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내 무역업무 관련 직원들이 결탁하여 정상적인 무역업체 명의로 수입을 하거나 정상적인 수입물품 사이에 밀수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밀수를 하는 일이 흔하며, 이 경우 수입물품의 물수뿐 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나 정상수입을 한 업체가 밀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2015년 세관부정사건 적발 이후 전반적인 세관행정이 까다로워졌으며,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현지 진출 또는 교포 한국기업들로부터 세관직원들이 상업송장 가격을 불신하고 자의적으로 물품가격을 산정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계류의 경우 설계도와 용도에 관한 설명서까지 요구하거나 국세청 본부의 의견 조회 등을 핑계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발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통관에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운송차량의 대기 및 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등 통관분야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⁶⁾ 또는 중미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 송장⁷⁾
- 선적 서류⁸⁾
- 포장명세서⁹⁾

6) Poliza de Importacion

7) Factura Comercial

8) Carta de Porte, Guia Area, Conocimiento de Maritimo

9) Lista de Empaque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시의 관련 서류 등)

한편 일시 수입¹⁰⁾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¹¹⁾의 경우에는 재 수입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테말라 국세청(SAT)¹²⁾은 세관 수입 신고서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과거에 비해 통관 수속 시간을 단축하였다. 국제 특급 배송의 경우는 Invoice만 있으면 물건 도착 이전에 통관 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바로 배송할 수 있다.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산정된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를 부가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금액으로 과세하며 물품 검사 과정에서 Invoice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관세 납부 시 BancaSAT 시스템을 이용한 계좌 이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운 송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궤찰항(Puerto Quetzal)과 카리브해의 바리오스항(Puerto Barrios) 및 산토토마스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궤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말라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리오스항 및 산토토마스항에서 과테말라시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

10) Importacion Temporal

11) Reimportacion

12)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운임은 \$2,400(2016년 10월 14일까지 유효한 요금)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요금이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항공 화물은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La Aurora)공항을 통해 반출입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 화물 라인이 보통 주 1회 운항한다. 또한 L.A.에서 과테말라로 바로 오거나 멕시코를 거치기도 하는데 20일에서 22일 정도 소요된다.

화물이 깨찰항까지만 오는 경우 선박 운임은 부산-과테말라시티보다 낮지만 D/THC¹³⁾ \$150~210, 내륙운송비용(In-land) \$450~500, 도착지 Local Charge \$75~230이 추가되어 전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과테말라시티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과테말라에서는 노조나 농민단체 및 각종 이익단체 등의 시위나 불법적인 도로 점거, 항만 봉쇄 등이 빈발하는 반면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미온적이어서 이로 인한 수출입 및 생산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미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Dir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에서 관장한다.

13) Destination Terminal Handling Charge: Wharfage(부두사용료)와 Shoring Charge(화물고정 지주비용),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화물처리비)를 합한 비용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 (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물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 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유기 화학품은 농업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류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 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옥수수, 벼, 강낭콩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회할 경우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여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의 수입(등록)을 금지하였으나, 이 규제는 2013년 6월 29일부터 철폐되었다. 단,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마킬라법과 자유무역지대법 적용대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를 유예하고 내국물품을 구매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 수입 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AA	농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reto 36-98 Reglamento 745-99 Acuerdo Ministerial 679-99(삭제) Acuerdo Ministerial 1029-99 (조류 및 그 생산물 수입위 생검역법) Acuerdo Ministerial MAGA 1090-2001 (수상/수중생물자원 및 부산 물 수입 규칙) 	농·축산 식품부 ¹⁴⁾
AM	무기/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reto 15-2009 (무기·탄약 규제 법규) Decreto 123-85 (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Decreto Gubernativo 82-2005 (추가-무기·탄약 종류 명시 법규) Acuerdo Gubernativo 14-74 (삭제) 	무기와 탄약의 관리 및 통제 위원회 ¹⁵⁾
EM	에너지/ 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reto 109-97 (탄화수소 거래법) Decreto Ley 11-86(방사성 동위 원소 전리 방사선 거래 및 규제 법규) Acuerdo 55-2001 (방사성 동위 원소 및 전리 방사선 안전 및 보호 협약) Decreto 48-97 (광산 채굴 규제 법규) 	에너지 광산부 ¹⁶⁾
LE	환경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venio 271 (오존층 보호 규제 법규) Decreto 17-2001 (몬트리얼 의정서 개정안) Decreto Ley 68-86 (환경 보호 및 향상 규제 법규) Decreto Ley 110-97 (염화 물질 수입 금지 및 사용 규제 법규) 	환경부 ¹⁷⁾
MD	폭발물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Decreto Ley 73-2007 (#123-85의 개정안) 	국방부 ¹⁸⁾
PC	중고타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uerdo Gubernativo 900-83 (수입규제) 	보건부 ¹⁹⁾
PF	화약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reto Ley 123-85 (폭발물 종류 명시 규제 법규) Acuerdo Gubernativo 28-2004 	국방부, 경제부 ²⁰⁾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SA	식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Decreto 50-2000 (Decreto 90-97 개정 법규) ◦ Decreto 50-2003 (Decreto 90-97 개정 법규) 	보건부 (식품부) ²¹⁾
SM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reto 90-97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 Acuerdo Gubernativo 712-99 ◦ 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los Medicamentos y Productos Afines ◦ Acuerdo Gubernativo 54-2003 	보건부 (의약품부) ²²⁾

품목별 장벽

주요 품목별 수입관련 규제 및 장벽은 아래와 같다.

- 1)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4)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업부의 사전 검역이 필요하다.

14) Ministerio de Agricultura Ganadería y Alimentación

15) Dirección General de Control de Armas y Municiones

16)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17) 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18) Ministerio de la Defensa Nacional

19)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20) Ministerio de Economía

21)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Alimentos

22)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Medicamentos

- 5)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500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 한다.
- 6) 유기 및 무기화합물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7)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8) 중고 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 9)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 제품은 별도의 세이프 가드를 허용하여 관세 조정(최고 45%)이 가능하다.
- 10)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건설업체 및 최종 소비자는 상공회의소가 제시하는 건축의 사전 조건을 갖춰야 하며 건물의 붕괴에 대비하여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특별한 검사가 없으므로 수입상이나 판매대리점의 각별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 11) 건축자재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 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재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한 수입 규제

한국 상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규제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약 유통 및 밀수 단속을 이유로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검색 물품 대상을 확대하면

서 전수 검사 비용 및 보세 창고료 등 전반적인 통관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원·부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 섬유업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입가격 고시제

2014년도에 확정된 ‘육상/해상/항공 관련 수송기계의 운행에 대한 조세 법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대신하여 내국세인 최초등록세 (Impuesto a la primera Matricula)를 차종에 따라 차량 가액의 5%~20%로 부과하고 있는데, 상업송장이 없거나 저가신고로 의심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등록세를 부과한다.

수출세

과테말라 정부는 커피수출에 대해 FOB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며, 수출세는 전국커피협회(ANACAFE)가 징수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 간 역내산업의 보호 육성 및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 공동 불공정 무역 규범²³⁾을 정하여 시행 중이다. 동 규범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있다.

덤핑 및 상계관세 주무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경제통합국²⁴⁾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률 2% 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나 부과사례는 없다.

23) 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24) 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

영사 인증제도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시행중으로 본국 관세 행정 지원 목적(Under Value 확인)으로 대 과테말라 수출 상품에 대해 Invoice상 적정가격 표시 여부를 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한국 상품 또는 한국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Invoice 가격 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자의적인 통관행정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선적 전 검사 제도는 도입시행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고 스페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등록번호
- 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취급상 주의사항 등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²⁵⁾이며 표준 규격 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며 소요 기간은 약 3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²⁶⁾에서 담당한다.

25) Comision Guatemalteca de Normas

26)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²⁷⁾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이외에 자동차 배터리의 배터리 액과 같은 화학제품은 필히 위험품목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²⁸⁾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국가계약법²⁹⁾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³⁰⁾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15년말 개정된 국가계약법 제43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 금액이 9만케찰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 전 90만케찰에 비해 입찰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입찰기관에서는 입찰기본정보,³¹⁾ 입찰세부내역,³²⁾ 세부기술내역³³⁾ 및 공사계획서³⁴⁾(정부공사의 경우) 등의 입찰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입찰기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7) Certificado de Fitosanitario

28) Certificado de Libre Venta

29)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

30) Municipalidad

31) Bases de Licitacion

32) Especificaciones Generales

33) Especificaciones Tecnicas

34) Planes de Construcción

- 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 물품, 서비스의 일반 및 세부정보
- 공사가 시행되는 장소와 형태(정부공사의 경우)
- 입찰 참가자의 제출서류 목록
- 입찰 참가자의 이행보증서
- 지불조건
- 입찰서류 제출, 접수 및 처리 장소 및 일시 등
- 입찰참가자의 세금 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³⁵⁾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기관은 입찰내용을 정부입찰사이트인 Guatecompra(www.guatecompra.gt)를 통해 고지한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입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응모서(참가자 또는 대리인 서명필)
- 세금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 사실 확인 보증서
- 사전자격심사등록서 등재 확인서
- 물품, 서비스의 인도를 위한 투자, 작업계획 및 일정 등
- 작업 예상 수량표
- 물품 및 서비스 단가, 비용분석 내역서
- 법인등록서

35)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해당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입찰위원회³⁶⁾가 접수받은 입찰서류를 상정, 심의하며 주요 심사기준은 품질, 가격, 납기, 기타 특기사항과 조건 등이 된다. 입찰위원회 결정 후 3일내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5년 국가계약법 개정 이전에는 국가간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 법인들로 한정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입찰자격의 제한이 어려워졌으며, 제한적 입찰을 위해서는 차관 도입 승인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체로 입찰공고기간이 짧아 실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관보 공고내용 이외에 상세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입찰신청서를 구입하여야만 알 수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2000년 미국의 압력으로 불법 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상표 및 지식재산권법’³⁷⁾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2000년 11월 1일 발효). 그러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CAFTA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36) Junta de Licitacion

37) Decreto 57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³⁸⁾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일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 생산자나 밀수자에 대해서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케찰에서 최고 50만케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실효성은 약하며 단속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약품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에 대해서도 5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³⁹⁾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케이블TV 무허가 사업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년 전부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 판매가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USTR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1999년부터 우선 감시대상국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 일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이래 2017년 9월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지재권 보호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테말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협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 가입 : WTO, WIPO⁴⁰⁾

38) Ley de Propiedad Industrial

39)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 국제협정 체결

- Paris Convention, Bern Convention, Rome Convention, Phonograms Convention, Nairobi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Convention on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Washington Convention),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지식소유권의 등록은 경제부 소속인 지식재산청⁴¹⁾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 법령 148-2014에 따라 2014년 5월 17일부터 지적 재산권 등록 비용이 인상되었다. 지적 재산권 등록 절차에 따라 90~8,000케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책정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과테말라 정부는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과 베른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권의 경우 과테말라 내에서 등록 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5년 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케이블 방송을 통제하는 과테말라 통신부는 해적방송을 단속하고 있으며 BSA 역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매체를 통한 해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4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41)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상표권

과테말라는 독자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없으며 1968년 6월 1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호협약⁴²⁾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협약에 의거하여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과테말라 경제부 내 산업소유권 등록국⁴³⁾에서 수행한다. 상표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서명 날인이 찍힌 신청서(각 5케찰)를 제출해야하며 등록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산업상표,⁴⁴⁾ 상업상표⁴⁵⁾ 및 서비스상표⁴⁶⁾로 구분되며 각 상표는 기호,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산업상표는 특정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업상표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분배하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과테말라는 1992년 상업상표에 관한 파리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위조 상품 방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상표란 상기 두 분야외의 서비스 활동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미 역내국에서 상업,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의 해당법인 및 자연인도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상표를 출원 할 수 있다.

42) 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

43) 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

44) Marcas Industriales

45) Marcas de Comercio

46) Marcas de Servicios

등록이 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아울러 중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는다. 먼저 등록을 받은 국가에서 여타 상표 등록 당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미 국가 중 G국에 등록을 했는데 C국에서 상표등록 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는 G국의 등록확인서와 C국에서 발행한 등록확인서상의 등록일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미 국가들의 행정체계 및 능력, 신속성 결여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는 한 분규의 소지는 남아 있다.

특허권

과테말라는 1985년 특허법을 2000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에 의해 특허권은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유기체, 화학물질, 의약품 및 농산물 등이 특허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학 공식, 과학이론, 경제 법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 초의 개정법으로 인해 일반 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농산물 및 화학제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품 및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도 5년간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해당 특허가 산업과 예술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인력의 사용 없이 창조된 제품은 특허신청 자격이 없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가 필요하며 신규특허일 경우 이전 특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장벽

통신시장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불허하던 종래 방침에서 통신시장을 자유화한 이후 여타 서비스시장에서의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다.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투자 장벽

투자 정책 동향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과 콜센터를 포함한 IT 아웃소싱 산업등 고용 창출 업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는 마킬라업체(보세가공업체)가 위치한 장소가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어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가 1년간 유예되고,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 법에서 수출보조금적 성격을 제거한 긴급고용보호법(19-2016)을 제안하였고, 동 법안은 2016년 2월 말 국회를 통과하고 3월말 공식 발효되었으며, 관련 시행령 또한 시차를 두고 2017년 1월 발표되었으나(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후속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어 투자기업들의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섬유산업 및 콜센터산업에 대해서는 수출과 내수 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징수가 1년간 유예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⁴⁷⁾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⁴⁸⁾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⁴⁹⁾ 온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투자 및 사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른 섬유산업과 콜센터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으며, 기투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미약하고 정부나 담당자의 교체시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세무당국, 노동부 등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부패로 인한 애로가 크며,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출범한 신정부가 공공기관의 부패근절을 천명하고 검찰과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의 반부패 수사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현장에서의 뇌물수수 등의 부패는 크게 감소했으나, 반면에 사정활동을 의식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과 자의적인 업무처리가 만연하여 통관행정 등의 분야에서 느끼는 애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부실한 대표적 사례는 2016년 2월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가능업종을 크게 축소한 것을 들 수 있다. 과테말라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을 42개로 대폭 축소하면서 기존의 법에 의해 허가를 획득했던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했다. 이로 인해 자유무역지역에 투

47) Ventanilla Agil Plus

48) Ventanilla Unica Municipal

49) 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

자했던 상당수의 외국기업들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타국으로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용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광산, 전력 및 수자원 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각종 투자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사법부의 판결(Amparo 인용) 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이미 운영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과테말라에 대한 투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초에는 원주민들과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Oxec 수력발전소 가동 및 건설 중단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며, 6월말에는 San Rafael 광산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과테말라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원주민협약에 따른 원주민들과의 협의의무 이행을 둘러싼 갈등인데, 과테말라 정부와 국회는 원주민협약에 가입한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그 이행을 위한 국내적 절차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동 협약의 이행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2018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과테말라의 투자자 보호수준은 전체 137개국 중 131위로 최하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진출 제한 분야

그동안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자유화가 추진되어 투자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복권사업을 제외하고는 카지노에 대한 투자는 물론 카지노 영업이 금지되고 있으나 일부 호텔에서 불법으로 카지노营业을 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2017년 현재까지 외국인회사가 과테말라 내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자본금은 5,000케찰이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법에 의거 회사설립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 추진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poral)설립 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나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등기소 등록 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업체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동 서류는 본국 당국의 확인과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얻어야 한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상업등기소에 5만 달러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내 법적의무 이행 서약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 <http://www.registromercantil.gob.gt>)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Inscripcion Provisional)을 하며 관보에 1회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 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Inscripcion Definitiva)되며 등록증(Patente)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5만 달러) 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일례로 2009~2010년 과테말라 내 신규 등록한 국내 기업 수는 총 10,161개, 외국기업 등록 수는 30건에 그쳤다.

한편, 국회는 2017년 10월초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최소 설립자본금은 5천케찰에서 200케찰로 낮아졌으며, 회사 등록을 위해 과테말라 소재 상업등기소들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일간지에 설립공고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신문이 아닌 상업등기소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주총회 개최 공고 등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개정내용은 2018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과테말라는 빈곤층이 60% 이상이고 중산층이 발달되어있지 않아 고품질 및 고급 브랜드 제품의 수요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은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로 인해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회신이 지연되어 시장개척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자체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도 규모의 생산성 문제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도 후진성을 보이고 있으며 적정 교육을 받은 숙련 기능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섬유봉제산업 등 저기술 산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업체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세관에서 자체 설정한 통관요건도 까다로워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은 통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테말라의 치안불안은 기업 활동의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차량절도 3,888건, 인구 10만명당 연간 타살자수 27.31명, 상해자수 35.46명으로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밀수 성행 및

극심한 빈부차 등으로 치안이 불안하여 각종 범죄가 빈발하며 컨테이너 분실, 현금 도난, 공장 주요시설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과테말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경상비용의 25%를 안전 대책 수립에 지출하고 있다. 과테말라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경상비용의 12~15%를 치안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WEF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과테말라의 범죄와 폭력에 따른 사업비용은 수준의 전세계 137개국 중 134위를 기록했으며, 경찰서비스의 신뢰수준은 12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행정력의 후진성,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인상된 임금수준, 과테말라 깨찰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등도 외국인 투자증대의 저해 요인이다.

과테말라에서는 지난 10여년 이상 신규 도로투자가 거의 없었으며, 최근 몇 년간 도로의 유지보수도 부진하여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 및 차량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물류비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La Aurora 국제공항은 중미지역 국가들의 공항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공항이며 깨찰화와 산토토마스항의 화물처리 능력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들 중 유일하게 자국 통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대달러 환율 하락)되고 있는 점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재산성을 악화시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2010년초 1달러당 8.35케찰이었던 환율은 2017년 9월 26일 현재 7.32케찰로 12.3%나 하락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연초 대비 2.7% 하락하였으며, 연중 최고치 대비 3.2%나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 원인은 미국 거주 과테말라 해외교포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가족 송금이 지속적인 증가에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단기간에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 측면에는 2016년 Morales 정부 출범이후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CICIG)를 중심으로 부패와의 전쟁이 강도 높게 지속되면서 뇌물수수 및 부정한 이권청탁 등 부패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관료주의와 자의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행정지연 및 부당한 처리 등의 관행은 여전히 공정성과 투명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및 책임회피성 행정이 만연하여 통관 및 각종 인허가에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거래관계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므로 평소 바이어와의 친분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들은 바이어와의 교신에서 신속하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관심이 없거나 성실치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나 과테말라인은 한국인처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회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하겠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대우는 없으나 보통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허가 기간이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도 일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

류는 약 5일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도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 내에 통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서류의 공증은 약 5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기업의 진출 형태별 절차

과테말라 상법상 구분

1) 국내기업

기업형태	투자자수	최소 자본금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호표기
합명회사 (Sociedad Colectiva)	2인 이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출자원이 회사 채권에 대해 무한 책임 및 연대 책임 	Y Compania Sociedad Colectiva (약어 y Cia S.C)
유한회사 (Sociedad Responsabilidad Limitada)	최소 2인 (20인 이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Limitada (약어 Ltda./Cia.Ltda)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최소 2인	Q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Sociedad Annonima (약어 S.A.)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최소 2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한책임사원⁵⁰⁾ : 무한 책임, 연대 책임 유한책임사원⁵¹⁾ : 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약어 y Cia.S. en C.)

기업형태	투자자수	최소 자본금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호표기
합자주식회사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최소 2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 연대책임 ○ 유한책임사원: 주식출자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주식회사처럼 주식 소유)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en Acciones (약어로 y Cia., S.C.A)
개인회사 (Empresa Individual)	1인 (소유주)	Q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주가 무한책임 	제한 없음

한편, 2017년 10월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2018년 초부터는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이 200케찰로 인하된다.

2) 외국기업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상법이 정한 제반 조건(상법 215조)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외국 기업이 대표자를 과테말라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자본금 5,000케찰로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최소자본금은 2017년 10월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2018년 초부터는 200케찰로 인하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50) Comanditados

51) Comanditarios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면 지사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외국기업 설립 요건(상법 215조): 서류제출 및 증명

- 당해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 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동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을 하며 일간지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⁵²⁾되며 등록증⁵³⁾을 내준다.

52) Inscripcion Definitiva

53) Patente

그러나 2017년 10월 상법 개정에 따라 2018년 초부터는 법인설립 신청 서류는 상업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립 공고도 상업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게 되었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⁵⁴⁾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발표(상법 216조):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발표해야 함

➡ 외국기업의 청산(상법 218조):

외국기업이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코자 할 경우에는 상업등기소⁵⁵⁾에 (1)공인회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 및 법적대표자가 철수 일자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확인서, (2)과테말라 내에서 체결한 채무 및 사업관계가 완료되거나 보증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투자 형태별

- 1) 현지법인 : 상기 법상의 합명, 유한, 주식, 합자, 합자주식회사
- 2) 지사 : 상기 법상의 외국기업

54) 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

55) Registro Mercantil

투자 형식별

과테말라는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차별 없이 100% 자기자본으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선호형태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U\$50,000)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법인 설립절차와 양식 등은 경제부 소속 상업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홈페이지: <http://www.registromercantil.gob.gt>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금융제도 현황 및 금융상의 제한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적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하였으나 취약한 자본구조 및 높은 대출 이자율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주로 현지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1989년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 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외환을 사고파는 미세 조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가족송금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수년째 3%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12~13% 수준이 보통이며, 신용이 좋은 기업의 경우에도 6~7%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지나치게 많아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이 과테말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거래규정⁵⁶⁾을 2010년 10월 13일 개정하여(2011년 1월 1일 발효)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를 1개월 내 3천 달러 이하(또는 상당액)로 제한하고 있다.

3천 달러 이상 입금 시 1)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 2)입금자(기업)가 외화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2월부터 국세청법 및 조세법, 은행법을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은행의 금융정보 조회권을 갖게 되었고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은 은행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과테말라에서 은행 거래 시 불편한 점 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미화 20달러 지폐의 수취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미국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이 경우 개설 시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56) Reglamento de Negociación de Divisas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상의 제한

사업자는 순수익의 25%(중소기업의 경우 5~12%)를 사업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해야하며, 자산소득과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10%,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득세는 순수익방식외에 총수입방식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

- 순수익 방식 : 31%(2012년) → 28%(2013년) → 25%(2014년)
- 총수입 방식 : 5% → 6%(2013년) → 7%(2014년)

한편, 국내에서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매출총이익률이 4%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단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단결세와 법인세는 상호 공제가 가능하다.

2015년 기준 과테말라의 조세부담률은 10.2%로 현 Jimmy Morales 정부는 이를 2019년까지 12.2%로 높이기 위해 세수확보 대책을 수립중이다. 세수 확대 방법으로는 소득세, 유류세, 시멘트세 및 자원개발권(금속 광물)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5년 조세 회피율은 총GDP대비 4%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 환수하는 불법재산 환수법(일명 反마피아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와 과테말라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조세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일명 마킬라법(29-89)에 따라 10년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2016년부터는 긴급고용보호법(19-2016)에 따라 기존 면세혜택을 계속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고용보호법 시행 시 고용관련 각종 보고 의무 및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등 면세혜택을 받기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 사례는 없으나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유예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들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부 섬유업체들이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류를 내수시장에 판매한 사례를 적발하거나 수출용 원자재로 위장하여 내수용 물품을 수입한 밀수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면세나 유예제도 적용 대상인 수출기업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과테말라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행중인 회사와 개인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또한 회사 설립 이후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노동제도 현황 및 장벽

과테말라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나 2000년 3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6개월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재조정한 이후 임금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6.1% 인상되었으며, 보세가공업의 경우 1일(8시간 근무기준) 79.48케찰(약 11달러), 농업/비농업산업은 86.90케찰이다.

한편, 공식통계는 없으나 노조 결성률은 10% 정도로 추정되며 노조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공 부문에는 비교적 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 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해고수당만 지급하면 해고는 자유로운 편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부나 법원은 근로자

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년에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현장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검찰 고발 및 법원의 판결 없이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점도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노동법 제13조는 전체 고용인원 중 90% 이상을, 급여기준으로 85% 이상을 과테말라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경영자와 이사 및 관리자급 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과테말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새로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 양식은 노동부(일반고용과)에서 수령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서 발급에는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어 상당수의 한국 근로자들은 노동허가서 기한이 만료된 후 상당기간 무허가 상태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허가서 신청에 건당 3천케찰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변호사 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시 노동허가서 1건당 4천케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여러명의 노동허가를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각 근로자마다 건별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많은 수의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쟁정책

과테말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독점법(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EU와의 FTA 체결시 약속에 따라 2016년까지 경쟁법을 마련했어야 하나 정부가 지난해에 국회에 제출한 경쟁법(안)이 독점기업들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2017년 10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 분야 등이며 철강,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과테말라는 중남미 국가들 중 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서 외형상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의 시장 개방 및 민영화가 이루어져 경쟁적인 시장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현지의 유력가문이나 독과점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방해나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불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 환경은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자 혹은 유통업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또한, 페플라스틱이나 타이어 재생업과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 범죄조직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선불리 진입을 시도하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업종별 산업현황 및 경쟁실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07년 7월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2007년 10월 4일 발효)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단기 사증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체류기한을 연장하려면 과테말라 이민청⁵⁷⁾의 외국인국⁵⁸⁾에 가야 한다.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다시 기한 2년짜리의 임시체류⁵⁹⁾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출생증명서, 본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과기록표⁶⁰⁾인데 전과기록표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소요기간은 1달 정도이다.

5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거나 과테말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⁶¹⁾을 신청한다. 이 경우는 과테말라 신분증(DPI)⁶²⁾을 취득하게 되며 과테말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과테말라 내에 2년 이상 임시체류비자를 받고 거주한 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필요서류는 상기 임시체류증 신청과 동일하다. 통상 심사 후 발급까지는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지비자 기한 만료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관련, 2015년 9월 16일 ‘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교민들이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과테말라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 되었으며, 과테말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현지인 보증인 선임 항목도 없어졌다. 또한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교민들도 과테말라 운전면허로 교환이 가능하다.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한 절차〉

- ①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증 스페인어 번역본 공증
- ② 영주권이 없는 경우, 과테말라 이민국(Departamento de Extranjeria)에서 체류허가 서류 발급

57) Direccion General de Inmigracion

58) Departamento de Extranjeria

59) Residencia Temporal

60) Antecedentes Policiacos

61) Residencia Permanente

62) Documento Personal de Identificacion

- ③ 과테말라 경찰청 교통국(Departamento de Transito de la Policía Nacional Civil)을 방문, 구비서류 제출 후, 교통국 발급 서한 수령
- ④ 운전면허발급센터인 마이콤(Maycom)을 방문, 교통국 발급 서한 제출하고 시력검사(공인된 의료기관 또는 마이콤)결과 및 교환 수수료 지불하고 영수증 제출
- ⑤ 과테말라 면허(C종 운전면허증) 교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

- 교환신청서(교통국 비치, El Intercambio de licencia extranjera a una nacional)
- 신분증(DPI 또는 여권) 사본(여권의 경우 전체 페이지 사본 필요)
- 과테말라 이민국 발행 체류허가서류(비영주권자만 해당)
- 한국 면허증 원본
- 한국 면허증 번역본(대사관 공증 필요)

기타 관행상의 제약

과테말라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조직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도, 강도, 금품 갈취, 유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살인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금품 갈취 등의 민생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운영 공장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강탈하거나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절도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한국기업의 명의를 도용한 밀수행위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여 각종 소비재 및 산업용 자본재,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자본가 계층의 제조업부문 투자기피현상이

뚜렷하고 유통분야에 집중하거나 환금성, 자본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 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문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테말라인들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약속 시간이나 행사 시간에 30분 이상 늦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고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나 행정 처리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행정당국이나 사업파트너의 말만을 믿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진전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이 과테말라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 진출보다는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수의 에이전트를 통한 경쟁이나 직접적인 유통망 형성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지 대형수입상들을 통해 판매를 하며, 이들 수입상들은 여러 국가의 경쟁적인 다수의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테말라에서는 멕시코 국경 등을 통한 밀수가 만연하여 정상적인 국내 생산자나 수입자들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밀수로 인한 세수차질 추정액이 국세징수 목표액의 30%를 초과할 정도로 밀수가 만연해 있으며, 특히, 담배, 식용유 등 식품류 및 의약품 등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니카라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니카라과는 국토면적(130,373km² 한반도 3/5 크기)이 중미지역 최대이고, 인구는 630만명으로 중미에서 3번째 인구규모를 가진 국가로서, 경제규모(2016년 GDP 132억 달러) 및 1인당 국민소득(2016년 2,090달러)면에서 중남미지역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최빈국이다.

니카라과는 1991년 자유시장 경제개혁(교역·환율·투자제도 자유화 포함)을 단행한 이래, 대외개방⁶³⁾(WTO 가입, 다자적·양자적 FTA 체결 등)과 해외투자 유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산업은 농업·축산업으로서, 경제활동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2016년도 GDP의 1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전통 수출 품목은 소고기, 커피, 금, 담배, 유제품, 설탕, 새우, 땅콩 등으로서 니카라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 투자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의 마길라 산업(조립가공무역)을 통해 주로 섬유·봉제류 및 자동차 케이블 등의 내장재 수출을 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최근 5년간 평균 5.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고, 2016년 중미지역에서 파나마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4.7%)을 달성하였다. 현재도 내수 활력과 낮은 인플레이율 유지, 상업 및 서비스분야 호조, 자유무역공단 수출 회복세 등 거시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하고,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경제 회복에 힘입어, 향후 평균 4%~4.5%의 꾸준한 경제성장이 예

63) - 2012.10월 현재 니카라과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

- 중미공동시장(CACM):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ALBA 무역협정(ALBA-TCP):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도미니카 등
- CAFTA-DR: 미국,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 Acuerdo de Asociación(AdA): EU,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 양자 FTA: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대만

상된다. IMF는 금년에 니카라과가 4.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는 4.7%, 니카라과중앙은행은 4.5~5% 경제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중미·카리브지역 경찰위원회(Comisión de Jefes y Directores de Policía de Centroamerica)의 각국 살인 발생을 통계자료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인구 10만명당 7명에 불과하여 중미·카리브지역에서 가장 살인율이 낮다.

그러나 니카라과가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 적자, 높은 대외 원조 의존도, 열악한 인프라, 과중한 에너지비용(중미지역내 최고 수준의 유류비 및 전기료)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외국 재원 뿐만 아니라 자국내 민간투자를 보다 적극 유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주요 공공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수립, 계약, 수행, 운영 등 전반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0월초 민관 협력법안(Ley de Asociación Público Privado)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국회가 승인함으로써 향후 민관협력을 법으로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7~2021년에 걸쳐 약 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개년 국가발전투자계획(Políticas y Proyectos de Desarrollo para Potenciar la Inversión 2017~2021년)을 마련,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동 계획은 도로, 항만, 전력, 공항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차관 지원 확정 사업을 포함, 아직 재원마련이 안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한국-니카라과간 교역은 2016년 기준으로 우리 수출 이 1.3억 달러, 수입은 12백만 달러로서 우리가 큰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편직물, 자동차, 철강, 자동차부품, 타이어, 전자기기 등이고, 니카라과로 부터는 고철, 커피류, 폐건전지, 동.알루미늄 스크랩 등을 수입한다.

우리나라의 대 니카라과 투자액은 2016년말 기준으로 5,351만달러로 집계되고 있다(수출입은행 통계 자료).

2015년 6월 18일 니카라과를 포함한 한-중미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고, 같은 해 9월 제1차 협상이 시작되어 2016년 10월에 제7차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11월 16일 한-중미 FTA의 실질 타결이 선언되었다. 2018년에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니카라과간의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에는 34개 우리 섬유·의류업체가 진출하여 현지인 3만5천명을 고용하고, 니카라과 섬유 수출액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니카라과는 현재 양자 투자보장협정(2001년 6월 발효)을 체결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활동 중인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중남미지역내 우리의 최대 EDCF (경제개발협력기금) 지원대상국(2017년까지 승인액 누계 총 3.7억 달러)이며, 2013년 10월 양국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및 2014년 3월 발효를 계기로 양국간 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니카라과 ‘수입관세법’(1996/217)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1961년)에 따라, 니카라과는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CACM 회원국은 예외 품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⁶⁴⁾

2006년 4월 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니카라과에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모든 미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 쿼타 없이 니카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품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수입부과금

니카라과는 사치성 수입품 일부(여행용품, 카펫 제품, 의류 및 가구 등)에 대해 ‘선별적 소비세’(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해 15% 이내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사치성 소비재에도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주류와 담배제품에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15%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며, 그 밖에 수입품의 무게(t)당 0.5달러의 통관서비스료(TSIM)가 부과된다. 전시용 수입물품, 영업용 견본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관세 산정 기준

관세 산정 기준은 수입제품의 CIF(원가, 보험, 화물운송료)을 기준으로 종가세 부과가 원칙이다. 니카라과 관세청(Dirección General de Ser-

64) 2006.4.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니카라과에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거의 모든 미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쿼타 없이 니카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품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vicios Aduaneros), 중미경제통합 사무국(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니카라과의 품목별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관절차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니카라과 관세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packing list
- ② original invoice
- ③ declaration of invoice authenticity
- ④ permits issued by Nicaraguan authorities
- ⑤ certificate of origin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인식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으면 관세청(법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월별 재정보증능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단, 니카라과에 원조물품을 보내는 절차는 외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수입물품이 니카라과 항구에 도착한 후 창고에 보관중인 상태가 2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세관 당국은 동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동 물품이 경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1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CAFTA-DR(‘관세행정 및 무역 촉진 조항’)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통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련 세관 조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통관된 제품은 즉시 수입되도록 허용하고 신속한 선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미 통합 관세규약’(Central American Uniform Customs Code)에 따라, 니카라과는 서류 양식, 세관정보의 전자 송부, 관세, 세금 및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 등 세관절차를 회원국들과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당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지투자 진출 외국기업들은 통관절차상 애로사항으로서 니카라과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 평가, 부패, 정치화, 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⁶⁵⁾ 또한, 니카라과 전국경제인연합회(COSEP) 회장도 니카라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 압류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입규제

니카라과는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국제협약(WTO, CAFTA-DR 등)이나 개별 국내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한다.

예컨대, ‘육상운송법’(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니카라과는 WTO 회원국이므로 WTO협정에 따른 수입 규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safeguard 조치 등)를 취할 수 있다.

65) *Doing Business In Nicaragua: a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S. Companies*, 미국 상무부, 2011.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 관련 장벽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는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상표표시(labeling and marking) 관련 사항은 ‘소비자보호법’(1994/182) 또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그리고 유통 만료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되면 산업통상부(표준실)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건부(의약품실)는 의약품이 소매 유통을 위해 스페인어로 상표표시되고, 의약품 사용방법이 분명히 표기될 것을 요구한다.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스페인어로 상품표시한 후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니카라과는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 관련 규제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년)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니카라과에서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대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장벽

식품 및 음료제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산물안전검역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 내 반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사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 달러)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의 통관 관련,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검역 및 검사를 담당한다.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바이오 제품의 수입허가는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ICT 제품의 통관 관련, 체신청에서 무선통신장비, 케이블 TV장비, 전화교환장비, 상업용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액화압축가스 용기의 통관 관련,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기와 실린더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소형화기의 통관 관련, 경찰청(소화기 탄약실)에서 소형 화기, 탄약, 폭발물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정책

니카라과는 CAFTA-DR 협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의 수출을 조건으로 수입관세 양허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약'에 따라 필요시, 관세양허 유예조치는 취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일단 니카라과 내로 합법적으로 반입된 제품은 현지 제조 물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거래된다. 다만, 니카라과 국민의 보건 위생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당국은 의약품과 가정용 가스 등 의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CAFTA-DR 협약 및 니카라과 국내법에 따라, 현지 등록된 외국기업도 내국민대우를 받고 니카라과 정부조달 경매 등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자격있는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동 기업의 국적국가가 발행한 서류를 니카라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니카라과 정부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가급적 현지에 등록되는 것이 유리하다.

'경쟁촉진법'(2006/601)과 '정부조달법'(2010/737)은 정부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민간기업간 공개경쟁을 유도한다. 동 법은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입시 예외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니카라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정부조달 관행 및 정책은 국제표준의 공정무역 및 상거래 관행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니카라과 당국의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법'(2010/737)이 제정되어 앞으로 니카라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 같은 부정적 관행들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니카라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따라, 상표권, 영업비밀, 거래비밀, 저작권 등을 충분히 보장한다. 니카라과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수의 다자적·양자적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해 일련의 관련 입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니카라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⁶⁶⁾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나, 관련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영상 미디어의 불법 복제와 상표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의약품 관련 시험데이터 보호와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⁶⁷⁾

서비스 장벽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 관련 외국인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내지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과거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 투자 진출이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전기, 통신, 체신서비스, 유류,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보장 서비스 등)에 대해, 니카라과 정부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또는 WTO, CAFTA-DR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민간투자에 개방하거나 해당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66) 니카라과의 지재권 관련 주요 법률은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법'(2007/ 634),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2006/577), '위성신호프로그램보호법'(2006/578), '상표권 및 기타 독창적인 표식법'(2006/580), '신품중보호법'(1999/318) 등이다. 한편, 니카라과가 가입한 지재권 관련 국제협약은 '세계저작권협약'(제네바 1952, 파리1971),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1971),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 '국제신품중보호협약'(1978), '무역 관련 지재권 협약'(1995),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협약'((1996),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실연·음반협약'(1996) 등이다.

67) *Market Reports/Tariffs*, 미국 상무부, August 2012.

1992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하에 350여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현재 국영기업체는 상하수도공사(ENACAL), 해운항만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이며, 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는 금지된다. 반면, 국영기업체이나, 보험공사(INISER), 전력공사(ENEL), 메르세데스 공단, 석유공사(Petronic)에 대한 민간투자는 일부 허용된다. 사회보장연금기금(INSS) 분야에서도 민간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 인센티브

니카라과 투자진흥청(ProNicaragua)는 자동차 내장재, 농식품가공, 신발, 임업, 재생에너지, 아웃소싱 등을 투자 유망분야로 추천하고 있다.

니카라과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중개인이나 기존 유통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활동은 수도인 마나과에 집중되고, 대부분 외국인투자자들은 마나과에 현지 중개인(1인)을 둔다. 현지 변호사를 고용할 것을 권하며, 정식 파트너계약 체결에 앞서 니카라과 현지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좋고, 사업파트너의 신의성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좋다.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

‘조세조정법’(Ley de Concertación Tributaria 822)

127조에는 농업분야 생산품 중 부가가치세 등 일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274조는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기계류 부품 및 장비, 농목축 및 중소기업, 어업 등에서 부가가치세 및 선택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보호·장려 및 지속개발법’(Ley de Conservación, Fomento y Desarrollo Sostenible del Sector Forestal 462)

상기법에 의해 보장된 임업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다. 임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 재산세, 소득세가 면세된다. 다만, 니카라과에서는 임산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생에너지전력발전진흥법’(Ley para la Promoción de Generación Eléctrica con Fuentes Renovables 532)

2018년까지 연장된 동 법은 전력산업용 기계, 장비 재료 등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소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면세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산 보호 및 개발 특별법’(Ley de Especial sobre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Minas 387)

광산개발을 허가받은 투자자에 대해 자본재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관광 인센티브법’(Ley de Incentivos Turísticos 575)

마나과 외 지역에 대한 관광투자(3만 달러 이상)와 마나과 시내에 대한 관광투자(10만 달러 이상)를 구분하고, 각 10년간 소득세의 80~90%와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항구건설진흥법’(Ley General de Puertos de Nicaragua 838)

니카라과에 신 항구 건설을 진흥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항구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 기계, 장비 등의 수입시 면세혜택을 제공한다.

‘도시 및 농촌주택건설법’(Ley de Orgánica del Instituto de la Vivienda Urbana y Rural 428)

주택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주택 건설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登記 등 관련 절차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료, 장비 등 구입시 면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어업 및 양식업법’(Ley de Pesca y Agricultura 489)

어업 및 양식업에 사용되는 디젤 및 가솔린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외국인 은퇴자 및 거류자법’(Ley de Promoción de Ingreso de Residentes Pensionados y Residentes Rentistas 694)

주거 목적의 주택을 건축자재, 물품 및 차량 수입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동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은퇴자 및 거류자는 월 소득이 600~750달러에 이르는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청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Managua주(22개)를 포함 10개주에 설립된 50개 자유무역공단에서 176개 기업이 11만5천여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6년 총 26.2억달러를 수출하였다. 분야별 투자업체는 섬유 및 의류산업(80개), 담배(28개), 농가공업(27개), 아웃소싱 서비스(22개), 자동차부품(5개) 등으로 섬유 및 의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많다.

자유무역공단에 진출한 국가별 기업수를 보면, 미국이 66개로 가장 많고, 한국(34개), 니카라과(33개) 3개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무역공단 수출액중 섬유·봉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도 67.4%에서 2016년도에는 56% 까지 감소하여 섬유·봉제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완화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자동차 내장재, 담배 순으로서 동 3개 업종이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무역공단의 최저임금은(2017년도 기준) 약 250미볼로서 중미지역에서 가장 저렴하다. 또한 노·사·정간 향후 2018~2022년까지 연 급여 인상을 8.25%로 합의하였는 바, 환율상승에 따른 인플레이를 감안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상분은 약 3%선에 불과하다.

자유무역공단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Zonas Francas)는 자유무역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및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자유무역공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동 위원회측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투자진흥과(Oficina de Promocion de Inversiones)
전화 : +505 2263-1530 (ext. 124 / 171)
이메일 : mabarca@cnzf.gob.ni / 홈페이지: www.cnzf.gob.ni

자유무역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조세 혜택으로는, 영업 초기 10년간 소득세 면제, 지방세 및 재산세 면제, 원자재, 기계/장비 부품 등 자본재 수입세 면제, 공단 생산품에 대한 수출세 면제, 간접세 및 소비세 면제, 창업 및 기업 합병세, 인세 등에 대한 면제를 부여한다. 조세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한편, 자유무역공단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섬유·의류분야의 경우, 니카라과는 그간 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DR-CAFTA)의 예외조항인 TPL(Tariff Preferential Limit)⁶⁸⁾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 31일자로 동

68) TPL (Tariff Preferential Limit): CAFTA-DR 협정의 예외조항으로서, 니카라과가 동 협정체결국가 외 지역의 섬유를 활용, 생산한 의류제품을 미국 수출시 미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4.12.31.까지 10년간 무관세 혜택을 부여 하였으나, 2014.12.31.로 동 혜택이 종료됨.

혜택이 종료됨으로써 자유무역공단 섬유봉제 수출이 직·간접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 수출이 회복세에 있다.

자유무역공단에 입주해 있는 34개의 한국기업들은 상기 TPL 혜택을 활용, 미국에 의류제품을 수출해온 중소기업체들로서, 자체조직으로 섬유산업협회를 구성, 협회사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발생시 주재국 관련 당국에 대해 공동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편, 니카라과정부는 TPL 종료 후 직·간접영향을 받고 있는 자유무역공단내 진출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외국투자확대를 위한 친기업 환경을 조성코자 최근 자유무역공단 관련 법개정안을 개정하였다.⁶⁹⁾

※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 현황 (출처: 자유무역공단위원회)

- 공단 설치 지역 (2016년 기준)
전국 10개주에 50개 공단이 설치되었으며, 마나과주가 22개로 최대 보유
- 한국기업 입주공단 지역(주/시)
34개의 중소 섬유업체 및 협력사들이 수도 마나과 인근 지역 공단에 아래와 같이 집중되어 있음.
 - Managua주 : Managua, Tipitapa, Ciudad Sandino
 - Masaya주 : Masaya, Masatepe, Niquinohomo
 - Carazo주 : Jinotepe
 - Granada주 : Diriomo
- 고용 창출 (2016년)
- 직접고용은 112,000여명, 간접고용은 333,000명 등 총 445,000여명 고용
- 입주기업 업종별 종사인원(명)
- 섬유·봉제(66,012), 자동차부품(11,815), 담배(11,897), 농축산물(8,664), 아웃소싱(5,056)

69) ※ 개정안 주요 내용

- △ 자유무역지대관리위원회와 자유무역공단관리청의 법적지위, 권한과 기능 강화
- △ 공단 진출 기업들에 부여하고 있는 면세혜택 등의 행정 기능을 관세청에서 위원회로 이관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강화
- △ 국제금융자치지역을 신규 조성하여 외국 자본의 유입과 유통 활성화 등

- 공단 진출 각국업체 수
 - 미국(66), 한국 (34), 니카라과(33), 엘살바도르(9), 멕시코(8), 대만(5), 덴마크(5), 캐나다(5), 스페인(5), 코스타리카(5)
- 자유무역공단 수출 현황(2016년말 기준)
 - 26.2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4.8% 증가
 - 미국,멕시코에 80%가 집중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은 ①내외국인 투자자간 동등한 대우, ②외화자금의 자유로운 반출입, ③외국인 투자자의 니카라과내 자유로운 재산 소유 및 운용, ④니카라과 당국의 수용시 적절한 보상, ⑤완전한 환전 및 투자수익의 반출, ⑥투자금액에 대한 한도 폐지, ⑥외국인의 현지기업 100% 소유, ⑦자본재의 조기 감가상각, ⑧현지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등을 허용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WTO, CAFTA-DR 등 다자적 무역협정과, 한국 등 19개국과 상호 체결한 양자적 투자보장협정을 통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보장한다.

그러나 니카라과 정부가 이념적,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적에서 개입하여 발생한 외국인 투자분쟁의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추어 그 해결이 쉽지 않으며 니카라과내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 제한 분야

니카라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독과점적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던 국영기업 일부(예컨대, 통신 분야)에 대한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참가 허용 조치 이래, 니카라과에서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분야는 점차 축소 되는 추세이다.

다만, 공공 질서, 공중 보건, 환경 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는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법인 설립(지사 및 사무소 설치 포함)

니카라과 법령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재단, 조합 등 영업주체의 형태를 폭넓게 인정한다. 따라서 외국회사는 현지 지사, 합작 투자, 외국회사 소유의 자회사 또는 여러 형태의 투자방식을 통해 니카라과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상법에 따라 등기소(Registro Publico)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 및 영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합법적인 납세자이자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 설립에 통상 6주 가량 소요되며, 4천 달러 내외의 등록수수료가 부과된다. 국제금융보고표준(IFRS)과 국제회계표준(IAS)에 따라, 니카라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재무제표를 매년 갖추어야 한다.

니카라과 정부는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3년 8월 니카라과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산하기구로 One-Stop Shop 사무소(스페인어로 VUI: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를 신설하였다.

동 사무소에는 등기소(Registro Publico Mercantil de Managua), 소득청(Direccion General de Ingresos) 및 마나과시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신설 기업 창립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VUI를 통한 신설 기업 창립절차에 소요기간은 평균 12일이다.

3만 달러 이상 규모를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선택적으로 니카라과 산업통상부(MIFIC)에 등록하여 외국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certificate)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동 허가증은 발급받는데 까지 최대 5일이 소요된다.

※ One-Stop Shop 를 통한 신설기업 설립 절차

- 1단계 : 정관작성 및 공증(Notarized Deed of Constitution) - 2일
- 2단계 : 회계장부 구입(Purchase of accounting and corporate books- 1일
- 3단계 : 법인등록 및 등록세 납부(Register as a company and sealing the books and payment of registration fees - 8일
- 4단계 : 등기 (Process the Single Registration Document - 1일

※ One-Stop Shop (VUI) 사무소 연락처

주소 : Colonia Los Robles, de la Gasolinera UNO Plaza el Sol 1 1/2 cuadra al sur
전화 : + 505 2277-3860, 3871, 9820
홈페이지 : <http://vui.mific.gob.ni>

회사의 국적, 주주의 국적, 회사의 운영 형태 및 방식에 관계없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없으며, 따라서 외국인 임직원이 현지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투자자는 니카라과 이민 청으로부터 거류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 및 토지 사용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활동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감정을 신청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적절한 계획의 수립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의 의무

니카라과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투자할 때 라이선스 계약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약 내용이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기술이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 부과 외,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 해외송금, 환전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외국인에게도 현지인과 동일한 부동산 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대차하고자 하는 외국자본 소유의 현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다. '자본시장법'(2006/587)이 동산 및 부동산 관련 사항을 규율한다.

따라서 니카라과내 부동산 구입에 관심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현지 법률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2000/344)과 '은행, 비금융중계 및 금융기관법' (2005/561)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관련 자금을 자유로이 환전 및 해외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산업통상부에 신고하여야 한다.⁷⁰⁾ 현지 금융기관도 자유로이 환전 등 외환을 취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은행계좌를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으나 개설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현지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 위험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해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이래 니카라과 정부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외국계 은행은 100% 지분을 소유한 지점을 니카라과내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미국 등 외국계 은행들은 주로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니카라과에 진출한다.

70) '은행금융기관감독원(SIBOF)이 현지 금융거래를 관리감독한다. '은행 및 금융감독기관법' (2006/576), '은행, 금융기관, 비금융중계기관 및 은행대기업 통합법'(2005/561), '예금보증인제도법' (2005/551)이 금융시장을 규율하며, '금융기관예금보증인기금(FOGADE)은 예금한 개인 및 기관당 1만 달러를 보증해 줄 수 있다.

니카라과의 공식환율은 미달러 대비 현지 통화(córdoba)를 연 5% 평가 절하는 평가조정 고정환율제도(crawling peg)에 따라 니카라과 중앙은행(BCN)이 일일 단위로 조정한다.

니카라과는 'WTO 금융서비스협정'의 당사국이나, 모든 자산과 증권 관리에 동 협정의 양허대상에 포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금융 자본시장이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있다는 점, 금융사기 및 배임형령 등 금융부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제재가 미약하다는 점, 정치권 등 비금융부문으로부터 외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니카라과의 금융분야에서 개선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⁷¹⁾

세제상의 제한

니카라과는 경제활동에 있어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제상에서도 외국기업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으며, 내국인 및 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다.

'조세조정법'에 따라, 경제활동 주체의 국적, 소득원의 성격 등에 관계없이, 니카라과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니카라과에 영구사업장⁷²⁾을 가진 모든 기업(단, 자유무역 공단 제외)은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의 경우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3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모든 순수입의 30%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해외 송금시에도 소득세가 원천과세된다.

71) 니카라과 미소금융기관(19개 기관이 총 2.5억 달러의 자산 운용중)은 현지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자금공급원이다. 그러나 2008.7월 Ortega 대통령이 미소금융대출의 상환을 중지하고 이들의 고금리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고, 곧이어 소위 '상환거부 운동'이 전개되어 니카라과 미소금융부문에 큰 타격을 주었다. 더욱이 2010.2월 니카라과 국회는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은 '상환유예법' (2010/716)을 제정하고 미소금융업체들에 대해 대출금리를 16%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72) 영구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표준 관련, 니카라과는 OECD 기준과 달리, 사실상 니카라과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니카라과 세법은 조세회피 조항(safe harbor provision)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니카라과 비거주자에 지불되는 특허료,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예컨대 니카라과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특허권사용료의 21%, 니카라과 비거주자 또는 비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소득의 10%, 비거주 기관에 지불되는 기술서비스료의 10.5%, 비거주 개인에게 지불되는 기술 서비스료의 20%에 대해 각각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0.8~1.0%의 부동산세를 부과하며, 부동산 매매시 4%의 부동산 거래세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는 2%의 등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모든 재화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업은 근로자 급여의 16%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투자분쟁 해결제도 및 절차

‘조정 및 중재법’(2005/540)은 외국인의 투자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 협약’과 ‘뉴욕 협약’의 가입국이다.

그러나 실제로 니카라과에서 상업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니카라과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카라과의 사법체계는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법원조직이 부패하여 정치적 외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상행위 관련 다수의 법규와 파산법이 존재하지만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⁷³⁾

니카라과 법원은 공식조사와 집행소송을 기간의 제한없이 진행하기 위해 ‘amparos’라 불리는 가치분금지명령제도를 빈번히 발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한층 지체될 수도 있다.

73) *National Report: Nicaragua*, USAID, 2011.

‘경쟁촉진법’(2006/601)은 니카라과내 경쟁문화를 양성하고, 경쟁 제한적 관행을 예방, 금지 및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주체들간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니카라과 시장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행위는 비록 니카라과 역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경쟁촉진법이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한, ①지식재산권의 행사, ② 생산 및 경제활동 촉진, 기술표준, 기술개발 및 환경 보호 목적의 행위 일부, ③고용주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④시장에 경쟁 제한적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제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수출 진흥 목적의 상업적 협약, ⑤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니카라과 정부가 취하는 조치 등은 동 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경쟁촉진법 외, 헌법(99조, 104조, 105조 등)은 경쟁 제한적 관행을 금지하고 경제 효율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을 규정하며, 기타 다수의 법률(상표법, 은행감독법, 통신법, 석유유통법, 전력산업법, 에너지 창조직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도 경쟁정책을 일부 규정한다.

2000년대 이후 국가적 독과점 대상이었던 일부 산업에 대한 민영화와 민간투자 개방이 진행중이고, 특히 2009년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경쟁 제한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의 경쟁 관련 법과 정책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고, 효과적인 법 집행 및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가로부터 독과점적 내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거대 국영기업체 다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니카라과의 경쟁정책은 앞으로 개선사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⁷⁴⁾

74) Paper done by Anudeepa Nair of CUTS, 2006.

노무 및 노동정책

니카라과는 헌법상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주요 8개 ILO 국제협약을 모두 비준하였고, 노동고용 관계 법령을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인식한다.⁷⁵⁾ ‘헌법’(1987)과 ‘노동법’(1996)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자유와 존엄성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와 노무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노동규정(근로내규)을 마련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동 내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니카라과 노동자들은 근로내규 하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 근로내규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마련한 근로조건 외,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근로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법’은 관리직을 제외한 노동자의 90%가 니카라과 국민일 것을 요구한다.

니카라과 헌법은 일일 8시간의 표준근로시간과 주당 6일 48시간의 표준 근로일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최소 고용연령은 14세이고, 14세~16세 사이의 아동노동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용법령은 ‘임의해고’(at-will employment)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 급여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고용주는 노동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⁷⁶⁾가 있을 때 노동자를 해고만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노동자는 무급휴가와 현재 급여 등 일부만 수령할 수 있다.

니카라과 노동법상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성 경비(Fringe Benefits)는 최대 47%까지 이른다.

모든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시 연속 15일간의 휴가 권리를 가진다. 매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여금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75) 니카라과의 공식 실업률은 6~8%(불완전고용 50~70%)에 이르며, 농촌지역의 미숙련 노동력이 저렴하고 풍부한 편이나 대부분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은행은 니카라과 인구의 46%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며, 특히 15%는 절대 빈곤상태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76) ①고용주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 ②회사에 대한 범죄행위 및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 ③작업장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④고용주의 영업비밀 누설, ⑤3일 이상 무단 결근, ⑥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

12월 첫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계, 정부 그리고 노동계는 법정 최저임금 책정을 위해 협의하고 그 결과는 국회에서 추인된다. 업종별 최저임금기준은 상이하며 6개월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평균 15% 상승하였으며, 특히 자유무역지대에서는 8~12%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규정은 공공 부문에서는 제대로 준수될 뿐,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근로시간 외 근무 금지 등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근로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평균 8.25% 인상함으로써, 전 업종 평균 임금은 약 178달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는 중미국가 중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 니카라과 노동부에 따르면(2017년 9월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은 농업으로서 약 187달러이고, 가장 높은 업종은 건축, 금융보험업으로서 약 418달러이다. 자유무역공단 최저임금은 약 250달러이다.

노동법은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권을 부여한다. 법률상 고용주는 노동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재고용해야 하나, 법 집행력이 미미하여 사실상, 고용주들은 법적인 해고수당을 더 얹어 주는 조건으로 노조 관련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법은 단체교섭권과 복수노조 설립권, 복수노조 가입권 그리고 파업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사쟁의조정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대부분 파업은 불법파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정치노선에 따라 노조들이 분열되는 경우도 있다.

니카라과 헌법 87조 7항, 노동법 109조 및 사회보장법 1조에 의거, 자영인, 협동농장 근로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고용주 및 피고용인은 사회

보장청(INS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국가 등 3자의 일정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동 기금으로 노동자 및 노동자가족에 대한 질병, 사망, 불구 등의 사고 발생시 관련 보험혜택 등을 제공한다. 분담금은 고용주가 18%, 피고용인이 6.25%, 국가가 0.25%를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장벽

이민법

니카라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이민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를 취득하는데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투자자의 경우, 거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니카라과 비자면제 대상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관광 목적의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2013년부터 시행중인 개정 이민법에 따라, 거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995년 4월 8일 한-니카라과 비자면제협정 체결).

높은 에너지 비용

연간 천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하는 니카라과는 주요 발전용 에너지를 대부분 베네수엘라에서 매우 저렴하게 수입(91%)하고 있었으나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로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준 반면 최근 미국과 멕시코에서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류 소비시장 협소 및 저장시설 부족, 전력인프라 취약 등으로 증미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싸고 유류비는 두 번째로 비싸다.

이에 따라, Ortega 대통령은 2015년 3월 전기료 인하법안을 긴급 사안으로 국회에 제출, 이를 국회가 승인함으로써 전기료 인하 근거를 만들었으며, 그간 4차례(2015년 4월 10%, 2016년 1월 4%, 2016년 4월 1% 및 2016년 8월 1% 인하 등)에 걸쳐 전기료를 총 16% 인하 하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국제유가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전기료를 2% 인상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약화 및 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업계측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사법환경

니카라과의 사법환경은 중남미지역내에서도 열악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은 사법제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부패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규제당국이 자의적이고 방만하며, 법률절차가 너무 느리고 때로는 편파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행정당국 또는 현지 사업파트너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과 절차가 미비한 만큼 사소한 분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니카라과의 대외경쟁력 제약 요소

세계 주요 기구들이 조사하는 사업환경, 부패지수, 경쟁력지수 등에서 니카라과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하위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WB)의 2017 Doing Business 평가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27위(190개 평가대상국)를 차지하였다.

2016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76개 조사대상국 중 145위를 차지하여 중미에서는 최하위를, 중남미 전체에서는 베네수엘라, 아이티에 이어 세 번째로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공공분야에 대한 높은 부패인식이 반영되었으며, 예를 들어 정부 발주 각종 입찰에 수의계약, 영향력 행사, 뇌물 수수 등이 만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2018년도 세계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의 세계경쟁력은 조사대상 137개국 중 93위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10단계가 상승하며 중미지역 국가 중에서는 온두라스(96위), 엘살바도르(109위)를 근소하게 앞섰음에도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경쟁력 저하

요소로는 관료주의, 부정·부패, 노동력 질, 규제, 인프라 취약 등의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

니카라과 근로자의 생산성은 중미지역에서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중미지역 5개국가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생산성을 미달러로 환산 결과, 코스타리카(13,000달러), 엘살바도르(7,700달러), 과테말라(6,000달러), 온두라스(4,000달러)였고, 니카라과는 최하위인 3,700달러로 평가되었다.

또한, 세계은행이 2016년에 발간한 2014년도 전세계 물류종합지수보고서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60개 조사대상 중 2년전 95위에서 102위로 순위가 하락하여 오히려 물류 경쟁력이 취약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관의 행정처리 및 통관 과정 지연 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9월 21일 미 하원은 Ortega 정부가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IBD, WB를 포함한 국제금융기관의 대 니카라과 차관 공여를 반대토록 규정하는 니카라과 제재법(일명: Nica Act)을 발의하였으나, 정부 교체로 중단된 적이 있다. 이어 Trump 신정부 출범 후에도 미 하원은 2017년 4월 5일 동 법안을 재발의 하였고 10.3 하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상원으로 상정되었다. 동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Trump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니카라과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는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니카라과 경제계가 받아들이는 충격은 매우 크다.

도미니카공화국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수입정책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에 WTO 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WTO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하여, CARIFORUM을 통해 CARICOM 회원국들과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였고,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 체결한 FTA(DR-CAFTA)가 2007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CARIFORUM과 유럽연합(EU)간 경제제휴협정(CARIFORUM-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특혜무역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한편,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와도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 비관세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별히 수입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2015년 평균 MFN(최혜국대우) 관세는 7.3%이다.

2003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WTO 패널은 동 수입세가 다자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를 수렴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0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수입되는 일부 섬유품목(폴리프로필렌 부대, 직물원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가 WTO에 제소되어 패소한 후 2012년 4월 동 상계관세를 철회한바 있으며, 2012년 7월 담배수출을 제한한 호주를 WTO에 제소하여 현재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분쟁해결, 정부조달, 산업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장벽

1995년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년 7월 1일부로 관세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 체계(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는 관세, 10~130% 특별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담배 등), 18% 부가가치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등 4개 종류가 있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가가치세(ITBIS)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제품 및 모델 수입 시 과도한 관세 부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1994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관세청의 내부평가규정(2011년 제정), WTO의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에 기초하여 품목 분류/관세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관련 제세이외에 기타 수입부과금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시 통상 8일이 소요되며, 구비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신고서, 심사보고서 총 4가지이다.

한편, 수입 시에는 통상 11일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7년 수출입통관분야(Trading Across Border) 평가에서 190개 국가 중 59위를 기록하여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평균(101위)을 상회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우리나라 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통관절차는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 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적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과세표준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창고료 납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소정 통관신고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업무관세시스템(SIGA)을 이용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통관신고서)에 첨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한편 1987년 9월 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호에 의거 수출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는데, 여러 차례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오다가 2006년 7월부터 완전 폐지되었다.

수입통관 관련 비관세 장벽중 하나로 현재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고 있는데 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정도 인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언더벨류 인보이스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며, CARICOM, 중미공동시장(CACM), 미국(DR-CAFTA) 및 EU(CARIFORUM-EU EPA)와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 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CARIFORUM-EU EPA는 기존의 FTA와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CARICOM 14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 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산 제품의 대 EU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등 전통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은 대 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류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확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규제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2017년 기준 2011년 이하 제조 차량 수입 금지)의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 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98년 3월 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통신장비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 2001년 12월 11일 법규를 제정한 이후 동 법규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 중미산 26개 제품에 대하여 30~4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역시 중미산 폴리프로필렌 포장재에 대해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38%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도미니카공화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결국 2012년 4월 세이프가드를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는 터키산 철강제품에 대해서 덤핑판정을 내려 1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11년 이후 5년동안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공부 산하에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 등 무역 관련 규범을 제정하고 심사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 및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위원회 등에 다수의 통보 조치를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6년 제1차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2002년 및 2008년에 TPRM에 따라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수출 관련 정책

2016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68개의 수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3개가 늘어났다. 자유무역구역법(법률 제 8-90호)에 따라 입주기업에 소득세, 법인 설립 관련 차관계약 및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금, 회사설립 및 자본금 증액에 따른 세금, 지방정부세, 수출자유무역구역으로 반입하는 원자재, 장비, 건설장비, 사무용품 등에 대한 수입세 및 관세, 수출 및 재수출세,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비 수입세, 업무용 차량의 수입세 등 다양한 관세 및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는 서비스(144), 섬유(102), 담배(73), 농산품(56), 유통(48), 의약품(31), 신발(29), 제지·인쇄(23), 전기·전자제품(20), 보석(15), 건설 및 건설자재(11), 플라스틱(10), 금속 및 제조(9), 주류(8), 화학제품(7), 가죽제품(5), 식품(3), 기타(51) 등 다양한 분야의 총 64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63,147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 운영 주체는 민영이 73.5%, 공영이 22.1%, 혼합형이 4.4% 운영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의 수출은 2009년 12.9% 감소하였으며, 특히 섬유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31.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0년에 11.2% 성장을 보인 데 이어 2011년도에는 15.8%, 2014년에는 6.3%의 성장률을 기록해 다시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수출자유구역의 총 수출액은 55억불로 국내 총 수출의 55.7%를 달성하였다. 특히 2016년 의약품과 섬유 수출액이 각각 15(27.2%)과 10.9억불(19.9%)로 수출자유구역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수출자유구역 이외 일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으나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광산물,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1998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labeling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년 2월 7일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년 5월 30일 법률 제50호는 항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년 8월 27일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 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장벽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되었으나 2000년 8월 18일 제정된 법률 제64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5년 이상 된 중고차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 제품 및 중고의류의 수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5년 이상 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되어 있다. 2009년 이후 우측 핸들 개조 차량 수입이 규제되어 한국산 신차 및 중고차 수입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2012년 세제 개혁을 통해 수입되는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CO₂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 부과세를 아래와 같이 추가 하였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로 세금 부과

CO₂ 120g 미만-Km, 0%

CO₂ 120g 이상, 220g 미만-Km, 1%

CO₂ 220g 이상, 380g 미만-Km, 2%

CO₂ 380g 이상-Km, 3%

예외-16인승 이상 차종과 트럭

차량 수입 시 수입관세(MFN) 8~20%, 부가가치세 18% 외에 등록세 17%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년 WTO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15년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개도국의 수출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수출 자유구역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년 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 판매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은 반면,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2012년 세제개혁, 법률 253-12)

2007년 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에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키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협력키로 했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 관련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나 2006년 채택된 정부조달법은 상품, 서비스, 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에 따른 차별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정부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공급자와 합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발효 전에 미국 측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정부조달 관련 정부계약법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부입찰 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이 가능토록 하며, 건설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입찰금액 한도를 지정하여 그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12년 6월 도미니카공화국 공공조달법 제340-06의 개정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규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의 입찰을 통해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재 화	용 역	공공 프로젝트
공개경쟁 입찰	RD\$3,816,117	RD\$3,816,117	RD\$114,600,000
제한 입찰	RD\$1,526,447	RD\$1,526,447	RD\$47,701,467
추첨	-	-	RD\$28,620,880
견적 비교	RD\$286,209	RD\$286,209	RD\$7,632,235
소액 구매	RD\$38,161	RD\$38,161	-

또한 2012년 법률 488-08을 통해 정부 각 기관은 예산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도록 법제화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Universal Convention on Copyrights),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y of Trademark) 등 주요 국제협약 가입국이다.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상표 및 상호법(법률 제1450호), 발명특허법(법률 제4994호), 외국인 투자법(법률 제16호) 등이 적용되며 산업통상부에서는 UN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분산된 법률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발명특허권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법률 제4994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발견, 새로운 물질의 제조방법과 생산 장비, 생산물 등을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특

정 기간 동안(5, 10, 15년) 생산, 사용,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가 보호된다. 단 완전히 새롭지 않은 경우와 동 발명이 공중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무효이며,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리고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명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관련 담당 기관은 산업통상부 산하 특허청(ONAPI) 이다.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에 따르면, 유사한 특성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상표는 독특한 단어, 조건,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3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마크, 로고, 슬로건 등은 판례를 근거로 보호한다.

상표 등록은 상표의 소유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 최초 1년간의 효력을 보호하는 것이나, 최초 1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무효화된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86호는 모든 형태의 저술, 예술작품과 모든 창작품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위원회(INDOTEL)는 케이블 신호와 비디오의 불법 복사, 판매, 방송에 관한 단속 기구로 위반물의 압수나 영업정지 명령권을 행사한다.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 발효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6월 WIPO에 가입하고,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년 5월 10일 법률 제2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년 11월 14일 도하 WTO 각료회의 시 채택된 “무역

및 공공위생 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2003년 8월 28일의 Doha선언 관련 조항 시행 메커니즘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규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침해 사례가 많으며, 국제지식재산권협회와 미국 등은 의약품 등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측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DR-CAFTA 협정에서 발명특허권은 TRIPs가 정한 최소한의 기간인 현행 20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저작권은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사무국(ONDA)을 제도적·경제적으로 확충하여 무단 전송 및 무단 복제 해적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서비스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GATS 160개 분야 중 60개 분야에 양허하였으며,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양허내용에 비해 서비스 개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많은 개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이자율은 2004년 32%까지 인상되었다가 2005년에 23%로 인하되었으며, 2009년 이후 2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2016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비자 대출 18.3%, 상업 대출 14.1%, 주택 대출 11.6%를 유지하였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 1991년 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6월까지 13% 고율의 환전세를 부과해 왔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2006년 7월 완전 폐지하였다.

현지 관행상 광범위한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종의정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그동안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의 분야를 개방하였다.

투자 장벽

1995년 11월 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제16호)은 국내 투자시장 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자유구역을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유구역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출의 52%에서 2005년에는 77%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 기준 55%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 위원회(CNZFE)가 관리하고 있다.

1997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109호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 (투자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다. 현재 OPI-RD는 수출진흥청인 CEDO PEX와 합쳐져 수출투자진흥청인 CEI-RD로 변화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자본금과 과실 송금을 자유화하여 투자환경 개선에 일조하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 규제 해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 인정, 투자금과 과실송금 자유화 등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과거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고 통계유지 차원에서 사전 등록제를 채택,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이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 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된다.

즉,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출자유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에 입주심사 신청 및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를 하면 동 위원회가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으로서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으로 소재지 등록이 필요하다.

1966년 제정된 대리점법(법률 제173호)은 외국회사의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대리점 계약은 계약사항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만일 공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대리점에 대해서 투자자금 및 지출비용 외에 5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5년 이상 대리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10분의 1을 추가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의무 부과

국산화의무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국내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수출자유구역 관리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 제세 납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25% 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평방피트(S/F) 이하의 토지구입, 국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임대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단 내 투자기업 대부분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자(개인 및 법인)는 과실송금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투자자본의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순수익을 모두 과실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 납부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매우 어렵다. 즉 이자율이 높고, 도미니카공화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자유구역 투자업체는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어 있어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다소 덜한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도미니카공화국내 기업은 연간 평균 9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2006년까지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75개로 매우 복잡하였으나 2009년부터 9종류로 축소되었고, 2006년에 시범 실시되었던 온라인 납세시스템이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납부절차가 한결 편리해졌다.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소득세는 물론 제세 일체가 15년간 면제된다. 또한 아이티 국경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조세법에 규정된 국세는 소득세(ISR), 부가가치세(ITBIS),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수출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다. 단, 수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때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자유구역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했었으나 외국인 투자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수출자유구역 투자진출 업체들의 철수 및 폐업이 나타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정책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년 6월 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공정 경쟁을 통한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년 4월 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활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년 11월 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제화(법률 제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입국비자 및 체류허가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취업 등 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투자를 위해 장기체류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민법(법률 제285-04호)에 명시된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를 위한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후 투자체류허가증(유효기간 2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운전면허

도미니카공화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동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체류허가(취업비자 등)를 득한 우리국민은 한국운전면허증을 도미니카공화국 면허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개선실적

우리국민은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시 외국인에 부과하는 관광입국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 단, 체류일 30일 경과 시 도미니카공화국 법령에 의해 국내 체류증을 획득하지 않은 전 외국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 (30일 초과 90일 이내의 경우 RD\$2,500)

멕시코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멕시코와 한국의 무역규모는 2016년 기준 134억 달러(전년대비 1.7% 감소)로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9위(97억 달러), 무역흑자 7위(60억 달러)의 교역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38.2%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POP 등 한류에 열광하는 멕시코인들이 늘면서 양국간 문화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OECD, APEC, G20, FEALAC, MIKTA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2016년 멕시코 경제동향

국제통화기금은 2017년에도 여러 차례 금년도 및 차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조정한 바 있으며, 10월 초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2.1%로 상향 조정하였다.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의 주된 이유는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1.9%로 예상, 올해보다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은 10월 보고를 통해 금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발표했던 2.0~2.5%로 하향조정하였었다. 이는 9월 말 태풍

및 지진 피해를 반영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지진의 경우 9월 8일 치아파스 주 피히히아판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해역에서 진도 8.1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017년 9월 19일 푸에블라 주 산 후안 라보스 동남동쪽 5km 지점에서 진도 7.1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약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한국-멕시코 교역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수출 97억 2,080만 달러, 수입 36억 9,537만 달러로 60억 2543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하는데, 1990년대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급증했고, 한국은 재화의 수입보다는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활동을 통해 멕시코 수출 및 고용 창출로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 분야에서 2016년에 평판디스플레이, 냉연강판 수출이 전년대비 각각 47.1%, 1.2% 감소한 반면, 자동차부품, 승용차, 아연도강판은 각각 80.2%, 26.5%, 20.5% 증가했다. 멕시코 최대 수출국인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제조업이 활성화 되어 제조업 부문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서는 전반적으로 원유, 기타 금속광물, 아연광, 고철 등 1차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유, 자동차부품, 아연광은 전년 대비 수입이 각각 44.3%, 18.1%, 56.9% 증가한 반면, 기타금속광물, 은 등의 수입은 각각 9.1%, 28% 감소했다.

한국기업 투자동향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1994년 멕시코의 NAFTA 체결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시장 진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진출을 꾀하는 한국 가전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는 1억 2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 내수시장 진출, 미국·캐나다 등 NAFTA 권역시장 진출 및 동일 문화권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68~2017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액은 약 47억 달러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24억 2,900백만 달러(838건), 광업 16억 49백만 달러(90건), 도소매업 4억 34백만 달러(114건)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GM 등 다국적기업이 생산설비를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진출이 늘어났다.

한편, 2014년 8월 기아자동차가 몬테레이(Monterey)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공장을 짓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5월부터 소형차 생산을 시작하였다(K3모델). 생산계획은 연간 30만대 규모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멕시코는 현지 생산량의 10%까지 무관세 수입쿼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3만대까지 국내 완성차의 멕시코 무관세 수출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현대 트랜스리드가 바하 캘리포니아 주에 신규공장을 건설(2016년 10월)하는 등 자가용뿐만 아니라 상용차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

가전분야의 투자로는 삼성전자가 띠후아나(Tijuana)에 TV 생산공장, 궤레 따로(Queretaro)에 양문형 냉장고, 프렌치 도어 냉장고 등 고급 냉장고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며, LG전자 또한 멕시칼리(Mexicali) 및 레이노사(Reynosa)에 TV 생산 공장, 몬테레이(Monterey)에 냉장고, 전기오븐, 가스오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건설 플랜트 분야는 KMS(가스공사, 미쯔이상사, 삼성물산 컨소시엄)가 2008년 5월 CFE(연방전력청)로부터 Manzanillo항에 15만 kl 용량의 LNG 저장탱크 2개와 선박 접안 시설, LNG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시설 공사를 수주하여 2011년 9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12년 3월 준공식을 가졌다. KMS에서는 완공 이후 20년간 이 시설들의 운영을 맡아 연간 LNG 380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총 운영 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 업계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OSCO는 뿌에블라(Puebla),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 아구아스 칼리엔테스(Aguas Calientes), 셀라야(Celaya)에 자동차 강판 복합가공 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알타 미라(Altamira)시에 자동차용 아연도금강판 제 2공장을 완공하여 연간 90만 톤을 처리하고 있다.

광물 분야에서도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산타 로살리아(Santa Rosalia) 인근에 동광 개발부터 정·제련을 포함한 일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376개로 추정되고 있다.

멕시코의 시장 특성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 부유층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고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가격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품질 제품과 저품질 제품으로 양분화되는데, 고소득층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매를 결정하는 포인트는 브랜드, 디자인, 제품 인지도, 제품의 질, 기능 등이다. 특히 상류층은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 구매 시 심플한 디자인, 추가 기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렴한 면서도 제품 성능이 양호한 제품을 선호한다.

일반 소비재의 가장 큰 구매시즌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인데, 이 시기에는 친구나 가족, 친척 등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거래처에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브랜드 한국상품에 대한 멕시코 수입상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멕시코는 수출입의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멕시코 신문,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규모의 대기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 홍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일부 전시회의 경우 중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대형 전시회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바이어들에게 홍보도 가능하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멕시코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무역시장 개방으로 요약된다.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 전세계 46개국과 16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 12월 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의 수출구조 다변화를 위해 추가 FTA 체결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브라질 등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멕시코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하지만 2012년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그 동안 진전이 되지 않았던 페루와 FTA를 체결하고 태평양 동맹 및 중미 5개국과의 단일 FTA를 체결하였다. 한국과의 FTA 협상은 2008년 2차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2016년 4월 박근혜대통령 멕시코 공식방문시 페냐니에토 대통령과 올해 4/4분기 FTA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간 실무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올해 11월중 양국의 통상차관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2012년 6월 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을 체결하였다.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500만 명이며, 총 GDP는 2조 달러가 넘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블록이 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미 5개국(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의 단일 FTA를 체결, 201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테말라에서 4년 이내에 경차, 기계류, 5톤 이하의 버스 등의 관세 철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10년 이내 상가 제품들의 관세 철폐 등이다. 동 FTA 회원국은 과거 별도 FTA를 통해 모두 시장이 개방된 상태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회원국을 통합시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15년 10월 5일 멕시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은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 협정(TPP)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에 만들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2017년 1월 23일 미국이 동 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해 발효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이후 일본의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들이 2017년 5월 21일 베트남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전까지 TPP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고로 합의하였으며, 현재는 11개 TPP 참여국가들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PP)을 출범하여 정식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멕시코는 과거에는 보호무역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나, 1986년 9월 GATT 가입과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로 전환하여 수입관세 인하, 공정가격제도의 폐지, 수입허가품목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1991년 이후에는 수입 개방의 여파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1993년 7월 신대외무역법을 공포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쿼터,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도입한 바 있다.

관세 장벽

멕시코 세관관리국(Aduana Mexico)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부서인 조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SAT)이 관할하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조직은 관세기획과, 관세사무관리과, 연구/과학서비스과, 정보통계/분석과, 징수정책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조직은 전국에 지방세관 8개소, 일반세관 47개소, 국제공항세관 48개소, 기타 세관 24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멕시코는 1988년부터 8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다.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나 7자리와 8자리는 멕시코내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상품 분류는 22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FRACCION으로 세분된다. 정확한 HS Code를 위해서는 멕시코 관세 책자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멕시코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Advalorem, DTA(Derecho de Tramite Aduana),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와 같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Advalorem : 수입관세로 HS Code No.에 따라 관세가 0~35%까지 정해져 있음.
- DTA : 세관수수료로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이며 최소금액이 \$170페소(약 17달러)
- IVA : 부가가치세로 인보이스가격(CIF) + Advalorem(수입관세) + DTA(세관수수료) 를 합한 금액의 15%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3, 5, 10, 13, 15, 18, 20, 23, 35%의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1) 0% : 서적 등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마킬라도라(maquiladora, 수출입 가공)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 2)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 부품
- 3) 10~13%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부품
- 4) 15~20%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 5) 23~35% :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

관세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로 운영된다. 최혜국에 대한 단순 평균 관세율은 2007년 11.2%, 2008년 10.4%, 2009년 8.3%, 2010년 5.2%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1년 16.5%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의 경우에는 재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 임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이 적용되었으나 NAFTA 협정에 의해 2000년 12월부터 종료되고, 대신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이 0~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2008년 6월 20일 멕시코에서 부과하는 대중 반덤핑관세 중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대상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나머지 204개 민감 품목 대상 관세는 2011년 말까지 점차 인하하기로 한 관세 철폐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서 2007년 12월까지 대중 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었으나, 2007년 말 이후에도 멕시코 업계 요청에 따라 철폐를 유예해온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2007년 12월 이후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08년 10월 15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이고, 2011년 12월 11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안정기, 양초, 연필, 점화기 등 204개 품목이다.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중국의 對멕시코 수출품중 상위 10위를 점하는 품목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카테고리에는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폐된 2012년 이후 한국제품의 對멕시코 수출경쟁력이 다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세 인하는 비농산물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멕시코 정부는 2011년 11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화학 및 농수산물 관련 480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하였다. 이번 관세 인하방안은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165개 석유화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이 이에 해당된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수산물은 21.7%→14.2%로 인하된다.

➡ 2012.11.23일 관세 조정된 주요 제품

적용 관세	주요 제품 (HS Code)
0%	면도기 손잡이(3924.90), 광전지 포함 광선 과민 반도체 제품(8541.40.01), 태양광 전지(8541.40), 광전지 조립 모듈 및 패널(8541.40), 노리 김(1212.21), 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2916.14), 톨루엔 디이소 시아네이트(2929.10), 6-에톡시-1, 2-디하이드로-2, 2,4-트리메틸 퀴놀린(에톡시퀴)(2933.49), 폴리비닐 피롤리딘(3905.99), 석면 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 파이버 시멘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 기타 항목(6811.89), 면도기 및 면도날 기타(8212.89), 안전 면도날(면도날의 반제품으로서 대상인 것을 포함)(8912.20), 완구류(9503.00)
5%	호밀(1002.10), 파종용 보리(1003.10), 파종용 귀리(1004.10), 옥수수(1005.90), 쇠미(1006.40), 메밀 및 기타 곡물(1008), 동물 사료(2309.90), 에틸렌글리콜(에탄 디올)(2905.31), 금속 표면을 위한 조제품을 스트리핑시키는 것:납땜하거나 용접되는 땀접을 위한 용제와 분:금속과 타 제품으로 구성(3810.10), 고무 가황 촉진제(3812.10), 비중이 0.94 미만인 폴리에틸렌(3901.10), 비중이 0.94 이상인 폴리에틸렌(3901.2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3901.30), 폴리에틸렌, 염화되거나 클로로 설폰화 부하 또는 변형자, 또는 안료가 미 포함된 무수말레산 에틸렌 공중합체(3901.90)
6%	발연황산(2807.00), 산화아연(2817.00), 염화칼슘(2827.20), 나트륨황산(2833.11), 코드 2833.25.02의 항목을 제외한 황산동(2833),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2836.30), 탄산칼슘(2836.50), 무기 수산화합물(2852.90), 아크릴산과 그 염(2916.11), 디페닐메탄-4,4-디이소 시안산염(2929.10), 폴리에틸렌 왁스(3404.90), 디페닐메탄 디이소 시안산염과 폴리메틸렌 폴리페닐 아이소 시아네이트의 혼합물(3824.90), 석유, 역청 미네랄을 함유하지 않거나 70% 미만 함유한 바이 오디젤 및 혼합물(3826.00), 그을음 없는 폴리프로필렌(3902.10), 그을음 없는 프로 필렌 혼성중합체(3902.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3903.30), 스티렌과 디비닐벤젠의 클로로메틸레이티드 공중합체(3903.90), 비 가소성 염화비닐 중합체(3904.21), 비 가소성 염화비닐 수지(3904.22), 에톡실린, 시클로알리파틱 또는 노볼락 에폭시 수지(3907.30), 아디프산과 글리콜의 파생된 폴리에스테르 수 지(3907.99), 헥사메틸렌디아민과 도데칸디오익산 폴리머(3908.10), 전자공학용 실 리콘계 수지(3910.00), 동량이거나 45%를 초과한 아크릴로니트릴을 함유한 폴리 (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4002.59)

적용 관세	주요 제품 (HS Code)
10%	가정용 공구(8419.19), 합성유기 유연제(3202.10.01), 비누를 제외한 유기적 설폰화 생성물, 개선된 탄산염, 칼륨 또는 나트륨의 혼합물(클리너, 습윤제 또는 유화제) 또는 조제품 수산화물 또는 인산염 제품(3402.20), 염기성 접착제(3506.91), 소매용에 적합한 유압 제동액(3819.00), 스티렌 중합체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3915.20)
20%	제 56.02 또는 56.03호로 분류되는 직물제 의류(6210.10), 테니스·농구·체조 등 활동을 위해 고안된 발 등을 덮는 신발(6403.91), 테니스·농구·체조 등 활동을 위해 고안된 끈이 있는 신발(6403.99), 아기 기저귀 및 유사 제품(9619.00), 포도(0806.10), 메밀 및 조(1008.10), 파종용 메밀 및 조(1008.21), 밀(1001.11)

또한, 2016년 1월 6일 연방관보를 통해 2013~2018년 국가목표인 '번영의 멕시코(Mexico Prospero)'를 위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생산성장에 있어 대외무역거래 최적화를 통한 경쟁력 장려가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수출입일반관세법에 명시된 항목들 중 주로 화학제품, 섬유, 의류, 신발 등 일부항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삭제하였다.

➡ 2016.01.06일 관세 철폐된 제품의 HS Code

3402.13.03, 3901.10.02, 3920.62.02, 3921.90.09, 4418.72.02, 4418.72.99, 6401.92.02, 6401.92.03, 6401.92.04, 6401.92.05, 6401.92.06, 6401.92.07, 6401.92.08, 6401.92.09, 6401.92.10, 6401.99.03, 6401.99.04, 6401.99.05, 6401.99.06, 6401.99.07, 6401.99.08, 6402.19.04, 6402.19.05, 6402.19.06, 6402.19.07, 6402.19.08, 6402.19.09, 6402.20.02, 6402.20.03, 6402.91.03, 6402.91.04, 6402.91.05, 6402.99.07, 6402.99.08, 6402.99.09, 6402.99.10, 6402.99.11, 6402.99.12, 6402.99.13, 6402.99.14, 6402.99.15, 6402.99.16, 6402.99.17, 6402.99.18, 6403.19.03, 6403.19.04, 6403.40.02, 6403.40.03, 6403.40.04, 6403.51.03, 6403.51.04, 6403.59.03, 6403.59.04, 6403.59.05, 6403.59.06, 6403.59.07, 6403.91.05, 6403.91.06, 6403.91.07, 6403.91.08, 6403.91.09, 6403.91.10, 6403.91.11, 6403.99.07, 6403.99.08, 6403.99.09, 6403.99.10, 6403.99.11, 6403.99.12, 6404.11.04, 6404.11.05, 6404.11.06, 6404.11.07, 6404.11.08, 6404.11.09, 6404.11.10, 6404.11.11, 6404.11.12, 6404.11.13, 6404.11.14, 6404.11.15, 6404.19.04, 6404.19.05, 6404.19.06, 6404.19.07, 6404.19.08, 6404.19.09, 6404.19.10, 6404.19.11, 6404.19.12, 6405.20.03, 6405.20.04, 6405.20.05, 6907.90.01, 6907.90.02, 6908.90.02, 6908.90.03, 8417.80.04,

8417.80.05, 8479.82.05, 8501.64.03, 8502.39.04, 8514.10.04, 8514.20.05, 9015.80.07, 0507.90.01, 1211.90.05, 1302.19.12, 1302.39.03, 1506.00.02, 2915.32.01, 3001.90.01, 3001.90.02, 3001.90.03, 3001.90.04, 3001.90.06, 3001.90.99, 3002.10.14, 3002.90.01, 3002.90.02, 3002.90.03, 3002.90.99, 3301.90.05, 4301.80.03, 4302.19.01, 4302.20.01, 4302.30.01, 8419.19.02, 8419.19.03, 8419.89.15, 8421.29.03, 8421.39.01, 8421.39.04, 8474.20.01, 8474.20.02, 8474.20.03, 8474.20.05, 8474.20.06, 8474.20.99, 8479.89.03, 8479.89.19, 8502.31.99, 9015.80.02, 9015.80.06, 9015.80.99, 9026.20.04, 9503.00.07, 9503.00.08, 9503.00.09, 9503.00.13, 9503.00.26, 9504.90.01, 9504.90.02, 9504.90.04, 9506.59.99, 9506.70.01, 9506.99.99, 9705.00.06, 9706.00.01, 3901.10.01, 3920.62.01, 6402.99.03, 6402.99.04, 6402.99.05, 6403.59.02, 6403.91.01, 6403.99.03, 6403.99.04, 6403.99.05, 6404.19.01, 6404.19.02, 6404.19.03, 8479.82.02, 8479.82.04, 8501.64.01, 8514.10.03, 8514.20.03, 8419.89.03

▶ 2016.01.06일자로 삭제된 HS Code

4418.72.01, 6401.92.01, 6401.92.99, 6401.99.99, 6402.19.99, 6402.20.01, 6402.91.01, 6402.99.01, 6402.99.02, 6402.99.99, 6403.40.01, 6403.51.99, 6403.59.99, 6403.91.02, 6403.91.03, 6403.91.99, 6403.99.02, 6404.11.01, 6404.11.02, 6404.11.03, 6404.11.99, 6404.19.99, 6405.20.99, 6908.90.01

국경지역에 대해서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령’이 적용되는데, 이는 멕시코의 남쪽 및 북쪽 국경지역에서는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이 적용되는 주요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하다. 동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 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수해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 등을 들 수 있다.

적용지역으로는 바하 칼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 칼리포니아수르(Baja California Sur), 치아파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꼬아우일라(Coahuila), 누에보 레온(Nuevo Leon), 와하까(Oaxaca), 소노라(Sonora), 타바스코(Tabasco),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키타나로

(Quintana Roo) 주이며, 주별로 10~20km 범위의 국경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멕시코 연방 정부는 2014년 10월 31일 재정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세법과 관련하여 기업 내 관세 법적 대리인을 통한 관세 관련 절차가 수행할 수 있게 개편되었으며, 기존 관세사무소 외 관세청이 지정한 지역 내에서도 수입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참고로 멕시코 경제부 사이트(SIAVI)에서 HS CODE별로 FTA 체결국 및 미체결국의 관세 확인이 가능하다. 동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므로 DIA 사이트에서 비 FTA 국가에 대한 최근 관세를 재확인해볼 수 있다. DIA 사이트는 스페인어판은 유료이다. 영어판은 관세검색 내용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무료정보인 관세로 FTA 체결국 관세율, 반덤핑 관세 등 상세내역은 제공되지 않는다.

o 경제부 : <http://www.economia-snci.gob.mx:8080/siaviWeb/siaviMain.jsp>

o DIA : <http://www.diaenlinea.com.mx/>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사전 신고제

1997년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이후 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과 동구산 물품의 저가수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 8월부터 철강, 섬유, 신발, 비료 등 HS 8단위 74개 품목의 아시아 및 동구로부터 수입 시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시행하였으나, 2005년 11월 9일 폐지하였다.

(2) 최저수입가격 고시제

멕시코는 1993년 8월 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

를 예치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5월 멕시코 경제부는 기존 품목을 1,142개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수입규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품목이 없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수입허가(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1) 완성차 수입제한 철폐와 고관세 유지

멕시코는 199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완성차 업체 수출실적의 일정비율은 2009년 5월 기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무관세 수입률은 멕시코 내 연구센터 건립 등 인프라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가능하다.

1994년 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체결국산에 대해 20%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對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16년 기아자동차공장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공장을 가동하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10월부터 현대자동차와 크라이슬러 간 체결된 전략적 제휴에 따라 크라이슬러사를 통해 Attitude, i10가 수입 판매되었고, 2003년부터 GM을 통해 GM대우의 MATIZ, Creative 등이 멕시코에 수입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4년 7월부터 멕시코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및 체코,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자사 승용차를 멕시코에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는 2015년 멕시코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2) 중고차 수입 일부 허용

멕시코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1994년 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멕시코국경지대 및 일부주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며 2019년부터 연수제한 없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원산지증명서제도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자 1993년 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III)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년 3월 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동 조치로 중국산 보복관세 대상 품목과 동일한 상품의 경우도 일반상품과 같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반덤핑·상계관세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년 7월 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의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 무역구제본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종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하다.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부과 중인 반덤핑 건수는 17개국 44품목 72건이다. 반덤핑관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 31건, 미국 8건, 인도 6건, 우크라이나 5건, 러시아 4건, 한국 3건, 스페인 3건, 그 외 기타국가들이 12건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년 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년 3월 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 바 있다.

2001년 6월 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덤핑 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2007년 5월 5일 종료되었다.

1993년 8월 19일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일몰 심사를 통해 매 5년마다 동 조치를 연장해오고 있다. 2013년 8월 20일 추가 반덤핑 관세 부가가 결정되어 2018년까지 유지된다.

한편, 2012년 10월 1일 UPCI는 멕시코 철강회사인 Terniun사의 신청(7월 6일)을 받아 들여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UPCI는 양 당사자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2013년 6월 3일 한국산 포스코 냉연강판에 60.4%, 현대 하이스코 제품에 6.45%라는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양측간 타협을 통해 수입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보았다.

포스코멕시코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은 냉연강판 수입쿼터 적용을 받아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UPCI에 수입쿼터 증량 요청을 지속적으로 한 바, 2016년 5월 25일 수입쿼터 재심을 이끌어내고 그 후

2017년 멕시코 정부는 몬테레이 기아차 공장 가동으로 인한 수입물량 증가를 이유로 2017년, 2018년 수입물량을 확대했다.

UPCI는 한국산 고탄소 페로망간 수입제품에 대해 35.6%의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조사 예비판결(2016년 7월) 발표하였으나 아국의 해당기업은 현재의 수출물량이 미미하고 향후 수출계획이 없음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2016년 12월 멕시코 정부는 현대하이스코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예비판정 조치를 내렸으며 2017년 6월 13일 2017년과 2018년 수입물량을 확대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증가한 수입물량은 2017년 4만 톤, 2018년 6만 톤이다.

서비스 교역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멕시코 내에서 활동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나,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의 기업이라는 조건이 부과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ficial Mexicana)는 1992년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표준규격제도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써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강제검사제도이다.

멕시코 정부는 1994년 3월부터 대상품목을 81개에서 2007년 12월 기준으로 총 6,600여개 품목에 대해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NOM규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2009년 10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 국가인증기관인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와도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시험성적서만으로 멕시코 강제인증인 NOM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된바,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멕시코시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제품에 따라 총 23개이며, 금번 협약에 서명한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평균 700달러의 수입료가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모든 서류 및 샘플이 준비된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하나,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넌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 경우에는 하자 보완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 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만약 제출서류상 하자가 있을 시 미비점을 적시, 반송된다.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비용 평균 250달러, 시험소 검사비용 평균 325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ANCE는 8개국(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이양을 허용치 않고 있다. 종전에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한 후 수입업체에 NOM의 권리이양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게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을 패턴별로 획득하도록 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상이 10개 패턴 제품을 수입할 경우 1개 패턴 검사비용이 3,000달러이므로 총 30,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1994년 10월에는 타이어 NOM 규정을 또 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허가받도록 하였다.

비주류 음료, 과자류 포장지 라벨링 규정

멕시코 보건부의 해당 규정으로 2014년 4월 16일부터 관련 제조업체는 식품 포장지에 포화지방(Grasa Saturada), 기타지방(Otras Grasas), 총 당

함유량(Azucares Totales), 나트륨(Sodio), 열량(Energia)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링에는 이 항목의 함유량, 일일 섭취권장량 대비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함유량에 따라 kcal, cal, mg, g 등 단위를 구별해 기재해야 한다. 해당되는 제품은 초콜릿, 음료수(주류 제외), 과자 및 이와 유사한 식제품 등이며 식품 정보는 한 봉지, 혹은 1회 분량을 기준으로 구분해 기재할 수 있다.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 정보를 기재할 경우 한 봉지에 몇 회 분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기준 그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단 식품의 총 칼로리가 5kcal 미만일 경우 0칼로리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신발류 라벨링 기준 강화

멕시코 정부는 신발의 불공정거래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17일 신발류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1998년 10월 25일부터 발효하였다. 주요내용은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종전의 스티커식을 고정부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Prefeco)이 공동으로 신발업체가 라벨링을 철저히 부착토록 감시하며,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신발의 유입과 불공정 거래, 언더밸류, 덤핑수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제도 시행

멕시코 에너지부는 2011년 9월 11일부터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단위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할 경우 대기전력을 표기하는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186개 에너지 사용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에너지지속가능국가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 매장에서 관련 제품 판매가 제한된다.

환경 관련 규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1월 종전의 「1982년 연방환경보호법」을 폐기하고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마킬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년 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국제조약(FTA 등) 하에서 국제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응찰자가 없을 경우 ④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경우, ⑤입찰 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단지 몇 개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의한 검토과정에서 국내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심사 시, 내수시장 최저가와 제출가를 비교, 동일 조건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국내산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및 미국 측의 압력에 따라 상표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규는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품 사물품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특히, 외국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의 불법복제물과 유명상표의 가짜 의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및 구주기업으로부터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는 1994년 스위스에서 여러 국가에 특허를 동시에 등록할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지만,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멕시코에서 개별적으로 특허권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주장이 불가능하다.

투자 장벽

투자제한 분야

멕시코는 과거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제한이 심했으나 1984년 이후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3년 12월 도입된 「외국인투자법(LIE)」은 외국인투자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1996년 개정). 이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하에서는 금지분야(석유채굴 및 정유, 국가안보관련 산업 등)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100% 투자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자지분을 10%, 25%, 또는 49%(특히, 장거리 통신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 중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며, 10개는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그밖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 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25% 지분의 사업: 국내 항공운송, 항공, 택시, 특수 항공 운송
- 최대 49% 지분의 사업: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 거래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기금 경영, 퇴직 연금 운용 회사

이와 관련, 페냐 니에토 정권은 방송·통신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일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한다.

방송·통신 분야 개혁

2013년 3월 멕시코 정부는 아메리카 모빌, 텔레비사 등 주요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경쟁력위원회와 연방방송통신청 등 두 개의 감독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방송통신청은 통신과 TV 부문의 감독을 맡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기업을 독점으로 규정하여 제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재 대상 기업은 현재 방영하는 TV 네트워크를 케이블 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해야 하고, 강제적인 자산 매각이 포함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유선통신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사라지며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최대 49%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카를로스 슬림의 아메리카 모빌은 현재 멕시코 통신 시장의 70%를 점령하고 있으며, 텔레비사는 TV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 이들 두 대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의 세부 법안이 2014년 7월 최종 통과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안은 2013년 3월 통과되었지만, 세부 법안과 관련하여 멕시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다가 2014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여 페냐니에토 대통령의 승인까지 확보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세부 법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독점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이로 인해 동 분야에서 시장지배자로 규정된 아메리카 모빌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세부 법안 통과로 인해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연방방송통신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방송통신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 증대가 예상된다.

2004년 8월 통신교통부는 2021년까지 디지털 지상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0년 9월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Felipe de Jesus Calderon Hinojosa가 성명을 발표해 2015년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2015년 12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가 개막되었다.

에너지 분야 개혁

2013년 12월 민간 사업자에게 멕시코 에너지 사업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 8개월 만에 이와 관련된 부속 법안이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하여, 2014년 8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승인을 받

있다. 에너지 개혁 부속법안에는 탄소법, 멕시코 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법, 석유수입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속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탄소법에는 멕시코 석유공사(PEMEX) 및 자회사가 석유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 공공입찰을 통해 민간 및 외국 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관련 업체들도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탄소법에는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송, 저장, 수출, 수입 부문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며, 2016년부터는 가스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간 자본이 석유자원 탐사에서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PEMEX와 전력청(CFE)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PEMEX의 경우 이 계약에 의해 원유 및 가스 탐사, 생산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석유 자원의 탐사 및 생산, 가스 처리, 정유, 저장, 공급 및 전력 생산 및 판매를 개방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국가는 석유 판매로 얻은 일정 수익 또는 석유 생산을 통해 취득한 자원의 일정 부분을 민간 투자 기업에 지급할 의무를 가짐
- 석유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자금을 기금으로 마련해 멕시코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이를 통해 최소 연간 GDP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여 연금 지급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임
- 천연가스 국가관리센터 및 국가 환경보호 및 산업안전기구를 신설하고 에너지 규제위원회 및 국가 탄소자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
- 전력 부문의 국가 전력시스템 관리는 국가 에너지관리센터를 통해 정부가 계속 운영하도록 하되, 이 기관의 감독 하에 계약을 통해 민간이 전력을 생산, 판매할 수 있음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 개혁법안은 PEMEX의 경쟁력 약화 및 석유 생산성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멕시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 민간 연구소는 동 개혁법안의 시행으로 멕시코 경제가 내년 4%까지 성장하고 2018년까지는 5~6%대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으며 2018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4,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및 캐나다 등 외국 기업들은 동 개혁법안이 기대 이상으로 진전되었으며, 석유 회사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에너지 개혁으로 민간 혹은 멕시코 정부가 민간과 제휴하여 개발하는 광구 입찰인 라운드 원(Ronda uno)의 1, 2차 입찰이 완료됐고 2018년 상반기 3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출의무비율 및 현지부품사용비율상의 제한

내수판매의 수출의무비율 연계는 보세가공무역방식으로 투자하는 마길라도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수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길라도라 기업의 내수판매 허용비율은 1998년 75%, 1999년 80%, 2000년 85%, 2001년 100%였으나, 2001년부터 철폐된 바 있다.

현지부품사용비율 제한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 원산지규정을 충족치 못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현지 부품화 비율인 6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NAFTA산 원산지규정 강화로 현지투자진출 가전기업들이 원부자재 수입 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서 외국정부 또는 국영기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융부분에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영은행의 현지 투자진출은 불가능하다.

모든 금융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경우 2016년 기준 최소자본금 9,000만 달러,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최소자본금 3,600만 달러에서 5,4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상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에 있어,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의 은행은 외국인 지분 100% 참여가 가능하며(대부분의 FTA 체결 국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소속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내 금융기관은 상업은행(모든 기능 및 일부기능 포함) 42개, 특수은행 7개, 소매금융 8개(2012년부터 허가)가 있다.

멕시코는 외환거래 자유국으로서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재투자, 과실송금 등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출대금 회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다.

멕시코 현지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준이자율은 3.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6월 멕시코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추진한 금융 개혁조치(증권시장법 제244조 수정 등)에 따라 MILA(The Integrated Latin American Market)에 가입했다. MILA는 자본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는 공동주식시장으로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나라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MILA 가입으로 인해 기존 136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약 700 품목에 대한 투자로 확대 가능하게 됐다.

세제상의 제한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보세가공 무역인 마킬라도라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국기업도 보세가공수출을 할 경우 마킬라도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對멕시코 진출 유망품목

품목명	선정사유
보안장비	불안정한 멕시코 내 치안과 도난문제로 인해 디지털 도어락과 같은 보안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016년 멕시코 통계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0%에 달하는 멕시코 시민이 치안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음.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설치가 어렵지 않고, 비용 대비 방법효과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최근 기업체, 사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부품	2017년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부품의 동반 성장이 전망됨. 실제로 2015년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340만 대를 기록해 동기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멕시코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2017년 자동차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BMW, 다임러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멕시코 신규 투자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설비 증대로 인해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서 ABS 수지와 같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부품의 원자재 또한 산업과 더불어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멕시코 정부는 재생 에너지법을 제정해 2024년까지 비화석연료로 35%까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진흥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시행하면서 풍력발전기의 수입이 급증함. 우리나라 기업인 스페코가 진출, 풍력발전타워 생산라인을 준공해 가동한 사례도 있음. 대형풍력 발전기 이외에도 소형풍력전기 수요도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태양광발전의 경우 정부의 격오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 프로그램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세제혜택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도 자가발전을 추진 중인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관련 정책이나 법제도가 비교적 잘 구비돼 있는 편이지만, 저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유인 요소는 줄어들었고,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생산 인프라는 열악한 편이므로 신중하게 진출을 꾀해야 함.

품목명	선정사유
조명기구	멕시코 전력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낮은 소비전력과 고효율, 전기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LED 조명과 에너지 절약형 전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LED 조명의 경우 그동안 전광판 등에 이용이 한정됐으나, 공장, 백화점, 공공 시설 등 조명을 장기간 사용하는 곳에서도 점차 설치를 늘리고 있음. 현재 멕시코 에너지절약기금(FIDE)에서는 LED 사용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몇 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에너지부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에너지절약형전구교체 프로그램을 CDM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 전구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환경단체 및 민간부문에서의 백열전구 유통 제한 및 판매 금지의 주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전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능성 섬유	멕시코의 기존 섬유시장은 내수생산이 튼튼하고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기능성 섬유들의 경우 부가가치 제품들의 수요 증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 특히 아직까지는 중국산 제품들의 품질이 국산제품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있음.
합성원단	대표적으로 폴리에틸렌 타포린 제품은 멕시코 내에서 천막, 화물차량의 덮개, 방수 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멕시코 내 타포린 생산 업체가 전무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요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에는 기회가 충분한 시장임.
의료기기	멕시코 내 비만율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당뇨병 환자는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 세계 6위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에 따라 당뇨와 같은 질환과 관련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가정에서 쉽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혈당측정기와 같은 의료기기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소비수준의 증가와 함께 임플란트, 미용, 교정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치과용 X-Ray와 같은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을 디지털 장비로 교환하는 추세에 있으며, 낙후지역 의료기기 보급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이 유리할 전망임.
콘택트렌즈	전문 안경점의 점포 수 증가 및 인터넷 판매 활성화로 고객과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시력감퇴 문제가 초래됨에 따라, 시력 교정용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관리가 간편한 원데이 렌즈가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장기 착용렌즈보다 소비액이 더 크므로 렌즈시장을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품목명	선정사유
화장품	최근 멕시코 내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 시장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한국 K-pop이 일부 청소년 계층에서 유행함에 따라 최근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도도 상승하고 있으나, 동일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실질적인 수요는 높지 않은 편. 따라서 BB/CC 크림과 같이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는 다기능제품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여성들이 화장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한국 업체들이 동 제품에 대해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판단됨

* 자료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미국에 관한 WTO의 2015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10,514개 세 번)의 평균 실행 관세율은 4.8%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36.8%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 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이 7%에 달하며, 특히,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게 된다.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 측이 품목 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스웨터(32%), 양말(13.5%), 화섬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국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수입부과금 등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s) 중 하나인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품취급수수료는 종합예산 및 조정법률(Omnibus Budget & Reconciliation Act of 1986: Public Law 99-509)에 근거하여 1986.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속령의 제품(Products of Insular Possessions), 최빈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rovided For In Title V of The Trade Act, As Amended(19 VSC 2462), 카리브연안 특혜제도(CBI) 대상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CBERA))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00달러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의 0.21%에 대한 수수료를, 2,0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자동신고 시 2달러, 수동신고 시 개인은 6달러, 세관은 9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 물품취급수수료의 경우 FTA 체결국 등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면제되어 있으나, 수입액에 대한 증가세(ad-valorem) 형태로 부과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세관수속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유지비는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 (Public Law 99-662)에 근거하여 1987년 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증가세로 부과되었으며 1991년 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항만유지비에 대해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이 실제 항만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항만유지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품에 대하여 항만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의 결과로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가 철폐되었으며, 따라서 향후 연간 8,000만달러로 추정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국은 유류,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오존층 파괴 물질, 스포츠용 낚시 용구, 활, 유류과다 소비 자동차 제품,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백신, 주류, 담배, 총기류 등에 대해서 연방차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맥주도 연방 소비세 부과대상인데, 국내 소규모 맥주 생산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초 6만 배럴에 대해서는 7달러를 부과하나, 수입산 맥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특혜 없이 대규모 국내 생산자와 같이 무조건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내의 소규모 와인 생산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통 관

(1) 일반적 통관 절차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통관/국경보호의 상업적 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COAC: Ad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민간부문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미국으로의 수입을 위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속한다. 수입제품의 반출은 은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관련 형식적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5근무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미국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는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관세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관별로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도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안보통관절차 시행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이전에 선박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전자적 전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국토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그리고 무역법(Trade Act of 2002) 및 해당 집행규정 등에 근거하여 통관/국경보호국이 출발지국에서 화물을 사전 스캐닝하는 시범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Program, 출발지 국가에서 화물의 외형 등을 검사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ogram, 제조업 등의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Program을 비롯하여 Fast(Free and Secure Trade) Program과 CEAR(Commercial Enforcement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등 다양한 안보통관 절차를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검사 즉 Manifest Hold Exam/VACIS Exam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해상화물에 대한 위협예방을 위해 수입자는 제

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가지, 선사는 화물탑재계획 등 2가지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신고제도(Security Filing)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제도의 이행으로 약 8억9천만달러에서 7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CSI 프로그램의 일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말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였다.

(3) 견본(Sample)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통관 시 천공,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4) 한·미 FTA

한·미 FTA는 양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다(도착 후 최대한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규제

(1) 수입금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거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

중도덕을 저해하는 물품이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하여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허위표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식물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지되며,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및 「계란제품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에 따라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 통제와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 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와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CITES)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동 법의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해양포유류의 혼획의 위험성이 높은 어업은 수출어업(Export Fishery)로 분류되어 해당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수입이 규제될 예정이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어획 및 허위표시 수산물이 미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는 해삼, 참치, 전복, 새우 등 13개 주요어종에 대해서는 어획단계에서부터 미국내 수입까지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수산물 수입감시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수량제한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취해 왔던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형태인 섬유류 수입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2005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 하였던 바 있다.

(3)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방출 의료기기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관련법규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하든지, 파기시키든지,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 발급제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통관 관련 규제

한국산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는 첫째로, 실제적 과제인 판매개척 활동을 적극적, 효과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절차적 과제로서 관계 연방기관들의 수입통관 절차를 파악하여 수입 시 받게 될 불이익의 사전예방과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 통관, 관련 연방기관이 집행하는 법규와 임무, 활동 그리고 수입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역할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본부 조직과 국내 기능은 여전히 농무부 산하에 편성되어 있지만 국경 농산물 검역 기능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로 통합 이전되었다. 외국 농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병충해, 잡초 그리고 동물 질병으로부터 미국의 농업과 천연자원, 특히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의 건강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철저한 수입검사 기능을 수행하여 식물 병충해나 동물 질병 등이 발견되면 특정의 검역 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축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생물화약품 및 독소제품의 점유, 사용 그리고 이전을 통제, 검사하고 있다.

② 농무부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처/식물방역부

관련 근거 법규는 Plant Protection Act Replacing Federal Pest Act, Plant Quarantine Act, Federal Noxious Weed Act(Title IV of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of 2002, PPQ Regulation,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Regulation 등으로서 외국인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식물 병충해와 잡초(예를 들면 Mediterranean Fruit Fly, Oriental Fruit Fly, Citrus Canker, Asian Longhorned Beetle, Noxious Weed 등)를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농업과 식물자원의 보호, 보존을 주 임무로 한다. 국가별로 각 종류의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dmissible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의 수입 시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대체로 수입허가(PPQ Form 587)를 통한 수입프로그램과 CBP의 농업검사관을 통한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 구제조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한국산 농산물 식품 중 동식물위생검사처가 수입허용 조치한 품목만 수입될 수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려는 품목이 허용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품목일지라도 병충해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수출해야 한다. 각 국가별·품목별 과채류 수입요건은 동식물위생검사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수입요건 DB인 FAVIR(Fruit and Vegetables Import Requir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위생검사처/수의업무부

관련 근거는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Veterinary Service Regulation, 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ew 등으로서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각 종류의 동물질병(예: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구제역(Foot & Mouth Disease), Rinderpest, Exotic Newcastle Disease, Classical Swine Fever 등)) 등을 차단·통제하여 미국의 동물 자원에 대한 보호·보존 및 품질개선을 주임무로 한다.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동물 질병이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와 함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

④ 농무부 산하의 식품안전검사처(FSIS :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관련 근거 법규는 Federal Meat Inspection Act,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Egg Products Inspection Act, FSIS Regulation, HACCP Program 등으로서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금육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과정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각 단계마다 식품안전 위해를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하여 불량식품과 불법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키고 이들 불량식품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 E.Coli 0157:H7, Salmonella, Campylobacter & Listeria 등)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한다.

미 농무부는 현재 삼계탕을 제외한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식품,⁷⁷⁾ 즉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류 및 가금류의 원재료는 미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국은 최근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및 가금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2009년 6월 22일부터 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77) 최종제품의 함량 중 가공육류(cooked meat)는 2%, 신선육류(raw meat)는 3%, 지방, 우지, 육류 추출물(extract)은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검토하였으나, 2009년 6월 22일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계란성분을 소량으로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카레 식품과 고기만두 식품 등이 식품안전검사처에 의하여 압수,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업자별·제품별로 매 1년 단위로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라벨링 요건을 까다롭게 검사하고 있는데, 일례로 2014년 5월 수입이 허용된 한국산 삼계탕 제품의 첫 통관시 사소한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통관이 2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업체에서는 검역증명서 및 제품표시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⑤ 보건부 산하의 식품의약청

관련 근거법규는 Food, Drug & Cosmetic Act, Bioterrorism Act, 식품의약청(FDA) Regulation, Bioterrorism Regulation 등으로서 식품공급, 의약품 및 동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그리고 방사선 방출 의료기기 등의 안전과 효능을 보장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품과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국민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식품에 국한하여 요약하면 물리적 오염, 화학적 오염, 그리고 생물학적 오염(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ntamination) 등으로 인하여 식품의 안전을 해치는 불량

식품과 불법 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켜 국민건강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FDA는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설 등록과 제조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를 획득·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재수출한 사례가 있다.

한편,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리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 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Physical, Chemical & Biological Contamination)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최근에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이다. 즉, HACCP Program중 수입자 검증절차(Importer Verification Procedure)를 실시하지 않는 수입업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칙과 수산물 식품의 폐기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1) 제주산 감귤

2010년 10월 한국산 온주밀감의 미국 본토 수출이 허용된 이래 한국산 한라봉·천혜향도 온주밀감과 동일한 검역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규정 개정안이 2014년 7월 29일 입안 예고되었다. 농무부는 2014년 9월 29일까지 60일간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5년 1월 30일 한국산 한라봉·천혜향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 규정 개정 내용을 발표, 시행하였다.

한편, 우리 식약처는 한국산 감귤의 흑점병과 녹응애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인 만코제브 농약의 미국내 기준 설정을 요청하였고, 미 환경보호청(EPA)와의 협의를 거쳐 2013년 7월, 미국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감귤의 대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농산물 병해충 위험 평가(PRA)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년 12월 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6년 수출요건 타결 이후 매년 10~15톤 수출하였으나 미국이 총채벌레 관리 방충망 요건을 강화(0.6mm)하여 2010년 이후 수출이 중단된 상태로 방충망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포도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년 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 만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년 3월 20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4년 4월 한국산 당근 수출허용 요구에 따라 미국은 PRA를 진행하고 있다.

(3) 삼계탕 수입허용 절차 완료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는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 관련제품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방규정 개정규정을 2014년 3월 26일 최종 공표하고 2014년 5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

출을 위해서는 수출작업장 등록, 표시사항 합의 및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등의 잔여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그 후 한국정부는 수출작업장 미국정부 등록(6월 18일), 수출증명서 합의(6월 23일) 및 삼계탕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합의(7월 24일)를 완료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미 삼계탕 수출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이로써 그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미측의 현지점검 등 동등성 평가 절차에 이어 미국내 입법절차가 완료되었다. 미국은 그간 호주(타조류), 캐나다, 칠레, 프랑스, 영국,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타조류), 중국(미국 등에서 도축한 가금육으로 생산한 가공품만 허용) 등 10개국에서만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한국이 추가됨으로써 미국의 가금육 수입허용 국가는 11개국이 되었다. 미 식품안전검사처는 그간 한국의 가금육 위생관리에 관한 법규와 검사시스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한국의 관리제도가 가금육제품검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에 의한 관리제도와 동등(equivalent)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은 한국정부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통보되어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고, 수출 가능 품목은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화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검사처가 한국을 대미 수출 적격국가 목록에 등재를 하더라도 수출 제품은 농무부 동식물위생 검사청(APHIS) 등 다른 기관의 소관법령(전염병 방역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및 뉴캐슬병 발생국인 한국에서는 질병 제한조건으로 인해 신선가금육 대미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측은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동등성 유지 여부에 대해 최초 3년간은 매년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후에는 현지점검 주기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4)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

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된다. 즉,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에 체결된 동등성 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 항생제의 사용은 상호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출할 수 없고, 항생제 처방을 받은 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표시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호접란 및 심비디움 수입 허용

미국 정부는 2017년 9월 14일 한국산 재배매체에 심겨진 호접란 및 심비디움 수입을 허용하였다. 이전에는 뿌리를 제거한 절화(折花)와 재배매체가 없는 상태의 어린 묘만 수입을 허용하였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발효되며, 국내의 고시 제정, 수출농장 승인 및 현지 실사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2018년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에 따른 식품수입규제 강화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

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도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역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6)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미국 정부는 2007년 11월부터 국내 생산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식품안전(Food Safety)과 식품안보(Food Defense-인위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인 오염 방지)의 개념을 망라하는 식품보호계획(Food Prote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식품의 안전 관리방식을 reactive에서 proac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2007년 7월 18일,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 안전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 작업반장: 보건부장관)이 작성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의 일부로서 마련된 것이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행태 변화는 물론 인구변화(demographic change)까지 반영한 것이며 특히,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회수 문제 등 아시아지역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둘째, 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셋째, 위해 요소 또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다. 또한,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 계획은 시행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비관 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식품안전현대화법 입법

2007~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0년 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 고위해성 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관리권 (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 고위해성 제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 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 현행 우수제조기준(cGMPs) 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검사 비용(new reinspection fee) 부과
- 기업의 자발적 회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회수 실시권 부여 등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 시설의 매년 등록을 의무화 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는 연방 규제 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 오염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 공급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 내 식품을 원인으로 야기되는 질병은 의외로 심각하다. 매년 미국인 6명 중 1명 꼴로 총 4천8백만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병을 앓고 수십 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수천명이 사망한다. 해당 법안의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우선 예방적 관리에 있다.

동 법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법안을 통해 FDA는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한 관리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식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며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수백만 가지에 달하는 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전체 식품 공급량의 약 15%가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60%, 수산 식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로 하여금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외국의 업체나 국가가 FDA의 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식품의 반입을 거부하는 권한을 FDA가 위임받게 된다.

수입업체가 식품 안전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을 경우 선적된 수입 제품이 보다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FDA가 수립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식품 안전 조치를 취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식품안전현대화법 일환, 수입식품 안전기준 강화 신설

FDA는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 또는 수출자와 연대해 입증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입식품안전검증 제도 신규 규정을 2013년 7월에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가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세관당국의 위생검역과는 별도로 미국 외 식품생산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수입된 식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업체에게 보다 신중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가 제 3자 감사기관의 승인(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실시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FDA는 제3자의 감사 및 인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해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지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FDA는 동물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료제조시설에서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HARPC(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 적용을 강화하는 사료관리규정 개정안을 2013년 10월 29일 입안예고 하였다. 사료제조시설에서는 사료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구체화하며, 모니터링 절차와 결과의 기록, 문제 발생시의 조치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을 문서화한 계획서(written plan)를 가지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2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규정(final rule)이 공포된 뒤 60일 후에 발효되며, 소규모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발효 후 1년, 2년, 3년 등)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수입제도 변경 사항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Prior Notice of imported food)는 미국 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에 의해 제정(2002년 6월 12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개정(2013년 5월 30일)되었다.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은 FDA가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 내에 도착하기 이전 사전 신고된 정보를 직접 제출, 분석 및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의 유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의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다른 국가에서 식품 안전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면 FDA에 사전에 수입이 거절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오염된 전례가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011년 5월 5일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사전신고제 개정이 잠정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으로 발표, 2011년 7월 3일에 발효되었다. 식품안전현대화법 304조는 사전신고 시,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또는 사료 관련 타 국가에서 통관을 거부한 이력이 있을 경우 타 국가 이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FDA에게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잠재적 위해 관리를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 FDA는 2013년 5월 30일 잠정최종규칙을 채택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발효하였다.

(8) BSE 관련 소 및 소 관련제품 수입규정 개정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검사청(APHIS)은 2012년 3월 16일 입안예고한 바 있는 BSE와 관련한 수입규정을 현대화한 최종 규정을 2013년 12월 4일자로 발표하고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APHIS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수용된 과학적 문헌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례로, BSE 위험성이 거의 없는(negligible risk) 뼈를 제거한 쇠고기(boneless beef)도 BSE 발생사례가 있었던 국가로부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 발효시 boneless beef는 BSE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수입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APHIS는 다른 나라의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할 때 OIE가 사용하는 기준과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다만 어떤 국가가 아직 OIE에 의해 위험등급이 결정되지 않아 OIE의 평가기준에 따라 APHIS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해 줄 것을 원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APHIS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 of BSE)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위험무시국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

(9)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

FDA는 2012년 5월 18일 식품안전을 이유로 우리나라산 냉장·냉동 수산 패류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FDA가 2013년 1월 우리나라 패류위생프로그램(KSSP)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평가 결과 KSSP가 미국 패류위생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NSSP)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고, 2013년 2월 8일자로 미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 목록(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ippers List)(ICSSL)에 KSSP 인증업체(certified KSSP shellfish dealers)를 다시 등록함으로써 한국산 패류의 대미 수출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산 냉동·냉장 이매패류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선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의 갱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FDA간에 체결한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2003년 10월 체결)는 2008년 10월 만료 이후 위생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7년 동안 갱신이 지연되어 왔다. 동 양해각서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87년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이후 5년마다 총 3차례(1993년, 1998년, 2003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왔고, FDA는 2015년 3월 4일~3월 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동 양해각서는 2015년 6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금번 발효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양수산부는 KSSP의 미 NSSP 부합 보증,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관리, 지정해역 이외 해역에서의 수출 패류 수확금지, 위생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관리 등 KSSP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게 되며, FDA는 해양수산부의 조사평가, 인가 등에 대한 인정, NSSP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미 양국 공조를 통해 샘플링 방법·절차, 분석 방법, 생산·수확 해역에 대한 점검 절차 등 기술적 정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의약품 : 의료보험개혁 관련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된 소위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010 : ACA)로 미국 의료보장은 1965년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약 3.2조 달러(미국 GDP의 17.5%)의 국민의료비지출(NHE)로 미국경제의 1/6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산업 전반이 크게 성장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 무보험자수가 2010년 49백만 명에서 2016년까지 27백만 명으로 약 22백만 명이 감소하여, 무보험자 비율이 16%에서 8.9%로 감소하였다.미 연방재정적자도 2012년에서 2021년간 총 2,1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오바마케어는 미국민의 의료보장 확충을 위해 크게 ①가입자, ②보험자, ③인프라를 대상으로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가입자 대상 내용으로 모든 미국 국민과 거주권자는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는 ‘개인의무가입(individual mandate)’ 조항을 두고,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고용주의무가입(employer mandate)’을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의무가입). 이러한 조치는 십시일반 돈을 모아(pooling) 위험발생시 그 손해를 보장(risk hedge)하는 보험의 효율성을 극대화(저렴한 보험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료 지원) 가입자들에게는 이러한 의무와 벌칙(채찍)외에 실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당근)도 제시하고 있는데, 연방빈곤선 100~400%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보험료지원(premium subsidies)과 연방빈곤선 100~250%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분담지원(cost-sharing subsidies)을 두고 있다. 보험료지원은 대상자가 연방보험거래소(the Marketplace)에서 보험가입시 조세환급(tax credit)의 형태로 지원하는데 거래소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개인의 약 78%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 기존 연방빈곤선 100% 이하에게 제공되던 의료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는 오바마케어 하에서 각 주의 선택에 따라 연방빈곤선 138%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소요비용의 100%를 연방정부가 지원한다.(2017년부터 95%, 2020년 이후 90%) 2017년 현재 32개 주(DC 포함)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였다.

둘째, 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로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에는 외래, 입원, 응급 등 10가지 분야를 반드시 그 보장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필수의료보장 Essential Health Benefits). 이 밖에도 보험료를 결정할 때에는 나이, 지역, 가족구성, 흡연여부 등 4가지 변수만을 고려토록 하고 있고(보험료 결정요인 제한), 천식, 당뇨 등 기왕증이나 성별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pre-existing condition), 생애 또는 연간 급여한도(cap)도 설정하지 못하며, 자녀는 26세까지 부모보험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하였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 보험료 1달러 당 약 40센트를 마케팅 등 비용으로 지불하던 관행에도 규제를 가하여 보험료 1달러 당 80센트를 보험급여와 건강증진 등 가입자를 위하여 사용토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잔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Medical Loss Ratio, 80/20 rule)

셋째, 인프라 대상 내용으로 법은 연방정부 온라인 보험거래소를 만들고, 보험상품을 급여수준과 보험료에 따라 4가지 종류로 표준화하여 소비자가 비교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매년 11월부터 익년 1월까지 공개등록기간(open enrollment)를 운영하여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토록 하고 있다. 한편, 매년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그 질에 따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지급액에 차등을 두도록 하였고(의료의 질에 따른 지불제도), 의원과 병원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환자의 전원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토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책임돌봄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의료비 지불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자간 서비스협력을 통해 상승하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기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미국의 의료보장 개혁은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의료비 부담의 완화 및 의료의 질 제고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제약산업은 10년(2010년 ~ 2019년)간 생산자 부담금(fees) 및 의약품 할인 등을 통해 약 850억달러의 재정 부담 예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 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수요의 증가로 처방의약품의 매출 증가, 생물학약품의 특허보호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약업계의 10년간 수익 증가는 부담규모를 훨씬 넘을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는 의료기기 및 병원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메디케이드가 확대된 주의 병원들은 지불되지 않은 병원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밖에도 2014년 이전 월평균 일자리 창출 수가 18.1만에서 2014년 이후 20.9만으로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오바마케어(페지·대체하려는 상하원 공화당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노인과 저소득층 의료보장 약화할 것이라는 공화당 중도파의 우려와 의료보장 개혁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지 못하고 오바마케어의 잔재가 그대로 남는다는 공화당 강경파의 불만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2017년 10월 현재 법안이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생물의약품의 가격경쟁 및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은 ①오리지널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해서는 혁신 및 개발동기를 부여, ②생물의약품의 제네릭에 해당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또는 follow-on biologics)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산지규정

(1) 미국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 수입쿼터,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 등의 집행을 위한 주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할 경우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년 7월 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 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EU는 동 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1999년 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나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년 5월 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 원산지규정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2000.5.18)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및 프린팅하고 2개 이상의 사후 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년 10월 개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거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2) 한·미 FTA

한·미 양국은 한·미 FTA에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약 5,000여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양국간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의 하나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덤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여지가 커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급(Retrospective)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바, 미국으로의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출물량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심 예비판정, 원심 최종판정, 연례 재심 등을 거쳐 2~3년 후에야 정확한 부과액을 알 수 있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이슈는 제로잉(Zeroing)인데,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율을 계산할 때에 부(-)의 마진율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로잉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되고, 對美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WTO는 그간 수차례 원심과 재심을 막론하고 제로잉의 사용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원심의 경우 평균거래가격 대 평균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Average)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타깃덤핑 등의 경우에 사용하는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사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재심의 경우에는 그간 평균거래가격 대 개별거래가격 비교방식(Average to Transaction)을 사용하고 제로잉을 적용해 왔다. 다만, 2012년 2월 재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A to A를 적용하고, 이 경우에는 제로잉을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향후 발생하는 재심에만 적용되며, A to A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로잉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반덤핑 단독부과 11건, 반덤핑 상계관세 동시부과 3건이며 부문별로는 철강이 10개 품목, 섬유 1개 품목, 화학 1개 품목, 전자 2개 품목 등이다.

최근 미국 철강업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를 확대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월 이후, 철강 분야에서 반덤핑 3건(유정용 강관, 방향성 전기강판, 경벽사각파이프) 반덤핑·상계관세 6건(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도금철강제품, 냉간압연강판, 열간압연강판) 등 총 9건의 신규 제소가 있었다. 이 중 유정용강관,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고, 송유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이 긍정일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상계관세의 경우 대부분 무혐이거나 미소 마진 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11월 초 도금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상무부 예비판정에서 세타키 사례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상계관세율이 미소마진을 상회(1.67%)한 결과나 나온 상태이므로 향후 진행경과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청되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송유관(국제무역위 산업피해 최종판정 단계), 도금철강제품(상무부 최종판정 단계), 경벽사각파이프, 냉간압연강판, 열간압연강판(상무부 예비판정 단계) 사례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한·미 FTA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를 규정하였고 가격과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다.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를 구성, 반덤핑 관련 규정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관행) 및 현장 실사(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 피조사 기업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와 관련한 조사 관행을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수출자들이 미국의 반덤핑 조

사에 대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널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자세이프가드 발동 시, 우리 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이유로 다자세이프가드를 발동 시, 우리 수출상품이 동시에 발동 대상이 되는 위험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의 요구사항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못한 것이 많아 對미국 수출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인증 관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 시 UL마크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 시공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현지 진출상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UL마크는 미국 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 중의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부여를 받는다(소형 냉장고의 경우 비용이 6,000~10,000달러 소요). 물론 UL마크 획득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몇 개 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제품의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소비자들은 구매 시 UL마크를 확인하며, K-Mart와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은 UL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형냉장고와 같은 소비용 전기제품이나 간단한 기계류 등의 경우 UL규격의 획득은 이해가 되나, 대규모 공장설비의 경우 한국에서 각종 안전규격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새로운 현지규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욱이, 현지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중에는 범용성이 있는 일반기계라 아니라 주문에 의해 생산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 등 자본재의 경우에는 UL규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아울러, 생산설비의 시공업체도 미국 내 라이선스를 획득한 업체가 시공해야만 시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계의 특성상 한국의 시공업체 기술자가 현지출장 등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현지 업체에게 맡김으로써, 복잡해지고 비용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진출업체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기안전공업규격, KS 등의 규격을 획득하였다면 현지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 또는 양국 인증기관간 상호인증 추진 등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라벨링제도

미국정부는 자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하여 국산화율(미국·캐나다산 부품 사용비율), 연비, 안전도에 관한 정보가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국산화율 표기 라벨에 대해서는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1992년 10월)에 근거하여 ①미국·캐나다 부품 사용비율, ②미국·캐나다 이외에 15% 이상 부품을 조달한 국가와 조달비율(최대 2개국), ③최종 조립국가, 주, 도시, ④엔진 원산지, ⑤변속기 원산지 등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비관련 라벨은 교통부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와 환경청(EPA)은 2013년 모델 차량부터는 평균연비(도시 및 고속도로 연비 병행 표기), 연간유류비용, 동일차종의 평균 유류소비량 대비 절감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스모그 영향 정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능력, 충전시간 연비, 전력소비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⁷⁸⁾

안전관련 라벨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승용차부터 충돌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전면(운전석 및 조수석) 및 측면(앞좌석 및 뒷좌석) 충돌,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전반적 안전도가 별 5개 만점으로 표기된다. 픽업트럭은 라벨 표기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었지만 자발적인 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소비재안전개선법 (CPSIA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2008년 도입된 소비재 안전 개선법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각 주들도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 · 미 FTA

한·미 FTA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TBT 협정문의 범위에 사실상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78) 상세 내용: www.epa.gov/fueleconomy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환경관련 규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협정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202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별 기여 공약(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철회하고 및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의 부를 다른 나라로 재부배하는 협정으로, 동 협정상 의무 이행으로 인해 미국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근로자들이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비록 파리 협약에서는 탈퇴하나 미국은 계속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이며 청정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르면 협정 탈퇴는 협정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가능하므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이 당장 국제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나,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했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2017년 10월 10일 미 환경청(EPA)은 오바마 행정부의 “Clean Power Plan (청정전력계획)”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32%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22%에서 28%로 상향 설정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는 오바마 前 행정부의 계획으로, 전체 전력생산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기존의 1/3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환경청(EPA)은 동 계획에 따른 규정들이 환경청(EPA)의 법률상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정전력계획 폐지 규정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정전력계획을 대체할 신규 대체 규정에 대한 검토도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대체 규정은 청정전력계획 상의 천연가스로의 연료대체, 발전소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도입 방식 대신, 기존 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등 설비 기능 개선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CAF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및 온실가스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8월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7~20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3월, 환경청(EPA)과 교통부는 2012년 8월 확정 발표된 2017~2025년까지의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대한 중간 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 따르면, 환경청(EPA)과 교통부는 2012년 확정된 기준을 2021~2025년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중간 평가 개최 여부를 대국민 여론 수렴에 의해 결정할 예정으로,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 향후 동 평가를 거쳐 현실적인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대기정화법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 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차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년형부터는 신차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건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 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 · 미 FTA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년 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 ①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

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악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chapter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 2월 14일 제1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데 이어, 2015년 11월 11일 제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미국 정부조달 환경 개관

미국에 관한 WTO의 2014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2012년 약 5천179억달러로 연방정부 총 지출액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

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은 미국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0%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 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국가는 총 50개 중 37개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13개): 앨라배마, 알래스카, 조지아, 인디애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한편, Buy American 조항은 2009년 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연방조달과 양허를 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형식상의 차별은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공식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미국내 납품실적 요구, 특정 규격 요청 등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존재한다.

또한, 미 연방조달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 WTO 정부조달 협정 비양허 품목(22개 품목군):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90개 품목군중 22개 품목군, 무기, 미사일, 선박, 엔진, 비행기, 베어링, 손도구, 계측기, 통신·탐지·레이더 기기, 전기·전자 부품, 섬유·가죽·의류 제품, 철제 봉·판·구조물 등

그러나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라도 모든 조달 기회에 있어 미국 기업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는 못하는데, 미 국방부의 식품, 의류, 특수철강 조달을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Berry 수정법 적용품목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공급업체에게만 조달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 미국 시민권자가 주요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금 거래 요건 및 미국산 부품 사용 요구 등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6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하부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 미 FTA

한·미 FTA를 통해 중앙정부의 상품·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 하한 금액은 미국 측이 현행 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우리 측이 약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가 신기술 개발 분야이며, 이러한 장점이 실제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자국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교역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337조 조사)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법 “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ITC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다.

일반법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통상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하여 이 절차는 1년 내외에 신속히 완료될 뿐만 아니라 구제방법도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등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일반법정을 통한 법적 분쟁에 대신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빈번히 사용하는 절차이므로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미국 특허법 개정 (2011년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특허 및 상표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0여년간 발명자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및 선사용주의(first-to-use system)를 채택하여 왔다.

이는 형식적으로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지 보다는 누가 먼저 그 발명을 했는지 또는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특허법이 기업의 출원증가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2011년 9월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전면 개정되어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로 전환 및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입하는 등의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특히 근본적인 변화인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선시하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아울러, 우선심사제도(Prioritized Examination)의 도입, 출원료 및 등록료 등 수수료 인상(15%),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50%) 등은 미국 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한편, 2017년 들어서는 AIA 발효 6년 및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Patent Trial Appeal Board) 개소 5년을 맞아 그간 심판건수 증가에 따른 적정한 처리 소요재원 마련을 위하여 당사자제 무효심판(IPR)과 등록후 무효심판(PGR) 청구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위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대리인, 출원인 등의 의견을 구하는 등 적극 검토중에 있다.

미국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특허법과 비슷하게 변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선 사용자 권한(prior user

rights)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와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요소가 혼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 일명 Patent Troll-특허괴물)에 대한 규제 강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동안 PAEs들이 제기한 소송은 전체 특허소송의 28%(2009년: 640건)에서 67%(2013년: 3,608건)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한 해 동안만 전체 7,737개의 Defendant중에 4,843개, 즉 63%가 PAEs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Top 10 Plaintiff는 모두 Patent Assertion Entities(PAEs)로서, Melvino/ArrivalStar, Wyncomm, Thermolife들이 각각 1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다.⁷⁹⁾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 지속적인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PAEs의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의 legislative recommendation과 5개의 executive actions⁸⁰⁾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 특허상표청(USPTO)을 비롯한 정부기관들도 실행방안을 만들어 추진중에 있다. 한편 PATENT Act 법안이 2015년 10월에 양당 간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114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진척이 없이 회기가 끝남과 함께 폐기되었고, 현 115대 국회에서는 다시 상정될 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정한 특허경쟁을 지향하는 의원들이 공화, 민주 양 당에 공히 포진하고 있어 규제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발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향후 규제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특허괴물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특허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79) RPX가 보고한 "2013 NPE Litigation Report"

80) 5가지의 executive actions은 i)발명이나 특허에 대한 소유권 정보의 정기적 갱신 규정 마련, ii)지나치게 폭 넓은 S/W특허 청구항과 관련, 기능적 청구항 심사의 질을 제고 방안 강구, iii)본래 용도대로 제품을 이용한 소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며, iv)특허 정책 아이디어 확보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교육과 연구 확대, v)수입배제명령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작업수행

실제로 2014년에 들어서면서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이 감소(3,673건('13)→2,791건('14))하였다. 특허괴물의 폐해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식재산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허개혁 법안이 경쟁적으로 나타나 시장과 업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인 특허괴물이 소송에서 패한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공동소송 요건의 강화, IPR의 활성화와 함께 특허괴물의 경영전략을 무력화시키는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미 특허심사 협력 강화

우리기업이 미국에서 손쉽게 단기간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한·미 특허청간 구축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양국 특허청은 2009년 1월 29일부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공통으로 신청한 특허출원 건에 대해 제1출원국인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를 받으면 제2출원국인 미국에서는 해당 출원 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특허의 내용, 심사관련 통지서, 영어번역문 등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2009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10년 1월 29일부터는 영구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7월부터는 PCT 특허심사하이웨로도 시행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특허청의 중복심사를 생략하고 출원인들에게는 미국에서 다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절차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할 계획이 있거나, 특허의 전략적인 활용과 특허분쟁 등에 대비하여 개발된 핵심기술을 미국에서 신속히 특허등록을 받기 원하는 기업체나 연구소, 발명가에게는 유익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한·미간 특허협력심사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어 향후 2년간 더 유지하게 되

있다. 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라고 불리는 동 제도는 양국에 공통 특허출원된 건에 대하여 심사 착수 전에 양 청이 선행 기술 조사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미국 출원시 우선심사로 4천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7년 10월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보기까지는 평균 1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하이웨이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한 · 미 FTA

한·미 FTA는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제도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투자 장벽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인 규제가 있다. 외국인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對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

법」 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 및 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그 거래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007년 9월에는 미국 안보 및 기간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 및 집행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8.11월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CFIUS))의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Regulation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조사대상을 외국인에 의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을 운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Covered Transaction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검토기간은 30일 조사기간은 45일로 제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효율화하였다. 상기 외국인투자 심의제도에 따라 2009~2013년간 총 480건의 외국인 투자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실제로 193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2년에 최초로 중국계 기업의 대미투자 1건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가 결정되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투자제한 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으나 제조업 및 금융정보서비스업 분야 투자에 있어 2011년 1건 및 2012년 2건, 2013년 1건 등 총 4건이 “Covered Transaction”으로 분류된 바 있다.⁸¹⁾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절차는 없다. 법인의 설립은 자유로우며 州法에 의해 설립된다. 州法의 내용은 州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州로부터 영업목적 등을 명기한 허가증을 받으면 법인이 설립된다. 미국의 경우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절차는 지극히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81)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port to Congress(2015,2월)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활발하며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 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그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의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의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달러(중전의 10배), 개인 백만달러(중전 35만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한도 10년(중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서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따라서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2005년에는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 법무부가 삼성전자에 3억달러, 하이닉스에 1억8천5백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8월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년 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년 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카르텔을 저지름으로써 회사는 물론 개인 처벌까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력 있고 평판이 좋은 우리 기업이 카르텔 가담으로 인해 더 이상 고액의 과징금을 물지도 않고 한국기업의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도록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기업결합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1992년 제정된 이후 대폭 개정(1997년 일부 개정)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각 경쟁당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대상이 되는 시장집중도 수준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기준으로 종전의 1,800에서 2,50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에서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을 반영시킨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 범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로 한정하여 관련시장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현실적인 경제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SR 법(Hart-Scott-Rodino Act)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 혹은 의결권 있는 주식 규모기준으로 2억 달러 이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대상이 되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거래 이더라도 기업결합 취득자 및 피취득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기업결합규모는 미국의 GDP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기간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16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업결합 시에는 심사료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심사료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금액은 4만5천 달러이다.

소비자보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와 차별화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사기행위 규제 등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업무 이외에 최근에는 개인정보 도용, Spyware 메일, 크레딧 거래 사기 등의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 · 미 FTA 등 협력

미국은 자국의 독점금지법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양국간 기관장 회의를 개최(2014년 서울, 2015년 워싱턴)를 개최하고, 주요 사안별 양자회의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경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으며,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전망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이 경쟁법 집행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경쟁당국 주요인사 임명이 지연되어, 법무부 독점금지국 수장 임명이 9월 말(Makan Delrahim, 9월 27일 상원 인준 완료)에 이루어졌으나, 연방거래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위원장 포함) 중 새로 임명이 필요한 위원장 1명 및 3명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등 경쟁정책 및 법집행에 있어서 특이한 변화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로 볼 때,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분야에서도 미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집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서비스 시장에 대한 제한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미국적 상선에 의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우선적취권(Cargo Preference) 제도를 두고 있다.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lic Resolution No.17)는 미국의 정부기관(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사청이 미국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1936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사화물은 미국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은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화물의 최소한 50%를 미국적 선박이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선박의 운임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외국선박을 사용해야 하는 유효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선박에 선적이 가능하다.

「1985년 식품안보법(Food Security Act of 1985)」상에는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1995년 알래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 국적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Cargo Preference 선박들은 VISA⁸²⁾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미국적 선박으로 3년 동안 등록되어 있으면 적취권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 연안운송에 대한 규정으로 「1920년 미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27장(46 App. USC 883)에서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선(U.S. built, U.S. owned, U.S. flag vessel)”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위 Jones Act).

Jones Act의 목적은 안정적인 연안수송서비스의 발전 및 국가 비상시 연안 해운산업의 국제통제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의 제공 및 미국 국민의 고용 보장을 위한 것이다.

미국내 화물 물동량의 대부분을 Jones Act 선박이 수송하고 있다. 미국 해사청(MARAD)은 Jones Act의 유지가 미국내 해운 관련 고용 창출과 미국내 신조선 건조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적 선박 중 유조선의 80%이상, 컨테이너선의 25%, VISA용 선박의 30%가 Jones Act 선박으로 분류된다.

Jones Act는 WTO와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예외로 인정받았으나, 일본 등 WTO 회원국들은 GATT 근본 취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82) VISA(Voluntary Intermodal Sealift Agreement) program :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의 해운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선박으로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관련 규제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간 노동 관련 문제도 한미 FTA상의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의 노동챕터는 협정당사국으로 하여금 1998년의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선언이 표명한 노동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존의 노동협정들에 비하면 매우 강력한 수준이다. 2006년 신통상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비준된 오만과의 FTA 등에서는 당사국들이 기존 노동법을 통해 확립하고 있는 노동기준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만 부과할 뿐이었다. 1998년 ILO선언이 정하고 있는 기본노동권은 ①결사의 자유, ②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③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제거, ④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제거 등이다.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무역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되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점은 기존 FTA 노동챕터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기본 노동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한미 FTA의 노동챕터 규정은 자원 배분을 이유로 노동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종전의 노동협정이 국내적 자원 배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대국이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지는 못하도록 했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미 FTA에서는 노동분쟁도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패소하는 나라가 지불하는 벌금은 승소국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상금의 성격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기존의 여태 FTA보다 노동협정의 의무 이행 위반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기준 이행장치로서는 “공중의견제출-정부간 협의-분쟁해결패널의 중재-벌과금”의 네 가지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다만, 한미 FTA 발효이후 현재까지 양국간의 노동분쟁 사건은 제기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베네수엘라 경제통상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특수한 정치적 환경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이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좌파적 이데올로기 및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정권의 통치행위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국가로 지난 2014년故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로 당선된 마두로 대통령이 행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120일동안 지속된 반정부시위에도 불구하고 초헌법적 기구인 제헌의회를 창설하였고, 여당인 PSUV는 지방선거를 통해 총 23명의 주지사 중 17명을 배출하면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국가의 외환통제와 서민안정을 위한 분배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막대한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한 21세기 사회주의(socialism)를 표방하면서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기초 생필품 가격통제 및 수입허가제 실시 등 자유 시장경제 활동 제한 및 국가무역센터(Cencoex)와 외환거래보완시스템(SIMADI)을 통한 외환배정으로 외환관리 및 국내 달러화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정부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국회의 경제관련 개혁입법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외환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외환부족의 심화로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셋째, 미국으로 대변되는 이윤 지상주의식 자본주의와 약소국에 대한 자원수탈형 19세기 제국주의식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 전화, 시멘트, 철강, 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대대적이고 과도한 국유화로 인하여 정부고용 인력이 점차로 비대해지고 있으며, 경제 관료들의 부패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넷째, 주재국은 100달러의 외화 가득액 중 95달러 이상이 석유수출에서 발생하는 석유의존형(Petro-economy)의 단선적 경제구조로 석유수입금으로 식료품, 의약품 등 기초 생필품을 수입하는 수입의존형 경제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다섯째, 현 정권의 지지기반 약화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주요 지지기반인 서민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분배위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가격통제정책으로, 정부가 정한 판매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이로 인해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석유산업을 제외한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 산업 생산력 저하기 지속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외환통제정책을 바탕으로 수입용 외환을 우선 분야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규제하므로, 이 밖의 방식을 통한 수입 규제는 다른 중남미에 비해 덜 엄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의 경우, 2008년부터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나 중간재 등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귀금속이나 차량 등 고가의 사치성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는 등 수입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록 베네수엘라는 2017년 8월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되었지만, 제도적으로는 MercoSur의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0~25%를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차종에 따라 33%에서 35%수준이다.

- 0% :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 5% : 원자재 및 자본재
- 10% : 역내에서 일정수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 15% : 각종 공산품
- 15~20% : 농수산물, 식품, 의류 등 최종 소비재
- 20~25% : 귀금속류 등 사치품, 제지 및 인쇄품목
- 35% : 자동차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관세에 적용되는 환율이 암시장환율보다 크게 낮은 DICOM 환율로 계산되므로, 민간 수입업체의 경우, 관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편이다.

수입부과금

최고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12%, 특별소비세 10%, 수입기금 1%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수입부과금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CIF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8~16.5%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하다. 차베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종전 14.5%였던 부가가치세를 2002년 9월 1일부로 16%로 인상하였다가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2004년 8월부터 15%로 인하하였으며, 이를 다시 2005년 9월 15일부로 14%로 인하하였다. 2006년 인플레이율이 17%에 달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년 3월 1일 부가가치세를 11%로 인하한데 이어 2007년 7월 1일부터 9%로 추가적인

인하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유가하락으로 정부재정수입이 급감하자 차베스 정부는 2009년 3월 21일 경제위기 극복 긴급대책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9%에서 12%로 인상하여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002년 8월 1일부터 일부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고급승용차(4만4천 달러 이상), 오토바이(500cc 이상), 헬리콥터, 경비행기, 경주마, 귀금속(500달러 이상) 등으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베네수엘라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확대 창출 등을 위한 일환으로 정부 및 정부기관이 수입하는 품목과 일부 자본재 부품 및 설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나 이 방법에 따른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차베스 정부 들어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지면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첫째,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로, 이는 관세율표상 구속요건란에 5번으로 표시되어 있다. 둘째는 안데안 국가 간 교역 시 관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이다. 셋째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반덤핑 관세부과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 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입 규제

일반적으로 상품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나 정부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거나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사례로서 제품 인증제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국가무역센터(Cencorex)의 외환 배정,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 제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의료용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사전에 관련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 2월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을 통제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외환을 배정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이 외환배정업무를 Cencorex에 이관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외환을 배정받은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수입대금은 Cencorex 신청절차 종료 시 수출업자 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절차 종료에 당초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외환부족현상이 심화된 2014년 이후에는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조차도 민간수입업자에게는 배정되는 금액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아 민간분야의 수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2013년 3월, 부족한 외환을 보완하기 위해 경매방식으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외환을 배정하는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템)을 도입하고, 2014년 2월에는 은행을 통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을 결정하는 Simadi(외환한계제도)를 도입하여, 한 때 3가지의 공식 환율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외환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의 외환공급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면서, 오히려 암시장환율만 크게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 외환제도는 2016년에 DiCom(상업용 외환거래제도)로 일원화되었고, 기존의 Cencorex외환은 DiPro(보호 외환거래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6년 12월 베네수엘라 상업부는 수입업자가 Cencorex에 외환 구입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개의 관세 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제조 확인서” 및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3개월에 불과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하고,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경공업부는 이전에는 국내 자동차조립업체에게 허용했던 완성차 수입제도를 2008년 말부터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베네수엘라는 19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한국산 주사기에 대한 제소가 있었으나 1999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철강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소, 2000년 1월 철강 바, 튜브 및 쉬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토록 한 적도 있다.

1999년 세이프가드법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0년 1월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각국의 열연 및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해, 3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각각 세이프가드 제소가 있었으며, 2002년 9월에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직물·의류·플라스틱·농산물·자동차 분야에서 일련의 수입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러나 2003년에 외환통제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각종 수출입이 감소하게 되자 그 동안 수입제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던 철강 및 신발류 등에 대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éc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년 12월)에 의해 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

규격을 정해놓고 동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업 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동 확인서 유효기간이 1개월~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어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을 할 경우 통관시점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물품이 세관에 방치하는 일이 발생, 기업들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였으나 2016년 현재까지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솔린 가격과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경공업무역부(MILCO)는 국내 조립산 차량의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8년 말부터 완성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약 23,000대가 수입 판매된 한국 차량의 경우 2008년도 수입허가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정도에 불과한 9,000여대로 축소되었으며, 3,000cc 이상 차량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그간 주재국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국산 인기 차종의 수입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완성차량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베네수엘라는 2014년 이후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서민층에 대한 식료품과 의약품의 저가에 공급하는 정책 외에 정부에서 별도의 보조금 등을 통해 현지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식품과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공식환율로 수입하여 공공유통경로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어, 은행거래환율이나 암시장환율로 수입된 제품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므로, 민간분야에서 식료품과 의품을 취급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으

며,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 조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달 전담기구는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조달업자 공급업체 등록 및 정부조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조달청(SNC)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물품 조달업무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정부조직이 비대하고 석유산업, 알루미늄산업, 철강산업 등 각종 기간산업이 국영화되어 있어 입찰에 의한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매가 많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기업으로서 SNC에 조달업자 공급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외국 업체들은 SNC에 등록된 베네수엘라업체를 에이전트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입찰절차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상품의 구매에 있어 국산품 가격이 경쟁 수입품보다 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국내 부가가치가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일 경우에는 추가로 각각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국 내 생산제품은 외국산 제품 대비 최대 15%의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의 형태가 원칙이지만, 차베스-마두로 정부에서는 정부 대 정부 간 협정 또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대신 발주처의 사전 내부검토를 통한 수의계약 방식이 더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형 공개입찰은 매우 제한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였으며, 실제로는 인맥 및 자금을 통한 대정부 사전 로비활동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개 입찰의 경우에도 공고 기간이 통상 2주일 이내로 짧아 외국 업체가 참가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네수엘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서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으며, 국내적으로도 제반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1997년 4월 SAPI(Servicio Autonom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를 설치하여 상표, 발명, 신기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워 규제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적이나 CD, 음반 등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바지, 의류, 모자 등의 상표 도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 이후 외국산 의약품 관련 특허를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서비스 장벽

1996년 베네수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지된 이후 국내의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공중파 방송의

영업 허가기간은 25년으로 2007년 5월 반정부 보도를 사유로 차베스 정부가 RCTV에 대한 방송 허가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계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벌어들인 현지화 이익을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데 있어 정부의 외환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현지인에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로 항공권을 판매하여도 해당금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데 있어 공식환율이나 은행거래환율로 달러화 환전이 되지 않아, 일부 항공사는 노선취항을 취소하기도 하였고, 남은 항공사들 역시 편수를 줄이거나 비행좌석을 줄이고, 볼리바르화 판매를 최소화하는 대신 달러화로만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국내 통신사들은 국제전화 이용에 따른 해외 통신업체에 대한 접속료 지불을 위한 달러화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부터 가입자들의 국제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1999년 10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국내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차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약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동 제한 분야는 국내 투자 지분이 80% 이상인 국내기업에만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동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을 19.9% 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 정부는 1999년 12월 헌법 개정과 2006년 석유법 개정을 통해 석유 등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실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석유 개발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기존 외국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06년 3월 제정된 에너지 석유부의 합작회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년 기간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하되 지분의 6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회사의 현지 법인이나 지사는 영업활동에 있어 국내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따

라서, 현지법인이나 지사 모두 상법상 회사설립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립과정이나 법적 권리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현지법인 대신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소송 등 법률상의 책임이 본사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만 다르다.

외국회사가 에이전트 또는 판매 대리인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경우 여타 중남미국가와는 달리 에이전트나 판매 대리인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계약 종료 시 이들이 갖는 권리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권리에 한정된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법인세는 연간 총소득 대비 34%, 부가가치세 12%, 사회보장세 2%, 과학기술개발기여금 1%, 실업기금 1%, 약물퇴치기금 1% 등 세제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평등대우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필수기능인 외환송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존재한다. 즉,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설립후 5년 동안은 자본금의 송금이 제한되고, 이익의 80%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며, 청산의 경우에는 투자자산과 기술을 잔존시키는 조건으로 청산잔액의 85%까지 송금할 수 있다.

국산화의무 부과

원칙적으로 현지 부품 사용의무는 없다. 석유 및 광물자원을 제외한 베네수엘라의 국내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산부품 사용을 강제할 상황에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미생산 확인서나 국내생산 부족증명서 등을 경공업무역부(MILCO)에서 획득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외환통제 정책과 더불어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제조업 육성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제조 상품, 특히 음식료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공식환율로 부품을 들여온 기업의 경우에는 현지의 수요를 충족시킨 후에만 남은 물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임가공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법 상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들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및 서류 보완 요구, 급행료 요구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Doing Business 2017-Venezuela 보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평균 230일이 소요되어 조사대상 190개국 중 187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민간합동기구인 투자진흥위원회(CONAPRI, The National Council for Investment Promotion) 홈페이지(www.conapri.org)를 방문하면 베네수엘라 투자관련 절차 및 규정 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베네수엘라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카라카스 시내 및 카라카스 외곽 고속도로 부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된 환경보호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 별 문제가 없다.

내국인 채용 의무

외국 법인의 지점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국적이나 주재 장소 등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노동담당 직원(labor relations manager)은 반드시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선박이나 항공의 Captain 또한 베네수엘라인 이어야 한다.

피고용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피고용자의 9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총액의 8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상기 90% 고용에 대해서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노무관리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노무관리에 특별히 어려움이 많아 내국인들조차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단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투자시 다른 기업의 채용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2년 5월 1일 개정된 노동 및 노동자기본법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주간 근무자의 경우 일일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야간 근무자는 일일 7시간, 주당 최대 35시간, 주야간 혼합 근무자는 일일 7.5시간, 주당 최대 37.5시간이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1일 조정되지만, 차베스 정권시절에는 최저임금의 실질소비력을 높이기 위해 1년에 두 번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2013년과 2014년에는 이를 3회로 늘렸고, 2015년 4회, 2016년 5회로, 인플레이션 폭등에 따라 최저임금 조정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0월 현재 도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BsF. 136,543.4로, 정부공식환율(1\$= 10 Bs.F)로 환산하면 2,700달러지만, 은행거래환율로는 40달러, 암시장환율로는 4달러에 불과하며, 이것으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서, 정부는 임금 외에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현재 식대지급액은 월 BsF.189,000으로 임금보다 더 크다.

▶ 2004~2017년 기간중 베네수엘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률

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상승률	누적물가상승률
2004	Bs. 321.235	30%	19.2%
2005	Bs. 405.000	26.07%	14.4%
2006	Bs. 512.325	26.5%	17%
2007	Bs. 614.790	20%	22%
2008	Bsf. 799.23	30%	30.9%
2009	Bsf. 967.50	20%	25.1%
2010	Bsf. 1.223.89	25%	27.2%
2011	Bsf. 1,548.22	25%	29.0%
2012	Bsf. 2,128	21.9%	20.1%
2013	Bs.F 2,972.99	39.7%	56%
2014	Bs.F 4,251.40	32%	63.42%
2015	Bs.F 9,648.18	127%	180.9%
2016	Bs.F 27,092.10	181%	정부 미발표
2017	Bs.F 136,543.4	389%	정부 미발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외에 최소 15일치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중식 제공, 주택자금 적립 지원, 사회보장세 및 고용보험 지급, 교통비 및 식사 보조비 지급, 직업교육 실시 등 임금 외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매우 많다. 퇴직금은 3개월에 15일치씩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하며, 자진해고가 아닐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만큼의 위 로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기업은 대외무역센터(CENCOEX)에 초기 자본금을 등록하고 사후에 이윤발생 시 동 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자본금 유입 후 1년이 지나면 은행환전환율(DiCom)로 이윤의 80%까지 외환송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달러화 환전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외국투자기업들은 현지 재투자 또는 암시장 환전을 통해 송금하는 실정이다. 즉, 외국기업들이 과실송금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폐쇄된 상태이다.

베네수엘라는 1996년부터 환율밴드제(폐장년도 환율기준 7.5% 내외에서 환율 운용)를 채택해 왔으나, 2003년 2월부터 부유층들의 외환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외환통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5년 10월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1만 달러 이상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외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은행이 모든 외환통제 법규를 관장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외환은 중앙은행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자신이 구득하는 모든 외환을 사전 지정된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상은 상품 수입용 외환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무역센터(Cencorex)의 까다로운 사전 외환 획득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회수에 있어 규정 상으로도 최소 6개월, 2014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마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투자진출 유망 분야

정보통신부가 주재국 내 IT산업 육성을 위해 휴대폰, 위성 안테나, 광케이블 등 IT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제품 생산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합작회사를 추진 중인 현지 업체들의 사례를 볼 때, 외국 기업의 참여 지분은 10~20% 수준으로서 현지 업체들은 직접적인 금전적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 인력 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고, 부품 수입에 있어서도 국내 미생산 확인서나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의 현지 생산 비율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한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현 마두로 정권의 방침을 고려하여 TV, 냉장고 등 한국산 가전제품도 현지 판매 대리점으로 하여금 조립라인을 설치토록 하여 일정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의 경우, 부품대금을 제때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경쟁정책

1992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개입 과도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외환통제, 가격통제 등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활동증대로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예컨대, 최대 식품도매업체로 등장한 농산물공급공사(CASA)는 2004년의 경우 4.31억 달러의 식품을 수입, 이를 국내에 2.23억 달러에 공급하고, 그 손실액으로 매월 2,400만 달러를 정부에서 보조받았는데, 이는 식료품 분야에서 외국기업 및 국내 민간기업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정부의 각종 경제 수치고 통제에도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치안 불안

수도 카라카스에서만 매주 평균 50명 내외 정도가 피살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는 물론 공항, 주택지역에서도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건이 빈발하는 등 치안이 불안하다. 특히 201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도 선정되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빈민가의 조직폭력집단간 암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촌 지역에서도 권총강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 공항 도착 시에는 사전에 연락된 사람의 마중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된 공항택시 이외의 교통수단(일반 택시 등) 이용은 금물이다. 또한, 체재 시에는 비교적 고급호텔에서 투숙하고 야간출입을 삼가야 하며, 특히 낮선 사람의 친절을 경계해야 한다.

운전 면허증

통상 한국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제출하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등 해당 관청의 업무처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류 비자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각서가 2007년 12월 23일부터 발효하여 양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는 신청서류가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기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체류 비자의 경우에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통제권은 은행금융기구감독원(SUDEBAN)이 갖고 있으며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제와 함께 전체 대출금의 40%를 농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고 총 예금의 30%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7월 차베스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내 3위 민간은행인 스페인계 Banco de Venezuela에 대한 국유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두고 금융계 일각에서는 2007년 하반기 민간은행에 예치된 공공자금의 국영은행으로의 이관 조치와 더불어 금융권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표면화된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마침내 베네수엘라는 정부는 2009년 5월에 Banco de Venezuela를 10억 5천만 달러에 스페인계 Santander 그룹에 지불하고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09년 11월에 민간계 은행인 (Banpro, Confederado, Canarias,

Bolívar Banco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출처분명의 자금을 활용했다는 명분으로 국유화를 단행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Banco Federal을 국유화 조치하였다.

개선 실적

과거 한국과 베네수엘라 양국 정부가 서로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일정기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으나 2007년 12월부터 양국 간 관광사증면제 교환각서가 발효되어 90일간 관광목적 무사증 입국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양국 정부는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2008년부터 자원협력 위원회를 교차로 개최하여 왔으나,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로 인해 2013년부터 개최가 공전되고 있다. 한편,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자원개발협력 MOU를 맺어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석유플랜트 공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건설업체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PDVSA)가 발주한 75억 불 중 1단계 23.9억 달러의 'Puerto La Cruz' 정유공장 건설을 현대건설이 수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0억 달러, 49억 달러의 추가 2.3단계 공사도 계약을 맺어, 향후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볼리비아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정책을 수정한 최고법령(Drecreto Supremo) 제 1272항(2012년 6월 27일 제정)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했다. 이 새로운 관세규범은 관세율 조정을 통해 볼리비아 국내 생산 제품의 소비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관세 구조는 0%, 5%, 10%, 15%, 20%, 30%, 40%의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에는 보통 10-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보통 자본재에는 0~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산업발전을 위한 일정한 자본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불요불급한 자본재의 수입에도 5% 관세율을 적용한다. 볼리비아 현지 생산품과 동일한 일부 품목에는 15%, 20%로 관세를 적용해 높은 수준으로 보호한다. 최고법령 제 1272항은 기존 35%의 관세율을 삭제하고, 일부 품목(섬유제품, 목재 가구 등)에 30%, 40%의 관세율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WTO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10.3%이며,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12.4%이다.

특히 볼리비아 관세청(ANB)은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해 음식료품 같은 특정 품목의 임시관세율을 매달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임시관세율은 육류, 닭고기, 토마토, 오렌지 같은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발표한다.

이러한 관세율은 안데스공동체 회원국(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볼리비아와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볼리비아 주요품목별 관세율**

품 목	세율(%)
가공식료품	10~20
광산품	5~10
화학제품	0~20
플라스틱/고무제품	0~20
가죽제품	5~40
종이 및 지제품	0~20
섬유제품	5~40
가방 및 신발, 기타 악세서리류	5~20
금속제품	5~20
전자가전제품	0~20
수송기계류	0~20
광학제품	0~20
동물 및 동물 관련 제품	0~20
육류 및 내장 가공 식품	100~20
어패류	5~20
유제품	10~20
식물, 야채 및 종자	5~20
과실류	5~20
커피 및 차	5~20
곡식류	5~15
음료 및 주류	10~40

수입부과금

볼리비아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에도 CIF가격에 14.94%의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가 별도로 부과된다.

또한, 담배류, 주류에는 특별소비세(ICE: Impuesto al Consumo Especifico)가 부과되는데, 담배류의 경우, CIF 가격의 50~55%의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며 주류에는 주종에 따라 리터당 0.43~13.89 볼리비아 노(Bs)가 부과된다.

또한, 도서 및 간행물, 금(보석 제외), 개인 지참 현금(300\$ 미만), 영사 및 외교관의 경우 정부 협약 또는 지역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창고 사용료는 처음 5일 동안은 무료이나, 그 이후 15일마다 톤당 1.2달러, Kg당 0.09달러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볼리비아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5일에는 통관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개정(No.615)을 통해 모든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기관이 경과한 경우에는 압 목적 유기물품으로 분류된다. 수입업자가 상기 수입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실제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다.

연간 5천 달러 이하 수입은 수입업자 개인이 할 수 있으나, 연간 5천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통관사나 통관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통관대리인 이용 시 일반적으로 물품수입 가격에 0.1~2.5%의 비용이 든다.

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DJVA: Declaracion Jurada de Valor en Aduanas)를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서 개시되고 관계서류 제출, 관세 등의 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통관을 위한 서류는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111조에 따라 제출서류 요약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화물도착 통지서, 보험증서, 선적 관련 비용증명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제출을 기초로 세관은 볼리비아 통관절차정보시스템(SIDUNEA++)에 통관정보(DUI: Declaracion Unica de Importacion)를 입력하게 되며 세관에서 설정한 프로그램(SIDUNEA)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 황색(Amarillo)채널로 판정된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적색(Rojo)채널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전량 Invoice와 대조·검사하게 되며, 녹색(Verde)채널로 판정된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한 통관절차가 진행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수년 전까지 볼리비아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에 원산지인증서(Certificado de Origen)를 요구했었다. 당시에는 볼리비아 당국이 수입 제품의 실제 가격을 알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볼리비아세관은 국제물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수입 규제 품목인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를 거칠 시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데스 공동체(CAN :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국가(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우대 관세의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규제

볼리비아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수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상품 등은 세관에 관한 일반법률에 의하여 수입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고 의류제품,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차나 오토바이(단, 차량중량이나 적재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은 예외 규정 적용)는 수입할 수 없다.

곡물 또는 식료품,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 국립농식품 및 축산원(SENASAG)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햄, 소시지, 치즈 같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 농산물 및 가축 위생, 무해식품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 위생관리 부분에서 볼리비아 보건인증 전문가들이 볼리비아로 수출하려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사하기 위한 수출국 탐방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용 총기 및 탄약의 경우 최고법령 29747호(2008년 10월 15일)에 의해 전면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유일하게 볼리비아 경찰 및 군대만 정부의 사전 허가를 거쳐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의 발급이 필요한 특정 품목으로는 화학물질, 항공기, 헬리콥터, 진정제류의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품, 향정신제(정신안정제, 환각제 등), 일반적인 알칼로이드 품목과 그 파생 제약, 차량용 연료 및 윤활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송기기는 수입 시 통신국(ATT : Autoridad de Regulacion y Fiscalizacio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표가 있는 모든 의약품과 OTC(Over-The-Counter, 처방전이 필요 없이 조제 가능한 의약품) 의약품은 보건체육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에 등록해야 되고 제약팀(Unidad de Medicamentos y Laboratorio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 검사에 약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중요 제품 검사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볼리비아 정부는 1992년 반덤핑 관련 법령(Dercreto Supremo 23,308 호)을 제정하긴 하였으나 현재 이를 운용할 조직이 없으며, 동 법령이 적용된 사례 또한 없다. 세이프가드에 관한 법령은 아직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 검사 기관으로는 볼리비아 계량원(IBMETRO)과 볼리비아 품질표 준원(IBNORCA)이 있다. 석유·가스 저장을 위한 금속용기 및 장비, 에어컨, 냉장고, 소화기 등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 품질인증기관의 검사서 등을 IBMETRO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류는 IBNORCA에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공된 수입식품류, 주류 등에는 제조날짜, 유효기간, 성분, 원산지, 제조사 주소를 스페인어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수입자 및 배포사와 동사의 주소, 납세자등록번호, 수입식품 등록(SENASAG)번호가 기재된 별도 라벨도 붙여야 한다.

환경관련 규제

중고차를 수입할 경우 법률 3467 및 대통령령 28963호에 의하여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IBMETRO에 통보되어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또한, 방사선을 배출하는 기계·장비, 방사성 화학 원소 및 동위 원소는 사전에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 한다.

품목별 장벽

수입 금지품목은 1) 의약품 제 1737조에 의거, 식약청에 등록되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 2) 국립농식품 및 축산원(SENASAG)에 등록되지 않은 식용 가능 상품, 식용 조제 물질, 변질되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 첨가된 음료나 주류 3) 질병에 감염된 산(生) 동물, 4) 식용 식물, 과일, 씨앗, 미생물이나 기생충이 있거나 농축산부가 유해하다고 판정한 기타 농작물, 5) 해외복권, 위조 화폐,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재, 우표, 물질적 가치가 있는 기타 물질 포함(수집을 위한 화폐나 우표는 제외). 6) 오래 된 착용품, 예를 들어 속옷, 잠옷, 실내복, 구두, 의류, 섬유 재질의 밧줄류, 폐기 의류, 7) 독성, 부식성, 방사능물질, 폐기광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위험 폐기물, 8) 강철(중고차량의 부품, 기타 탈것에 사용된 부품) 제련 폐기물, 9) 무기, 탄약 및 폭발물, 10)육류(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산) 등이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볼리비아는 1995년 9월 12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보조금과 보상정책은 WTO 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볼리비아에 수출할 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을 하는 것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한다. 일반 관세법 제 1990조 26항(1999년 7월 28일 제정)에 따르면, 헌법상 국제협약에 관련하여 명시한 내용이 아니라면, 행정부에서 최고법령에 의거해 세금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 보상 권리, 반덤핑 권리에 관련한 법규를 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법령을 집행할 기관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볼리비아는 WTO의 공공거래에 대한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의 서명국이 아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생산업자 보호를 위해 2004년 최고법령 27328호 제정을 통해 정부 조달에 있어 볼리비아 생산업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였다. 볼리비아 생산업자들은 1백만 달러까지는 볼리비아 정부조달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완화된 정부조달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볼리비아 기업이나 볼리비아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볼리비아 제품을 상업화하는 회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볼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일 경우 외국회사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국내생산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외상품 제공자들의 참여도 허락한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조달, 공공입찰, 국제입찰 계약은 모두 실행 가능한 재정능력이나 경력 확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채택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볼리비아지적재산권보호국(Servicio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SENAPI)은 최고법령 제 27938항에 의거 볼리비아 전역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법규의 엄중한 준수, 불법행위 감시, 산업재산권에 대한 독보적인 권리의 효율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지적재산권보호협회는 차별성, 발명특허, 실용신안 통합설계디자인, 산업디자인 같은 저작권등록 절차를 해결하고 위법행동이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Procedimiento Administrativo Ley) 제 2341조, 최고법령(Reglamento Decreto Supremo) 제27113조, 안데스공동체 위원회(Comision de la Comunidad Andina) 결정 제486조에 의거한다.

안데스 국가 공동체(CAN : Comunidad Andina) 결정 제486조 3장 15절에 따르면, 수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경우 해당 상표 소유주는 저작권보호국에 불법 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 의약 품명은 국내

지적재산권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자연에서 파생된 상품의 특허를 발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즉, 만약 한 회사가 자연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상품을 특허 요청한다면, 그 상품의 특허를 주지는 않는다.

서비스 장벽

볼리비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매우 많으며, 이러한 장애로 인해 비용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저하된다. 볼리비아는 전체 수입에서 운송 분야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차원에서 볼리비아는 통신, 금융서비스에 관한 일련의 공약에 서명하였으며 이 서명 내용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4, 5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볼리비아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비스와 소유권에서 볼리비아정부는 “볼리비아는 이미 WTO의 테두리 내에 가지고 있는 공약을 벗어나 더 큰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볼리비아는 모든 서비스 규제의 자유화를 쉽게 공약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 장벽

2009년 2월 7일 공포된 주재국 신헌법 320조는 내국인투자가 외국인 투자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헌법의 정신에 따라 현 모랄레스 대통령은 그간 주재국이 체결한 모든 양자투자보장협정을 전면 재협상하도록 국유화 담당 장관에게 지시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4월 1일 주재국과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한바 있다.

신헌법은 특히, 자원분야에 대해서는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여 광산분야에 투자한 외국업체의 재투자 의무 등 탐사, 개발, 정제, 운송, 판매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헌법 공포 이전에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가 시행된 바 있다. 2008년 5월 1일 Chaco사, CLHB 등 3개 외국계 석유회사에 대한 국유화 선언으로 국영석유가스공사(YPFB)에 흡수시켰으며, 2010년 5월 1일 외국회사가 지분 50%를 갖고 있던 Corani, Guaracachi 등 전력회사 3개사와 배전회사 1개사의 국유화를 선언한 바 있다.

천연자원분야(광산, 탄화수소, 리튬, 철 등) 합작투자에 있어서도 적어도 볼리비아 측의 지분이 51%이상이 되어야 하며, 투자이행보증금은 은행에 공탁시키고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볼리비아 광업당국이 공탁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볼리비아 정부는 2007년 10월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로부터 탈퇴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볼리비아 노동법은 볼리비아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근로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외국 기업의 경우, 볼리비아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총 근로자의 15%를 넘을 수 없다.

법인·지사 설치

법인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 상업등기소(FUNDEMPRESA)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재무제표, 당해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법인장, 지사장) 등이다.

또한 주요일간지에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을 공고하여야 하고 신문에 공고내용을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과,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할 시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등록비용은 약 85달러(584.50Bs)이다.

금융상의 제한

주재국 정부는 해외송금을 통제하여 1천 달러 이상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송금금액의 3%를 은행송금세(ITF :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도 1만 달러 이상 10만달러 이하는 공항 등에서 제공하는 세관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51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하 반출의 경우 볼리비아 중앙은행(BCB)에 사전등록 후 공항 등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 반출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자원개발 관련된 세제는 법령 3787호 제97조에 의거한 로열티(Regalia Minera) 부가가 광물 종류에 따라 판매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과(철의 경우 2~4%)되며, 법령 N 1606 제 50조에 의한 법인세(Impuesto sobr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는 기업순이익의 25%가 부과된다. 또한 광물의 실거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가격보다 높을 때만 적용되는 추가비례세(Alicuato Adicional : 법령 3787호, 제101~102조)는 기업순이익에 12.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면제 제도가 있다. 오루로주와 포토시주에 10만 달러 이상 투자시 5년 동안 법인소득세(IUE) 면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입기계류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도 면제되나 주류산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밖에 라파스 인근 서민층이 거주하는 El Alto 지역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10년간 소득세가 면제(법령 2685호)된다.

경쟁정책

모랄레스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석유가스 및 전력산업의 국유화 추진, 시멘트, 우유, 설탕, 제지 등의 산업에서도 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가스 석유는 주재국 최대 회사인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YPFB) 만이 관여할 수 있으며, 외국계 석유가스회사가 생산한 가스 등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고 전량 YPFB에 판매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정부 참여가 확대되는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체류 비자

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목적비자(Objeto Determinado)를 발급(30일 체류, 2회 연장 가능) 받은 후, 주재국 이민청에 '1년 기간' 임시체류증을 발급받고, 그 종료기한 이전에 '2년 기간' 또는 '3년 기간' 임시체류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총 3년이 지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년 임시체류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비자를 받은 유효한 여권, 체류 신청서, 노동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인 경우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범죄경력증명서(한국 경찰청에서 발급), 임대계약서 등 주거지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동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이므로, 사정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주재국 사용은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볼리비아 내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SEGIP(Servicio General de Identificación Personal)에서 국제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은 볼리비아의 정식 면허증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다. 볼리비아 발급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보아야 한다. 볼리비아 운전면허 발급 및 관리는 SEGIP(Servicio General de Identificación Personal)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관

브라질 경제

세계 5위의 인구, 세계 5위의 광활한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브라질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외국인투자 급증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4.7% 성장하였으며, 2010년에는 7.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는 2011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둔화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과 함께 취약한 산업경쟁력, 재정적자 심화의 대내적인 요인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브라질 최대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社 비리스캔들이 발생한 2015년과 2016년에는 마이너스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국제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Fitch사는 2015년 및 2016년에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투기등급인 BB, Ba2, BB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2014년 세계 7위를 차지했던 브라질 경제규모는 인도와 이탈리아에 추월당해 2015년과 2016년에는 연속으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9월 Dilma 대통령의 탄핵으로 등장한 Temer 정부는 브라질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출 동결, 노동법 개정, 연금 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투자환경 개선정책 및 대외개방 확대 등의 친 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5년 브라질의 교역 추이

(단위 : 10억 달러,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증가율)	242.1 -0.2%	225.1 -16.1%	191.1 -15.1%	185.2 -3.1%	172.9 -6.6%
수입 (증가율)	239.6 7.4%	229.0 -5.5%	171.5 -25.2%	137.5 -19.9%	117.2 -14.8%
교역액 (증가율)	481.7 7.2%	454.1 -5.7%	362.6 -20.2%	322.7 -11.1%	290.1
무역수지	2.5	-3.9	19.7	47.7	55.8

* 자료 : 브라질무역통상서비스부(MDIC), 2017년은 10월 2째주 기준

Temer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정책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2017년 1, 2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서서히 경제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2016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던 산업생산도 2017년 7월 기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은 1999년 이후 최저치인 2.46%로 나타났으며, 1달러당 4헤알까지 치솟던 환율은 2017년 초를 기점으로 3.1~3.3헤알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도 201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61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2017년과 2018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7%와 1.3%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로는 2%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회복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브 경제관계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브간 교역규모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한 2011년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이 전년

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기간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또한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브간 교역은 2012년 이후 작년까지 5년 연속 하락 (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 2015년 96억 달러, 2016년 79억 달러)하였다. 이는 브라질 경기침체 및 헤알화 급 상승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 악화,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대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로 첨단기술을 요하는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철광, 사료, 박류, 천연섬유원료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 최근 5년 한국의 대 브라질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9	5,311	-10.4	3,744	-14.5	1,567	9,055
2010	7,753	46.0	4,712	25.9	3,040	12,464
2011	11,821	52.5	6,343	34.6	5,478	18,164
2012	10,286	-13.0	6,085	-4.1	4,201	16,371
2013	9,688	-5.8	5,573	-8.4	4,115	15,261
2014	8,922	-7.9	4,907	-12.0	4,015	13,829
2015	5,495	-38.4	4,059	-17.3	1,436	9,554
2016	4,457	-18.9	3,445	-15.1	1,012	7,902
2017*	4,217	-5.4	2,617	-24.0	1,600	6,834

*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2017년은 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 공식 출범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199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누적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8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동국제강 등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생산업체인 하나마이크론 등 중견기업도 현지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기업의 현지투자는 남미 최대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반덤핑으로 대표되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5년 한국의 대 브라질 직접투자금액

(단위 : 백만 달러, %)

년도	FDI 금액
2012	875
2013	544
2014	405
2015	273
2016	540

최근 대브라질 통상 환경의 변화와 특징

브라질은 1990년대 시장 개방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개방 경제를 지향한 바 있으나, 2003년 출범한 Lula 정부는 기존의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내 제조업 육성, 수출진흥 정책, 수입대체 산업 육성, 수입규제 강화, 심해 유전에 대한 주권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는 2011년 출범한 Dilma 정부로 이어졌으며, 「더 큰 브라질(Brasil Maior, 2011년 8월)」 정책으로 더욱 심화되어 우리기업의 브라질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아울러, 복잡한 세금, 관료주의, 부족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문화 등의 소위 브라질 코스트로 일컬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양국간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하지만, Dilma 대통령에 대한 연방상원의 최종탄핵 결정(2016년 8월) 이후 출범한 Temer 정부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대외 개방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회복과 더불어 대외교역도 증가하고 있다.

Temer 정부는 대내정책으로 재정악화 방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민영화 추진 및 국내부품 완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6년 12월에 20년간 예산지출 확대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2017년 8월까지 3차례 총 146건의 민영화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공항, 항만, 에너지 공기업 등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하기 위한 친 기업성향의 노동법도 2017년 11월 중순에 발효되었으며, 연금 개혁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자동차분야에서 자국 부품 사용을 의무화한 Inovar-Auto 정책이 WTO에서 WTO규정(내국민대우 등)위반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어 이를 수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심해 유전 탐사 등에서도 국내부품 사용비율을 낮추는 등 자국 부품사용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대외 시장개방 분야에서 1995년 1월 발족한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중심국가로서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들은 대외공통관세(CET)제도를 도입하여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Mercosur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Mercosur은 브라질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의 영향으로 지난 1999년에 시작된 EU와의 무역협정을 2017년 말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EFTA와 정식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는 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협의를 종료하여 정식협상 개시를 위한 회원국 국내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Mercosur는 또한, 태평양 동맹(PA), 캐나다, 모로코, 튀니지 등과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최근 자유무역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대외통상기관

브라질의 대외통상과 관련된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대외통상위원회(CAMEX): 브라질의 대외무역, 투자, 무역구제 등 대외통상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우리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해당)이며, 동 위원회 이사회(Board)는 의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업통상서비스부장관, 외교부장관, 재무부장관, 교통·항만·항공부장관, 농업·축산부장관, 기획·발전·관리부장관 및 대통령 수석비서관(General Secretary of the Presid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CAMEX에는 최고 심의기구인 이사회 이외에도 차관급 회의체인 고위관리위원회(GECEX-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 주재), 사무국, Conex(민간자문위원회), Cofig(수출금융보장위원회), Confac(무역예로완화위원회), Coninv(투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지난 4월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서비스로 이관되었다.

2. 대외무역국(SECEX): 산업통상서비스부 조직으로 브라질 대외통상 정책 제정, 보호무역, 통상협상 등 대외통상 기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3. 관세청(SRF):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입 허가, 통관, 무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4. 외교부: 브라질 무역 진흥 지원 및 국가 외교정책에 따른 무역협상을 전담한다.
5. 국가통화위원회(CMN): 모든 대외거래와 관련된 국가정책(금융거래, 신용, 예산, 회계, 외환 등 국가 채무 정책)을 총괄하며, 재무부장관, 기획개발관리부장관 및 브라질중앙은행장이 구성원이다, 브라질중앙은행이 동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관세 장벽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다(2012년 7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들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분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된다. HS코드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는 2017년 10월 기준, 총 10,029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다. 2016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11.60%이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평균 8~9%)나 반가공품(평균 11.9%)은 완성품(평균 15.8%) 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최근 5년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율

년도	품목 개수	평균 관세율(%)
2012	10,026	11,60
2013	10,029	11,61
2014	10,031	11,61
2015	10,027	11,60
2016	10,029	11,60

출처 : 브라질산업통상서비스부

대외공동관세 적용의 예외로서,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제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를 정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기로 하였다.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는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 운영기로 하였으나, 2015년 7월, 메르코수르는 2021년 12월까지 연장기로 결정하였다. 동 제도 도입으로 브라질의 경우,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복잡한 조세체계

브라질로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자(또는 판매자 등)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수입관세(I.I), 공산품세(IPI), 사회보장세(Pis/Cofins)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상품유통 및 서비스세(ICMS)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산품세(IPI)의 경우, 국산제품은 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 통관 시에 부과된다. 공산품세는 부가가치세이므로 판매시점에 최종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추후 매입세액(통관시지불한 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다. 공산품세는 브라질 내 최종소비자에게 얼마나 긴요한 품목인가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최저 0%에서 최고 300% (담배 등)까지 적용한다.

사회보장세(Pis/Cofins)의 경우, 과거에는 국산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05년 4월부터는 수입제품에도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Pis/Cofins 세율은 품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부과금액은 각각 CIF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국산제품과 수입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수입제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CIF+관세+공산품세+사회보장세가 적용된 가격(유통세 산정기준 가격)에 부과되는 데,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간단한 계산방식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세 산정기준 가격에서 (1-세율)을 나눈 다음 유통세율을 곱하면 정확한 유통세가 산출된다. ICMS는 공산품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ICMS 세율은 주별로 상이하며, 12~18%이다. 주 경계 밖으로 상품이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 주정부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상품이나 건설 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 및 가스연료, 국내생산기계와 장비제품에는 ICMS가 면제된다.

아래의 계산은 기초화장품(HS Code 3304.99 제품) 가격을 100불로 가정하고 세금을 누진 적용하여 대략적인 최종가격을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세후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송비, 보험료,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 사용료 등 기타 비용도 포함해야한다.

▶ 브라질로 제품 수입시 부과 세금(예)

CIF 가격	100	USD
수입관세 (I.I)	18	%
공업세 (IPI)	22	%
유통세 (ICMS)	18	%
사회통합기여금 (PIS)	3.52	%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17.48	%
Exampl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 산정기준(base): CIF 가격	100.00	USD
수입관세 (I.I)	18.00	%
수입관세 산정가격: (CIF*수입관세율)	18.00	USD
공업세 산정기준: (CIF+I.I)가격	118.00	USD
공업세 (IPI)	22.00	%
공업세 산정가격: (CIF+I.I)*공업세율	25.96	USD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기준: CIF 가격	100.00	USD
사회통합기여금 (PIS)	3.52	%
사회통합기여금 산정가격: CIF*PIS율	3.52	USD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기준: CIF 가격	100.00	USD
사회복지기여금 (COFINS)	17.48	%
사회복지기여금 산정가격: CIF*COFINS율	17.48	USD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PIS+COFINS) 가격	164.96	USD
유통세(ICMS)	18.00	%
유통세 산정 가격(CIF+I.I+IPI+PIS+COFINS)/1-유통세율} *유통세율	36.21	USD
최종가격((CIF+I.I+IPI+PIS+COFINS+ICMS)	201.17	USD

세계은행 발표자료를 보면 브라질이 세금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600시간으로 OECD 국가의 187시간 대비 14배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기업으로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절차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서비스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만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은 1997년 1월부터 동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007년부터는 무역자동화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수입 관련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 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급 기간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 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그 이후 2011년부터는 수입 절차가 한 단계 더 개선되어 특정품목 제외하고 다수 일반적인 수입 품목은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입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출업자가 수출 수출품목에 대하여 특정품목 또는 일반품목인지 사전 확인
- 2)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Invoice 발송
- 3) 수입업자가 남미공동시장 공동상품코드 (NCM: Common Mercosur Nomenclature)에 맞춰 수입상품 분류
- 4)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상업송장을 발송
- 5) 화물 도착 (운송사는 브라질 세관에게 화물 도착 알림)
- 6) 수입통관업자는 SISCOMEX를 통해 수입신고를 이행하고,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내국세와 통관비용을 지불

7) 화물 위험평가(risk assessment method)를 통해 4개 채널(녹색, 황색, 붉은색, 회색)로 분류

8) 화물 통관

브라질에서 통관 대행업체들이 모든 통관절차와 세금 납부 처리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수입신고 절차는 위험평가방법(risk assessment method)에 따라 아래 4개 채널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1) 녹색 : 자동 통관

- 전시회를 비롯하여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

2) 황색 :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검토

3) 적색 : 서류 정보 일치여부 검사 및 화물 실사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함.

4) 회색 : 서류 및 화물의 심층 실사(fraud-related inspection)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 2014~2016간 채널 분류 통계 (%)

채널	2014	2015	2016
녹색	88.98	91.02	92.06
노란색	7.16	5.08	3.79
붉은색	3.77	3.77	4.07
회색	0.09	0.09	0.08

통관 절차 소요시간은 원칙적으로 48시간 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험 평가방법의 회색 채널로 분류된 화물은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통관비용은 반입품의 Gross Weight, Net Weight 그리고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IT Software를 저장한 외장하드디스크의 경우 본 무게는 1kg 미만이지만 상품가치가 높아 10kg의 자동차 부품과 비슷한 통관비용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의 파업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17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교역 분야에서 비교대상 190개 국가중 149위(한국 32위)로 여전히 통관관련 애로가 존재하고 있다.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의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7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2,275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요인은 열악한 항만 시설에 따른 적체, 통관 분야의 관료주의 및 관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수출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싱글 윈도우 프로그램(Single Foreign Trade Portal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2018년에는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 수준에서 40% 감축하여 10일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 수입규제 품목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 수입 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물, 의료 및 군수 물자 등 일부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 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 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 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 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 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중고기계와 장비수입이 보다 용이하게 이 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재생중고기계에 대한 관세율은 신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라질은 수입제품의 관세, 환율, 영사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벌칙과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쿼터 대상 품목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 모든 중고 상품
-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브라질은 1994년 이후 GATT 및 WTO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총 388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중 95.6%인 371건이 반덤핑, 2.84%인 11건이 상계관세, 1.55%인 6건이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조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208건, 미국 38건, 인도 21건, 멕시코 14건, 한국 독일 각각 13건, 대만 12건, 남아공 11건, 태국, 러시아 각각 10건 등이다. 브라질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1) 플라스틱 및 고무(26%), 2) 화학제품(20%), 3) 금속제품(17%) 4) 시멘트·유리·세라믹 11% 순이다.

최근 브라질의 수입규제 조치 건수를 보면, 2011년 15건, 2012년 16건, 2013년 43건, 2014년 42건, 2015년 36건 등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가 지속됐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이 대폭 감소되면서 2016년 수입규제 조치는 28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됐다.

2017년 10월 기준, 브라질은 36개국, 74개 품목(86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7개국, 8개 품목(10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 중으로 총 82개 품목(96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 또는 조사 중으로 대표적인 수입규제 국가이다.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실무는 산업통상서비스부의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CAMEX), 반덤핑관세 징수는 관세청(SRF)에서 담당한다.

대외통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무역구제국의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CAMEX 내 기술그룹인 GTIP의 공공이익 검토를 거쳐, 산업무역서비스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운영위원회(GECEX)에서 결정된다.

2017년 10월말 기준,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10건으로 PVC(염화비닐수지), 철강 3개 품목(실리콘강판, 후판, 냉연강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폴리프로필렌 수지, 버스트럭용 타이어, 페라이트 자석, PVC 코팅 직물 등이며, 현재 조사 중인 품목은 니트릴 고무 1건이다.

▶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 현황

구분	구분	업종	품 목	조사 착수	결 과
2009년 까지	1	섬유	인조합성사	1993.11	1994.12, 무혐의 판정
	2	섬유	나일론6번사	2000.1	2001.6, 덤핑판정(5.2%), 2006.6 종료
	3	철강	스테인리스강관	2000.6	2001.5, 무혐의 판정
	4	화학	PVC	2001.11	2002.11, 무혐의 판정
	5	섬유	폴레에스테레진	2004.3	2004.7, 무혐의 판정
	6	화학	PVC	2007.9	2008.8, 덤핑판정(2.7%),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 유지 판정(2014.9월)
2010년	7	화학	SBR(부타디엔)고무	2010.6	2011.6 덤핑 판정, 2016.6 종료
	8	철강	도금강판	2010.8	2012.9 무혐의 판정
	9	화학	NBR합성고무	2010.10	2012.3 무혐의 판정

구분	구분	업종	품 목	조사 착수	결 과
2011년	10	철강	도금강판	2011.4	2012.9 조사 중단
	11	화학	폴리카보네이트수지	2011.12	2013.6, 무혐의 판정
2012년	12	철강	실리콘 강판	2012.4	2013.6, 덤핑 판정
	13	철강	냉연 강판	2012.4	2013.10 덤핑 판정
	14	철강	후판	2012.5	2013.10 덤핑 판정
	15	섬유	나일론사	2012.7	2013.12 덤핑 판정
	16	화학	승용차용타이어	2012.7	2014.1 덤핑 판정
2013년	17	화학	액상애목시수지	2013.1	2013.12 조사 중단
	18	화학	폴리프로필렌수지	2013.3	2014.8 덤핑 판정
	19	화학	버스트력용타이어	2013.6	2014.11 덤핑 판정
2014년	20	화학	MDI 폴리머	2014.6	2015.3 조사 중단
	21	철강	Ferrite Magnet(자석)	2014.6	2015.4 덤핑 판정
2015년	22	화학	PVC 코팅 직물	2015.3	2016.6 덤핑 판정
2016년	23	화학	니트릴 고무	2016.6	조사 중

품목별 장벽

자동차

2011년 12월 브라질정부는 수입차 급증에 따른 내수시장 보호 및 기술 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자동차 제품(48개 세번)에 대해 30%에 달하는 공산품세(IPI) 인상과 동시에, 국산부품 65% 이상 사용 및 브라질 현지 생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세 인상 면제를 부여하는 조치를 도입(12년 12월 31일 만료)하였다. 이후, 동 조치를 대체하는 중장기(2013~2017) 자동차산업 육성 시책(“INOVAR-AUTO” Program)을 도입,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1)연구 2)기술개발 3)기술혁신 4)전략적 투입요소(strategic inputs)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신용을 통해 공산품세를 공제 받도록 하고 있다.

INOVAR-AUTO 프로그램은 브라질 현지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기업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정책은 2017년 8월 WTO 패널이 내국민대우 등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회람하였으며, 현재 양측(일본, EU, 브라질)모두 상소를 통보한 상태이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17년 12월 31일자로 동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며, 친환경 규제정책(ROTA2030)을 신규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브라질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수출 증진을 위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및 멕시코, 콜롬비아 등 태평양 동맹(PA)국가와도 개별적으로 자동차 협정을 체결하여 일정대수 및 수출과 수입의 비율을 설정하여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등 선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제품

브라질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인증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구매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3개 분야로 분류된다.

- ① 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 ② 통신용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장비 등)

- ③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중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석유제품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공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의약품, 의료용구 및 가공식품 등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건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국)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對 브라질 시장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VISA는 연방법(법률10,742/2003)에 따라, 의료용구를 등록하려는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출시 예정가격 등 제품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수입규제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청량음료, 가연물질, 항공기, 위험물질, 살충제 기타농약, 애완동물용 사료도 관계부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의 신규 제출 제도를 2010년 5월 도입하고, 2010년 1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Busan Branch), 한국식품연구원(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주)한국분석기술연구원

(Korea Analytical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Co. Ltd),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Korea Health Supplements Institute) 5개 기관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브라질 농림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수출 지원 정책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촉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출지원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7년 10월, 브라질 정부는 법률 11,529호에 의해, 해알화 강제로 타격 받는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 조치를 부활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특정 산업(섬유, 가구, 장식용 석재, 목재, 가죽, 중장비·농업기계,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동 법률에 의거, 이러한 조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전 수출업체로 확대되었다. 9.25%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업 수입의 70% 이상이 수출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된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동 의무 수출비율이 60%로 낮아졌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을 수출하는 브라질 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서, 3년 이상의 기간 중 수출비중이 총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역시 감면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브라질은 베른협약, 워싱턴협약(Washington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등에 서명한 바 있다. 2001년 공포된 법률 제10196호는 의약품의 특허 신청에 앞서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공포된 법률 제10603호는 수의약품, 비료, 농약 및 관련 특허 상품이 등록 후 2년 내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등록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라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보호법은 1997년 5월에 발효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브라질은 1998년 법률 제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을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저작권보호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음향 및 영상 상품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바, 최근 브라질 산업연맹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브라질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양의 불법복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CD로 나타났다. 2위는 DVD이며, 3위는 각각 6%를 차지한 안경과 시계로 나타났고, 그 밖에 의류, 제화, 가방, 장난감 등이 대량 불법 복제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CNCP (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년 5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브라질 특허청인

INPI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2015년말 기준, 브라질 특허청(INPI)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23,952건으로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INPI)이 발급한 특허건수는 2010년 3617건, 2011년 3801건, 2012년 3137건, 2013년 3326건, 2014년 3123건, 2015년 3895건, 2016년 4771건으로 최근 2년 동안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바,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SEBRAE(중소기업진흥청)과 브라질 특허청은 2016년부터 영세기업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6개월 이내로 특허를 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브라질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제한적인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인 적용,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음향 및 영상서비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수

액의 11%를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될 경우,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영화 및 TV 프로그램 필름이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 및 텔레비전시장에서 사용되는 컬러 프린터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국내 영화의 스크린 쿼터도 유지되고 있다.

방송

외국인의 브라질 유선사업 참여시 49% 이내로 지분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회사는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갖고 과거 10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한다. 브라질은 텔레비전(non-cable) 분야 등에 외국인 투자 참여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2년에 법률 제10610호를 제정, 브라질 내 인쇄 및 공중파TV 방송미디어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프로그램의 80%는 국내 영상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브라질의 통신 분야는 외국인 참여 지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이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1998년 7월에는 국영전화회사(Telebras)가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어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제정된 일반통신법은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에 있어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항과도 관련되어 있어 조만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의 경우 브라질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정보 통신청(ANATEL)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전화 접속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에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96년에 브라질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설립된 보험회사들과의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재보험은 1939년 이래 브라질 정부 소유의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왔다. 그러나 2007년 1월,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을 해제하였다. 동 법률은 브라질 내 재보험회사의 종류를 ①브라질 내에 등록사무소가 있는 국내(local)사업자, ②해외에 등록사무소가 있고 브라질 내에 대리사무소가 있는 인정(admitted)사업자, ③브라질 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eventual)사업자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재보험에 대한 정부독점이 해제됨에 따라, IRB는 국내사업자의 하나로서 남게 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게 되었다.

브라질은 은행, 증권서비스를 비롯한 비보험 금융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1997년에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헌법은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외국소유 은행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금융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9년에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 은행의 확장이나 지분 매입을 통해서만 허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한 후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투자 장벽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법 4131(Lei 4131)에 따라 외국자본도 국내 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부여하는 투자유치는 마나우스자유무역지대(ZFM)나 북부지역 투자 우대 정책 등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분야별로는 인프라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조건 및 혜택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별 투자유치정책인데, 브라질의 주정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투자 제한은 2015년 대폭 완화되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 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브라질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은 브라질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 내용 등을 일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

분 야	내 용	기 타
지하자원, 광산, 광물자원 및 수력 에너지의 개발·이용	투자를 위해서는 광업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광산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허용됨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 분야임.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항공·우주산업	헌법상 외국인투자 금지	
핵에너지 개발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제21조 23항)에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투자 금지
연안 수상 운송업	브라질에서 건조되어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해당기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항만 관리청의 사전허가 필요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등 언론 분야	소유나 경영에 대한 헌법(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방송사 자본과 의결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즉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총 의결주의 30%까지만 가능하되, 브라질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음.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사 의 경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경영관리 직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맡을 수 있음
케이블 TV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
농목업, 삼림 소유 및 국경지대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님.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여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음. 법률 제5709호(1971.10.7)	이 규정은 외국인, 외국법인이 지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데 기업 간 합병이나 투자자의 변동 및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
국내 항공운송	제한규정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의결권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됨. 임원의 3분의2 이상이 브라질 국민이어야 함

분 야	내 용	기 타
육상 화물 운송	육상화물운송회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을 넘어서는 안 됨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함
금융업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브라질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기관은 브라질 은행과 금융기관의 의결주(voting shares)의 30%까지만 소유가 가능함(법률 제4131호/1962, 제51조)
우편, 전보서비스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으로 규정(헌법 제21조)	
보험	보험분야는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외국인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요. 주요 미국보험회사들이 J/V형태로 브라질의 보험업계에 진출함
보건서비스 분야	-	2015년 연방법 13.097에 의해 M&A를 통한 외국인의 보건분야 투자가 허가됨.

투자실행상의 제약 요인

(1) 법적·제도적 문제점

단일화된 외국인 투자법이 없고 분야별로 법들이 산재해 있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관련 내외국인 불평등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정부조달시 차별적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취약 등 WTO 기준에 미달하는 분야도 다수 존재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 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법규 및 세제의 복잡함 및 빈번한 개정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정부가 거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3%(2017)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4)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의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국산화 정책은 특히 심해져 유전 개발을 위한 시추선 건조와 관련하여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공급이 어려워 유전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현 Temer 정부는 육상(on-shore)의 경우 약 50%, 해상(off-shore)인 경우 약 25%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국산부품 사용(PPB: Processo Produtivo Basico) 요구 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나우스 무역 자유지대(ZFM) 관리기관인 SUFRAMA 사이트(www.suframa.gov.br)에 접속하면 PPB와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금융 및 외환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대외과실 송금 시 당해 이익금에 대해 기지급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등 추가소득세는 최근 3년간의 대외 과실 송금액(소득세 및 송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송금액 기준)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소정의 가산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자국민과 동일하게 현지 외환 구좌개설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외환은 90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브라질 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수입세외에 공산품세(IPI), 소득세(IR), 금융거래세(IOF), 지방토지세(ITR), 순이익에대한기여금(CSLL), 사회통합프로그램(PIS/PASEP), 그리고 급여 기여금 등을 들 수 있다.

주정부 세금으로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등이 있다. 시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서비스세(ISS), 토지가옥세(IPTU), 재산이전세(ITBI) 등이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CPMF(수표발행세로 1996년~2007년까지 적용) 재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의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동 CPMF 도입의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기타 장벽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지사 설립대신에 현지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는 지사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무역서비스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지점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 기간은 보통 3~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점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장기체류를 위한 상사 주재원의 비자발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즉, 상사주재원의 경우 일단 임시 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브라질 노동부의 체류허가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주한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통상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에콰도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2016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4억 3,424만 달러, 수입은 약 9,424만 달러로서 약 2억 9,926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에콰도르 양국관계는 2010년 9월 에콰도르 Correa 대통령 방한 이후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 왔으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은 2010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출규모가 에콰도르에 비해 월등히 큰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에콰도르로부터의 석유수입 재개로 인해 비대칭적 구조가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했으나 최근 원유수입 중단으로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액이 다시 감소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에콰도르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에콰도르가 2014년 말부터 국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수입쿼터제, 세이프가드(2017년 6월 종료) 등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2016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4억 3천만 달러에 그쳤다.

2016년 한 해 동안의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주요 품목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유기화합물 등이 차지하였으며, 특히 전년대비 방송수신기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2016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 품목은 대부분 농수산물으로 이 중 새우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이 밖에 바나나, 동괴, 코코아 등이 주요 수입 품목이다. 2000년 초반까지 주요 수입 품목이었던 원유는 추가 정제시설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수입이 중단되면서 對에콰도르 수입도 9,4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에콰도르 역시 2021년까지 생산 가능한 원유의 대부분을 입도선매

방식으로 이미 중국에 판매하였기 때문에 현재 한국으로 수출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당분간 에콰도르 원유의 한국수출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와 같이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에콰도르 주요 수출품이던 원유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에콰도르 국내 경기 침체와 수입제한조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對에콰도르 수출량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무역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바, 에콰도르 정부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우리 정부에 적극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 양국간 교역 현황(2011년~2016년)

(단위 : 천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출	861,895	856,768	919,924	811,542	641,282	434,241
수 입	30,634	39,507	48,399	342,493	245,724	94,246
무역수지	856,135	817,261	817,525	469,049	395,558	299,267
교역규모	917,402	896,275	968,323	1154,035	887,006	528,487

▶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상위 5대 품목(2016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5		2016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승용차	141,578	-25.9	102,172	-27.8
2	자동차부품	106,554	-2.2	72,349	-32.1
3	엔진부품	15,919	-36.5	18,914	18.8
4	방송수신기	6,622	-	17,675	166.9
5	액정디스플레이	15,309	-	15,918	4.0

▶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 상위 5대 품목(2016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순위	품목명	2015		2016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새우	46,549	5.5	51,285	7.8
2	바나나	4,477	18,214.8	21,284	347.5
3	동괴 및 스크랩	13,267	58.4	14,744	72
4	코코아	1,231	-0.3	1,249	1.5
5	동광	-	-	747	0.0

▶ 우리의 對에콰도르 투자

(단위 : 천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신고금액 (건수)	26,519 (25)	1,719 (38)	5,443 (52)	11,575 (30)	257 (9)	11,822 (154)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최고기구는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대외무역위원회(COMEX)로써 FTA,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Safeguard) 등 무역 전반에 걸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안데스 공동체는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베네수엘라는 2006년 4월 탈퇴하였으며, 칠레는 2006년 9월 준회원국으로 가입)로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대외단일관세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는 2004년 10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상호 경제보완 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No.59)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진행된 EU와의 통상협정은 2014년 7월 17일 최종 타결되어 2016년 11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서 에콰도르 주력 수출품인 바나나, 참치, 새우 등의 농수산품이 유럽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EU로부터는 주류, 노트북, 건축자재 등이 무관세로 에콰도르에 수입되고 있다.

에콰도르는 그 외에도 중남미통합연합(ALADI)의 회원국으로서 무역특혜를 받고 있으나,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누렸던 안데안 무역특혜 및 마약 퇴치법(ATPDEA)이 2013년 7월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29일, Obama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로써 과일, 농산물, 목재, 특정섬유, 세라믹, 비금속광물 제품과 화훼(장미 제외) 등 약 275개의 제품이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지난 Correa 정부 이후 에콰도르는 미국과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2009년 미군의 만타 공군기지 사용협정 갱신 불허 및 2012년 미국의 기밀문서 폭로로 수배를 받고 있는 Julian Assange의 주영국 에콰도르대사관 망명 허용 등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해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의 에콰도르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2013년에는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32%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은 에콰도르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2017년 말에 동 제도가 종료되기 전에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에콰도르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는바, 최근 에콰도르 정부는 동 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좌파성향의 개발경제학자 출신의 꼬레아(Correa) 대통령 정부는 타국과의 통상협정체결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하고, 제한된 범위의 통상협정, 개발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정부분야의 대화 등 3개 분야를 합친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Acuerdo del Comercio Para el Desarroll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무역협정과는 다소간 개념의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주변 경쟁국들이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의 통상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자국의 대외 무역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꼬레아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 정책을 전환하여 2013년 4월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대외무역부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4년 7월 EU와의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등 WTO 규범에 근거한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 Moreno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무역 수출 증대와 관광산업진흥을 목표로 주요경제블록 및 관심국가들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 8월 25일, 서울에서 한국과 에콰도르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상개시선언을 하였다. 이후 2016년 1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1차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 11월 5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오다, 2017년 들어 양국 대선 등 정부교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쿼터

1995년 WTO 가입시 에콰도르는 양허각서목록을 채택, 발효시켰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30% 내외의 관세 상한선을 수정한 것이었으나 실재는 안데스 공동체의 무역규범의 적용으로 물품별로 0%, 5%, 10%, 15%, 20%의 관세를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3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제도를 2015년 12월 29일에 결의한 49호를 통해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기,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수입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에 적용함.
- 가전제품 및 각종 잡화 관세 인상: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상품가격당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카메라 0% → 25%
- 텔레비전 5% → 5~20%
- 주류 20% → 알코올 도수당 \$0.25
- 면류 20% → 30%
- 세탁기 15% → 25%
- 오디오 5% → 20%
- 담배 15% → 20%
- 가방 20% → 30%

해외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주류와 가전제품, 휴대전화기, 컴퓨터와 같은 첨단 기술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2014년 1월 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 세관(SRI)은 고시 115호를 통해 신규 관세안의 세부 적용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본 조치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거의 모든 수입물품의 무게에 따라 10센트의 관세를 부과된다.

동 신규 관세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수입물품 총 중량(g)/품목별 산출단위(g))*\$0.10

에콰도르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밀수방지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정부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신규 조치가 에콰도르 현지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부품 등 중간 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에콰도르 수입업자 및 생산업체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이프가드

2015년 3월 11일,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악화를 해결하고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약 2,800개(수입제품의 약 32%)의 수입제품에 5~4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정책을 발표 및 적용하였다. 동 제도에 대해 WTO 국제수지위원회 등에서 다른 나라들이 반대 입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관세를 낮춰 동년 6월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예고했으나, 2016년 4월 에콰도르 북서부 강진을 이유로 1년 더 연장하였으며, 이후 단계적 조정을 거쳐 2017년 6월에 종료하였다.

에콰도르는 관세 산출에 있어 참조가격(reference prices)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상의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자의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으며, 1999년 2월 행정명령 제 609호의 발동으로 Safeguard 조항 설치, 추가 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이외 수입부과금은 아동발전 기금이 CIF가격의 0.5%, 수입물품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에콰도르의 통관절차는 2007년 이전에는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평균적으로 약 6~7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2011년 싱글윈도시스템을 수출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에콰도르 관세청(SENAE)은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동 시스템과 정부 18개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동 시스템 활용으로 무역 및 관세 관련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은 수출입물품 통관시 기존 세관운영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해 신규 시스템 도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콰도르 국내에서의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번호(RUC)를 교부 받는다.

(2) 관세청(SENAE: Servicio Nacional de Aduanas)에 수입업자 등록을 한다.

- 2011년 8월 26일자 산업생산부는 대외무역위원회의 결의안 17호를 발효 조치함에 따라, 51개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업자는 동 물품의 선적에 앞서 사전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산업생산부(MIPRO)에서 검토 및 인가를 주관한다.

- 에콰도르 재계의 강한 우려와 수입업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 2011년 9월 1일 일부 항목을 완화하는 결의안 24호를 발표하였으며 일부 타이어, 냉장고 관련 항목은 수입 허가 없이 수입 가능하게 되었다.

(3)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금지 품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2003년 4월 대외무역 및 투자위원회(COMEXI)의 결의 제182호를 참조해야 한다. 이는 상품분류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분류된 상품의 성격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 전 허가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 선적 전에 상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식약청이 발급하는 증명서(Registro Sanitario) 없이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4) 수입품목에 따라 관련 부처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5) 결의안 17호에 명시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검토 및 수속 기간은 60일 이내 처리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 선적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률은 0%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 통합 연합(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들을 준수한다.

국제우편 무게 및 횡수 제한(4X4)으로 샘플 송부 애로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4kg이하 400불 이하 물건에 대해서는 횡수에 제한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에콰도르 섬유협회 등은 에콰도르 내 상인들이 마이애미에 주소를 둔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횡수에 상관없이 의류 및 신발류, 전자제품을 들여와 국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편물의 도입 제한을 요청하였다.

이에 에콰도르 세관은 2014년 10월 9일부터 국제특송업체를 통한 배송 물품 중 무게 4kg, 금액 400불 이내의 화물에 대해 42불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 물품종류를 불문하고 관세를 부과하며, 42불의 통관 수수료를 적용받는 화물은 연간 5개, 1200불 이내로 제한하여 초과할 시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더불어 4kg을 초과하는 소포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여 장시간이 소요되기에 상기 규정(4x4)을 초과한 회사 홍보용 카탈로그, 샘플 송부시 수령 자측과 관세를 누가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기 4x4규정은 주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의류 및 신발류 등 상품을 소규모로 들여와 상품화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세계 우편제도(EMS)를 통한 상품 수입은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물건들은 우편제도를 사용하면 관세 및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통상협정국(관세혜택)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안데스 공동체(CAN) 등 여러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는 2011년 12월 제42차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 회의에서 정회원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정회원국 가입신청을 4개 회원국들이 수락하면 정식 가입협상을 거쳐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베네수엘라의 경우 4년간의 협상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6년 12월에는 EU와 통상협정 협상 발효로 2017년 1월부터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으며,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며 공공조달시장에서도 EU 기업들이 특혜를 받게 되어, 우리 기업의 대 에콰도르 주력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 및 의약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한-에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표준, 검사 및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에콰도르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 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품목은 INEN 규정에 따라 수입 시 에콰도르 국립표준원(INEN)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에콰도르내에서 품질인증서 발급 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에콰도르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안데안 공동체 국가들은 동 조치가 안데아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안데안(CAN) 사무국에 제소하여 2014년 8월 결의안 1695호를 통해 에콰도르의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에콰도르는 이에 불복하여 안데사사법재판소에 재항소하는 등 역내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식의약품은 국가위생감독관리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y Vigilancia Sanitaria)에서 분석 후 유통허가(Registro Sanitario)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로우나, 2014년 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를 부여하여 우리 의약품의 경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약품의 대 에콰도르 수출에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약품 수입절차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기간은 품목에 따라 약 3개월에서 3년간 지연되기도 하는 등 의약품 인증 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제출로만 심사하는 반면, 담당자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 증명서를 요청받을 우려가 있다.

에콰도르 국가교통안전국(ANT)는 2013년 8월 2014년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정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자동차최소안전규정 개정은 당초 2013년 10월 23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에콰도르 CKD 자동차 조립회사 등 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늦어져, 2014년 10월 6일 관보를 통해 발표된 이후 2015년 9월 10일 몇 가지 사항이 수정되어 발표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에콰도르에 수입 및 생산되는 자동차는 이전보다 많은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됨에 따라 수입가 상승, 생산설비 증대 등 원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는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관련 규제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7일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2년 6월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년 6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 공지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 하고도 통관이 불가능하여 혼란을 겪었다.

품목별 장벽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에 따라 에콰도르는 중고 의류,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파충류, 상아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 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가스사용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까지만 제공될 예정이며, 최근 에콰도르 정부는 가정용 주방 조리 기구를 인덕션(INDUCTION)으로 교체하는 가정에 대해 2018년까지 일정 부분 전기요금 면제 및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밖에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시 이에 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 관세청에 단일공급자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RUP 신청서
-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등록증 및 번역문(아포스티유 받은 것)
- 재정증명서

- 지정한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은 사본 제출 전 회사등기소에(Registro Mercantil)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청(IEPI)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여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적 재산권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허는 등록 후 20년 실용신안은 10년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CD/DVD 불법복제 판매가 난무하고 있으며, 2008년 초부터 정부는 불법복제 판매원들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투자 장벽

개관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EL Código de la Producción, Comercio e Inversiones)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에도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투자의 경우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에서 납세자 등록번호(RUC)를 교부 받은 후 시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사업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순이익 중 15%를 종업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피고용인 보호 위주의 노동법으로 노조의 파업도 빈발하여 현지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따르며, 관련 분야로의 외국자본 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 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상기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2008년 9월 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후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들어 그간 외국정부와 체결한 13개 투자보장협정의 폐지 추진 및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의 일방적 탈퇴(2009년 6월 12일) 등으로 투자 외국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지난 2010년 12월 29일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신규투자(또는 재투자)를 할 경우 다양한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odig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을 시행하고 있다. 동 투자법에 나와 있는 주요 혜택은 25%의 법인세를 연 1%씩 총 3% 인하하여 2013년 이래 22%의 법인세 납부, 현재 5%로 부과되어 있는 해외송금세의 약 1년간 면제, 기술혁명 분야에 재투자 시 10%의 세금감면 등이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대덕연구단지를 모델로 한 야차이(Yachay)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외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시 Yachay 토지 제공, 법인 설립, 비자 등 행정절차 편의 제공, 고급 기술 적용 장비의 수입 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페루, 콜롬비아 등 주변 경쟁국들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에콰도르 정부는 2015년 10월 유가하락 및 달러화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해외·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및 민관협력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민관합작법(Public Private Alliance Act)을 제정한 바 있으나 효과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제상의 제한

일반적으로 2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투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해외도피 자금방지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에 2008년부터 0.5% 부과하던 해외 송금에 대한 송금세를 2009년 11월 2%로 인상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2012년 11월부터는 동 송금세를 5%까지 인상, 적용하고 있다.

기타 장벽

에콰도르는 법과 제도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사회로서 경제체질이 불건전하고 불신과 부패 등이 만연하므로 투자진출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빈번한 정책변경 및 관련 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국제입찰 사업추진 시, 재원을 수주측 조달조건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국제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있다. 그 외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에콰도르 투자에 있어서의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약칭 반독점법으로 불리는 시장능력 통제 및 규제법안(Ley Organica de Regulacion y Control del Poder de Mercado)이 2011년 10월 1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의 시장 개입권한이 더욱 확대되어 에콰도르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은 물론 개인업자 상품의 시장가격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분야에 규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 애로사항 관련 공관 해결 사항

- 에콰도르정부는 코레아 대통령의 전기차 사업 추진에 대한 선거공약 실현,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절감 등을 목표로 2015년 2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법령을 공포했으나, 기술적, 법적,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동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다.
- 이에 주에콰도르대사관과 코트라 키토무역관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 우리기업들이 주재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2015년 8월 에콰도르 정부기관 전기차 관계자들을 초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시범도시로 선정된 꾸엥까지의 사전타당성조사에 우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2016년 3월 동 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EDCF 정책협의회가 우리정부 대표단과 주재국 관계부처간에 개최되었으며, 상기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8월부터 꾸엥까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타당성조사가 진행하여, 2017년 9월에 타당성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에콰도르의 최근 5년간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GDP(십억 달러)	72.9	93.6	101.0	106.8	100.4
실질GDP 성장률(%)	5.0	4	3.8	1.5	-1.7
인플레이션(%)	4.2	3.02	3.70	3.5	1.1
인구(백만 명)	15	15	16	16	16
수출(백만 달러)	23,764	24,878	25,724	18,330	16,797
수입(백만 달러)	24,181	25,979	26,447	20,460	15,550
무역수지(백만 달러)	-417	-1,101	-723	-2,130	1,247
외환보유(백만 달러)	2,482	4,360	5,557	5,915	3,973
외채(십억 달러)	10.8	12.8	16.9	20.2	25.6
1인당 GDP(달러)	5,311	5,932	6,290	6,460	5,929
실업률(%)	4.9	5.6	4.9	3.7	4.7

출처 :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 에콰도르 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산업별 경제구조

에콰도르 산업구조는 2016년 기준 농업, 목축업, 임업 7.9%, 제조업 13.8%, 광산업 및 원유채굴 4%, 3차 산업 51.3%, 건설업 12% 등 이다.

원유 생산과 농산물 수출이 에콰도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출 품이 대부분 1차 상품이므로 이는 국제 가격 상승 및 하락 같은 외부요인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 시장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적다.

에콰도르의 석유 매장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82억 7천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다음으로 3위 매장량 국가이며, 생산량은 남미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아마존 열대우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야수니 국립공원지역

의 유전개발을 유보해 온 정책인 “YASUNI ITT 이니셔티브” 정책을 2013년 8월 폐기하고, 동지역 유전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야수니지역(Ishpingo, Tambococha, Tiputini)에 대한 유전개발을 통해 2021년부터 일일 최대 33만 배럴까지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Napo, Pastaza, Sucumbios)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서부 태평양 해안지방에서 소량 시추 중이다.
- 생산 : 일일 평균 57만배럴
- 수출 : 일일 평균 54만6천배럴

농업은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나나, 커피, 카카오, 과일의 현대적 대규모 농업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미 화훼는 중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였고, 연간 8억불 수출로 커피와 코코아 수출액을 초과하였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으로 연간 27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다. 바나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에콰도르 국민 10명당 1명꼴인 140만 명 정도이다. 에콰도르는 또한 세계 4위 새우 수출국이며 새우는 석유, 바나나에 이어 세 번째 외화 소득원이기도 하다.

에콰도르 관광은 석유, 바나나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국토는 좁으나 동서로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태평양상의 갈라파고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에콰도르는 개방적인 경제이나, 2008년 9월 신헌법에 따라 에너지·자원, 전력, 환경 등 전략분야에서 국가의 관여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출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원유 및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부문이 여타 경제부문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 수출 : 168억 달러(2016년 기준)

주요 수출품 : 원유(수출의 약 35%), 바나나, 수산물, 화훼, 카카오

수출 상대국 : 미국, 칠레,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 수입 : 162억 달러(2016년 기준)

주요 수입품 : 경유, 석유, 의약품, 자동차, 천연가스

수입 상대국 : 미국, 중국, 콜롬비아, 파나마, 브라질

엘살바도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엘살바도르는 빈곤 타파, 고용 창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외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 육성, 성장동력산업 육성, 중미 경제통합 및 관세동맹 진전, FTA 확대 등 국내산업 육성 및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1월 지식재산국가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식재산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투자를 위한 법적 안정화법, 2015년 10월에는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다.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미 6개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은 2015년 6월 18일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은 2016년 11월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2017년 3월 가서명을 거쳐 2017년 12월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다. 또한, 2017년 10월 엘살바도르의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가입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2016년 엘살바도르의 대세계 수출은 53억 달러, 수입은 9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역적자는 소폭 감소하였다. 엘살바도르의 주요 수출 교역국은 미국과 중미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엘살바도르 무역액은 2009년 세계경제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양국간 총 무역액은 1.4억 달러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6년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수출은 1.3억달러, 수입은 0.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무역흑자 규모는 1.15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엘살바도르 투자는 현지 법인수 14개, 누적 투자액 43,538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4년 9월 30일 미국-엘살바도르간 서명된 제2차 새천년원조기금(Fomilenio II) 사업 이행협정이 2015년 9월 9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인적자본 개발, 투자환경 개선, 물류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총 368.2백만달러가 투자되는 등 엘살바도르에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중미 북구 3국의 번영을 위한 동맹계획에 따라 97.9 백만불을 지원, 미국행 불법 이민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강화(68.6 백만불), △경제성장 및 인적자원개발(29.3백만불), △검찰 및 대법원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 관세제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 관세로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유제품, 쌀, 육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역내국간 무역에는 무관세, 대외적으로는 공동관세(최대 15%)를 실시하고 있다.

-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0%
- 생산되는 기초원자재 5%
- 생산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 10%
- 소비재 및 완제품 15%

- 의류 완제품(25%), 섬유(20% 이상), 자동차(25~30%), 일부 농산물(40%)에 대해서는 고관세 유지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IVA), 특별세(Ad Valorem) 등의 수입부과금이 운영되고 있다.

관세 부과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부가가치세 13%
- 특별세 30~39%

특별세는 총기류와 담배품목에 부과되며, 일부 예외품목으로 주류, 담배, 음료수 등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종량세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 결과 청색신호(green light)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red light)인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최저 20% 이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황색신호(yellow light)인 경우는 서류상의 검사만 실시한다.

엘살바도르는 2014년 1월 6일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서비스 수수료 18달러를 부과

하고 있다. 이 제도로 국경세관에서의 통관 지연은 물론 수출입 업자들에게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 규정(RECAUC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무기류, 화약류, 주류, 화학물질, 의약품 등에 한해 수입규제가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국가의 정치, 사회 및 경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책자 및 선전물, 외설물, 낙태용 약제, 마약류, 화폐제조기 등이 있다.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 할당관세(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한-중미 FTA 발효시 동 규제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불공정무역규제조약이 1996년 1월 12일 발효되어 시행 중이며, 주무기관은 경제부 무역협정관리국이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사례는 없다.

정부는 2015년 10월 6일 덤핑,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중미 지역 최초의 무역구제법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조사당국의 기능, 기간, 절차, 정보 요건, 무역구제국가시스템 창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 등록되어야 하며, 스페인으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유통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을 이유로 한 본격적인 무역규제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품목별 장벽

제조연도로부터 8년을 경과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륜 오토바이 포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을 경과한 버스, 15년을 경과한 중화물차는 수입이 금지된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나무 및 씨, 동전주조용 기계, 도박용 기계, 낙태 약품, 대구경 화기, 아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책자, 인쇄물, 영상물 등이 있다.

정부만이 수입할 수 있는 제한적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군용 비행기 및 함선, 방독면, 그리고 담배제조용 종이, 수입인지, 우표 및 니켈동전 등이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상품이 30% 이상 가치가 부가되도록 변형되어 증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되는 경우 상품가격의 6%를 환급해주는 drawback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가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1년 2월 1일 폐지되었다.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동 제도 역시 WTO 규정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폐지되어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법은 기존의 수출 기준 대신 입주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들에게 최대 20년간 소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다. 정부조달업무는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법(LACAP: 2000년 4월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재무부의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위원회(UNAC)’가 조달 관련 정책을 수립하나 각 정부기관이 실제 조달을 담당한다. 동 법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현 정부의 공개입찰 하한선(threshold)은 60,408달러(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240배)이다. 동 규모 이하 입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는 상품·서비스·건설 서비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엘살바도르는 WTO TRIPS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판권조약’,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의 서명국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식재산중진보호법(1993년 제정, 2005년 개정), 상표및여타특징적표시법(2002년 제정, 2005년 개정) 및 형법 등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국가등록센터’의 ‘지식재산권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련 법규에 의거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6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서 불법복제 DVD가 판매되는 등 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통한 시정 절차도 매우 느리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WTO TRIPS 협정과 동일하게 2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15년만 보호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호보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장벽

2007년 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한다.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국제서비스법 개정안이 2013년 1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영화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투자제한 범위를 좁게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종업원 증원 계획을 경제부의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3년 5월 민관 파트너십법을 제정, 공공서비스(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 제외) 및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계약 불이행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4년 5월 민관 파트너십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4년 12월 주요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정 계약기간(투자규모에 따라 5년~20년) 동안 간접세를 제외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부과 세금 면제, 체류자격 안정, 국외송금 자유 등 6가지 혜택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 법적 안정법”을 제정하였다.

지분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은 거의 없다. 다만, TV 및 라디오(AM, FM) 방송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케이블 TV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은 없다.

투자절차상 차별적인 조치나 제약은 없으며, one-stop 투자서비스 기관인 국가투자청(ONI)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내 신규투자 등록 시 16.5일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국가투자청(ONI)이 외국인 지사·사무소 설립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I는 또한 노동 관련 사항, 이민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등록센터(CNR)는 통합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여 지사 및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지사 설치 운영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2,000달러(기존 11,428달러에서 2008년에 2,000달러로 대폭 축소)로서 스페인어 계좌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행정인력 명단을 상업등록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회사 내규
- 회사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위임장(지사장 및 변호사)

위의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변호사 공증을 받은 다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Apostillo를 받아, 스페인어로 번역 후 엘살바도르 각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012년 5월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MiEmpresa.gob.sv” 사업을 개시, 최초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업에게는 일부 구비서류에 대한 온라인 발급 신청을 허용하였다.

외국인종업원 규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은 현지인을 최소 총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국산화 의무

외국투자기업에 국산화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수출이행의무 및 수출시 인센티브

‘투자법’은 투자자에게 일정 생산량의 수출, 기술 이전, 일정 수준의 현지 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수출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법’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WTO 협정 위반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월 면세혜택 기간을 15~20년으로 한정하고 이후부터는 감세 수준을 낮추면서 기업 투자수익 및 고용 실적에 따라 감세 범위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동 법을 개정하였다.

- 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기계, 장비의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
- 수출품 생산용 연료와 윤활유(국내생산분은 제외)에 대해 세금 면제
- 투자회사의 자산, 재산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면세
- 수출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국내시장에서도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수출촉진법’에 따라 투자기업은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동 상품 FOB 가격의 6%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동 제도는 WTO 협정 위반으로 2011년 2월 1일 폐지되었다.

부동산 취득 제한

198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연인이나 법인(내·외국인 불문)이 245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엘살바도르인에게 토지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토지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국외로의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자금차입 규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2001년 달러공용화(dollarization) 이래 저축 및 차입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중앙은행에 의해 신용(tax credit)이 부여된 은행을 제외하고, 해외에서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3) 금융거래세법 시행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투자 자원 확보 등을 위하여 2014년 9월 1일 금융거래세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거래(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 외교단 제외 등 다수 예외규정 포함)에 대해 0.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4) 세제상의 제한 : 세율상의 차별 여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IVA) 13%, 소득세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서비스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쟁정책

경쟁법은 가격담합, 생산제한, 매점, 끼워 팔기, 독점 등을 불법으로 규정,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장벽

장기체류비자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나,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장기체류비자(거주권)를 취득해야 한다. 투자법은 월 최저임금의 4,000배(2017년 최저임금 대도시 기준 월 \$300 → \$1,2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거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투자등록 후 30일 이내에 거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자 및 가족도 해당된다.

장기체류비자 발급제도

- 1년 기한 체류비자(최초 입국 후 5년간 5회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 발급)

- 5년 기한 거주권(5년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를 받은 경우 동 거주권 신청 가능)
- 임시체류비자(상기 1년 체류비자 등 기한 만료 시 3개월 유효 임시 체류비자 발급)로 구분된다.

이민국의 장기체류비자 발급시스템이 비효율적이어서 발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장기체류비자 만료에 따라 출·입국 시 벌금 부과,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불가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서류는 ①재무부 발행 조세납부자 신분증(NIT) 원본 및 사본, ②여권 원본 및 사본, ③거주증, ④한국운전면허증 원본, 공증한 사본, 공증한 번역본, ⑤시력 및 혈액검사증이다.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는 54.43달러이다. 2017년 추가된 항목으로는 ⑦심리검사(\$5.65), ⑧아포스티유를 받은 한국운전면허증(원본 및 사본)이다. 1년 기한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되며, 거주증 취득 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별도의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미국가 중 공무원의 부패가 비교적 덜하며 규율도 엄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자유무역지대 세관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하여 관련 기업과의 유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기업의 선물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만, 공항시설 부족에 따른 화물 적체가 빈발하여 수입물품 통관 시 신속 통관, 세금 경감 등 혜택을 빌미로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컨테이너 통관 시 무작위 검사 대상(세관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파란불은 통과, 빨간불은 검사)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업자와 세관원간의 음성적 거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탈로그/개인소화물에 관세 부과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 송부하는 각종 카탈로그에도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물론, DHL, Fedex 등 세계적인 물류업체는 통관업무절차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무료로 송부되는 카탈로그라도 최소금액을 표기하여야 부당한 세금부과를 막을 수 있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온두라스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 시장 확보와 교역 확대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타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 중으로, 최근 중미-멕시코 FTA(2013년 1월 1일 발효), 중미-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2013년 8월 1일 발효), 온두라스-캐나다 FTA (2014년 10월 1일 발효), 온두라스-과테말라 관세동맹(2016년 1월 발효), 온두라스-페루 FTA 협정(2017년 1월 발효)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한-중미 FTA(2017년 3월 10일 가서명)의 2018년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절차를 준비 중이다. 또한, 최근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모색하는 등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온두라스는 주변 중미국가에 비해 GDP 대비 수출 비중(20~23%)이 높은 국가로서, 매우 개방적인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조치도 상당 부분 간소화하였다. 또한, 2010~2015년간 「국가계획(Plan de Nacion)」 및 「국가비전(Vision de Pais)」에서 정한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통상부문 법률 제·개정, 경제개발 전담 부처(부총리급) 설립 등 자국 전략산업부문의 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온두라스의 수출 품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로 섬유 봉제 제품 위주의 마갈라 산업(임가공 수출산업)을 통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 바나나, 아프리카 팜유, 새우, 설탕 등 농수산물도 전통적인 수출 품목으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17년도 상반기 수출과 수입이 각각 25.46억 달러와 46.46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20.9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180만 달러) 감소

△2017년도 상반기 마끼라(임가공 수출) 산업부문의 수출액은 19.92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0.6%(전년 동기 수출액 19.81억 달러 대비 1.140만 달러 감소) 증가

세계은행에서 6가지 요소(통관절차의 효율성, 항만, 철도 등 무역 및 물류와 관련한 인프라 수준, 경쟁력 있는 운송비 책정의 용이성, 물류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역량과 수준, 화물 추적 서비스 능력, 예정된 기간내 화물이 인도 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격년마다 발표되는 국가별 물류 수준을 측정하는 물류 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160개국 중 112위(2014년 대비 9단계 하락)를 기록하였다.

▶ LPI 실적 순위(출처: 세계은행(WB), 연도: 2016년)

구분	2014(점수)	2016(점수)	2014(순위)	2016(순위)
LPI 점수	2.61	2.46	103	112
통관	2.70	2.21	67	126
인프라	2.24	2.04	124	143
운송비 책정	2.79	2.58	85	97
물류업체 수준	2.47	2.44	112	110
화물추적	2.61	2.54	101	99
적시성	2.79	2.91	121	108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5~2016년 및 2016~2017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온두라스는 전체 140개국 중 88위 기록, 순위가 2014~2015년 대비 12단계 상승하였는 바, 세계경제포럼은 온두라스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상승한 요인으로 그동안 온두라스 정부가 추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공 개혁 등 온두라스 정부의 다각적인 재정 개선 노력 등을 손꼽았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온두라스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세제(Co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Ley Nacional de Aduanas, Decreto No. 212-87)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옥수수 및 수수(sorghum) 수입에는 제한이 있는데, 가격 상한선제도와 정부 구매정책을 근거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15%에서 50%까지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자국 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농화학제품, 청소용품, 서적, 잡지,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수공예품, 그리고, 트럭, 트랙터, 크레인, 컴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킬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다.

※ 온두라스 의회는 2016년 8월 Hernandez 대통령 명의로 행정부가 제출한 「농업 분야 판매세(Impuesto sobre Ventas : ISV)」 면제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향후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업 원자재 및 기자재를 비롯하여 비료, 살충제 등과 같은 농업 분야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됨

온두라스 정부는 각종 면세혜택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차단 및 세원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조세법 및 관세법상 적용받는 모든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관련 신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맥주, 브랜드 등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해서는 1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외 세관 행정서비스 명목으로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온두라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수입을 할 경우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500달러(CIF 기준)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먼저 세관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입품이 반입된 지 20일 이후부터는 창고료가 부과되며, 반입된 수입품은 1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 창고로부터 물품반출 시에는 관세 및 창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로 시작되는데, 수입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청이 지정하는 통합세관신고서(DUA) (Declaración Única de Aduana) 종이서식에 채운 뒤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이후 국세청⁸³⁾ 웹사이트(www.sar.gob.hn)에 접속하여 관세(ADUANAS) 카테고리 중 SARAH WEB에서 관세수입자동관리시스템(Sistema Automatizado de Rentas Aduaneras: SARAH) 웹 메뉴로 들어간 뒤, 적하목록신고(Declaracion Manifiesto de Carga)을 확인하고 자동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생성되는 등록번호를 DUA 종이서식에 기입한 뒤, 해당 관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적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통관경로(canál)를 신청하면, 녹색, 적색 또는 황색 통관경로를 부여받게 되는데, 해당 경로를 DUA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녹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우선 전자적으로 이 경로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황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DUA를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공무원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종이 서

83) 국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on de Rentas, 약어로 SAR): 온두라스에는 중남미 다수의 나라처럼 국세와 관세업무가 하나의 기관에 통합되어 있음. SAR 산하에 국세업무를 다루는 국세국과 관세업무를 다루는 관세국이 있음. 중남미에서 조세청 단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이며, 국세청과 관세청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는 칠레, 에콰도르 등임.

류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기타 운송장, 원산지증명, 증량서류, 관세를 적용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적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세관은 물리적 검사 및 서류심사를 동시에 행하는데, 서류 심사대상은 모든 계산 근거 확인, 물품의 종류 및 원산지 확인, 증량 및 관세를 적용 확인, 현 상태 및 수량 확인, 물품가격 및 기타 물품의 특징 등을 확인한다.

물리적 검사의 대상은 포장상태의 훼손 여부, 물품의 상표, 포장의 수량, 크기, 종류, 품질 등을 검사하여, 서류상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현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류 처리기간 단축 및 관세 징수 확대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보조금상의 제약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간 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불공정무역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을 정하여 시행중이며, 동 규정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온두라스 국내 관련 업체로부터 제소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인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의 경제통합·통상차관실(Sub-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y Comercio Exterior)에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2015년 2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35%의 초과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WTO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으로는 중미 5 개국 간 체결한 「중미세이프가드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Medidas de Salvaguardia)」 및 「중미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등이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 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법(CAUCA) 및 중미통합관세법 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두라스는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대만,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파나마, 캐나다, 페루)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과테말라)에 대해선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규제

제조업이 취약한 온두라스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본부, 적십자본부, 긴급재난본부 및 구청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국가 안보, 환경, 공공보건 등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또한 제한되며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허가	총기/총탄	1년간	5일 이내	국방부
허가	폭발물/화약	1년간	30일 이내	국방부
등록	항정신성 약품/마취제	150일간	15일 이내	보건부
등록	유제품	60일간	5일 이내	경제개발부
등록	식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농업용 소모품	30일간 (갱신가능)	1~15일 이내	농축산부
등록	동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식물용 소모품	30일간	6일~15일 이내	상동
등록	브롬화메틸	3~6개월간	5일 이내	상동
등록	냉매/합성물질	15~30일간	5일 이내	에너지자원부

Labeling 및 상품표시 관련 장벽

온두라스에는 상품표시 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법인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 관세동맹(CACU)회원 국가간에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요건확인 관련 장벽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관하기 전에 사전에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온두라스표준기구(Organismo Hondureño de Normalización: OHN), 경제개발부(Secretaría de Desarrollo Económico),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de Honduras: SENASA), 수의학연구원(Instituto Hondureño de Investigaciones Médico Veterinarias: IHIMV),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 Chloro Fluoro Carbon)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ía de Agricultura y Ganadería) 산하 오존기술부(Unidad Técnica de Ozono)와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상기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표' 참조).

환경 관련 규제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자원환경부((Secretaría de Energía,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 MI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보호지역 및 야생동물법(Ley Forestal, Areas Protegidas y Vida Silvestre)」, 「탄화수소법(Ley de Hidrocarburos)」, 「광업법(Ley General de Minería)」 등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온두라스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온두라스 국가조달계약법에 따르면 재화와 용역은 55만 렘피라(약 USD 23,404), 공사는 200만 렘피라(약 USD 85,106)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 밖의 경우에는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많은 자국 기업의 공공조달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체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하는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한해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 용역 입찰일 경우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ñ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조달 대비 중소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현지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CAFTA-DR의 적용을 받는 미국기업들의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이런 의무에서 면제된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표준입찰서식을 지정하여 미주개발은행(IDB) 및 세계은행 등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지불을 제외한 여타 절차를 조달청(ONCAE) 웹사이트(www.oncae.gob.hn/www.honducopras.gob.hn)를 통해 실시하는 부분적인 전자조달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업 입찰을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실시하더라도 자국 출신 기업과 전문인들에게 유리하게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조달법(Ley de Contratacion del Estado)」, 「전자매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매에 대한 법(Ley de Compras Eficientes y Transparentes a traves de Medios Electronicos)」 등이 있다.

기술장벽

표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표준법으로는 「국가품질체계법(Ley del Sistema Nacional de Calidad)」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개별 법령으로 이를 규제(WTO와 체결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 포함)하고 있으나, 1999년 도입된 「중미 표준, 도량형 및 승인절차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de Medidas de Normalizacion, Metodologia y Procedimientos de Autorizacion)」에 따라 중미통합 회원국은 국가표준과 관련, 독자적으로 법제도, 기술규정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 규정을 실시할 수는 없다.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품질 기준, 표준 및 효율 기준 등 기술관련 표준 관리 및 인증 업무는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국립표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Calidad: CNCA), 온두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lizacion: OHN), 온두라스 인증기구(Organismo Hondureno de Acreditacion: OHA)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조치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농축산 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및 국립식품규격위원회(Comite Nacional del Codex Alimentarius)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의약품, 위험 화학물질,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할 경우 보건부의 사전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함유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유제품 수입업자 등록을 보건부에 마쳐야 한다.

현재 온두라스는 중미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생·검역 전자인증시스템(Sistema de Certificacion Electronica Fitosanitaria y Zoonitaria)」을 구축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 구축 후에는 관련 인증이 전산화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온두라스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회원국으로써 동 사무국의 권고 기준을 따른다.

관련 법령으로는 「보건법(Codigo de Salud)」, 「동식물 검역법(Ley Fito sanitaria)」, 「씨종자법(Ley de Semillas)」, 「중미위생 및 검역절차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Medidas y Procedimientos Sanitarios y Fitosanitarios)」,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생관리 및 위생시설에 대한 규정(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Servicios y Establecimientos Sanitarios)」등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온두라스는 WTO TRIPS에 가입하고 있으며, 1990년대 말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법(Ley de Propiedad Intelectual)」을 강화하였다. 특히

1999년 「저작권(Ley del Derecho de Autor)」, 특허 및 상표 보호에 관한 「산업재산법(Ley de Propiedad Industrial)」, 2000년 1월에 발효된 「로열티법(Ley de Regalias)」, 2012년 5월에 발효된 「식물품종보호법(Ley para la Proteccion de Obtenciones de Vegetales)」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온두라스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는 특허청(Direccion General de Propiedad Intelectual de Honduras: DIGEPIH) 소관으로, 특허청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 업무 및 특허침해소송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허등록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허 등록이 허가될시 5년 이내에 부여해야 함).

현재 온두라스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75% 정도가 불법복제물로 알려질 정도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각하다. 특허청과 검찰청은 이를 단속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은 하였으나, 절차적 문제, 경제적 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성과는 지지 부진한다.

온두라스법에 의해 특허나 상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등록 유효기간은 그 중요도에 따라 5년에서 20년(산업디자인 특허 5년, 상표권 10년, 모델특허 15년, 발명특허 20년)까지이다. “유명”상표의 경우 온두라스가 체결국으로 되어 있는 「범미주협약(1917년)」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명 상표를 불법적으로 온두라스에서 누가 등록을 할 경우, 일단 법원의 절차를 거쳐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한다.

2005년 12월에 발효한 신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종의 범죄행위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불법 복제물을 압수, 몰수, 파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피해기업의 제보가 없이도 검찰이 직권으로 특허침해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해당 기업의 요청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에 따라 2012년 5월 식물품종보호법이 제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온두라스내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등이 보장되는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다.

서비스 장벽

온두라스는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의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요한다. 또한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초보건 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전 및 판매 등의 경우 온두라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온두라스 정부는 2014년 7월 발효된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No.404-2013)」 시행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등 제반 전력 서비스 산업을 개방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시장 자유화를 추진 중이다.

전자상거래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은 2013년 12월 의회 통과 후 발효되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전자상거래법(Ley de Comercio Electronico)」은 2015년 1월 의회 통과되었고 동년 3월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되었다.

온두라스는 세계 193개 UN 가입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를 3개 하위지수로 나누어 격년마다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온라인서비스 지수,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인적자원 지수)에서 127위를 기록하였으며, 실제점수(0.3611점)도 세계

평균(0.4922점)이나 미주평균(0.5245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바, 온두라스의 수준은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의 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연도별 온두라스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 2013년 평가안함, 2014년 114위, 2015년 평가안함, 2016년 127위

경쟁 정책

온두라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헌법(Constitucion de la Republica de Honduras)」, 「경쟁보호 및 장려법(Ley para la Defensa y Promocion de la Competencia: LDPC)」, 「상법(Codigo del Comercio)」을 통해 가격 담합, 생산 제한, 매점, 독점, 공개입찰 제한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간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한해서는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담합과 독점 행위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경쟁규제기관으로 ‘경쟁방어촉진위원회(Comision para la Defensa y Promocion de la Competencia: CDPC)’가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온두라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2010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기본 법률들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8월에 통과한 「공공-민간기관 합작투자법(Ley de

Alianza Publico-Privada)», 11월에 통과된 「시간제 근로자 고용법(Ley de Empleo por Hora)」 등이 있다. 온두라스 의회는 2011년과 2011년에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Inversion)」 및 「고용 및 경제개발지구법(Ley de las Zonas de Empleo y Desarrollo Economico: ZEDE)」을 통과시켰다.

단,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의 경우 해당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 개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업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 무기사업(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 복권, 위험 또는 유독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은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된다.

온두라스는 한국을 포함,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약 및 중미와 미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Convenio de Intercambio de Informacion Tributaria)」을 체결하고 있으나, 아직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없다.

지사·사무소·현지법인 설치상의 제약

온두라스 정부는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002년 상법 제308조 개정). 또한 2011년 발효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Inversion)」에 따라 윈스톱 서비스(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 VUI)를 개시하였다. 투자 및 수출촉진 재단(FIDE), 국가경쟁력위원회, 그리고 테구시갈파 상업회의소(CCIT)의 공동의 노력으로 2005년도 62일이 걸리던 회사설립 절차가 2016년에는 13일로 단축되었다.

온두라스의 회사설립 절차는 상법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회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

임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형태는 유한책임 회사(SRL)와 주식회사(SA)⁸⁴⁾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납입자본금 5,000 렘베라(약 213 달러)와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설립가능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25,000 렘베라(약 1,064달러)와 최소한 5인 이상의 주주로 설립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확인한 설립절차는 총 13단계이며, 그 중 몇 개 단계는 테구시갈과 상업회의소가 수행할 수 있다.

1. 현지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 확보
2. 공증소에서 설립정관 작성
3. 온두라스 산업통상부로부터 상업활동 허가 취득(관보에 게재)
4. 수입인지 서식 구입(등록서식 및 변호사협회 서식)
5.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6. 사업자등록번호(RTN) 신청
7. 회계장부 구입
8. 지역 상업회의소에 가입
9. 구청에 영업허가 신청
10.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자로 등록
11. 온두라스 사회보장국(IHSS)에 등록
12. 온두라스 국립인력훈련원(INFOP)에 등록
13. 온두라스 주택기금(FOSOFI)에 가입

84)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익명회사)에는 주식과 주주가 있는 반면,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는 지분과 사원이 있음. 스페인어로 Ltda. 라고 부르는 회사는 영어 Ltd.처럼 주식 회사가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임에 주의할 것. 중소기업 회사나 가족 단위의 회사일 경우 주식회사 보다 유한 책임 회사 형태가 더 유리함.

외국인 종업원 규제

온두라스의 노동법 제11조에 따르면,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2011년 제정된 「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Inversion)」은 온두라스 헌법과 부동산 소유권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내외국인 차별없이 자유로운 부동산 취득을 보장한다. 단, 헌법과 동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온두라스 국경이나 해안으로부터 40Km 이내의 '지정된 관광지역 외' 토지 구입이 제한된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은 아직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필요 사항이다.

(2) 자금차입 규제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처리된다.

국내 차입의 경우 주로 은행들은 고율의 단기대출만 담당한다. 온두라스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며, 2017년 9월 현재 렘베라화 대출이자율은 18~36%, 달러화 대출이자율은 7~8%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세율상의 차별)

온두라스는 내·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은 판매세(IVA) 15%(주류의 경우 18%); 치안세(2%, 은행거래 월 평균 6천 달러 이상일 경우), 소득세 15%(Lps. 141,000.01 - Lps. 215,000.00), 20%(Lps. 215,000.01 - Lps. 500,000.00), 25%(Lps. 500,000.01 이상); 법인세(Impuesto sobre Renta: ISR)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 별로 상이)가 있으며, 특별세로는 1998년에 제정된 관광세(4%, 호텔, 렌트카, 여행사 등에 적용)가 있다.

비거주 외국인(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 포함)은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에 대하여는 25%의 소득세를 적용하며, 임금, 급여, 커미션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 30%까지 과세한다.

기타 장벽

장기 체류 비자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며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거주권(Residencia)을 취득해야 한다.

거주권 취득 절차는 온두라스 내에서 밟아야 하며 대체로 변호사가 대리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온두라스에 이민자로 입국하겠다는 신청서
- 온두라스 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진술서
- 위임장(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거주권 취득 업무를 대리할 권한 위임)

- 신청자의 현거주지 경찰당국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 확인서
- 온두라스 범죄조사국에서 발급한 무고소증명
- 신청자의 신분증 영사확인서
- 온두라스 이민국이 발급한 이주등록증명서
- 건강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출생증명서(본인 및 가족)
- 여권 모든 페이지 복사본(공증요)
- 혼인증명서
- 근로계약서(취업목적의 거주자의 경우)
- 소득증명서(연금수령자의 경우 월소득이 2,500달러 이상일 것)
- 투자이민자의 경우 투자금 증빙서류(미화 5만 달러 이상)
- 증명사진(6cm x 5cm)

※ 온두라스 이민국 홈페이지: www.inm.gob.hn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통상·투자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상으로도 다자 및 지역의 틀에서 지속적으로 통상·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우루과이 경제는 규모가 작고 개방적이므로 통상의 제약이나 왜곡을 받지 않고 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분은 특히 그러하다. 우루과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편으로써 인식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⁸⁵⁾

우루과이 라운드로 유명하듯 우루과이는 WTO의 창립 멤버이자 다자통상 체제의 적극적 참가국이다.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이 다자통상 체제에 완전히 통합될 것과 국내 보조금이나 수출 지원을 철폐할 것을 제안해 왔다. 우루과이의 통상 체제는 기본적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남미공동시장이 중남미내 타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적용받으며,⁸⁶⁾ 남미공동시장이 역외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⁸⁷⁾ 우루과이가 중남미통합기구(ALADI) 회원국들과 일대일로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⁸⁸⁾

한국과 우루과이간 무역은 일시적 위축과 확대를 반복해 오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전선, 냉연강판, 전선, 무선전화기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펄프, 제재목, 육류, 소가죽, 천연섬유원료, 어류, 동피 등이다.

85) WTO, Trade Policy Review, URUGUAY (WT/TPR/S/263/Rev.1)

86) 칠레(1996), 볼리비아(1996), 콜로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2004), 페루(2005), 쿠바(2006)

87) 이스라엘(2007), 인도(2004), SACU(2008), 이집트(2010, 미발효), 팔레스타인(2011, 미발효)

88) 멕시코(2003), 칠레(2016, 미발효)

관세 장벽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와 함께 역내 주요 경제 블록의 하나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이다. 남미공동시장은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공동 경제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시장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되었다. 2012년 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으로, MERCOSUR는 인구 총 295백만명, 총 GDP 3.47조달러 규모로 남미 전체 GDP의 8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확대되었다.⁸⁹⁾

MERCOSUR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고부가가치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CET를 부과하는데, 보통 0~20%대이고 평균치는 10.3%이다. CET에 산업별 및 국별 예외가 존재한다. 산업별 예외는 자본재, 정보기술, 통신에 관련된 물자가 해당되며, 국별 예외는 각 회원국들이 특정 물자들을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루과이가 CET 예외 목록에 포함시킨 품목은 총 2,115개이며, 그중 1,223개가 산업별 예외 대상이고 892개가 국별 예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915개가 자본재, 340개가 의류, 233개가 정보기술 및 통신, 71개가 자동차 등이다. 우루과이는 산업별, 국별 예외에 포함시킨 품목의 대부분에 대해서 CET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⁹⁰⁾

89) 베네수엘라는 MERCOSUR 가입 조건인 국내이행법 미제정을 이유로 2016년12월 회원국 지위가 잠정 정지되었다. 2017년8월에는 베네수엘라 국내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유로 회원국 지위가 무기한 정지되었다. MERCOSUR 원회원국들은 회원국 지위 정지가 출입국과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MERCOSUR 특혜관세가 베네수엘라에게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90) Uruguay Business Law Handbook (2016)

MERCOSUR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는 물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2~6%), 중간재(8~9%), 소비재(10~20%)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농업 및 호텔 공급재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수입부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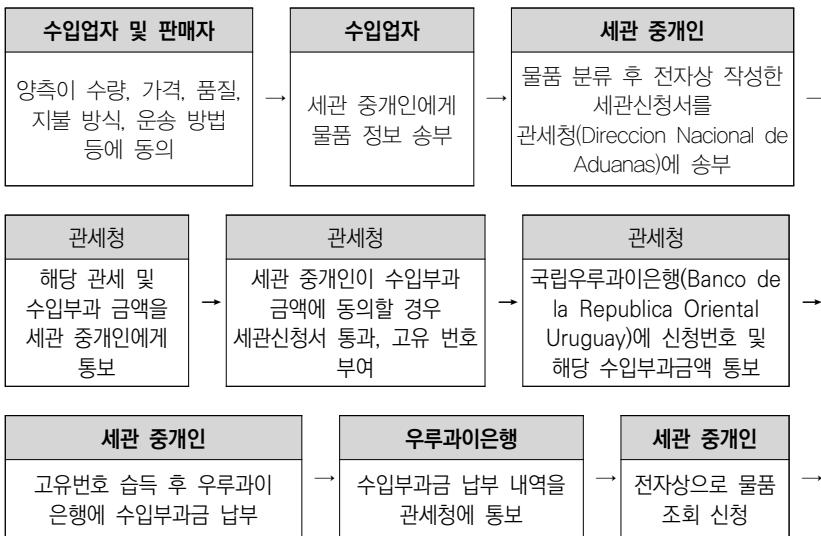
우루과이는 관세 이외에도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사확인 수수료, 세관특혜용역비 및 특별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수입부과금의 합계가 관세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수차례 국내법 개정으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유지되고 있으며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오히려 인상되었다. 반면 공화국은(BROU)이 징수하던 수수료(CIF의 3%)는 폐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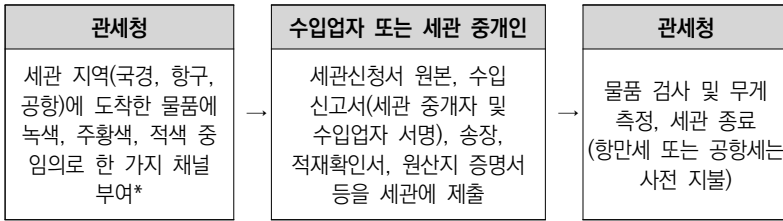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수입시에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의 22%가 부과된다. 음식이나 의약품 같은 생필품, 육상 운송수단 및 호텔이나 여행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된다.
 - 수입업자는 통관시에도 선불(advance payment)을 추가로 납부한다. 22%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10%이고,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3%이다. 선불은 탈세와 암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이며 수입품이 판매되면 공제를 받는다.
- 영사확인 수수료(consular fees)
 - 수입품의 운임과 보험료 포함 가치(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2%가 부과되었으나, 2018년부터 메르코수르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3%, 역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5%로 인상된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재와 원유에는 등 수수료가 면제된다.

- 세관특혜용역비(customs and preferential service fee)
 - CIF 기준 수입허가서 가치의 0.2%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5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특별세(specific internal tax: IMESI)
 - 소비세이며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주류, 담배, 연료, 윤활유 등이 있다. 예컨대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는 엔진 배출량에 따라 10~40%로 세분화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직접 통관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반드시 세관중개인을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 녹색 채널 : 즉시통과

주황색 채널 : 서류심사 후 통과

적색 채널 : 서류 및 물품 검사(물품의 종류, 품질, 상태 및 수량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후 통과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기준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 비용은 약 1,330달러에 달한다.

통관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 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방송용 음반 및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수입정책

품목별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는 197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으며, 최저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는 1998년 이후 폐지되었다.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부 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quirements)가 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위생상 민감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í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원산지 규정

ALADI 및 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간 특별 원산지 규정 이외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ALADI 원산지 규정은 1) 회원국의 원재료 또는 다른 회원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2)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전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F.O.B)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MERCOSUR에는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있으며 전자에 따르면 1) MERCOSUR에서 완전히 획득되고 제조된 물건, 2) 제3국의 원재료가 사용되고 세번(tariff heading)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특별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식물성 기름, 육류와 생선 재료, 야채, 과일과 음식 재료, 화학물, 섬유, 신발, 철강, 통신, 컴퓨터 등이다.

산업에너지광물부, 우루과이 산업회의소(Camara de Industrias del Uruguay), 상업서비스회의소(Camara Nacional de Comercio y Servicios), 국산품상공회의소(Camara Mercantil del Productos del Pais)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MERCOSUR 원산지 확인서 발급은 경제재정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산하 통상국(Direccion Nacional de Comercio)에서 담당한다.

수입규제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내지 제한을 발동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 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

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import licence)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10근무일이며,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동차 수입 면허는 90일, 향정신성 물질과 화학제품은 180일간 유효하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루과이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산 폴리에스터 섬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기름, 호주산 철판, 멕시코산 시멘트, 이탈리아산 난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중 실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아르헨티나산 식용유 1건에 불과하였다. 2012년 2월에 중국산 난방기에 대해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01년 1월~2002년 6월 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MERCOSUR 역외산 직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동 관세는 섬유의 경우 1kg당 1.62~4.55달러, 의류의 경우 1kg당 2.80~6.30달러에 달했다.

자유지구(자유항)

우루과이에는 12개의 자유지구가 있다. 자유지구는 소유와 관리의 형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유형, 국가가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유형, 민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형이 있다. 자유지구에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이러한 활동은 우루과이 영토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관세, 조세 및 국가독점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제가 적용된다. 자유지구에서 우루과이 영토로 유입되는 물품은 수입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된다. 한편, 우루과이 영토에서 자유지구로 이동하는 물품은 수출품으로 처리되어 해당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외국 또는 우루과이 영토로부터 자유지구로 유입되는 상품, 서비스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수입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 가공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 자유지구에서는 모든 국세 및 상품 거래에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 독점 산업에 관한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지구에는 MERCOSUR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우루과이 자유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이 여타 MERCOSUR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대외공동 관세가 부과된다.

자유지구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자유지구 관리업자는 국가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내에 인프라를 설치하고 지구를 관리 운영한다. 2)직접 사용자는 관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무역, 창고, 조립,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다. 3)간접 사용자는 직접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자유지구 내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직접 사용자의 시설을 활용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중 75% 이상이 우루과이인이어야 한다. 직접사업자와 간접사업자는 국세로부터 면제받지만 우루과이인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납부해야 한다. 자유지구에 등록된 사업자는 우루과이 영토에서 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업 가운데 소프트웨어 제작, 콜센터, 전자 메일박스, 원거리 학습, 전자서

명인증, 선박과 항만에 대한 관리회계 서비스, 필름 가공 등은 우루과이 영토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유령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11월 법령 344/ 010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자유지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11년 2월에 제정된 자유지구내의 직·간접사업자의 사업기간 계약 및 연장에 관한 법령 72/011에 따르면 직접사업자는 상업, 해상무역, 서비스업의 경우 10년, 제조업의 경우 15년간의 임차권이 허용되며, 기간 만료 이후에는 120일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간접사업자는 5년의 임차 기간이 허용되며 연장 신청은 직접사업자와 동일하다.

자유지구와 유사한 제도로써 산업지구,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private customs deposits) 등 특별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되며, 역내에서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표 부착, 분리,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자유항 내 물품의 보관 기간 및 보관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우루과이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 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certification) 및 기술 표준 규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1997년 WTO 표준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규약(Code of Good Conduct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승인하였다.

국가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 테스트 연구소, 검역담당자 및 품질 검사 기관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국제표준협회 품질 기준인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9000/9001과 합치하는 지여부를 평가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우루과이 헌법 47조 및 환경보호법률 17283은 환경 보호가 보편적인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정부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 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법률 16906은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의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Direccio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법령 349/005에 따라 주택토지환경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분야별 사업은 아래와 같다.

- 교통 및 운송 인프라건설
 - 국도 또는 지방도로의 건설 및 연장
 - 철도 건설 또는 정비
 - 새로운 기반 공사가 필요한 교량 건설 및 정비
 - 공항 건설 및 활주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공항 리모델링
 - 항만 건설 및 바다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항만 정비
 - 석유 및 화학 물질 운반 터미널 건설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 유해 폐기물 처리 공장 및 매립지 건설
 - 사용자 10만 명 이상 하수처리장 건설
 - 1헥타르 이상의 제조 공장, 유해 물질 배출 공장 등의 산업용 건설
- 에너지
 - 새로운 광산 또는 갱구 건설을 요구하는 광물 채취
 - 화석 연료 개발
 - 10MW 이상 전력 생산 공장 건설
 - 핵에너지 생산 및 처리 공장 건설
- 무역, 여행, 농림
 - 자유무역지구 또는 산업지구 확장 공사
 - 리조트 및 여가 시설 건설
 - 10헥타르 이상 주택 단지 건설
 - 100헥타르 이상 채소, 과일 및 포도주 생산지
 - 100에이커 이상 임업장 건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 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주택토지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MERCOSUR 대외공동관세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20%, 자동차 부품 2~18%, 도로 장비, 버스 및 트럭 2~20%가 부과되나, 세부 차량 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원국별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우루과이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 23%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MERCOSUR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자동차는 원래 차량가격에 더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내국소비세, 세관 비용 등 약 105%가 추가된다. 2010년 12월

제정된 법령 411/010에 따라 승용차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30% 내국세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는 면제, △1,000cc 이하 자동차 20%, △1,000~2,000cc 승용차 25%, △2,000~3,000cc 자동차 35%, △3,000cc 이상 자동차 40%로 세분화되었다.

우루과이는 MERCOSUR 회원국들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특혜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MERCOSUR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한 우루과이산 자동차의 경우 연간 차량 수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수출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모델을 무관세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도입 초기에는 40%의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 기준이 적용되며, 점진적으로 60%에 도달하여야 한다. MERCOSUR산 부품 사용 비중이 50% 이상 60% 미만일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연간 무관세로 수출 가능한 차량 수가 정해져 있다.

▶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자동차 협정 내용

	기존 차종 (부품 중 MERCOSUR산 부품 비중 기준)	신종	방탄 차량
연간 수량제한 없음	60%	도입 1년차 : 40% 도입 2년차 : 50% 도입 3년차 : 60%	60%
연간 수량제한 있음*	50%	도입 1년차 : 30% 도입 2년차 : 35% 도입 3년차 : 40% 도입 4년차 : 45% 도입 5년차 이상 : 50%	50%

출처 : 우루과이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

* 연간 수량제한 :

- 일반 차량 및 자동차 : 20,000대
- 트랙 및 트랙터 : 2,500대
- 방탄 차량 : 1,200대
- 부품 : 1억달러

한편, 브라질 정부가 2011년 9월 브라질내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회사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공산품세를 종전의 7%에서 37%로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우루과이에 공장을 두고 생산량의 100%를 브라질에 수출해 오던 중국계 Effa사가 생산을 잠정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및 산업에너지광물부는 브라질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루과이산 자동차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동 조치에서 제외된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 같이 우루과이도 브라질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 점을 들어 동 조치에서 우루과이산 자동차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우루과이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브라질에 수출하는 Effa사, 기아자동차 및 Chery사(중국계)에 대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자동차 공산품세를 부과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장려를 위해 우루과이내에서 조립된 차량 및 우루과이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 175/012에 따라 우루과이내에서 조립이 불가능한 특수 교통수단이나 비영리목적으로 기증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수출 보조 정책

우루과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목축수산부에서 특정 종자가 국내 소비를 위해 긴요하다고 명시하여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수출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품목별로 정해진 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

된 간접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업자들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임시 허가(temporary admiss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완제품이 수출된다는 조건 하에 일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품은 완제품 생산을 위해 조작, 조립, 변형 과정을 거치는 품목(원자재, 부품, 모터, 모형, 중간재, 농산품 등)으로 정의된다. 임시허가의 신청 및 허가는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에서 담당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우루과이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이 비교적 큰 편이다. 우루과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정부조달은 공개 입찰이어야 하지만 계약금 크기에 따라서는 간이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루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우루과이는 정부조달을 국내 산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해 사용한다. 법령에 의해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보다 8%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계획된 조달 물량의 10%를 남겨놓기도 한다.

입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입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우루과이 헌법상 정부조달 결과에 항소할 수 있으며 낙찰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우루과이는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 Convention)을 비롯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로마협약(Rome Convention),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의 회원국으로 동 조약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우루과이내에서 우루과이 국민과 같은 저작권 보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소프트웨어, 전자 창작물 및 외국산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창작물에도 해당한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 역시 5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 특허국(Direcció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가입해 있으며, 동 협약에 가입해 있는 국가의 특허권 소유자들은 본인의 발명품이 우루과이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루과이 국립특허국으로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관한 소규모 개선 및 상품의 외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 장벽

개요

우루과이는 투자진출에 있어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안정된 사회적·법적 체제 및 남미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부 청렴도, △금융업 발전, △인프라, △고급인력 면에서 중남미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외국 자본의 금융업 참여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규제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경제는 2002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여 2004~2008년 간 GDP 성장률⁹¹⁾은 평균 6%를 기록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2%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7.8%로 회복되었고, 이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4.6%, 2014년 3.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약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6년 약 1.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농축산물 수출과 관광업이 국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IT, 금융, 교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유무역지구(국영 2개, 민영 10개 등 총 12개) 설립 등 투자 진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으며 방송국 및 정부 독점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절차나 실질적인 면에서 외국 투자에 대해 비교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 투자 비율 및 회사들에 대한 최소·최대 자본 금액이 법률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루과이인의 최소 주식 소유 비율 및 동업자 수, 그리고 우루과이인의 경영자 참여 등에 관한 조건도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우루과이에서는 엄격한 비자 취득, 거주 및 근무 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외국 기업의 수출입 활동 및 은행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자본 시장 및 외국환 거래 시장도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對우루과이 투자진출에 있어 약 3.5백만에 불과한 인구 규모 및 무역금융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역내의 여러 국가와 양자 차원의 무역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시장에 교역의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 수준(민간기업 대상 평균 11.7%), 중소기업 보조 정책의 제한 등도 고려할 사항이다.

91) The World Bank: Data 참조

우루과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⁹²⁾는 2004년까지 GDP 3% 미만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 왔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 증대하여 2010년 21.9억 달러, 2011년 26.9억 달러, 2012년 25.6억 달러, 2013년 30.4억 달러, 2014년 23.8억 달러, 2015년 17.4억 달러를 유치했다.

▶ 우루과이 FDI 유입 추세

연도	FDI 유입 금액(백만달러)
2005	826
2006	1,508
2007	1,359
2008	2,142
2009	1,603
2010	2,191
2011	2,690
2012	2,569
2013	3,040
2014	2,385
2015	1,748

출처 : The World Bank: Data

한·우루과이 양국은 2009년 10월 상대국 기업의 자국내 투자를 보장하는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1년 12월 발효되어 양국간 경제통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 법적 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국가 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 자본의 참여가

92) The World Bank: Data 참조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독점 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100% 외국 소유도 허용된다. 국가 독점 산업 중 일부는 Build- Operate- Transfer(BOT) 형식으로 외국 기업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1)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Inc.) 설립

사단법인의 자기자본(equity)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자기자본을 규정하는 최소액 또는 최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및 회계장부는 우루과이 페소로 기록해야 한다. 농·목축지, 라디오 및 TV 방송국을 보유한 사단법인의 소유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하며,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루과이내 거주하고 있는 우루과이 국민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 소요 시간 및 비용⁹³⁾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설립에 한 달 이상 소요되나 그 이전이라도 임시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 ① 법인 정관 및 설립자 서명 공증(근무 기준 1일, 자본의 0.5% 또는 최소 1,140달러)
- ② 감사원(Auditoria Internal de la Nacion)의 법인 부칙(bylaws) 승인 (달력 기준 30일, 580달러)
- ③ 국가상업장부(Registro Nacional de Comercio)에 법인 부칙 등록 (근무 기준 5일, 90달러)
- ④ 관보(Official Gazette) 및 일반 신문에 부칙 요약본 게재(근무 기준 2일, 관보 : 1×602cm당 24달러, 일반신문 : 5×5cm당 80-120달러)

93) Uruguay XXI 회사설립 가이드 (2015/12)

- ⑤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및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단일 절차(설립자 정보 제출, 공증 등, 달력 기준 30일, 비용: 수입인지)
- ⑥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l Seguros de Estado)에 산업재해 보험 신청(근무 기준 1일, 무료)
- ⑦ 노동사회부장감독청(Inspeccion General de Trabajaio y Seguridad Social) 등록 절차(노동 장부, 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 수속 서류 등, 근무기준 15일, 무료)

▶ 여타 국가와의 사업장 설치 과정 비교

구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절차 수	5	14	11
소요 시일	6.5	25	83
소요 비용(1인당 GNI 대비)	22%	9.7%	3.8%
최소납입자본(1인당 GNI 대비)	없음	2.3%	없음

출처 :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Uruguay 2016

(2) 유한회사 설립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이 국가상업장부 등록, 관보 및 우루과이 일간 신문에 요약본 게재, 국세청·사회보장공단·노동복지부·보험공단 등록 등 주식회사 설립시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소요 비용도 동일하다. 총 16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유한회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공증 받은 계약서 및 회사 장부(국가상업장부용), 공증 받은 신청서(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용), 고용내역서 및 국세청·사회보장공단 등록증명서(노동복지부용)이다.

(3) 외국회사 지사 설립

외국회사의 지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된 외국 본사 규정 사본 및 외국 본사로부터 우루과이내 지사 설립을 명시하는 문서를 상업등록부에 제출

해야 한다. 동 문서에는 지사명, 주소, 지사에 할당된 자본 및 대표명을 포함, 모든 내용이 스페인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상업장부 등록 후 관보 및 일간 신문에 게재되는 과정을 거친다. 총 소요 시간은 수개월이나 등록 시점부터 영업할 수 있다.

국세청, 사회보장공단 및 노동복지부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는 유한회사 설립과 동일하며, 지사 설립 역시 자본 최소 금액 또는 최대 금액에 있어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금융상의 제약

소득 또는 자본을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법인 설립, 등록, 활동 범위, 이익 배분, 주식 발행 등을 규정하는 우루과이 법인에 관한 법률 16060에 합치할 경우 금융상의 특별한 제약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⁹⁴⁾

우루과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우루과이 거주 법인으로 간주되는 바, 개인은 일년 중 183일 이상 우루과이 체류, 우루과이내에서 대부분 활동, 또는 주요 거점이 우루과이일 경우 우루과이 거주자로 분류된다. 우루과이 세법상 조세 대상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우루과이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 관련 세금은 우루과이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최초 매매 활동에 부과되는 내국소비세(IMESI, Impuesto Especifico Interno)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0~133%에 달한다. 내국소비세가 높은 품목으로는 디젤 차량, 주류, 담배, 연료, 윤활유, 석유제품이 있으며, 품목별 내국소비세 비율은 다음과 같다.

94) Uruguay XXI 조세제도 가이드 (2015/12)

품목	내국소비세 비율(%)
디젤 엔진 차량	0~115
오토 사이클 엔진 차량	0~16.45
가솔린 엔진 차량	23~46
전기 차량	0~5.75
하이브리드 차량	0~34.5
기타 차량	0~46
주류 및 음료	10.50~80
향수	15
담배류	28~70
유탄제	35(항공용은 5)
연료 및 석유 파생물	5.26~100
전력	10

출처 : 우루과이 국세청 내국소비세 (2016)

이밖에 주요 직접세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와 재산세(Wealth Tax) 및 주식회사규제세(Impuesto de Control de Las Sociedades Anonimas)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및 부동산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부동산 가치의 2%) 등이 있다.

법인세는 기업 소득의 25%를 부과하며, 우루과이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 및 비거주자 소유 우루과이내 영구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상업 활동이 우루과이내 부동산 및 보조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 소득 2만 5천달러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달 약 7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는 재산 소득 및 근로 소득으로 나뉘며, 재산 소득세 명목으로 소득에 비례해 3~12%의 세금을, 근로 소득세 명목으로 연간 소득의 0~25%에 해당하는 누진세를 부과한다. 비거주자가 우루과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3~12%의 비거주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간 근로 소득에 따른 개인소득세 부과 비율**

연간 근로 소득(달러)	누진세 비율(%)
10,300 미만	0
10,300~14,700	10
14,700~22,000	15
22,000~73,500	20
73,500~110,300	22
110,300~169,000	25
169,000 초과	30

출처 : Uruguay XXI 조세제도 가이드 (2015.12)

주식회사규제세는 회사 설립시 회사 최소 자본의 1.5%가 부과되며, 이후 매년 0.7%가 부과된다. 외국회사의 지사의 경우에는 동 세금에서 면제된다.

재산세는 우루과이 내 위치하거나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기업의 경우 연간 1.5%, 금융기관의 경우 2.8%, 개인의 경우 0.7~1.5%의 누진재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22%에 달한다. 기초 식료품, 의약품, 호텔 서비스, 의료 서비스, 부동산의 초기 판매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과일, 채소, 외환, 초기 판매를 제외한 부동산, 귀금속, 농기구 및 부속품, 석유 연료, 물, 우유, 책, 잡지, 신문, 교육 자재, 정부 및 민간 유가 증권 이자, 저축 이자,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치품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2011년 11월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3년 1월 22일에 발효되었다.

투자 진흥책

우루과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내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6906은 △인력 교육, △연구, 과학·기술 개발, △이익 재투자, △산업 기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통과된 법령 2/012는 투자규모와 분야에 따른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령 2/012는 우루과이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규모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관심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에 제출하면 투자법 적용 위원회(COMAP)가 투자 금액, 기간, 분야를 검토(근무기준 60일 소요)하여 세금 감면율을 정하게 되어있다.

일자리 창출, 지방 토지 활용도, 수출 기여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 프로젝트의 점수에 따른 소득세 감세율

점수	감세율
1	20 %
2	29 %
4	47 %
6	64 %
8	82 %
10	100 %

출처 : Uruguay XXI(2014), Decreto 2/012

관광, 임업, 석유, 바이오연료, 소프트웨어,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제도가 있어 이들 산업에 투자할 경우 산업별로 상이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이 부여된다.

2011년 7월 제정된 민관참여법(Participacion Publico-Privada)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에너지, 폐기물관리, 교도소, 보건, 교육, 주거 등에 PPP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PPP를 시행하는 우루과이 재정부와 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교통, 교육, 보건, 교정, 주택, 에너지 분야를 PPP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민관참여법은 △인프라 관련 민관합동투자 계약의 법적 근거 및 시행조건, △계약 체결, 자금 확보, 사업 운영 등 인프라사업 전 단계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 △민간기업의 사업 보장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민관합동투자시 분쟁해결 방안, △자금 운영 및 회계 보고 시스템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관협력법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정부기관이 사업안을 제안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사업안을 제안하는 두가지를 상정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사업안을 제안한 해당 민간기업에게 입찰 평가시 10% 가산점을 부여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우루과이 정부는 민관참여법에 의한 투자를 철도 현대화 사업 및 공공시설건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시점에 민간 주도형 사례는 전무하고 정부기관 주도형만이 검토되거나 실행되었으며 민간자본이 실제로 투입되거나 이행 직전에 있는 사업은 교도소 신축과 일부 도로의 보수가 있다.

경쟁정책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7월 법률 18159이 제정되었는 바, 동 법률은 기업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경제재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다수 공공부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바, 전기, 유선 전화, 석유, 수도 부문은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도 및 항만 운영 사업도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 및 천연 가스를 제외하고 정부가 가격책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타 장벽

비자 취득

한·우루과이 양국간 일반사증면제협정이 2013년 1월 발효되어 비자 없이 90일간 상대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원본, 면허증 번역본 및 신체검사(적성 검사) 확인서를 각 지방 시청의 교통 및 운송과에 제출할 경우 우루과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노동 정책

우루과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권리 보호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 협약을 준수한다. 우루과이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대우를 중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높은 수준이며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고용주들의 임금 부담이 약 30% 증가한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상업 및 무역의 경우 주당 44시간(공업, 건설, 운송의 경우 주당 48시간) 기준, 15,611.69 페소⁹⁵⁾이며, 임금 외에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고용주는 △해고 사유가 차별적이지 않고, △피고용자의 총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1~6개월간의 임금을 지속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노사간 분쟁에서 법원이 노동자측을 약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95) BPS(우루과이 사회보장은행, 2017.07)

2005~2010년간 집권한 Vazquez 前 정부 하에서 노동 관련법 36개가 통과됨으로써 노동 정책에 있어 노동자 권리를 증시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피고용주가 파업권의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할 경우 고용주가 경찰을 동원해 피고용자들을 강제 해산시킬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폐지되고, 노동조합에 유리한 법률이 다수 통과되면서 직장 점거 횟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7월 기준 우루과이 노동조합 총연맹인 PIT/CNT에는 전체 고용자의 22%인 405,000명이 가입하고 있다.

2006년 상공회의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진흥보호법”이 통과되었으며, 2008년 법률 18395 및 18399가 통과되어 △정년퇴직 연령 하향 조정,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노동 조건 부여, △실업 수당 대상 연령 연장, △산업재해 정부보상금 증액 등이 실현되었다.

2009년 9월 제정된 단체교섭법(법 18,566)에 의거,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협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는 ①정부 및 노사간 고위 3자 위원회(정부 대표 6명, 사측 대표 6명, 노측 대표 6명) 협상, ②산업별 최저임금 및 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임금조정위원회(정부 및 노사측) 협상, ③기업별 일반 노사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2009년 우루과이 상공회는 직장점거와 단체교섭법이 국제노동규정에 어긋난다며 ILO 이의를 제기했다. 2010년 ILO는 권고를 내서 피고용자가 직장을 점거하더라도 파업 비참가자의 일할 권리와 고용주의 직장 출입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법의 7개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정부는 단체교섭법의 1개 조항만을 수정했고 노사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ILO의 여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분쟁 해결

우루과이의 사법제도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사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2000년 9월 국제투자분

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가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중재 또는 법정 해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시장 현황

일반적 특징

우루과이 금융은 중앙은행(BCU, 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활동 규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역외 금융에 대한 면세 혜택, 원활한 자금 및 외화 운용, 메르코수르 회원국 등 지역 내 국제 금융의 중심가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장 큰 우루과이 금융의 특징이 금융비밀주의의 유지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재정 투명성 관련법(ley de transparencia fiscal)이 발효하며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였다.

우루과이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나, 장기 대출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서 우루과이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대출을 받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금융기관

우루과이 내 최대 규모인 우루과이은행(BROU)은 국내 총 대출의 41% 및 예금의 41%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국영 주택담보은행(BHU), 12개의 상업은행, 6개의 금융지사, 1개의 금융중개협동조합, 6개의 해외 금융 기관 등 다수의 금융 기관이 있다.

96) Uruguay XXI 비즈니스 환경 (2015,12)

주식시장의 경우, 중앙은행(BCU)의 관리 감독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나 거래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몬테비데오 증권거래소(Bolsa de Valores de Montevideo, BVM)와 전자증권거래소(Bolsa Electrónica de Valores S.A., BEVSA)를 운용 중인데 전자증권거래소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 관련법의 변화

우루과이는 2017년 금융포용법(Ley de inclusión financiera)을 개정하여 △ 카드 사용 장려, △ 계좌이체를 통한 임금 지불체계 확립을 도모하였다. 우루과이 내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22%인 부가가치세를 18%로 감세해주는 안을 도입하였으나 아직 우루과이 신용 카드 사용에 따른 감면혜택은 없다.⁹⁷⁾ 또한, 법 개정 전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으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를 통한 임금지불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수취용 계좌를 무료로 개설해 줄 의무가 있음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우루과이 금융에 대한 국제적 평가

2002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루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우루과이 국채는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국채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계기로 국채 신용등급은 꾸준히 상승했고 2012년 10년 만에 잃었던 투자적격(Investment grade)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2016년까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97) 관광 장려책의 일환으로 해외 발급 카드를 사용하면 레스토랑, 차량 렌트서비스 이용 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우루과이는 2009년 4월 OECD의 국제 금융거래 관련 OECD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OECD가 규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지칭하는 Grey List에 지정된 바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동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세 및 금융에 관한 양자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년 5월 동 기관 리포트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분류되었다. 한편, 우루과이는 2015년 10월 OECD 개발센터의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자메이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개관

자메이카는 1962년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한 이래 보트사이트, 알루미늄, 설탕, 바나나 등 전통적 상품의 수출 호조와, 관광수입 증대에 힘입어 19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6%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관광 및 보트사이트 부문에 대한 편중 투자 결과 지나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로 변모하였으며, 1973년도 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수입 격감 및 보크사이트 가격 하락 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산유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저가 에너지 유인으로 인해 자메이카 제조업이 위축되었으며, 국민당(PNP) 정권의 사회주의 성향 경제정책 때문에 외화유치 등이 감소하여 1975~1980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0년 10월 취임한 Seaga 총리의 노동당(JLP) 정권은 경제난 타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각종 차관을 도입하고 재정안정 및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1981년에는 장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2% 경제성장을 시현하기도 하였으나,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수출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난이 재현되었다.

이에 따라 자메이카 정부는 국제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개선을 위하여 수입 억제와 금융 긴축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비전통상품의 수출 산업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6~1987년간 3.7%~5.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8년 9월 태풍 'Gilbert'로 농업, 광업,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수출이 감소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수입이 격감하였다. 또한 1989년 2월 총선에서 국민당(PNP)이 집권한 후 신정부의 경제운용능력 미숙 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 1989년도 경제성장은 1.9%에 머물렀고 1989년 중 20%의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및 15~20%의 물가상승 등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이후로도 자메이카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메이카의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로 동 기간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1%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1인당 GDP도 연 평균 0.6%의 성장률을 보여온 바 동 기간 전세계 평균인 1.8%의 3분의 1 수준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70년대 이후 거의 9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1996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부채 축적이 심화되어 동 기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9%에서 141%로 증가한 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대자메이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한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현상도 심각한 바, 지난 5년간 자메이카 달러는 24% 평가 절하되어 전체 20개 중남미 카리브 국가 중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부채 상황에 투입되는 지출이 보건, 교육 등 필수 부문에 대한 지출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훨씬 상회하여 이루어졌는 바,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심각하게 억제되어 지난 20년간 평균 0.7%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부채상환에 정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이 배정되어 있는 바, 2017/18 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총 7,156억 JMD(56억 USD 정도)의 전체 예산 중 부채상환에 쓰이게 될 예산액이 3,104억 JMD로 전체 예산의 43%(조세수입 4,789억 JMD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55%인

1,725억 JMD는 부채 할부 상환에, 나머지 45%인 1,378억 5천 JMD는 이자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부채는 대부분의 생필품 및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면서(수입 품의 35% 및 10%가 연료 및 식료품이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70%도 수입), 외화획득은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광물(보크사이트, 알루미늄), 농산물 등 1차 산업 생산품 및 관광 산업에만 의존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IMF 차관 도입

자메이카 정부는 2013년 2월 12일(화) IMF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부채 교환 계획(National Debt Exchange)’을 시행한 바, 이는 자메이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메이카 국채(National Bond)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고(기존 국채 이자율에서 최대 5%의 이자율을 인하 적용), 만기를 연장시켜(최소 3년간의 원금 상환 집행 연기 조치),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연 8.5%(약 US 1억 9천만 달러)씩 감축시켜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상기 계획은 2010년에 이은 또 한 번의 부채 교환 계획으로 자메이카 국채 소유주들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일종의 디폴트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된 바, 동 계획 발표 후 국제 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는 자메이카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등급에서 CCC 범주인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현재는 B 등급으로 복귀).

이와 함께 자메이카 정부는 2013년 5월 1일(수) IMF 측과 US 9억3천2백만 달러 상당의 확대신용자금(Extended Fund Facility) 도입 협정을 체결한 바, 이의 이행조건으로 ▲ 공공부문 적자 개선(회계연도 2016/2017까지 GDP 대비 1% 이상 흑자 전환) ▲ 재정 개혁(회계연도 2015/2016까지 조세지출 GDP 대비 2.5%로 감축)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s) GDP 대비 7.5% 흑자 달성 ▲ 공무원 인원 감축 및 임금 동결 등을 합의하였다.

상기 IMF측의 신규 재정 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자메이카 정부는 정량적 성과 및 구조조정 이행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왔으며, 2016년 11월에는 상기 협정을 대체하는 예방적 대기성 차관 약정 (precautionary stand-by agreement)을 체결하여 3년간 총 US 16억 불을 지원받을 예정인 바, 이를 바탕으로 부채 상황 개선 및 재정수지 흑자 달성에 총력을 기울려 궁극적으로는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자메이카 경제는 농업, 건설업 및 관광업 등 주요 산업부문의 개선으로 2016/17 회계연도 1.1% 정도의 성장을 기록한 바, 이는 회계연도 기준 4년 연속 실제 GDP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건설 및 관광업을 중심으로 2017/18 회계연도에는 2% 이상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시경제 환경은 주요 거시경제 변수 개선,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료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온 바, 2016/17 회계연도 기초재정수지가 GDP 대비 7.7% 수준인 US 10억 불 상당을 기록하였고, 2016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1.7%로, 2015년 3.7% 대비 크게 향상되는 등 196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다만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2016년 한 해 6.3%가 평가절하 되었으며 이는 2015년 4.8%와 비교해도 가치가 크게 하락)로 인해 그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었다.

2016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4.3%로 2015년 126.1%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특히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로 인한 외채 (external debt) 비율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11월 IMF측과 체결한 예방적 대기성 차관 약정 프로그램의 경우, 2017년 4월 및 9월 동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된 1,2차 평가가 진행된 바, 자메이카 정부는 기초재정수지 목표치 초과 등 정량적 성과를 충족하였고,

구조조정 이행 등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17년 10월 2차 평가에 대한 IMF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자메이카에 US 1억8천만 불 상당의 특별한 출권(SDR)이 제공되어, 차관 약정에 따라 자메이카 정부에 3년간 지원 예정인 총 US 16억 불 중 현재까지 7억9천만 불이 양도되었다.

IMF측은 1,2차 평가를 통해 자메이카 정부가 상기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날씨 관련 쇼크에 취약한 경제구조 ▲공공부문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상 마무리 및 공공부문 간소화 ▲자메이카 중앙은행을 비롯 관련 재정기관 플랫폼 개선 ▲비활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합병, 폐지 및 매각 등 다수의 과제로 인해 경제 생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채무 변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향후 5년간 자메이카 정부가 IMF측에 변제해야 할 채무액**

(단위 : US\$ 백만)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23.8	61.32	98.13	122.49	133.67

주요 경제지표

가. 최근 경제통계

(단위 : US\$ 백만, %)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13,202	14,711	14,839	14,187	13,891	14,262	14,030
1인당 GDP(US\$)	4,898	5,429	5,472	5,226	5,105	5,105	4,868
평균 환율 (US\$1 : J\$)	87.38	86.08	88.99	110.94	111.0	117.31	125.14
물가상승률	12.6	7.5	6.9	10	7	3.7	4.7
실업률	12.4	12.6	13.7	14.9	14.2	13.3	12.7
외환보유고	2,171	1,967	1,126	1,048	2,002	2,437	2,719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나. 부문별 GDP

(단위 : %)

부문 \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림수산업	4.2	15.4	8.2	12.7	7.7	13.5	11.5
광업	42.4	21.7	-4.4	4.8	15.7	70.7	11.7
제조업	2	9.4	8.3	9.4	7.4	5.0	2.6
건설업	7.8	7.4	3.1	9.5	9.9	13.5	6.5
전기 및 수도	12.8	7.4	-0.3	10.4	11.5	8.8	5.9
도소매업	6.3	8.0	5.7	9.8	11.9	4.7	3.7
호텔 및 요식업	-1.2	2.4	6.1	10.9	12.4	7.4	5.9
운수창고 및 통신업	1.7	3.3	-2.8	4.3	7.1	2.8	4.5
금융 및 보험서비스	-0.9	6.0	3.6	6.0	5.8	8.8	8.4
부동산업	20.4	6.9	6.2	5.2	5.4	3.3	3.2
정부서비스생산	3.7	7.6	9.2	6.0	-0.7	2.2	5.3
기타	6.5	7.7	7.4	8.1	7.3	5.5	5.0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다. 교역 현황

1) 무역수지

(단위 : US\$ 백만)

구분 \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무역 수지	수출	1,336	1,622	1,728	1,580	1,448	1,263	1,195
	수입	5,326	6,439	6,331	6,130	5,847	4,996	4,751
	적자	-3,990	-4,817	-4,602	-4,550	-4,399	-3,733	-3,556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2) 수 출

○ 주요 전통상품 수출 품목

(단위 : US\$ 백만)

구분 \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크사이트	128.7	141.9	130.1	128.0	131.2	130.0	92.0
알루미나	402.8	580.7	508.3	523.7	529.4	542.3	444.0
설탕	44.2	62.2	94.1	53.2	55.8	53.8	14.8
커피	19.2	18.3	13.8	16.3	13.5	25.2	27.6
럼	47.2	48.7	55.7	48.2	44.9	35.0	40.0
바나나	0.001	0.063	0.121	0.063	0.179	0.242	0.358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 주요국별 수출(2016년 기준)

(단위 : US\$ 백만, %)

구 분	금 액	비 율
미국	498	41.47
캐나다	145	12.09
네덜란드	124	10.35
러시아	71	5.87
영국	50	4.15

출처 :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웹사이트

3) 수 입

○ 주요품목별 수입

(단위 : US\$ 백만)

구분 \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식료품	207	232	273	243	240	220	229
음료 및 담배	104	113	104	83	81	61	89
석유제품	556	768	665	686	700	691	556
광물연료제품	291	372	388	351	301	194	173
동식물기름	3	0.3	0.1	0.4	0.4	0.3	0.3
화학제품	83	47	228	113	28	25	29
공산품	34	10	18	33	53	35	40
기계 및 운송장비	22	50	23	39	22	20	42
기타 제조품	28	19	18	24	16	11	28
기타	7	11	10	7	7	4	8
총수입액	1,335	1,622.3	1,727.1	1,579.4	1,448.4	1,261.3	1,194.3

출처 : Statistical Institute of Jamaica

○ 주요국별 수입(2016년 기준)

(단위 : US\$ 백만, %)

구 분	금 액	비 율
미국	1,881	39.46
트리니다드토바고	347	7.27
중국	311	6.53
일본	300	6.30
멕시코	197	4.12

출처 :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웹사이트

수입정책상의 장벽

세관 및 관세

가. 개 관

자메이카 관세청(Jamaica Customs)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단속, 수출입 물품 제한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수입 및 수출 상품과 관련 다수의 양식이 필요함. 동 양식들은 자메이카 관세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에서 구할 수 있으며, 동 웹사이트는 수입업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서비스업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Live Support)도 보유하고 있다.

세관부서(Customs Department)가 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나, 우편/전신부서(Post and Telegraph Department)나 내국세부서(Inland Revenue)에 의해 징수될 수도 있다. (예 : 수입 우편물(imported post)에 대한 관세는 우체국에서 지불)

1) 수입 관세

관세는 일반적으로 세관(Customs House) 또는 부두 및 공항의 통관부서에 지불함. 상품이 규정된 수입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된 통관업자를 고용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단, 상품의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CIF) 포함 가격이 US\$ 5,000 이하인 경우, 통관업자 없이 진행할 수 있다.

2) 인지세

인지세는 서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J\$ 5에 해당하는 인지가 J\$ 5,500 상당의 CIF 포함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 영수증에 부착된다. J\$ 5,500이 넘는 경우 J\$ 100에 해당하는 인지가 부착된다. 추가 인지세는 닭고기 상품, 돼지고기 상품, 주류 및 담배에 부과된다.

3) 소비세

일반소비세법(1991)에 따라 일반소비세 및 특별소비세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소비세는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을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 상품에 CIF 포함 가격 0.5%의 환경세를 부과한다.

4) 상품 가치 평가

관세법에 따르면 상품 가치 평가는 자메이카 달러로 환산될 때의 CIF 포함 가격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자메이카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약(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의 가입국으로, 동 협약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세를 산정한다.

거래가격법을 통해 관세를 산정할 때는 C84 양식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외 다른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C85 양식이 사용된다. 상품 가치 평가는 상품에 대해 지불된 가격에 크게 의존하며, 상품의 가치와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J\$ 500,000 또는 상품 가치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5) 수하물

수하물은 승객이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과 함께 도착한 휴대수하물과 화물로 따로 부친 비휴대수하물로 구분된다. 승객은 세관신고서(C5)를 작성해야 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관이 동 양식에 스탬프를 찍어 승객에게 돌려줄 것이며, 승객은 이후 만약 들여오는 상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거나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아니라면 'Nothing to Declare Line'을 통해 나오면 된다. 비휴대수하물 신고는 관련 세관신고서(C27)를 작성하여 세관원에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하물 도착시 동 신고서와 적법한 ID 및 관련 서류를 근무 중인 세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 상품 수출입 절차

1) 상업용 수입

US\$ 5,000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송장을 이용하여 수입 신고양식(C78)을 작성해야 하며, 적법한 허가서, 면허, 항공화물운송장과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들은 조사된 후 물품신고접수처로 보내지며, 이후 송장담당부서로 보내진다.

다음으로 선하증권을 관련 항구에서 인증 받는다. 적하목록(manifest)에 스탬프를 받아야 하며, 선하증권은 상품이 위치해 있는 창고에 제출되어야 한다.

US\$ 5,000을 초과하는 상품은 허가받은 통관업자를 통해야 하며, 통관업자는 수입신고양식(C78)을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수수료

세관 통과와 관련된 수수료가 있는데, 컨테이너가 반출(release)될 때 J\$ 3,500을 검사료(Site Examination Fee)로 지불해야 하고, CIF 가격의 0.3%가 표준준수비용(Standard Compliance Fee)으로 징수된다.

3) CARICOM 역외공통관세

자메이카는 CARICOM 회원국으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역외공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즉,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자메이카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역외공통관세제도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CARICOM 회원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증명된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CARICOM 송장(C23)이 원산지인 회원국 관세 기관을 통해 증명된 후 자메이카 세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관세는 면제되지만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는 적용된다.

다. 관세양허

자메이카 세관은 승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 제한적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구분	통관기준
일반물품	○ 본인의 직업과 관계된 본인 소유의 도구나 도구
술	○ 1리터
담배	○ 200개비, 시가 50개비, 가공 처리한 담배 230g
향수류	○ perfume: 170ml, eau de toilette: 340ml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만 18세 이상 자메이카 여권 소지자 또는 자메이카 거주자의 경우, US\$500을 넘지 않는 개인용품에 대해 추가적 반입 가능 (단 6개월 내 동 조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환신고	○ US\$10,000 이상 반입시 신고 필요
의약품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필요, 여행자가 입국시 질병 때문에 약을 소지하고 여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의약품 반입 가능 (세관원의 재량)

구분	통관기준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 채소 또는 육류 등의 반입을 위해서는 허가(검역) 필요 ○ 밀봉·가공 식품은 소량 반입 가능
반입불허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및 위험한 약품에 관한 1971년 협약’에 규정된 물질 ○ 춘화, 외설적 물질, 마술물질 ○ 장난감 총 및 이와 유사 물품 ○ 폭약 및 폭발물질 ○ 무기 및 탄약 ○ 불꽃 및 유사 제품 등 ○ 이러한 물품 등의 합법적 반입에는 사전 허가 필요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메이카는 관광국가로서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는 않았으나, 현재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통관절차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

출처 : 자메이카 관세청 웹사이트(www.jacustoms.gov.jm)

투자 장벽

1990년대 이후 다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고 산업 부문 개방 및 규제가 철폐되면서 관광업과 ICT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알루미늄 국제가격 하락으로 그 원료인 보크사이트 수요가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산업이 저하되고, 2008년 이후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북미 및 유럽 지역 관광객 수 감소로 관광업 부문도 영향을 받음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였다. 특히 현재 자메이카는 IMF 구제금융 체제 하 여전히 부채 상환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되고 있는 바, 대자메이카 신규투자 관련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10~2012년 기간의 경우 자메이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US 7억\$에 달하였던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두드러진 하락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13년부터 자메이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자메이카 해외직접투자(FDI) 현황

▶ 연도별 자메이카 FDI 현황

(단위 : US\$ 백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85	172	413	544	582	924	856

출처 : 자메이카 투자진흥청 웹사이트(www.jamaicatradeandinvest.org)

사업자 등록절차 및 내용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범 및 세금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① 법인 등기소(Office of 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
- ② 고용 보험(national insurance) 등록
- ③ 납세자 등록번호(taxpayer registration number) 취득 및 일반 소비세(General Consumption Tax) 납세 등록
- ④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s) 항목 납부

자메이카 회사법(Companies Act, 2004)에 따르면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Companies Office of Jamaica)이 기업(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 등록청을 통해 민간 사업자는 회사의 법적 상태(legal status), 법적 준수사항(statutory compliance), 소유권(ownership)을 알아볼 수 있다.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이 됨.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된다.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은 자체 홈페이지(www.orcjamaica.com)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 및 상호명(business name) 검색이 가능하고, 회사 임원 세부사항(particulars of company directors)도 기입 및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식(form)도 다운 받을 수 있다.

1) 상호명(Business Name) 등록

사업자 등록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는 상호명과 이에 대한 법률상의 수속을 밟는 것이다. 상호명 선택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웹사이트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지를 검색하는 것이고, 검색을 통해 만약 등록된 상호명이 아닌 경우 등록청을 직접 방문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체(Businesses) 및 회사(Companies)의 법적 형태 구별

사업(Business)은 몇 가지 법적 형태로 구별되는데 먼저 ‘회사(a company)’와 ‘사업체(a business)’는 법적으로 구별된다. 회사는 개인사업자(sole trader)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를 말하고, 사업체는 영리 기업(commercial enterprise)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 지위를 신청할 때, 은행 입출금 내역서(bank statement),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고지서와 같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address verification document)가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비용은 J\$ 2,000이고, 처리에 3일이 소요되며, 등록증이 발급된다. 신속등록(express registrations) 서비스도 가능한데 J\$ 1,500이 추가로 소요되며, 처리에 1일이 소요된다.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한 형태의 비즈니스이다. 법적 구조상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에서는 전문기업(professional) 및 일반사업체(business)가 동일하게 인식된다. 결과적으로 사업주(business owner)가 사업상의 채무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사업주의 개인 자산이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개인사업자를 위한 BN2 양식(BN1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동업관계는 2명에서 20명 사이의 동업자로 구성됨. 이익과 손실은 동업자들이 동등하게 나누며, 각 동업자는 기업의 부채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 동업관계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양식들은 아래와 같다.

- 동업자를 위한 BN2 양식(BN2 Form)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TRN)

유한책임회사 구조에서는 개인 자산이 회사 채무 처리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되며, 회사가 피소되어도 사업주들은 개인 예금이나 부동산을 채무 해결을 위해 처리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가 사업체를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90일 동안 회사명 예약이 가능하다. 회사의 목적에 따라 양식들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양식 1A(Form 1A) : 영리 기업(for-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며, 회사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Stamp Duty and Transfer Tax Office)에서 확인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함.
- 양식 1B(Form 1B) : 비영리 기업(non-profit businesses)에 해당하며, 정관은 인지세/양도세 사무소에서 확인받아야 함.
- 양식 2(Form 2) : 동 양식은 신청자가 자메이카 기업법(Companies Act, 2004)을 읽고 숙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됨. 동 기업

법을 준수하겠다는 신고서(Declaration of Compliance)는 기업 임원(director) 또는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17(Form 17) : 기업 등록 주소를 명시함.
- 양식 20(Form 20) : 회사 총무부장(company secretary)을 임명하기 위한 양식임.
- 양식 23(Form 23) : 기업 임원진 명단으로 현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양식 31(Form 31) : 외국계 기업이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할 경우 사용되는 양식으로, 모든 임원진 명단 및 주소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동 명단에는 기업 대표로 승인받은 자메이카 상주 최소 1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한 자메이카 국적이 아니면서 사업에 착수하려는 신청자는 자신이 원하는 비즈니스 지원 서류와 함께 근로허가증(work permit)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설립기업은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자메이카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J\$ 25,000이며, 등록된 기업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및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신청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양식 31(Form 31)
- 회사 정관 공증 사본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번역본은 해외 주재 자메이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자메이카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자메이카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증 받을 수 있다.

3) 회사 임원 및 간부 임명

회사 등록 후 임원진 임명 후 14일 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최소 1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며, 공기업은 최소

3명의 임원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중 2명은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회사가 제출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임원진 임명 통보(양식 작성)
- 각 임원들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모든 회사는 반드시 1명의 총무부장(Secretary)을 임원진을 통해 임명해야 하며, 총무부장 임명 후 15일 이내에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통보되어야 한다. 단독 이사(sole director)는 회사 총무부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관련 회사는 다음 사항들을 제출해야 한다.

- 총무부장 임명 통보(양식 작성)
- 총무부장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납세자 등록번호

※ 서류들은 반드시 변호사,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되어야 함.

기업 임원진 변경이 있을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 때 임원진 변경 통보가 양식으로 작성되어 납세자 등록번호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4) 연차 보고(Annual Returns)

등록된 회사는 법에 따라 법인 등기소에 연차 보고를 해야 하며, 법인 설립 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연차 보고는 공문서(public document)로 회사 형태, 사업 활동, 등록 사무실, 임원, 자산에 의해 보증된 채무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연차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사 등록이 취소됨.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임원진 및 총무부장 납세자 등록번호 공증 사본

- (회사 임원진 또는 총무부장이 공증한) 최근 대차대조표와 회사 총회에 제출된 손익계산서

5) 지적재산권

기업은 또한 그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로고(logos)는 상표(trademarks)와 함께 보호될 수 있는 바, 기업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상표는 작성된 관련 양식을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Jamaic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제출해야 한다. 상표 신청을 위해 먼저 자메이카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동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다른 상표와 유사하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표 신청 양식(TM1)
- 등록용 상표 복사본(6개 다른 색)
- 상표가 보호할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상표를 제출할 때 J\$ 3,500이 등록을 위해 소요되며, 실제 등록 시 J\$ 3,500이 추가로 소요된다.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신청자의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등록

1) 고용보험제도

자메이카 고용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65)은 18세 이상 모든 남녀가 고용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각 등록자들의 영구 기록(permanent record)을 유지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수혜자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업무상 부상, 장애, 사망 및 퇴직 등이 발생한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금수당(retirement benefit)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용보험 수당으로, 동 수당이 지불되려면 근로자가 남성 65세, 여성 60세 정년에 이르러야 하며, 정년 이후 더 이상 고용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고용재해수당(employment injury benefit)은 피고용인(employee)의 업무상 재해 또는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장애수당(invalidity Benefit)은 수당 지급 신청 전 26주 동안 근로가 불가 하였던 보험가입자(contributor)에게 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단 신청자가 겪는 고통이 영구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의료제도(NI Gold Health Plan)라는 퇴직자들을 위한 의료 제도를 통해 의사 왕진(doctor visit), 처방약, 치과 및 안과 진료, 외과 진료 비용 지급이 혜택으로 제공된다.

2) 등록 절차

기업과 개인의 고용보험 등록(employee registration)은 구별된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모든 피고용인들은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전체 급여의 2.5%와 이와 동일한 규모의 각출 자금을 고용보험 분담금으로 납부한다. 고용주는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NIS Parish Office)에 각 피고용인의 공제 카드를 요청해야 한다. 등록 불이행, 다중 등록, 생년 월일 등의 필수 정보 오용은 고용보험수당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보험 등록증(NIS Registration Letter)은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발급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 사업체 모두 고용주 등록 양식 사본 및 각 소유주 또는 동업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를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고용주 사업 등록 신청 양식(R1)
- 법인 정관 증명서
- 상호명 등록 증명서
- 각 임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

이후 고용보험 등록 레터 및 고용주 참조 번호(Employer Reference Number)가 회사로 발급된다.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을 통한 연령 증명 및 결혼증명 사실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증명 사실들은 제출 당일 처리되어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로 전달되며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납세자 등록 및 일반 소비세 등록

1) 납세자 등록번호(TRN)

납세자 등록번호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개별 납세자, 기업, 기관(비영리 단체, 동업관계, 자선단체, 교회, 교육기관, 재단)에 부여되는 고유한 9자리 숫자이다(Tax Administration Jamaica, 2012). 등록번호는 일반소비세 납부나 운전면허 획득 등과 같은 정부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사용되며, 은행 등도 비즈니스를 위해 동 등록번호를 필요로 한다. 신청 후 3주 정도 후에 개별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번호 카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으며, 기업은 등록번호 증명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는다. 번호 등록에 부과되는 비용은 따로 없다. 공식 서류 및 카드가 처리되는 동안 신청자들에 등록번호와 배정표(assignment slip)가 발행된다.

2) 등록 처리

신청자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Individuals) Form 1)를 유효한 ID(여권 또는

운전면허)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신청서는 납세자 등록 센터(Taxpayer Registration Centre)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tax collectorate)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법적 형태에 근거해서 각각의 신청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2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Organization) Form 2)를 작성하여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동 신청서는 반드시 추가 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가 동반되어야 하며,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서류만이 인정된다.

3) 법적 형태별 신청 필수요건

개인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권 및 운전면허증과 함께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 자영업자(기업 제외)는 작성 및 서명된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유효한 ID
- 고용보험(NIS) 카드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있는 경우)

기관의 경우, 동업관계용과 회사용 두 가지의 납세자 등록번호 등록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동업관계용은 동업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상호명 등록증명서(상호명이 동업자의 상호명과 다른 경우 상호명 등록증명서 반드시 제출(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동업자의 납세자 등록번호 및 고용보험카드
- 서명인 ID

회사는 임원 또는 총무부장의 서명을 받은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법인 등록증
- 회사 정관(임원들 명단이 정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양식 23 (Form 23) 필요)
-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각 임원들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자메이카에 사업체를 설립한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 또는 지역 대표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증 또는 공증 사본,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 발행 등록증
- (회사가 자메이카에서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등록 증명 서류(고용보험 레터 또는 지불 카드)
- (회사가 자메이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역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는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이 발행한 양식 19(Form 19) 또는 31(Form 31)
- 지역 대표자 또는 임원진 납세자 등록번호
- 서명인 ID

자메이카에 사업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해외 기업들은 담당자가 서명한 납세자 등록 양식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등록증

- 담당자 ID 및 납세자 등록번호
-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체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회사 발행 레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원들 모두가 납세자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임원진 중 적어도 한 명의 납세자 등록번호는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일반소비세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로 일반소비세법에 의거 1991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구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에 지불한 최종 가격에 포함되는 소비세이다.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적용된다. 일반소비세법에 따라 자메이카에서의 영리행위는 아래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세금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 등록
- 일반소비세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 징수
-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taxable period net tax due)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 매입세액 공제 후의 매출세액 징수분을 세금행정처로 30일내에 송금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및 통신카드에 25%, 관광서비스부문에 10%가 부과된다.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으며,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단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일반소비세 등록을 해야 한다. 전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액이 연간 J\$ 3,000,000 이

하인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사업체에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으나, 동 사업체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소비세가 징수된다. 전체 판매액이 J\$ 3,000,00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등록 납세자(Registered Taxpayers)로 간주되고, 일반소비세가 징수되어 세금행정처로 송금된다.

등록 납세자는 사업 운영에 사용된 구매 물품들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에 대해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동 환급은 생산 및 재판매(resale)를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capital property), 사무용품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 요청될 수 있다. 환급은 판매에 부과된 일반소비세에서 공제된다.

5) 등록 처리

일반소비세법에서 '당사자(a person)'는 개인, 기업 또는 동업관계임(비법인, 합작투자, 신탁 관리자, 신탁 재단 포함). 당사는 아래의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일반소비세 등록을 할 수 있다.

- 일반소비세등록 양식 1 신청서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일반소비세 신청이 승인되면, 세무청장(Commissioner General)은 앞에서 언급된 기준 금액 이하(J\$ 3,000,000)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통지서(Notice of Registration)를 발급하며, 기준 금액 이상의 사업체에는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가 발급된다. 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체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활동을 시작한지 21일 내에 일반소비세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벌금은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J\$ 5,000, 기업인 경우 J\$ 10,000). 또한 미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2.5%의 조세부가금(tax liability)이 적용된다.

법정 공제(statutory deduction) 및 일반소비세 납부는 개별적인 조세 활동으로서 매달 발생하며, 고용주의 월 법정 급여공제는 매월 14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소비세는 매월 마지막 날에 보고 및 납부된다.

6) 납세 준수 증명서

회사는 납세 및 급여와 관계된 법정공제를 최근까지 지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 TCC)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

- 아래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가 필요함.
 - 통관업자 면허(Customs Brokers Licence) 신청시
 - 채석 면허(Quarrying Licence) 신청시
 - 도박 및 복권 면허(Betting Gaming and Lotteries Licence) 신청시
 - 시민권(Citizenship) 또는 근로자격(Work Permit) 신청시
 - 보안업체 등록(Security Firm Registration) 신청시
 - 정부와의 계약(Contracts from Government) 신청시
 -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import entry)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수입업자
- 납세 준수 증명서는 세무행정처(Tax Administration Jamaica)에서 획득할 수 있음.

※ 납세 준수 증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투자진출환경 세제 부분 참고

법정 공제 준수

1) 법정 공제 종류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월 공제(monthly deductions) 또는 기여금(contributions)이 있으며, 고용보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 외 교육세, 주택신탁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등이 있다.

○ 세금 및 기여금 종류

법정공제 항목	피고용인 부담	고용주 부담	계산 기준
고용보험(NIS)	2.5%	2.5%	전체 보수
주택신탁기여금(NHT)	2%	3%	전체 보수
교육세	2%	3%	법정 소득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없음	3%	연간 J\$ 173,328 이상의 급여

출처 : www.jamaicatax.gov.jm

- 등록을 위한 양식들은 세금행정처 웹사이트(www.jamaicatax-online.gov.jm)에서 출력할 수 있음.

2) 교육세

교육세법(1983)은 교육부에 추가 수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모든 피고용인,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3%, 피고용인은 2%, 자영업자는 2%를 부담한다. 수입세와 마찬가지로 교육세는 일정한 등록 형식은 없으며 법정 소득에서 공제된다. 세금 납부에 필요한 양식은 회사의 법적 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 양식 ET01(Form ET01):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모든 동업자 각각 양식 작성)
- 양식 ET02(Form ET02):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양식 ET03(Form ET03):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동업관계 및 유한 책임회사

3)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HEART) 기여금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법(1982)에 근거하여 청년층에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 기여금은 자메이카 전반의 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HEART Trust/ NTA에서 관리한다. 고용주는 월급으로 최소 J\$ 14,444(연 J\$ 173,328)을 받는 각 피고용인

급여의 3%를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HEART 신탁 송금 양식(HEART Trust Remittance Form)'을 사용하여 세무서에 송금된 총 급여가 계산의 기준이 된다. 양식은 세무서나 HEART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4) 주택신탁기여금(National Housing Trust Contribution)

주택신탁기여금은 1976년에 국가보험법(1976) 수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신탁법(1979) 관리하에 있다. 주택신탁기여금은 자메이카 주택 문제 해결 및 본인 주택을 구입, 건설, 보수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 기여금은 고용주들의 의무적인 기여금 납부를 통해 활동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5%의 기여금은 회사 기여금 3% 및 피고용인 월급에서의 2% 공제로 구성된 것이다. 동 기여금은 NHT(주택신탁) 사무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등록을 위해 가까운 고용보험(NIS) 사무소에서 '고용주 등록 양식(R1)'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 양식을 고용보험 사무소에 제출하고 회사는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를 발급 받는다. 사업체 또는 회사 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서류들이 요구되는 바, 등록 시 개인사업자 및 동업관계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소득신고양식(법원 공증)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 개인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여권 사진 1장(최근)
-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유한책임회사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고객정보양식

- 법인등록증
- 정관
- 사업체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
- 고용보험 등록증

세제

가. 개관

자메이카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로 주요 부과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수입세
- 거래세(일반소비세, 양도세, 관세, 인지세)
- 재산세(토지/재산세, 자산세)
- 급여세(세금원천징수, 고용보험, 주택신탁기여금, 교육세, 채용 및 인적 자원 훈련 기여금)
- 기타(연간회사등록비용, 자동차면허세, 여행세 등)

나. 세금 유형별 안내

1) 소득세

2017년 말 기준 연간 소득이 J\$ 1,375,140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연간 소득이 그 이하인 과세소득자는 소득세 면제). 2018년부터는 상기 소득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연간 소득이 J\$ 1,500,096 인 과세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피고용인의 경우, 소득세는 세금원천징수(PAYE) 시스템을 통해 공제가 되고 이는 세무서에 매월 납부된다. 근로 소득 뿐인 납세자는 보통 일반적 연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재산세

자메이카에서 재산세(capital taxation)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등 일정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자메이카내 상주 법인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범위에 속한다. 비상주 법인은 자메이카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사무실 또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메이카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연금, 자선단체 등 특정 기관의 소득 등은 면세된다.

4)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

법인은 순수익의 33.3% 고정 세율이다.

5) 수익배당금 및 양도소득

주식이 자메이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메이카 법인에 의한 수익 배당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의한 수익배당금은 회사(33.3%), 개인(25%)의 세율로 과세된다. 배당금이 외국계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자메이카와 해당 국가 간에 조약이 발효되어 있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6) 회사간 지불

외국계 기업의 경영 수수료, 연구개발비용, 총무행정비용에 대한 지불은 제공된 서비스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비율로 인정될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자메이카내 외국법인의 현지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지 사업장이 사무실 또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지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법인이 대신 등록할 수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등록이 가능하다.

8) 지점 운영

영업활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지점 운영은 자메이카와 유관하게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점, 본사 및 자회사간 거래는 기업간의 거래(at arm's length values)로서 취급된다.

9)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10) 서비스비용, 관리비용 및 임대료

자메이카로부터 외국계기업에 지불된 서비스 비용, 관리 비용 및 임대료에는 33.3% 또는 조약상 세율(세율이 더 낮은 경우)이 적용된 소득세가 부과된다.

11) 일반소비세(GCT or VAT)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나, 실질적으로는 생산 및 유통 과정 각 단계에서 징수된다.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16.5%의 세금이 부과되며, 영세율(zero-rated)이 적용되는 품목 및 일반소비세가 면세되는 품목도 있다.

세무서에 납부되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소비자에 부과하는 세액(매출세액)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지불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다(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일반소비세 환급 요청 가능).

12) 양도세

양도세법(1971)에 따라 각 양도에 대해 5%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며, 양도세는 자메이카에 위치한 일정 등급의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은 토지, 건물, 토지임대, 회사증권, 처분 시 수익권으로 구성된다. 자메이카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세금이 면제된다.

13) 기타 간접세

아래와 같이 일정 활동 및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세금이 있다.

- 호텔 숙박세
- 건설 활동세
- 수입세
- 인지세
- 서류세
- 수권자본에 대한 인지세

14) 동업

동업관계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conduit)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업자, 법인 또는 개인들에 수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합작투자도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로 간주된다.

15) 외국계 동업자에 대한 과세

법인 동업자를 포함한 자메이카 비거주 동업자는 자메이카에서 축적 또는 파생된 동업관계 이익 분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관련 조세협약이 제공하는 정의가 없을 시 만약 영업활동이 자메이카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동업관계가 자메이카내에서 관리 또는 조정되는 경우, 수익은 보통 자메이카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조세협약

자메이카 정부는 자메이카와 중요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와 자메이카에 중요한 투자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 조세 관련 협약에 대해 협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자메이카는 13개 국가(미국, 캐나다, 덴마크,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스위스, 중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카리콤)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s(DTAs))을 체결하였고, 6개 국가(덴마크, 페로 제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남아공)와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and Exchange Agreements(TIEAs))을 체결하였으며, 주로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및 해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다. 납세 관련

1) 개 관

납세에 필요한 대부분의 양식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jamaica tax.gov.j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납세신고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 국세청(Tax Administration Jamaica) 연락처

- 전화 : 1-888-829-4357
- 이메일 : taxhelp@taj.gov.jm
- 홈페이지 : www.jamaicatax.gov.jm

2) 납세 준수 증명서

납세 준수 증명서(Tax Compliance Certificate)는 개인 또는 회사의 최근까지의 조세채무 및 법정 공제 지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이다. 납세 준수 증명서는 각 세무서(collectorate)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하며, 납세 준수 증명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한 후 지정 세무서에서 수령할 수 있다(단, 현재까지 납세를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 지역별 세무서 연락처

지역별 세무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Kingston 세무서	(1876) 922-7919	(1876) 931-9194	tcckingstreet@ird.gov.jm
Port Antonio 세무서	(1876) 993-9852	-	irdptant@ird.gov.jm
Constant Spring 세무서서비스센터	(1876) 969-0006~7	(1876) 922-2876	tccspring@ird.gov.jm
St. Ann's Bay 세무서	(1876) 972-1378	(1876) 749-4866	irdbrtwn@ird.gov.jm
Spanish Town 세무서서비스센터	(1876) 984-3877	(1876) 962-6095	tccspntwn@ird.gov.jm
May Pen 세무서서비스센터	(1876) 968-2224	(1876) 952-2766	tccmaypen@ird.gov.jm
Mandeville 세무서	(1876) 625-5137	(1876) 902-1811	tccmandeville@ird.gov.jm
Montego Bay 세무서서비스센터	(1876) 952-6016	(1876) 794-9038	tccmobay@ird.gov.jm

○ 이메일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양식을 세금행정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③ 수령을 원하는 세무서에 이메일로 신청서 송부

○ 팩스로도 신청서를 송부한 후 납세 준수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자메이카 국세청에서 파악한 사항이나, 현지 특수성상 해당 세무서마다 실무 처리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실제 세금 관련 업무는 현지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국세청 납세준수과(Compliance Section of the Tax Administ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야 하며, 납세준수과는 신청자의 납세가 최근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Clearance Letter)를 발급함.
-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함.
 - ① 신청양식 작성
 - ② 납세자 등록번호(TRN)
 -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국세청 내 국세부(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 ④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 ⑤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 납세 준수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① 신청양식 작성
 -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 ③ 세금 납부 계획 공증 사본(certified copies of all arrangements to pay)
 - ④ 아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납세 준수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음.
 - 개인 물품 통관 관련(Individuals Clearing Personal Items)의 경우
 - ① 신청양식 작성

- ② 통관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③ 법정공제가 지불 증빙서류
 - ④ 물품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 등 수입 관련 서류 원본 및 사본
- 상업 물품 통관 관련 자영업자의 경우
- ① 신청양식 작성
 - ②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하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 세금원천징수
 - 회사/개인 소득세
 - 교육세
 - 일반소비세
 - 주택신탁기여금
 - 고용보험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 ③ 아래의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서류
 - 주택신탁기여금 사무소
 - 고용보험 사무소
 - 채용 및 인적자원 훈련 기여금 사무소
 - 개인소득세, 회사소득세, 교육세, 일반소비세에 대한 세금행정처 내국세부(Inland Revenu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Office)의 증빙서류도 필요
 - ④ 납세자 등록번호(TRN)

공공부문 조달

가. 개 관

자메이카 공공부문 조달제도는 재정회계법(Financial Administration and Audit Act)과 조달청법(Contractor General's Act) 등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조달청법은 공공단체(public body)의 면허, 허가, 양허, 승인 사항 및 공공단체가 발주한 건설 또는 상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약(agreement)을 포함하고 있다.

나.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국제경쟁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계약 체결 전에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에 등록되어야 한다. 국제경쟁입찰을 통한 조달 정보는 일간지 광고란에 게재되며, UN Development Business (UNDB) 웹사이트, 조달기회 관련 국제 정보란에 게재된다.

다. 조달기관 의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공개경쟁의 기준이 되는 기술 규격 제시
- 입찰자 평가 및 낙찰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한 공식 입찰 서류 제공

라. 조달청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조달청(Contractor General)은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고, 관련 법(Contractor General's Act)을 통해 국가계약위원회(NCC)에 정부계약 체결 관련 신청서 조사, 승인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내각의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조달청법에 따라 국가계약위원회는 등록을 위한 검증 기준 및 정부계약 입찰서 제출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제정한다.

마. 공개 입찰제도 및 절차

자메이카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제공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 자격심사 절차(pre-qualification)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경험, 기술, 재정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제경쟁 입찰인 경우 국가계약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특히 해외업체는 납세 준수(Tax compliance) 및 국가계약위원회(National Contracts Commission) 등록 등과 관련된 입찰 참여 적격성 여부가 중요하다.

납세 준수 여부는 해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계약이 자메이카내에서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유효한 납세 준수 증명서(TCC)를 확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위원회 등록 역시 해외업체 입찰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자메이카내에서 계약 내용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동 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 일반적인 조달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조달기관(Procuring Entity)이 입찰 관련 물류, 항목,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
 - ② 조달될 상품, 서비스 등의 특성, 가치, 참여 희망 기업 관심 등을 고려하여 조달 방법 결정
 - ③ 조달 계획 수립
 - ④ 입찰 모집 공고 게시
 - ⑤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사전자격심사 및 적격성 기준 통과에 부합하는지 점검

- ⑥ 조달기관은 결정된 조달 방법에 적합한 관련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입찰 진행
- ⑦ 입찰을 통해 계약자로 선정된 기업은 조달청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차관, 국가계약위원회, 내각(기획재정부 지지 필수)에서 승인 획득

바. 전력·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주요기관 역할

전력·에너지부문 입찰 관련 진행, 심사 및 승인 등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공공사업규제청(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과학에너지기술부(Ministry of Science, Energy & Technology) ▲조달청(Office of the Contractor General)이다.

공공사업규제청법(The 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 Act)에 따라 공공사업규제청이 전력·에너지부문 사업 허가(license)를 위한 제안서(application)를 입찰 참여기업들로부터 제출받아 심사(process)한 후 과학에너지기술부 장관에게 각각의 제안서 수락(acceptance) 및 거절(rejection)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과학에너지기술부 장관은 공공사업규제청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사업을 허가하거나, 공공사업규제청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사업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조달청은 관련 법(The Contractor General Act)에 따라 정부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에너지부문 사업 관련 공공사업규제청 및 과학에너지기술부의 입찰 절차, 진행 및 허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권고(recommendation)를 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입국 및 근로허가

가. 입국 사증

- 관광, 일시 방문 등을 위한 입국시
 - 사증면제협정에 의하여 90일까지는 사증(visa) 없이 방문, 체류 가능
 - 단, 사증 없이 입국 후에는 노동 비자 등으로 전환 곤란
- 상업 및 근로 등 목적 입국시
 - 자메이카 입국 이전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에서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획득한 뒤,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발급(필요서류: 여권, 근로허가, 1년 유효 귀환 티켓 등)

나. 근로허가(Work Permit)

자메이카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메이카 입국 전 노동사회복지부로부터 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그 면제(Exemption)를 신청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 형태(자원봉사, 상업, 전문직, 봉사 활동,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가 ‘외국인 및 영연방 국민법’(1964)에 따라 근로허가 발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1) 개 관

근로허가 신청자는 고용주 또는 대리인을 통해 노동사회복지부 근로허가과(‘Work Permit Department’)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허가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커버 레터, 첨부서류(supporting documents), 관련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커버레터는 3부씩, 첨부서류는 2부씩 준비(“Investment manual”, <http://www.jamaicatradeandinvest.org>) 참조)

- 근로허가 담당기관(신청서 교부처)
 - 기관명 : 노동사회복지부
(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 주소 : 1F North Street KINGSTON
 - 전화 : 1-876-922-9500-14
1-876-922-6740
1-876-948-2759
1-876-948-2594
 - 이메일 : mlssworkpermit@gmail.com
 - 홈페이지 : www.mlss.gov.jm
 - 노동사회복지부 지역 사무소(Ministry of Labour Social Security parish office)는 수도 킹스톤 이외 지방에도 소재
- 신청서 작성 방법
 - Part I은 신청자가, Part II는 고용주가 작성하고 해당일자 입력 및 서명
 - 질문사항 43~50의 현지인 채용 관련사항을 작성
 - 신청자와 해당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N/A로 표시
 - 승인시 고용주에 통보 및 비용납부(자메이카 NCB 은행)
- 근로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허가증(번호, 사진 포함되어 있는 카드 형태)이 발급되며, 신청자(영연방국인 제외)는 노동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2) 첨부서류

- 커버 레터(Cover Letter)
 - 피고용인 대신 근로허가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자신이 작성한 커버 레터를 노동사회복지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 신청 이유 ▲ 신청인 근로 형태(직책) ▲ 예상 근로 기간 ▲ 자메이카 현지인 채용 불가사유 등이 적시되어야 함.
 - 자영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근로 형태 및 기간이 명시된 커버 레터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투자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투자계획에 대한 서류상의 증명도 제출).
- 기타 첨부물
 - 사진 2장(25mm × 35mm)
 - 자격증명(번역공증) : 학력 또는 경력 증명서(이민국 발급 승인서 (letters of accreditation)도 가능), 신청자의 이전 사업/상업/직업 활동에 대한 증명서류, 전 고용주의 추천서 등이 자격증명 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시 원본 지참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출신국 해당기관 발부) : 경찰청 최근 6개월 이내 발부
 - 회사설립증명 및 정관(각 공증)
 - 여권 사본
 - 납세자등록번호(Tax Registration Number, TRN) 등
 - ※ 참고로 상기 관련 서류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 번역본이 제공되어야 함.
- 기타
 - 근로허가신청 및 분실시 비용이 발생하고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전 고용주의 동의서 필요
 - 가족 동반시 근로자만 신청하여 취득

- 기간은 통상 4~6주가 소요되나 서류보완 필요시 지연
- 근로허가신청과 관련, 신청비용으로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J\$ 42,500, 6개월 이하인 경우 J\$ 85,000, 9개월 이하인 경우 J\$ 127,500, 12개월 이하인 경우 J\$ 170,000을 납부해야 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J\$ 42,500씩이 추가

3) 근로허가 면제(Work Permit Exemption)

근로허가 및 그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신청으로서 동일한 신청양식을 사용한다. 자메이카 국민의 배우자, 외교관, 공무원, 선원, 항공승무원, 문화예술인, 학자, 의료진, 종교인, 투자이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근로허가 면제(또는 비용감면) 여부는 사업의 공공성, 계약상 대방 등 종합적인 요소를 참조하며, 사업자의 교섭에 상당부분 좌우되고 조건이 부과 가능하다.

근로허가는 자메이카 도착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계약상대방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한 바, 사전 문의를 통해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예외조항

- 사업상 일시목적 방문의 경우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 ① 자메이카 설립회사 또는 이를 지배하는 회사의 이사, 감사
 - ② 사업상 대리인(business agent) 등 임명 또는 상담 목적 입국
 - ③ 공장, 기계, 설비 등을 검사하거나 기술 조언 목적
- 1회 30일, (복수 방문 시 1년 중 통산하여) 총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허가 신청 자체가 면제됨.

※ 법령 근거 : 외국인 및 영연방국민법(Foreign Nationals and Commonwealth Citizen's Exemption Regulations 1964, 2011년 개정)

노사관계

가. 개 관

자메이카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조 등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하는 바, BITU(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NWU(National Workers' Union) 등 주요 노조가 정당 정치 역사와 연결 되어 있다.

분쟁 시에는 협의나 노동부개입 이전 성급하게 파업을 개시하는 경향이 있고(일단 파업후 조정, 중재 경향), 공공서비스 등에 있어 불법파업이 용인 되고 있으며, 다른 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동관련법(LRIDA 등)이 노후화 되었으나 법정비가 미진하다.

외국기업의 경우 범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초기 진출단계에서는 자메이카 노동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Outreach Service)를 받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노동운동의 역사

전통적으로 설탕 공장 등지에서 많은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919)이 제정되었고, 현재의 교직원조합(JTA)의 전신인 교직원노동조합, 목수, 페인트공 조합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다수의 노조가 신설되어 통합되기도 하였다. 1938년 발전, 부두, 설탕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알렉산더 부스터만테(Alexander Bustamante), 노먼 맨리(Norman Manley)의 주도로 발생, 이후 노동 지도자들은 총리를 역임하였다. 1939년 부스터만테의 주도로 부스터만테 산업노동조합(Bustamante Industrial Trade Union, BITU)이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자메이카노조의회(Jamaica Trade Union Congress, JTUC)가 노조 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1952년에는 국민당(PNP)에 의하여 국가노동조합(National Workers' Union, NWU)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 125개가 넘는 노조가 생겨났으며, BITU, NWU는 현재 대학근로자연합(University and Allied Workers' union,

UAWU)와 함께 자메이카 3대 노조 형성되었다. BITU, NWU, JTUC 및 지역공무원노조(JALGO)가 연합노조 연구발전센터(JTURDC : Joint Trade Unions Research Development Center)를 만들었다가, 1994년 Jamaic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JCTU)가 설립되었다. 현재 전력, 건축 분야에서는 Electrical and Construction Workers Union 등이 유력하며, 이에 대응하여 고용주 단체인 Jamaica Employers' Federation(JEF)도 활동하고 있다.

다. 분쟁해결

1) 비공공 부문

정부(노동부)는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인 해결을 추구하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하여 노동부의 조정서비스(conciliation service) 청구가 가능하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제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한제한은 없다. 또한 배정된 노동담당관 하에 당사자들이 노동부에 출석하며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조정서비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아래 3가지 방법에 의한 해결 절차가 있다.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사적 중재 회부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LRIDA, 1975)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단체협약의 해석, 해고문제 등을 주로 다룸.
- 당사자 합의 또는 노동부 직권에 의한(특히 파업 발생시) 산업분쟁중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 IDT) 회부 : 단체협약 해석, 해고뿐 아니라 임금협상 등 본질적인 문제도 다룸.(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2)
- 노동부에 의하여 임명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에 의한 질의, 권유 : 구속력은 없으며, 질의위원회는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해 활용되기도 함.(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Section 14)

- 2)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은 급여심사위원회(PSRB)에 의하여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징계절차, 애로진술 절차

1) 사내 징계절차

- 일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개선을 유도
- 징계회부시 공정성 유지
 - 철저한 사실조사(증인의 서명진술서 획득, 근로자기록)를 통해 잘못이 확실한 경우 징계절차 회부
- 노사가 참여한 회사규정 마련 및 숙지기간 필요
 - 징계절차는 공지 및 변론, 불복의 기회를 필히 포함
 - 징계심문 시 사측 복수인물 참석으로 증거 보전 필요
 - 조합대표는 상근 조합간부와 토의한 이후에 징계가 가능하며, 중대 잘못을 제외하고는 처음 위반으로 해고는 부당(Labour Relations Code)

2) 사내 고충처리(Grievance) 진술 절차

- 관련절차 활용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 상시 근로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만 등이 진술될 수 있어야 함.
- 애로사항은 먼저 직속상사에 진술하고, 그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시 상급 관리자에 진술할 수 있으며, 다시 임명권자에 진술할 수 있는 3단계 절차를 마련하되,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합의에 의한 중재 또는 노동부 제소가 가능함.(노조는 관리자에 진술하는 단계에서 개입 가능)

마. 노동사회안전부 역할

1) 개 관

노동사회안전부 산업관계과(Industrial Relations Division)의 (1)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및 (2) 임금 및 고용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에서 노사관계, 취업, 산업안전 부문을 관장하고 있다.

-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설정
 - ILO 조약상 근로조건 준수
 - 산업안전조건 감시
 - 구직자와 고용자간 효율적 정보 공유

2) 조정 부서(Conciliation Section) 역할

- 조정서비스
 - 노조 관련 분쟁의 경우 조정으로 우선 해결되며, 노조 또는 사용자 일방이 조정신청 가능
 - 단체협약(Labour Management Agreements) 체결 및 운용, 해고, 기타 근로자 관련 권리의무 분쟁을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의 방법으로 조정
 - ※ 상담,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RIDA) 상의 자발적, 비자발적 중재 회부, 조합의 대표성 확인 투표,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회부 등이 주요내용
 - 조정 부서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은 산업분쟁중재소(Industrial Dispute Tribunal)의 중재에 회부

○ 산업분쟁중재소(IDT)

-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필요, 공공서비스 관련 불법쟁의 발생, 당사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회부
- 소장 외 2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며 변론과 증거 및 증인심문 후 21일 내에 과반수 동의 또는 3명 의견 불일치시 의장 결정으로 중재결정
- 중재소는 절차진행 중 쟁의금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위반시 소추 가능
- 중재결정 전 당사자 합의시 중재절차 철회요청 가능

3) 임금 및 산업기준 부서(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법, 유급휴가법(Holiday with Pay Act), 출산휴가법(Maternity Leave Act), 고용법(Employment Act ; Termination and Redundancy payments)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J\$ 6,200(1주 40시간 근로기준)이며, 직종별로 상이(예 :산업현장 경비원의 경우 J\$ 8,854)
- 전화상담도 제공

4) 교육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노사 당사자에게 권리의무, 관행, 시장개방 등에 따른 이슈, 제3자 개입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노동사회안전부의 각 부서(Conciliation Section, 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ranch, Industrial Safety Division)가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역할극(role-play), 사례연구 등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

5)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 및 산업분쟁법(Labour Relations and Industrial Disputes Act)

- 1975년 제정되어 전반적인 노동분야 및 상설 산업분쟁중재소(IDT) 설치 등에 대해 규정
- 노조의 대표 결정 투표, 해고자복직, 집행력확보, 조사위원회(Board of Enquiry), 노동관계규칙(Labour Relations Code), 대표권한, 단체교섭 등을 규율
-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 1919년 제정되어 노조등록, 노조 재산관리, 노조규정, 해산, 쟁의절차 등을 규정
-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 최저임금권고위원회(MWAC)에 의하여 노동부는 명령을 통해 산업별, 분야별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규정
- 유급휴가법(Holidays with Pay Act) : 유급휴가 등을 규정
- 공장법(Factories Act) : 공장, 빌딩, 건설현장에 적용되며, 위험한 기계, 안전장비, 화재시 피난경로, 안전교육, 위생, 구급 등을 규정

천연자원 현황

자메이카는 보크사이트 이외에는 특기할 광물자원이 많지 않다(석고, 대리석, 석회석, 실리카 등이 있으며 구리, 납, 망간, 철 등의 광물은 소량 매장).

보크사이트 개발 현황

자메이카는 현재 세계 5위, 중남미 2위(브라질 다음) 수준의 보크사이트 매장량(20억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St. Elizabeth, Manchester, Clarendon, St. Catherine, St. Ann, Trelawny 등 중부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현재 자메이카에는 1개 보크사이트 공장 및 4개 알루미늄 공장이 있다.

구분	회사	위치	소유권	연간 생산량 (백만톤)	설립 연도
보크사이트	Noranda Jamaica Bauxite Partners	Discovery Bay	Noranda Bauxite Limited(49%), 자메이카 정부(51%)	5.4	1952
알루미나	Windalco	Ewarton, St. Catherine	UC Rusal(93%), 자메이카 정부(7%)	0.67	1959
		Kirkvine, Manchester	UC Rusal(93%), 자메이카 정부(7%)	0.61	1952
	Jamalco	Halse Hall, Clarendon	General Alumina Jamaica(55%), 자메이카 정부(45%)	1.416	1972
	Alpart	Nain, St. Elizabeth	UC Rusal(100%)	1.7	1969

최근 칠레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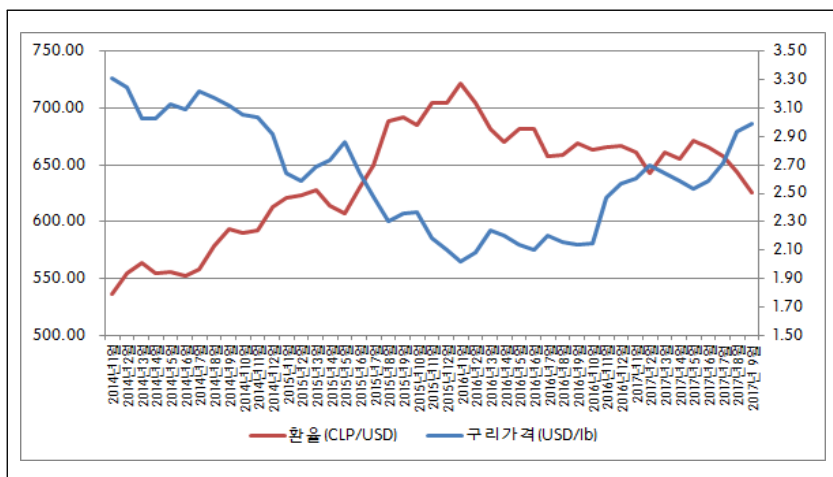
칠레는 1990년 피노체트 정권의 몰락 이후, 세바스티안 피네라 정권(2010~2014년)을 제외하고는 중도좌파가 지속 집권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 하에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는 개방경제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2017년 기준, 칠레는 64개국과 총 26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세계에서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16년 IMF 자료 기준, 칠레 1인당 명목 GDP는 13,576달러로 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2000년대 들어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던 칠레 경제는 2014년을 기점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6년 GDP 성장률은 1.6%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도 4분기부터 심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2017년 경제성장률 또한 1.0~2.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7년도 하반기 칠레의 산업생산지수와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18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구리는 칠레 GDP의 7% 이상, 전체 수출규모의 45% 이상을 차지하여 구리의 국제가격 등락은 칠레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014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구리가격이 세계 인프라 시장 활성화 특히, 칠레 구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제조업 호황으로 마침내 2016년 말부터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국제구리가격은 2017년도 3/4분기에만 8.78%가 상승하였으며, 2017년 10월에는 2014년 9월 18일 이후 최고치인

3.20USD/lb를 경신하기도 하였다. 국제구리가격은 2020년까지 세계 구리광산의 재고량과 공급량 감소 전망 및 중국 경제활동 회복세에 따라 향후 몇 년 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국제구리가격 추이



자료원 : 칠레중앙은행 자료 무역관 재구성

칠레 페소의 대 달러화 환율은 최근 구리가격 상승,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2017년 10월 달러당 619.5페소까지 떨어지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

칠레 중앙은행은 2017년 상반기 총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먼저 1월 19일 0.25% 인하를 결정하여 3.2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4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진 기준금리 인하 조치이며, 3.50%를 유지하던 2015년 12월 이후 첫 기준금리 변동이다. 이후 3월 16일, 4월 13일, 5월 18일 각각 0.25%씩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었고, 2017년 10월 기준, 현재 기준금리는 2.50%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진행된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지속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물가상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노동시장 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구리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내수 진작으로 인해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 국가신용등급 AA-에서 A+로 강등

2017년 7월 13일 국제신용평가사 S&P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칠레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강등하였다. 이는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 바첼렛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저소득층 대학무상교육)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2017년 말 대선 및 총선 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에, 최근 경기반등세를 고려하여 전망은 오히려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태평양동맹(AP)에 기반한 경제협력 확대

2017년 6월 콜롬비아 칼리(Cali)에서 개최된 '제12회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에서는 '준회원국(Estados Asociados)' 지위를 창설하였다. 준회원국가 입은 태평양동맹 회원국들과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통합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017년 현재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총 4개국과 준회원국가 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칠레 정부는 아태지역내 자유무역을 확대하여 자국 상품의 시장접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준회원국 후보국과의 가입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칠레 정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6%의 단일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수입품의 통관가격(CIF)이다. 칠레는 64개국(세계 최대 체결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실효관세율이 2017년 기준 1% 미만이다. 또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되며,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부가금이 부과된다.

수입부가금

- 과세표준(CIF 가격과 관세의 합)으로 부과하는 세금
 - 주류세(와인, 샴페인, 과실주, 맥주 - 15%, 증류주, 피스코, 위스키 등) : 31.5%
 - 음료세(비알콜성 음료) : 13%
 - 사치세(금, 보석, 모피 등) : 15%
 - 폭발물(폭죽 등) : 50%
- 부가가치세와 다른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여송연(Cigar) : 공식판매가 52.6%
 - 가공된 담뱃잎 : 공식판매가 59.7%
 - 담배(Cigarette) : 개피당 0.0010304240 UTM + 갑/곽/포장 소비자가격의 30%
 - 연료세 : 디젤 m³ 1.5 UTM, 휘발류 m³ 6 UTM

*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칠레 세금계산시 사용하는 가상 화폐 단위로 2017년 10월 기준, 1UTM = CLP46,786 (약 US\$74.3)에 해당

통관절차상의 장벽

1,000달러(FOB 기준) 이상 수입품은 반드시 전문통관사(Agente de Aduanas)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후 반출까지는 48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입물품은 세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반출이 지연되면 창고 보관료가 누적 적용된다. 90일 이내 반출하지 않은 물품은 ‘유기물(遺棄物)’로 간주한다.

수입규제

칠레 정부는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중고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 △동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예: 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 차량의 수입은 가능하다. 또한, 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 및 남부 폰타 아레나스(Punta Arenas)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고차를 수입하여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HS코드 불일치

칠레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 작성 시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재해야 하는 바, 칠레에서 사용하는 품목분류기준인 국제통일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HS코드 불일치에 따른 특혜관세 미적용 불이익은 없다.

비관세장벽 :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칠레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 부과는 ‘칠레수입상품 가격왜곡조사위원회(CNDP)’에서 조사를 거쳐 임시조치 후,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9년~2017년 10월까지 칠레 내 수입규제(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반덤핑 조치는 연평균 0.83회, 세이프가드 조치는 2.3회로 전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덤핑 대상 국가는 아르헨티나(9회), 멕시코(3회), 중국(1회), 미국, EU, 폴란드, 체코 각 1회 정도로 한국의 對칠레 수출품목이 아닌 밀가루, 강철선, 강철봉, 분유 등에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또한 한국의 對칠레 수출품목이 아닌 식료품 및 강철선으로 나타난다.

2017년 10월 기준, 현재 유효한 비관세장벽은 중국산 지름 16mm 이하 강철선(28.8~38% 증가세 부과), 멕시코산 강철봉(9.8% 증가세 부과) 총 2건에 불과하다.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관련 장벽

표준

표준관련 핵심 기관은 ‘칠레국가표준원(INN)’으로 업무는 크게 (1) 국내 표준기술 연구소·시험소 인증 및 관리, (2) 칠레표준(NCh) 연구 및 확립으로 나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칠레표준(NCh) 수는 총 3,400여개에 불과하며, 특히 ‘의료기기’, ‘에너지’ 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라벨링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수입자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인증

칠레에서 난방·전기·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연료관리국(SEC)이 규정하는 ‘안전성(Seguridad)’과 ‘에너지효율(Eficiencia)’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외에도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국방부 산하 병무청)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비료 및 살충제 등(농림부 산하 농목축청),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등(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 △방사능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칠레원자력위원회), △수산물 등(농수산차관실), △시멘트(주택도시계획부) 등 품목은 필수인증을 거쳐야 한다.

환경 관련 규제

칠레 주요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MMA),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RCA)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칠레 환경부(MMA)와 수도권 지역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Santiago Respira(산티아고는 숨쉰다) 프로젝트’는 교통, 산업, 주거 전반을 아우르는 민관협 대기오염 억제 프로젝트로 긴 논의 및 준비 과정 끝에 마침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Santiago Respira 프로젝트 주요 규제를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교통

- 2012년 이전 공급된 촉매컨버터 탑재차량 동절기(5~8월)간 운행제한
- Transantiago(현 대중교통시스템) 운행버스 2년 내 EURO6 기준적용
- 2018년부터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감세 인센티브(수치 미정) 도입 등

■ 산업

-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배 강화
- 돼지·계란산업 암모니아 가스배출규제 신설, 배출 보상시스템 개편 등

■ 주거

- 취사·난방용 화목(火木) 사용 전면 금지 등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칠레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북부 Iquique 및 남부 Punta Arenas 지역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수입관세(6%) 및 부가가치세(19%)가 면제되고, 동 지대에서 칠레의 여타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동 지대에서 볼리비아 및 페루로 중계 무역을 하는 경우 칠레 세금제도에서는 면세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칠레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국에 등록해야 한다. 칠레 정부는 2000년 3월부터 정부조달 및 공공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인 ChileCompra(www.chilecompras.cl)를 운영하고 있다. 칠레 정부조달법(제19886조)에 따라 외국계 기업은 현지법인 설립 후 혹은 현지 법적대리인을 통해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칠레정부는 1970년 제정된 지적재산권보호법(법률 제17,336호)를 2010년 법률 제20,435호를 통해 개정하여 OECD 가입에 성공하였고, 이후 특허협력조약(PCT), 산업재산권보호파리조약, 상표법조약(TLT), TRIPS 지적재산권협정 등 주요 국제 지적재산권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분야 상표/임상실험 결과 보호 취약, 만연한 소프트웨어, 영화, 음반 콘텐츠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칠레는 2017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가(PWL; Priority Watch List)'로 분류되어 있다.

저작권(Copyright)의 경우, 칠레에 거주하는 칠레인 혹은 외국인 저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간 보호된다.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저자의 경우에는 칠레가 가입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과 아메리카저작권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author's rights) 회원국에 한해 보호된다.

특허권(Patents)의 경우, 2005년 11월 30일까지 신청된 건은 15년, 2005년 12월 1일부터 신청된 건에 한해 20년간 보호되며 갱신되지 않는다. 매년 약 3,000여 건이 신청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칠레산업재산권청 홈페이지(www.inapi.cl)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표권(Trademark)의 경우, 등록된 날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무제한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 보유자는 만기 30일 전에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 6UTM비용이 청구된다. 칠레산업재산권청(INAPI)은 연간 5만 여건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표권은 칠레산업재산권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inapi.cl)을 통해 신규 신청 혹은 갱신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WTO에 제출한 DDA 수정양허안 내용을 기반으로 볼 때 칠레의 서비스 분야 개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시장접근 측면에서 볼 때 △건설 △유통 △교육 △환경 △보건·사회 △오락·문화·스포츠분야는 ‘개방안함’, △사업 △커뮤니케이션 △금융 △운송은 ‘부분개방’, △관광은 ‘제한없음’으로 나타났다. 내국민대우 측면에서도 관광, 커뮤니케이션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방도가 낮은 편이다.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기본방향

- 경제 및 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기조
- 내외국인 동등 대우
- 원금 및 과실송금 인정
-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준수

관련 법규

- 외국인직접투자법(법률 제20,848호)

- 칠레중앙은행 외국환거래규정(제14조)
- 광업활동에 대한 특별세법(법률 제20,026호)
 - 2010년부터 시행된 동 법에 의거, 연간 12,000~50,000미터톤의 구리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운영과세소득(RIO)'에 따라 0.5~4.5% 로열티가 부과되며, 연간 50,000미터톤 초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광업운영마진(MOM)'에 따라 5~34.5%의 로열티가 부과됨.

외국인투자 관할기관

- 외국인투자진흥청(InvestChile)
 - OECD 권고에 따라 2016년 5월 칠레투자위원회(CIEChile)에서 전환된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으로 국가경제발전 전략에 필요한 중점 분야별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유치하고 있음.
 - 'FDI 국가진흥전략'에 따라 InvestChile가 중점 유치하고 있는 분야는 (1) 광업(자동화, 스마트 마이닝 등), (2) 식품, (3) 관광업, (4) 에너지, (5) 글로벌 서비스 등임.
 - 해외투자의 전 과정을 총 4단계(유치-사전투자-정착- 후속조치)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2017년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지역 사무소를 개설하여 선진국 기업 투자 유치에 노력 중임.
- 칠레 생산진흥청(CORFO)
 - 투자계약 체결 시 각종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결정

외국인투자절차

- 칠레중앙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에 따라, 1만 달러 이상의 모든 외환거래 이용자(외국인투자자 포함)는 반드시 칠레중앙은행에 사전 등록하여야 함.

- 법률 20,848호에서 규정하는 FDI는 (1)US\$5백만 이상, (2)지속적인 이익관계 유지(피투자기업 주식 총수의 10%이상 소유 및 의결권 행사)를 충족하여야 함.
- FDI 관련 혜택과 권리가 명시된 'FDI 증서'를 칠레투자청(InvestChile)에서 발급하여 주므로 반드시 동 기관의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투자우대조치

■ 일반원칙

- 법률 20,848호에서 외국인투자 우대 혹은 차별 금지를 명시화하고 있으므로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극소수 투자인센티브(‘수익금 고정세율’)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등하게 적용됨.

■ 투자 타당성 조사 인센티브

- 사전투자단계 전략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PRAP) : 신청 기업은 제안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재정적 능력이 되는지 증명해야 하며, 칠레 정부가 지정한 전략 분야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내·외국기업의 사전 투자조사(preinvestment study) 비용 70%(최대 26만 달러) 지원

■ 지역별 인센티브

- IPRO 프로그램(Arica y Parinacota 지역) : 칠레 최북단 Arica y Parinacota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 혹은 투자 프로젝트 비용의 40%(최대 4만 5천 달러) 지원

■ 고도기술 인센티브

- 하이테크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 대상은 신규 테크놀로지 투자 프로젝트, 진행 중인 R&D 프로젝트 확장 혹은 칠레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도입할 기업이며, 프로젝트 비용의 50%(최대 6십만 달러) 지원

- 태양에너지 전략프로그램 : 사막 및 고복사(High Radiation) 기후를 위한 태양광발전 기술 개발을 위해 3~5년 내 사막 및 고복사(High Radiation) 환경에 적합한 기술 개발 및 10년 내 상용화를 조건으로 프로젝트 비용의 70%(최대 1,200만 달러)를 지원

투자규제조치

■ 투자규제 업종

-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
- 원자력 및 리튬 관련 광물개발
 - 정부 또는 국영기업만 개발이 가능하며, 외국 기업의 경우 정부 또는 국영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진출 가능
-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 국적선에 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참여 가능 (단, 운송 가격에 기본수입관세 6%를 추가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가 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 가능)
- 항공업 : 외국인 대표의 취임 불가, 칠레 내 본사 설치
- 방송사업 : 외국인 대표의 취임 불가
- 어업 : 투자가의 출신국가에서 칠레인에게 허용하는 동일한 범위 내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허가
- 기타 국가안보 관련사업 : 전면 금지

■ 대외송금 제한

- 2015년 DL600의 자본금 송금 제한(투자 금액까지 면세지만 투자 1년 후부터 송금 가능)이 폐지되면서 현재 별도의 대외송금 제한 없음

■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비율

- 100% 외국인투자 가능

■ 현지인 고용의무

- 근로자 25인 이상을 둔 사업체는 지점과 관계없이 반드시 총 직원의 85%가 칠레 국적자이어야 함

※ 전문기술직 제외. 배우자·직계가족이 칠레인일 경우 혹은 칠레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칠레 국적자로 취급함.

경쟁정책

독과점금지법이 1973년부터 시행중이며 독과점예방위원회(Preventive Commission)가 협의 및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실행위원회(Resolution Commission)가 제재 및 법적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 관련

칠레정부는 2004년 10월 20일부터 한국인이 소지한 일반여권에 대해 90일간 무사증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면제협정을 발효시켰다. 지상사 주재원에 대해서는 최초 입국 시 1년의 임시거주비자 발급해 주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문제

양국 정부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2007년 5월 3일 공식 서명, 2007년 7월 2일 정식 발효시켰다.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주지 주소가 기록된 각종 고지서, 주택 계약서, 명함 등),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칠레 신분증, 수수료(약 25,000 페소)를 지참하여 거주지 소속 구청 교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취득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한-칠레 주요 통상(마찰) 현안

통상 현안

■ 한-칠레 FTA 개선 협상

-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해 2017년 현재 상호 97% 이상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칠레 수출 시 10년과 13년간 무관세 적용이 유예되었던 품목들 즉, 2014년에 1,519개, 2017년에 290개에 대하여 관세가 완전 철폐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FTA를 늦게 체결한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10년 유예품목인 자동차배터리, 타이어(산업용) 등과 13년 유예품목인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 조명기구 등의 칠레시장 수출이 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 한편, 10년 이상 지속된 한-칠레 FTA 협정문 내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등이 최신 국제규범과 다르며 양국의 경제구조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가 공식 합의·선언되었다.
- 우리나라는 냉장고, 세탁기 등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품목들을, 칠레는 도하개발어젠다(DDA) 이후 협상하기로 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적극 요구하는 중이며, 양국의 논의 하에 추후 세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리튬 광산 투자진출 제한

- 리튬은 전기자동차 등의 개발로 차세대 주요 광물로 각광받고 있으며 칠레는 세계 1위의 리튬 생산국이다.
- 칠레 정부는 세계 리튬시장의 점유율 유지를 위해 생산량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동시에 리튬을 양도불가능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기존에 허가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국영기업을 통한 개발만을 허용하고 있다.
- 국영기업인 국영구리공사(CODELCO)와 국영광물공사(ENAMI)가 리튬 개발을 위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 기업을 사업파트너로 모색 중이며, 생산진흥청(CORFO)은 리튬 관련 생산 공정 유치를 위한 국제 입찰을 추진 중이다.

우리기업 진출 애로/건의사항

■ 기술표준과 인증 상호 인정 및 간소화

- 전자 및 난방제품에 대한 인증 문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인증 서류제출로 대체할 필요
- 전파, 소방 등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없고 저전력 제품인 모니터 TV 및 32인치 이하 소형 TV에 대해서는 규격 인증을 면제할 필요
- 현재 에너지효율 및 안전 인증을 우리 국내기관에서 대행하는 방안 협의 중

■ 수산물 검역 절차 개선

- 칠레에서 수산물 수입 시 제품통관 후 위생청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소에서 분석한 후 판매유통 가능하다는 판정서(resolucion)가 발급되어야 수입품 판매 가능함에 따라 1개월 동안 냉동보관료를 부담해야하고 영업기간 손실도 발생

- 칠레내 주요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발주. 착수 지연
 - 칠레는 전력 부족 및 에너지 고비용으로 인한 경제. 산업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에너지. 발전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등 환경영향평가(RCA)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 또는 무산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
 - 이는 입찰 등 프로젝트 착수 준비를 위한 초기 투자자본 회수를 어렵게 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진출 노력을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인 투자 구상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
- 현지직원 관리 애로사항
 - 칠레는 노동법에 따라 외부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현지직원을 선출시점으로부터 4년 6개월 동안 해고할 수 없음.
 - 고용주와 근무태만으로 마찰을 겪는 현지직원이 비공식적으로 외부 노동조합 부위원장직에 지원하여 선출된 사례도 발생함.

캐나다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4년 9월 EU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TA)을 타결하여 2017년 9월 잠정 발효했으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2015년 1월 발효했다. 미국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5년 10월 타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불참을 선언하여 미국이 빠진 11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과는 FTA 추진을 위한 탐색회의(exploratory discussion)를 2017년 2월, 4월, 7월에 3차례 진행하였다.

지난 2015년 11월 집권한 자유당(Liberal)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자동차를 비롯하여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원부자재 및 설비 등 1,8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TPP 발효시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5년간 43억 달러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회복에 따라 2017년 9월, 기준금리는 1%로 상향 되었으나 여전히 약한 캐나다 달러화 외환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제조업 부문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9건의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시행했으며, 17건이 철강 및 금속

제품 대상이었다. 이 중에서 8건은 한국 기업이 관련되어 있다. 상기 19건의 조사 중에서 15건은 보조금에 대한 것으로 최근 캐나다 정부가 반덤핑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에도 적극적 모습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캐나다는 1998년부터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WTO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4.1%이다. 공산품에는 평균 2.2%, 농산품에는 평균 15.6%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5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KRT, Korea Tariff)를 적용받고 있다. KRT는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품목과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수입규제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아동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판권이 캐나다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2005년 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캐나다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현재 규제 중인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캐나다는 NAFTA 지역 내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000년 3월 특별수입규제법이 개정되었는데, 잠정덤핑 판정 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이 관여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도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재심 시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4년 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세업무가 신설된 국경관리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덤핑조사업무는 국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3년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s)에 대한 덤핑 판정이 있었으며, 2011년 및 2013년 재심결과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반덤핑 관세는 89%가 부과되고 있다.

2006년 6월 한국산 및 미국, 중국산 동제 관 연결구류(Copper pipe fittings)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 판정이 내려졌으나, 우리 수출기업 중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의 낮은 덤핑관세율을 적용받았다(여타기업들은 37~242%). 2011년 4월, 2014년 5월, 2016년 2월에 정상가격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반덤핑 규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4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2012년 10월에 최종 덤핑 판정이 인정되었으며 11월엔는 산업피해가 있다는 CITT의 판정이 있었다. 2014년에 덤핑 수정 판정이 있었고 두 기업이 각각 9.1%, 34.8%의 덤핑마진율이 책정되었으며, 기타 기업은 101%의 덤핑 마진율이 산정되었다. 2017년 7월에 재심이 있었으나 규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7월 종료재심이 개시되어 12월에 CBSA의 판정이 날 예정이다.

2012년 5월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여 2012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덤핑 및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며, 우리 기업들의 조사 불참여로 54.2%의 덤핑 마진율이 적용되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동관(Copper tube)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2013년 11월 및 12월에 각각 덤핑 및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내려졌고, 2015년 1월 재심결과, 규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덤핑마진율은 N기업이 5.5%이며 기타 수출자는 82.4%를 적용받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한국산 열연강판(Hot-rolled Carbon Steel Plate VII)에 대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4월 및 5월에 각각 덤핑 판정 및 산업피해 판정이 내려져서 4개의 한국업체가 1.9%~20.8%의 반덤핑 마진율이 책정되었고 기타 수출업체는 59.7%의 반덤핑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2014년에는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과 유정용 강관(OCTG 2)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다. 콘크리트 철근은 2014년 12월에 최초로 덤핑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6월과 2017년 9월에 재심을 진행하여, 현재 1개 업체는 13.3%, 나머지 업체는 4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정용 강관은 2015년 3월에 덤핑 판정을 받고, 2개 업체는 0%, 1개 업체는 8.8%, 기타 수출자는 37.4%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결정했다.

2014년 9월에는 철구조 부분품(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어 2017년 5월에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되었으며, 1개 기업은 제외되고, 1개 기업은 2.4%, 기타 수출자는 45.8%의 덤핑 마진율이 책정되었다.

2016년 9월에는 한국, 중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5개국 형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2017년 4월 발표된 조사결과 한국산 제품에 1.9~45.8%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건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며, 이외 중국 및 스페인 제품에는 최대 45.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7년 6월 한국산 탄소 합금 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9월에 내린 예비판정 결과, 4.7%~107.2%의 반덤핑 예비관세가 책정되었으며, 최종판정은 12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2017년 9월 기준 캐나다는 총 29개국, 33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산 제품은 구조용 강관, 동계 관련결구류, 탄소강 용접관, 유입식 변압기, 동관, 열연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철구조 부분품 등 총 9건이며, 탄소합금강관은 조사를 진행중으로 2017년 12월에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2017년 9월 기준)

품목	최초규제	현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2003.11	2003.11 ~ 미정
동계관연결구류	2007.1	2007.1 ~ 미정
유입식 변압기	2012.10	2012.10 ~ 미정
탄소강 용접관	2012.12	2012.12 ~ 미정
동관	2013.11	2013.11 ~ 미정
열연강판	2014.4	2014.4 ~ 미정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2015.1	2015.1 ~ 미정
유정용강관	2015.3	2015.3 ~ 미정
철구조 부분품	2017.4	2017.4~미정
탄소·합금강관	2017.12(예정)	-

자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세이프가드

2002년 3월 캐나다의 철강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 9개 품목군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 2002년 7월 5일 9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월 20일 3년간 관세쿼터 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관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판 등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 철강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2003년 10월 캐나다 내각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이프가드 유보는 미 NAFTA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을 국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WTO 규범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2005년 1월 캐나다 자전거 생산업체는 중국산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자전거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크다고 CITT에 제소하였으며, CITT는 2월 19일자로 조사를 시작하여, 9월 1일 수출가격(FOB) 225 캐나다달러(소매가 400달러 상당) 이하이고 바퀴직경 38.1cm(15인치) 이상인 자전거(도색된 자전거 프레임 포함. 조립여부 불문, 접이식 자전거 등 예외품목 있음)를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자전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1차년도 30%, 2차년도 25%, 3차년도 20%의 관세를 부과기로 하였으나, NAFTA 지역 및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 WTO 개도국 중 당해품목 수입점유율 3% 미만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규제대상국은 중국,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캐나다 수출물량이 미미하여 동 조치의 적용대상국이 아니다.

이후 중국산 수입품이 각 부문에서 급증함에 따라, 2005~2006년 중 중국산 야외바베큐 그릴, 가구, 섬유 의류제품 등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발동 신청이 제기되었다. 이중 야외바베큐 그릴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3년간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가구의 경우는 제기대상 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섬유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캐나다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기각되었다.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신청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국제무역재판소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또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행위에 대해 표준신청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련 기업들이 참고토록 하였다.

한편, 온타리오주 담배원료판매위원회는 2005년 10월 버지니아種 담배 원료에 대해 일반 세이프가드를 신청, 같은 해 12월 국제무역재판소의 조사개시결정을 얻었으나, 2006년 2월 동 위원회가 신청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종결처리 된 바 있다.

표준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는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 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가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이며, 특히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년 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 무역협정에 따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지 표시, 라벨링, 포장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 국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프랑스어로 상품명, 순증량, 유통업체의 주소 등을 제품용기에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

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불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 원산지 표시법이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지고 있다. 치약, 스킨 및 크림, 샴푸 등에 대해서는 표준 포장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포장지는 가능한 한 재생 가능한 원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킷,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국민식품안전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은 식품별로 분산되어 있는 검사 관련 4가지 법률(어류검사법, 육류검사법, 캐나다 농산물법, 소비자포장라벨링법)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2012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은 캐나다식품안전청(CFIA)의 검사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식품이력추적제 강화, 캐나다로 수입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관련 하위법령이 제정되는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은 용기(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 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알레르기 표시 규정 도입

캐나다 보건부는 2008년 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알레르겐 함유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실제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2016년 중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제조 업체가 공급한 포장식품(pre-packaged food)에 대해 총 9건의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제품 라벨에 주요 알레르겐 중 하나인 계란표기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대상 제품은 어묵(Frozen fish products or Fish cake), 해물완자(Seafood pancake), 게맛살(Imitation crab meat), 소시지(Fish paste)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레르겐은 글루텐과 아황산염 외 땅콩, 아몬드 유사 작물, 깨, 우유, 계란, 갑각류, 조개류, 콩, 대구, 밀 등이 추가로 있다.

식품영양 표시제 도입 추진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2016년 12월 14일부로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준수 하여야 한다.

중국산 목재포장 규제 강화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2009년 9월 1일부터 중국산 목재포장과 관련하여 캐나다 규정을 빈번히 불이행함에 따라, 중국 식품가공업체에서 자체 발급된 열처리 식물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목재포장은 단순열처리 증명서가 아닌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vention (IPPC) 마크를 꼭 부착해야 한다.

WTO로부터 미국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COOL)에 대한 제소 승소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2008년 8월부터 잠정 시행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육류 원산지 표시제도(COOL, Country of Origin Labelling)에 대해 가공 비용상승에 따른 자국산 육류에 대한 미국 가공업자의 선호가 줄어들에 따라 미국 COOL 제도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같은해 12월 WTO에 제소하였다. WTO는 2015년 12월 7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한 미국의 COOL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억 달러의 과징금 추징 허가 판정 및 21일 추징집행을 승인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미국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로부터 승인받은 보복조치를 신속히 개시할 것으로 경고하였다. 이는 2015년 6월 미국 하원에서 육류 원산지 표시제 폐지를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담보상태에 빠진 폐지결정에 대한 신속한 진행 촉구가 되었으며, 미국은 같은해 12월 19일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미국간 연목재(softwood lumber) 협정 및 분쟁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산 연목재의 미국용 출하규제 조치인 ‘캐나다-미국 연목재 협정’을 2006년 10월 최초 체결하여 2013년 10월 이후 갱신하였고 2015년 10월까지 동 협정을 통해 미국시장의 연목재 가중평균가격이 정해진 가격을 밑돌았을 때 캐나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수출세율을 증가, 또는 주별로 수출수량 규제를 병행하여 자국 제재 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유지하여 왔으나, 양국은 갱신 마감기한으로부터 1년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016년 10월 13일 소송정지기간(litigation standstill)이 종료되었다. 2016년 11월 미국 입법계는 미 상무부에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한 피해조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미 상무부는 2017년 4월 24일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고 3.02~24.12%의 상계관세를 5.1일부터 90일간 소급적용하여 부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2017년 6월 26일에는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4.29~6.87%의 반덤핑 관세를 90일간 소급적용하여 부과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로써 캐나다산 연목재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9.89~30.88%로 책정되었으며, 미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11월 14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관련 규제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제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 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과 함께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도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총회에 참석해,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온실가스 감축 방안

- 2030년까지 2005년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Post-2020 신 기후 변화체제 관련 '국별 기여공약(INDCs)'으로 제출
 - 오일 및 가스 부문의 메탄배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독자적인 환경규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도 지속 추진

에너지 효율 규제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 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3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 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년 10월 21일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년 4월12일부터 발효하였다. Standby for electronic products; compact audio products 등 5개 품목 관련 신규 보고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발표된 개정안은 기존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EPS)을 20개의 제품군으로 증가시켰으며 2017년 6월 28일, 동 개정안이 발효 되었다.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캐나다는 1986년 11월 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 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철 및 슬래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규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환경마크제 실시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 로고(EcoLogo)’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는 아니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케팅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 주, 앨버타 주)는 자체적으로 조달 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 각의결정 및 가이드라인 명령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제정되어 1995년 1월부터 동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 Assessment Act, 2012)이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을 대체하였으며 평가대상, 유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전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될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Green Energy Act

2009년 5월, 온타리오 주는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이하 FIT)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현지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 단지 건설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2016년 3월 이 방식 대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전력 공급 가격, 지역 사회 공헌, 고용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차원의 하한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경우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참가국에 한해 SDR130,000(약C\$200,9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차원의 경우엔 SDR355,000(약C\$548,7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5,000,000(약C\$7,700,000)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조달은 높이 책정된 하한선과 주체별로 상이한 입찰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외기업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1995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주간 교역협정(AIT: Agreement on Internal Trade)」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존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 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주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온타리오 : 캐나다 부가가치분에 대한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자격을 캐나다 상품이나 캐나다 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다.
- 퀘벡 : 퀘벡주 회사 및 캐나다회사 우대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점차 AIT 범위 내에서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 브리티시 콜롬비아 : 유일하게 주정부 조달문제를 법규(Purchasing Commission Act)로 제정,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회사에 대해 우대 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스카추완 : 서부지역 회사를 우대하고 있다.
- 매니토바 : Western Agreement가 적용되나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전력회사, Liquor Control Board)의 경우, AIT 규정 내에서 별도의 구매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4년 4월 7일 발효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개정안은 현재 비준수약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한해 참가국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는데 입찰공고 온라인 기재, 입찰공고 기재기간 및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제 등 해외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단, 한국, 스위스, 아르메니아 등 비준수약서를 기탁하지 않은 국가들에 한해 기존의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2015년 1월 1일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확대된 지방(주) 정부 조달 참여는 한국정부가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인 2016년 1월 14일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을 적용 받고 있다.

국내산업 지원 정책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년 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억과 29억 캐나다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 항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에 대한 총 14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감세조치 연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부예산 9억 캐나다달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장벽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은 「Investment Canada Act」이다. 동 법은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직접 인수 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 직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규모\투자자	WTO 회원국 기업	비 WTO 회원국 기업
5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상기 정부기관에 신고	
5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379백만 캐나다달러 미만(2017년)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문화유산부 : 허가 심사요청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 : 허가 심사요청
379백만 캐나다달러 이상(2017년)	상기 정부기관에 허가심사 요청	

▶ 간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자산 구 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 이하인 경우			
투자규모	50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50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투자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자산 구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규모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5백만 캐나다 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투자신고	혁신과학경제개발부 : 신고			산업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문화유산부 : 심사요청	문화유산부:신고	

자료 :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2017년)

다만, 기존 캐나다 기업인수가 아닌 기업신설을 통한 신규투자는 제한이 없이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각 개별법은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산업부(現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2005년 7월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Bill C-59)을 추진, 위성기술, 암호기술, 방위산업 등 안보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내각의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법제화 되지 못하였다.

최근 캐나다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적(國籍)기업 감소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국내여론이 확산되자,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캐나다 산업부(現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2007년 7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쟁정책 검토패널'을 가동하면서 외국인투자법도 함께 검토토록 한 바, 2008년 6월에 최종 권고안을 산업부(現혁신과학경제개발부)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

캐나다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캐나다 내 신규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캐나다 산업부(現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자액이 기준 특정치를 초과할 경우 투자계획사전심사(Net Benefit Review) 또는 추가적으로 국가안보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WTO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2015년 4월 24일부로 캐나다 투자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준 자산 가치 8억 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 인수 시 투자계획사전심사가 적용되며, 해외 공기업의 경우 3억 7,900만 달러이다. WTO 비회원국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할 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문화산업

서적 출판 및 배포 :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인수 금지(단, 동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며 캐나다인 원매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 및 외국인 신규 투자는 소수지분(Minority position)의 공동투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에 순이익(Net benefit)이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예: 캐나다 저서 출판 등).

정기간행물 : 캐나다 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간·배포하거나 캐나다 광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사를 신설 또는 인수하는 경우, 이는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캐나다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에 대한 외국인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캐나다 광고주는 캐나다인 소유지분이 75%가 안 되거나, 캐나다 내용이 85% 이상 되지 않는 간행물에 의한 광고 게재 시 세금감면(Tax Deduction)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1999년 5월 미국과의 잡지분쟁 타결로 소유자 국적과 관련 없이 최소 80%의 캐나다 내용을 포함하는 잡지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가능해졌다.

TV 및 라디오 방송 : 방송법에 의거 주식소유 및 이사회 구성 모두 캐나다인에 의한 통제가 최소한 80%(모기업의 경우 66.7%)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허가 갱신 포함). 또한 캐나다 방송사업은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에 의하여 규제·감독을 받는다.

영상물 배급 :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투자는 전매상품(Propriety product)의 수입 및 배포에 한해 허용된다. 캐나다 내 외국인 소유업체에 대한 직·간접 인수는 투자자가 캐나다 소득분을 캐나다에 재투자한다는 조건 하에만 허용된다.

기타 분야

운송 : 캐나다 국적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5%로 제한, 연안 운항은 캐나다 선박만이 할 수 있다.

에너지 및 광업 :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캐나다와 EU의 FTA가 잠정 체결되면서 우라늄 산업의 외국인 투자 규제가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점을 감안, 투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 : 1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I Carriers: 전송용량 소유 및 운용)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직접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도 외국인이 20% 이내이고 캐나다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동 제한은 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제한이 캐나다 통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3월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어업 :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 및 사스카추완주는 동 주 이외의 지역 인사·기관에 대해 부동산 판매 시 제한을 두고 있다.

수출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조건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 ‘고용, 자원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 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우가 없었으나 2008년 4월, 미국 방위산업체인 Alliant Techsystems Inc.(ATK)사가 최첨단 위성 기술과 로봇 팔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우주항공사인 Ma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Ltd.(MDA)사를 13억 캐나다 달러에 인수에 대해 처음으로 불허하였다. 최근 캐나다 기업들의 매각으로 캐나다 내 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에 개입하여 제동을 건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생산, 투자 및 국산품 사용조건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WTO 및 NAFTA 규정에 따라 1997년 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국내생산실적 등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블라우스 등 6개 품목에 한하여 2004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관세 경감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의 非 Auto Pact 멤버에게 주어진 실적에 따른 관세경감 조치도 폐지되었다. Auto Pact 멤버(5개사)들에 대해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동 특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캐나다 방송시장은 미국과의 인접성이나 이중공용어 사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프로그램 방영의무가 있다. 모든 방송사는 연간 방송시간의 50% 이상을 캐나다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야 한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지사·사무소 설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연방투자법령 및 각 주의 등록 및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종전

에는 외국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세제상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타 지역 발생이익을 통하여 상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관련 외국의 세법 내용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가 독립법인이 아닌 이상, 지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나 의무행위에 대하여는 모기업이 법률상의 책임을 갖는다.

금융상의 제한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등에 대한 외국 송금 시 원천세가 징수되며 별도의 송금세나 송금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다만, OECD 기준인 부채/자본비율(Debt/Equity)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자금 차입에 관한 규제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Related party : 자본국 또는 제3국의 같은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시 과소자본규제(Thin Capitalization)를 받고 있다. 과소자본규제는 자본금의 2배 이상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대여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세제상의 제한

1978년 2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으로 연간 6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 캐나다 연금법상 귀국 시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캐 양국 정부 간 사회보장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1999년 5월 1일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캐나다에 5년 이내 단기간 파견 또는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되게 되었다.

한국-캐나다 양국정부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발효(1980년 12월)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 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 2006년 9월 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된 개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비준절차 등을 거쳐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동 협약에서 양국 정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Non-resident)의 조세 회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세법상, 캐나다 영토에 183일 미만 거주한 개인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도입의 목적은 비거주자(예를 들어 한국인)가 캐나다에 명목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배당, 이자 등의 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를 위한 캐나다의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규제 도입 전에는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은 투자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으나 규제 도입 후에는 이러한 조세특례를 한쪽 국가에서 배제한 채 자국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및 세금징수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정책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非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캐나다의 출판분야는 그동안 미국잡지의 캐나다판(split-run잡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 8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입잡지에 대한 우편요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캐나다 잡지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동방식이 미국의 제소에 의해 WTO협정 위반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split-run잡지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다시 반발함에 따라, 1999년 5월 미국과의 최종합의하에 첫째 12%, 18개월 후 15%, 36개월 후 18%까지 캐나다기업의 광고를 허용하였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비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장기체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온타리오(1998년 10월), 브리티시 컬럼비아(2000년 9월), 퀘벡(2000년 10월), 앨버타(2001년 1월), 매니토바(2003년 8월), 사스카추완(2004년 12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및 뉴펀들랜드 라브라도(2007년 11월), 뉴브런즈윅(2008년 2월)에 이어 노바스코시아(2011년 3월)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되어 한국 운전면허를 캐나다 운전면허로 바꾸는 운전면허상호교환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퀘벡 주는 프랑스어권으로 언어, 문화, 관습 등이 여타 주와 상이하다. 퀘벡 주는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하고 있어 라벨링, 광고, 상품성분,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캐나다 진출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다. 과거 은행법은 은행을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이 아닌 Schedule I 은행과 예금이 가능하고 외국 은행의 지점인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하며 Schedule I의 경우 어느 투자가도 10% 이상의 지분소유를 할 수 없으며(외국인 지분은 총지분의 25% 이내),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Schedule II 은행으로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는 외국은행도 지점 설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Schedule III 은행),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금융서비스 개혁 작업반이 1999년 6월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을 2001년 6월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동 내용은 캐나다 은행을 자본금에 따라 소형은행(10억 캐나다달러 이하), 중형은행(10~50억 캐나다달러), 대형은행(50억 캐나다달러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제한을 철폐하고, 중형은행에 대해서는 65%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며,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종전 10% 지분취득 상한선을 20%까지 확대토록 하였다. 또한 은행합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은행 간 합병에 대비토록 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2016년 기준 31개 국내은행(Domestic Bank), 24개 외국계은행 현지법인(Foreign Bank Subsidiaries), 28개 외국은행 지점(full-service foreign bank branches)과 4개 외국 대출 은행 지점(foreign bank lending branches) 등 총 87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며,

현재 캐나다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 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www.osfi-bsif.gc.ca)이 담당하고 있다.

➡ 캐나다 단계별 주요 은행 현황

구분		개수	주요 은행
국내인가은행 (Schedule I)		31	BMO Financial Group, CIBC, National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Canada, The Bank of Nova Scotia, TD Bank Group 등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Schedule II)		24	KEB Hana Bank of Canada(한), Shinhan Bank Canada(한), Amex Bank of Canada(미) 등
외국계 은행 지점 (Schedule III)	Full Service	28	Bank of America, N.A.(미), The Bank of New York Mellon(미), Barclays Bank PLC(영), Capital One Bank(미), Citibank, N.A.(미) 등
	Lending Service	4	Credit Suisse AG, Cerdit Agricole, Union Bank, Natixis 등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이 1970년에 토론토 사무소를 개설한 후 1981년에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토론토에 본점을 두고 토론토, 밴쿠버 및 캘거리에 모두 11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기준 총자산 15억 9500만 캐나다달러, 당기 순이익 520만 캐나다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6년 사명을 캐나다 KEB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2007년 12월 캐나다 연방재무부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8년 8월에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 2009년 3월 토론토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5년 12월말 기준 본점 이외 3개의 영업점을 두고, 총자산 5억900만 캐나다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6년에는 밴쿠버에 지점을 개설했다.

콜롬비아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관세·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1990년대 초 이래 원칙적으로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그룹별로 아래와 같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 1그룹(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 2그룹(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 3그룹(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 4그룹(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 5그룹(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한편 관세의 종류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특혜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발효)한 주요 경제협정은 아래와 같다.

- CAN 특혜관세 : 2006년 5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협정에 의거한 안데안 공동시장(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회원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회원국은 제 3국과의 무역협정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음(공동대외관세 비적용). 상당수 품목에 0% 관세율이 적용되나, 국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적용함.
- ALADI 특혜관세 : 기존의 중남미 자유 무역 연합(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Libre Comercio)을 대체하여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이 창설됨. 설립 목적은 공동 자유무역지대의 창설보다 회원국 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무역을 진흥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하는데 있음. 2014년 현재 회원국은 총 13개국임(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쿠바, 파나마).
- 콜롬비아-Caricom 특혜관세 : 콜롬비아는 ALADI 협정에 의거하여 1994년 7월 24일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특혜관세 조약을 체결함. 동 FTA에는 원산지규정, 기술규격, 구매촉진, 무역금융, 서비스무역, 교통,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Mercosur FTA : 2004년 CAN과 Mercosur 간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이 2005년 1월 발효됨. 콜롬비아는 동 FTA를 통해 수출기회증대와 함께 자본재 및 원자재를 더 경제적인 가격에 확보하여 국가생산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동 협상에는 내국민대우, 비대칭(asymmetry),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됨.
- 콜롬비아-Triángulo Norte FTA : 콜롬비아는 2006년 중앙아메리카 Triángulo Norte 국가들(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과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07년 8월 9일 협상이 타결되고 2008.6월 콜 의회에서 비준됨. 동 FTA에는 시장개방,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협력(cooperation), 분쟁조정, 정부조달,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SPS 협정,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원산지규정, 무역보호 규정(trade protection measures) 등이 포함됨.

- 콜롬비아-칠레 FTA : 2006년 11월 27일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으며(금융 및 항공 서비스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동 협정은 2009년 5월 8일 발효됨.
- 콜롬비아-멕시코 FTA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국 간 FTA 체결안인 G-3(Grupo de los Tres) FTA는 2006년 5월 베네수엘라의 탈퇴에 따라 콜롬비아와 멕시코 양국간 FTA로 변화됨. 2009년 8월 양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2011년 8월 발효됨. 동 협정에는 기존 관세 감세협약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농산물 및 공산품이 포함됨.
- 콜롬비아-EFTA FTA : 콜롬비아와 EFTA(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간 FTA는 2008년 11월 25일 서명 후, 2011년 승인됨(다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4년 발효). 동 협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무역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무역 원활화, 서비스교역, 인적교류,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투자규정, 경쟁 정책,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콜롬비아-캐나다 FTA : 양국간 FTA는 2008년 11월 서명 후, 2011년 8월에 비준됨. 양국간 협정에는 무역자유화 이외에 노동 및 환경에 관한 협력이 포함됨.
- 콜롬비아-미국 FTA : 양국간 FTA는 2006년 11월 22일 양국 무역 증진협정(Acuerdo de Promoción Comercial) 및 2007.6.28 개정 의정서(Protocolo Modificatorio)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짐. 이후 2011년 10월 21일 미측은 콜-미 FTA이행법안에 서명하였으며, 2012년 5월 15일 발효됨.
- 콜롬비아-EU FTA : 콜롬비아와 EU간 FTA는 지난 2010년 5월 협상 종료후, 2012년 6월 협정서 서명완료됨. 양측 의회 비준을 마친 후 2013년 8월 1일부터 잠정적용이 시작되었으나,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 FTA 잠정 적용을 위헌으로 판결내림에 따라 잠정 적용은 2014년 11월 8일까지만 유효함. 그러나 콜 현재에서도 FTA 협상 안 자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함에 따라 FTA 발효를 위한 최종 확인 절차만 남음. 콜롬비아 무역투자관광진흥청(Procolombia)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EU에 1,469개의 품목을 수출하고 있던 가운데 동 FTA 협정에는 총 9,745품목이 포함되었으며 이중 97.2%가 관세 철폐 대상이 됨. 콜측은 자국의 818개 이상의 품목이 대EU 수출 기회를 확보하여 콜롬비아 국내총생산이 0.46%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의정서 : 2012년 6월 칠레에서 태평양동맹 4개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태평양동맹 설립 협정서는 2014년 6월 17일 콜롬비아 의회에서 승인받음. 한편, 2014년 2월 10일 회원국간 전체 교역품의 9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하는 의정서를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하였으며, 2016년 5월 1일 발효됨.
 - 나머지 8%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중단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
- 한-콜롬비아 FTA : 양국은 2009년 12월 협상시작후 2013년 2월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4월 29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됨. 콜롬비아의 경우 2014년 12월 16일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6년 7월 15일 발효됨.
- 콜롬비아-코스타리카 FTA : 양국은 2012년 7월말 협상을 시작한 후 2013년 5월 22일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4년 5월 5일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최종 비준하였으나 콜롬비아에서는 2015년 6월 16일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콜롬비아 현재의 헌법합치성 심사통과후 2016년 8월 1일 발효됨.
- 콜롬비아-이스라엘 FTA : 양국은 2012년 3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3년 9월 30일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현재 양국에서 의회 비준동의안 통과 절차가 진행중임.
- 콜롬비아-파나마 FTA : 양국은 2010년 3월 협상을 시작한 후 2014년 9월 19일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이후 양국에서 의회 비준동의안 통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파나마 정부는 콜롬비아의 파나마 콜론(Colón) 자유무역지대産 신발 및 섬유 제품에 대한 특별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조치로 2015년 1월 동 FTA의 국내절차를 중단한 바 있음.

비관세장벽

(1) 표준과 규격

콜롬비아 상공부가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 보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역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으로 하역금 국가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만이 수입허가되고 있다.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적합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술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위생검역기준(SPS)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동 위원회는 콜롬비아 농축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국립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 국가보험공단(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등 기관으로 구성된다.

ICA는 동식물 검역 및 건강문제를 담당하며, INVIMA는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한다.

(3) 바이오디젤

콜롬비아는 유탄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1년 12월 26일 발효된 시행령 4892(decreto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합하여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는 2015년 1/4분기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사탕수수지배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바이오에탄올 공급량 급감에 따라 2015년 4월 30일 발표한 시행규칙 40521(resolucion 40521)을 통해 한시적으로 혼합 준수 의무를 면제하였다.

수출보조금

콜롬비아는 1994년 12월 15일 WTO협정을 수락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 후 폐지하였다.

수입규제

(1) 세이프가드

- 진행 절차 : WTO 회원국인 경우, 1998년 제정된 WTO 회원국 간의 섬유, 의류, 농축산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협정을 콜롬비아 국 내법으로 제정한 시행령 152를 적용함. WTO 비회원국인 경우, 1999년 제정된 시행령 1407을 적용하나, 세이프가드 시행을 요청한 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세율이 해당 제품에 대해 현 시행령 하에서 콜롬비아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관세율 이하일 경우 시행령 1407을 WTO 회원국에도 적용 가능함.

- 시행령 1407에 따른 조사절차 :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은 조사 요청 접수 후 5일 이내 접수 확인을 통보하고 이를 일간지 게재함. 게재 일로부터 10일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상공관광부는 공고 확인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대외무역관세위원회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함. 동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외무역고위자문회의에 권고안을 전달하며 동 자문회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
- 문제점 : 시행령 1407에 근거한 절차를 따를 경우, 공청회 시행이 생략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한이 10일로 한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더 간략한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콜롬비아 기업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에 있어 주로 시행령 1407의 적용을 요청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ANDI(콜롬비아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대외무역국에 타이어코드 직물 및 합성 필라멘트 등에 대해 시행령 1407을 적용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할 요청하여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15년 3월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되지 않고 종료됨.

(2) 반덤핑

- 절차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가 2010년 제정한 시행령 2550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담당 기관은 상공관광부 산하 대외무역국내 무역관행과임.
- 시행령 2550에 따른 조사절차 : 반덤핑 조사 요청 접수시 담당 기간은 2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20일 연장 가능), 조사 개시 결정시 이를 관보에 게재함.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이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명 통보를 실시하며 조사 개시 1개월 이내

이해관계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됨. 조사 개시 2개월 이내(30일 연장 가능) 예비 판정을 내리며, 이로부터 3개월 이내 무역관행 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공부는 최종 결정을 내림.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적용사례
 - 2015년 12월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한국산 플라스틱 가소제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관보게재함.

서비스 장벽

- 시장개방이 비교적 잘 이행된 분야
 -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시장, 회계/감사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및 관광 시장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 졌음.
- 시장개방이 지체되고 있는 분야
 - 콜롬비아 법에 따라 내국 외국법무법인만 허용되고 있어서, 외국 법무 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 가능
 - 정보처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presence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GATS 협정 4가지 mode 중 cross-border 서비스 불허
 -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보험회사 설립은 인정하고 있으나, 콜롬비아 내에서 지점의 설치는 금지
- 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 Test)를 거쳐야 함.
 - 또한 회계, 기장(bookkeeping), 건축사,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
 -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업체에서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 이상을 외국 국적인으로 충원 불가

금융서비스

콜롬비아는 100% 외국인 출자 보험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보험업체의 국내지점 설치는 불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해상보험 시장 진입도 불허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외국인 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하여 콜롬비아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금융기관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한 콜롬비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2004년 9월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상업금융기관이 콜롬비아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롬비아 내에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 2951).

기간통신서비스

1989년 telecomunication 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이 종식되고 1990년 대통령령 1900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되었다. 1994년 SSP (Superintendent's office of Public Services)와 CRT(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을 창립한 바, 국내·국제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등의 콜롬비아 내 설치, 탐사, 사용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1990은 Telecommunication 서비스의 유형을 Basic, Broadcast, Telematic, Value added, Ancillary aid, Special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최대 진입 장벽은 1) 높은 license fee, 2) 보조금(cross subsidies),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등이다.

콜롬비아는 WTO 협상과정에서, 특히,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시장개방의 기준이 되는 WTO reference paper를 채택했다.

그러나 상기 협상에서 callback service를 금지하고, fixed and mobile satellite system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콜롬비아는 외국 투자자에 대하여 economic needs test를 요구하면서도, Economic need test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 중 1) carrier, 2) national and long distance, 3) cellular mobile telephony 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 70%까지 지분율을 허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1999년까지 cellular mobile phone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시장을 3등분하여 각 market segmentation 별로 2개씩의 독점사업자를 인정하였다.

2003년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PCS 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하고 정부는 2003년 10월 Colombia Movil(Tigo)에게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Telefonica(Movistar)와 Comunicación Celular(Comcel)이 양분해온 duopoly 체제가 종료. 이후 2012년 Comunicación Celular와 Telmex Colombia간의 합병을 통해 Claro Colombia가 설립됨. (2015년 1/4분기 시장점유율은 Claro 52.53%, Movistar 23.25%, Tigo 17.49%, Virgin Mobile 3.82%, Uff Móvil 0.83%)

※ Colombia Movil사는 보고타시와 메데진시가 각각 지배하고 있는 전화통신사인 ETB, EPM과 MILLICOM(룩셈부르크)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

영화 및 방송시장

1995년 1월 콜롬비아 정부는 위성텔레비전 방송을 허용하면서, 국내방송 시장에서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율을 규제하기 시작한다(Television Broadcast Law of 182/95).

동 법은 방송시간대에 따라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달리 규제한다.

- 19:00~20:3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70% 이상)
- 10:00~19:0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 20:30~자정시간대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기준은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이어야 한다. 모든 외국영화에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세금은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콜롬비아 TV위원회(CNTV)는 2008년 8월 28일 유럽식 DVN Digital 방송수신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2년 내 25%의 콜롬비아 가정이 Digital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10년 내 전국 가정의 93%에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Digital 방송사업은 약 1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월 29일 보고타 일부지역에서 3개의 공공채널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첫 디지털방송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동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전자상거래

1999년 8월 발효된 “Electronic Commerce Law of 527”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디지털 인증서 발급 등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마련한다.

- 2000년 9월 상기 법 시행령 1747호를 공포하고, 디지털 인증서 효력 요건 및 디지털분야 설립법인의 최소자본금 등을 규정
- 2000년 5월 콜롬비아와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에 관한 합의문” 서명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5년도 1.5억 달러였으나 2008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며 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 이르러 1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내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정책적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1) 정보통신기반설비의 확장, 2) 통신 서비스의 개선, 3)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제도의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1일에는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Ley de Inclusion Financiera)을 비준한바 있다. 이 법은 '4 por 10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약 2천만명의 콜롬비아 국민이 은행 서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달

2003년 6월 콜롬비아 정부는 Law 816호를 공포하면서, 정부조달과정에서 자국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상기 법령은 정부조달과정에서 콜롬비아업체에게 콜롬비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20%의 보너스점수, 외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5~15%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WTO 정부 조달 협정 옵서버 국가이나 당사국은 아니다. 콜롬비아는 정부 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에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FTA가 발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조달사업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가 부여될 것이다.

지식재산권 규범일반

1. 국내법

헌법 제61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및 요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대통령령 2592(2000년)/안데안 결정 486(2000년))
- 저작권(법 23(1982년), 법 44(1993년))
- 식물변종(대통령령 533(1994년))

2. 다자규범

(1) WTO 규범

-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법 170(1994년))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협정(법 456(1979년))

(3) 안데안 규범

안데안 공동시장 과정에서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을 바탕으로 안데안 결정 486(2000년)에 합의하였다.

-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표권, 원산지 규정 등
- 내국민, 최혜국 대우 규정
- 저작권에 관한 안데안 결정 351(1993년)
- 식물변종 관련 안데안 결정 345(1993년)

(4) 양자협정

- G-3 FTA 제18장(법 172(1994년) :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3국간)
- 콜롬비아-미국 FTA
 - 지식과 연구 결과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 허용
 - 협정상 처음으로 생물다양성의 개념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전 동의에 의거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유전물질 접근 허용 및 유전자원의 사용에 의한 혜택을 공동체에 균형 있게 배분함을 규정
 - 혁신(innovacion)과 기술발전의 증진에 관한 내용을 FTA에 처음으로 규정한바, 이에 따라 양국 간 과기협력의 틀을 마련
 - 저작권에 관해서는 콜롬비아 국내법 규범의 본질을 유지하되 인터넷 등 신기술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하고, 사용용도 특허, 치료방법 특허, 동·식물 발명 특허 등은 불인정

(5)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기관

- 저작권청(DNDA: 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
- 콜롬비아 농수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특허와 상표

콜롬비아는 특허권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특허분쟁 야기 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영업비밀(trade secrets), 변종식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WTO TRIPS 체제에 근접하고 있다. 2002년 콜롬비아 정부는 “비밀 데이터(confidential data)”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Decree 2085)을 발효시켰다. 2002년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허가를 받은

약품과 “생명공학적으로 동일한(bioequivalent)” 신약의 상업적 시판을 허용하여 왔으나, 상기 시행령의 발효로 상업적 시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3년 3월 콜롬비아 농업부는 농화학 제품(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시행령(Decree 502)을 공포한다. 그러나 2003년 7월 콜롬비아 정부가 generic 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한 등록 및 통제를 완화시키는 법령을 입법하여, 농업부 시행령 제502호의 효력을 반감시켰다.

콜롬비아에서 발명특허로서 흔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치료·수술방법, 발명이 아닌 용도(uses), 새로운 용도(원 특허에서 유래되는 다른 용도), 기능상의 특성(functional characterization) 등이다.

콜롬비아는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도 10년간 보호하고 있는바, 보호요건으로는 독창성(novelty)과 원천성(origina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법령의 시행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 년간 내전으로 법집행을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서 접수받고 있다. 등록상표는 콜롬비아에서만 인정되고 안데안 등 지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

1994년 1월 안데안 공동시장 저작권보호협정에 가입하였고, 현대적 체제를 갖춘 저작권보호법(Law 44 of 1993)이 발효되어 컴퓨터 software에 대하여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콜롬비아 민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베른 협정과 UCC(Universal Copyrights Convention) 협정의 당사국이다.

S/W의 경우 정품사용자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백업본 1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사항은 아니나 저작권기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도

일반적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는 내국민 대우를 받고 있다. 외국인 100% 투자는 국방관련 분야와 유해물질 제조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고 있다.

투지유치 제한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문(콜롬비아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이익 부문)

- 방위산업
-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 금융 및 보험
- 자원개발
- TV 중계 등

외국인 투자자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투자금액을 언제든지 재반출해 갈 수 있다(2000년 시행령 제2080호로 개정).

투자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법”기본 원칙

- 내국민 대우 :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보편성 : 콜롬비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보편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단, 1) 국가안보, 2)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폐기물 처리사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부분적 제한을 받고 있음.
- 포괄적 허가 : 상기 국가 안보 및 핵폐기물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허가(prior approval) 없이 투자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금융산업, 광업, 증권시장 투자 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정해진 국내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적정보상 적용 : 1999년 헌법개정 시 “보상 없는 국가수용”을 규정한 제58조 삭제로, 모든 국가 수용 절차에 있어서 적정보상 원칙이 확립됨.
- 2005년 투자자를 위한 법적 안정성 계약제도 도입

(2) 자유무역지대(3가지 유형)

-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와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ingle Enterprise Free Trade Zone)를 시행하고 있는 바 (법1004/2005, 대통령령 383/2007 및 4051/2007),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 재화, 서비스에 대한 15% 단일 소득세
 - 해외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 해외로부터 구입되는 기초재료, 부품, 최종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외국시장에 대한 상품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해외수출시 콜롬비아가 당사국인 무역협정 혜택 향유
 -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가공·제조 시 콜롬비아 원산지 인정 등(단, 페루는 불인정)

-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FTZ) 밖에 소재하는 신규 기업이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EFTZ)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유무역지대(FTZ) 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지사, 테크노공원, 항구업체, 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며, 재생불가능한 자연자원의 탐사·활용·추출 관련 기업, 금융서비스 관련 업체, 국가양허사업, 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되는 바, 관련 자격요건은 재화의 제조·생산·가공업자, 서비스제공자, FTZ 운영업자 등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 창출과 투자금액은 필수 요건임.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대는 총 111곳

▶ 자유무역지대 혜택에 대한 주요 자격요건

사업 분야	최소 신규투자금액·고용창출 요건(3년 이내)
농산업	월최저임금의 7.5만배 투자 또는 500명 직·간접 고용
재화	월최저임금의 15만배 투자 및 150명 직접 고용
서비스	월최저임금의 1만~4.6만배 투자 및 500명 직접고용 또는 월최저임금의 4.6만배~9.2만배 투자 및 350명 직접고용 또는 월최저임금의 9.2만배 초과 투자 및 150명 직접고용
보건	투자요구조건은 서비스 분야와 동일 고용의 경우 50%는 직접고용, 50%는 간접고용 가능
항만	월최저임금의 15만배 투자 및 20명 직접고용, 50명 간접고용

※ 상세 내용은 2016년 12월 발표된 시행령 2147(Decreto 2147) 참고 가능. 2018년 최저임금은 781,242페소 (약 270USD, 1USD=2,900COP 가정).

(3)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1) 손비인정, 2) 조세감면, 3)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Income deductible expenditures(손비인정)
 - 국내조세 부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
 - 고정자산의 고속 감가상각 허용
 -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제도 허용
 -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손비 인정
- Exempt Income(조세감면)
 - 해외로부터 기재한 원리금 상환 금액
 - 업종별로 상이한 조세 감면 제도 시행
- Tax Discount(세액 공제)
 - 이중과세의 조정 허용
 - 조립분야 투자액의 20% 범위 내
 - 기초산업 분야 중장비 수입에 따른 부가세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1) 국내 치안

2002년 8월 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문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이루고 있다.

2010년 8월 Santos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안개선 노력에 힘입어 2012년 9월 Santos 정부는 콜롬비아 최대 반정부 무장 세력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상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11월

쿠바 아바나에서 약 4년간의 평화협상을 거쳐 2016년 9월 26일 최종협정문에 서명함. 콜 정부는 동 평화협정문의 국민 동의를 묻는 찬반 국민투표를 2016년 10월 2일 실시하였으나 반대 50.2%, 찬성 49.8%의 근소한 표차로 부결됨. 이에 콜 정부는 FARC측과 재협상을 통하여 반대측 요구를 일부 반영한 평화협정 수정안에 2016년 11월 12일 재합의하였으며, 동 수정안은 국민투표가 아닌 의회비준으로 2016년 12월 1일 최종 효력을 발생하여 52년간 FARC와의 내전을 종식함.

또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반정부 무장세력인 국민해방군(ELN)과 평화협상을 진행중이며, 한시휴전협정(2017년 10월 1일~2018년 1월 8일)을 체결하였다. 다만 반정부 무장세력 이외에도 범죄조직이 치안을 위협하고 있어 치안 관련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존재한다.

(2) 빈번한 투자관련 법령 수정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내치안문제와 빈번히 개정되는 국내법령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빈번한 법령 개정에 따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내 투자와 신뢰증진법(Law that Promotes Investor's Confidence in Colombia)”를 제정하였다.

- 이 법의 핵심은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이 투자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임.

분쟁 해결

콜롬비아의 사법제도는 프랑스식을 따르고 있는바, 불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문제는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서 소관하며, 파산·부채조정절차 등은 기업감독원(Superintendencia de Sociedades)가 담당하고 있다.

보고타, 메데진 상공회의소는 콜롬비아와 외국인간의 분쟁에 경험 있는 중재인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절차와 요율을 가지고 있다. 중재판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콜롬비아는 외국판정의 집행에 관한 UN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상호주의와 아래를 조건으로 외국 판결과 결정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 소송 제기 시 콜롬비아 부동산권리와 관계되지 않아야 함.
- 공공정책 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외국 적용법규에 따라 상소될 수 없는 판결·결정이어야 함.
-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어서는 안 됨.

※ 외국인 투자관련 인프라 현황

외국인투자자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1) Bogota, 2) Medellin 지역 외국인 투자 인프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타

■ 항만시설

- 수도인 보고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Buenaventura 항으로서 보고타 서쪽 497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함.
- 카리브 연안쪽 항구로는 1,125킬로미터 떨어진 Cartagena 항, 1,008 킬로미터 떨어진 Barranquilla 항, 965 킬로미터 떨어진 Santa Marta 항 등임.

■ 육상 도로망

- 보고타는 내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주요 육상 도로망이 수도를 경유하고 있음.

■ 항공 수송망

- 보고타 시 외곽에 위치한 El Dorado 공항은 콜롬비아의 주요 국제공항으로서 주요 외국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음.

(2) 메데인

■ 항만 시설

- 콜롬비아 최대 산업 도시인 Medellin은 보고타에 비해 연안에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
- Buenaventura 항은 504킬로미터, Cartagena 항은 632킬로미터, Barranquilla 항은 749킬로미터, Santa Marta 항은 840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 육상 도로망
 -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Medellin은 주요 육상교통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Buenaventura 항구와는 철도로 직접 연결됨.
- 항공 수송망
 - Medellin 외곽에 Olaya Herrera 공항이 있으며, 수출자유지대가 있는 Rionegro 인근에 Jose Maria Cordoba 공항이 있음.

경쟁국 진출 동향

2002년 8월 Uribe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민주안보(Seguridad Democratica) 정책을 추진하면서 치안상황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외국 인투자가 급신장하고 있다.

대콜롬비아 외국인투자는 2008년 10,564백만 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32% 감소한 7,20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6,915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활발한 FTA 체결 추진, 법적 안정성, 세계 경제의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2011년 14,648백만 달러, 2012년 15,039백만 달러, 2013년 16,209백만 달러로 투자최고액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였으나, 2014년은 16,151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이는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2013년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5,11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4,732백만 달러로 감소한데서 확인된다. 이러한 흐름은 2015년 심화되어 2,512백만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감

소로 이어졌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여 13,726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몇 년간 에너지·광물 부문이 총 투자 규모의 상당 부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 또한 국제 저유가에 따라 최근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투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나 2007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까지 총 3억 달러 이상(누적 금액)을 기록하였다.

- 그간 상품수출 이외의 인프라프로젝트 및 기술서비스 프로젝트 입찰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열세였으나, 최근 진출확대로 향후 입찰수주 및 이로 인한 투자증가가 기대됨.

▶ 콜롬비아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4	2015	2016
석유	4,732	2,512	2,385
광물	1,582	533	-97
금융	2,478	2,103	2,550
제조업	2,967	2,641	1,764
상업, 요식업, 호텔	804	1,668	1,044
수송, 창고, 통신	2,112	745	1,208
건설	648	693	655
합계	16,165	11,632	13,726

출처 : 콜롬비아 중앙은행

▶▶ 콜롬비아 최근 국별 투자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14	2015	2016
1	캐나다	437	319	2,195
2	미국	2,238	2,078	2,111
3	버뮤다	1,017	1,284	1,605
4	스페인	2,214	1,327	1,493
5	파나마	2,436	1,648	1,409
6	네덜란드	450	902	1,027
7	영국	1,088	700	853
8	스위스	2,805	947	740
9	멕시코	663	-131	658
10	케이만 제도	318	224	300
Total		16,165	11,632	13,726

※ 석유부문투자액, 이익금 재투자액은 제외

출처 : 콜롬비아 중앙은행

노동시장

임금수준

콜롬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임금지수는 최저임금으로서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9% 인상된 781,242페소이고 교통보조금은 88,211페소이며, 합계는 869,453페소(약 300USD, 1USD=2,900페소 가정)이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300~400달러 수준에서 고용이 가능하나, 전문기술 보유자, 혹은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경우 부문별로 월 2,000~3,000달러 수준, 그리고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경우 월 10,000달러 이상 급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정 인건비 구조

기본월급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으로는,

- 유급휴가 : 매년 working day 15일이 주어지고 연말에 남은 휴가는 직원에게 돈으로 보상.
- 퇴직금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눠 한 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 1회 지급.
- 퇴직금 발생이자 : 퇴직금 한달 분에 대한 이자 12%를 퇴직금과 함께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지급.
- 상여금 :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한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지급
- 법정 사회보장세
 - 연금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6.50%로 본인이4.125%, 고용주가 12.375% 각각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또한, 연간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4~15배 사이인 경우 추가로 1%를 연금공단에 의무적으로 기부하게 되어있다. 이때에도 사용자와 본인 부담이 위와 동일.
 - 건강보험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2.50%로 본인부담이 4.00%, 사용자가 8.50%씩 각각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 산재보험 :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업종별 요율(보험 사고시)에 따라 소득의 0.52222~6.96%사이에서 납부.
- 가족보조기금 : 모든 기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족보조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월 급여의 9%를 납부

법정 근로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근무 시 지급률은 주, 야간, 휴일에 따라 요율이 틀리며 1일 2시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음. 또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연장 근무 시에는 고용주가 사전 또는 사후에 노동부에 연장근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평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25% 추가지급
- 평일 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지속 야간근무자 : 시간당 임금 +임금의 35% 추가지급
- 휴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작업 교대제도(work shift)
 - 고용주와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속적 교대작업(successive work shift)을 허용하는 고용계약 체결 가능
- 작업시간 선택제도(flexible daytime shift)
 - 상기 제도는 주당 48시간을 주당 6일에 걸쳐 최대한 작업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고용주가 1일 최소 4시간 최장 10시간 범위 내에서 주당 48시간의 작업시간을 6일에 걸쳐 배분하면, 초과작업 수당을 지급 불요

노동조합 성향

콜롬비아 헌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가입 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최소 구성인원은 25인(기업의 수와는 무관)이며, 노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기업의 최소 종업원 수는 5인이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1) 단위 기업별 노조, 2) 직능별 노조, 3) 산업별 노조가 있다.

자원 ·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제도

자원현황

- 콜롬비아는 석유, 가스, 수력자원,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과 페로 니켈, 금, 은, 에메랄드 등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광물의 종류

- 철광물 : 금, 은, 백금(platinum), 니켈(nickel/Ni), 구리, 철, 망간(manganese/Mn), 납(lead/Pb), 아연(Zinc/Zn), 티타늄(titanium/Ti)
- 비철광물 : 석탄(세계 제4위 수출국), 에메랄드, 염류(類), 바다 소금, 사력층(砂礫層/gravel), 모래, 찰흙(Clay), 석회암(limestone), 유황(sulfur/S), 중정석(barite), 벤토나이트(Bentonite), 장석(長石), 활석(滑石/Talc), 인산석(phosphoric), 장식용 석재(Ornamental)

➡ 석유 확인 매장량 · 생산량

년도	확인매장량(백만배럴)	일일평균생산량(만배럴)
2012	2,377	94.4
2013	2,445	100.6
2014	2,308	99.0
2015	2,002	100.6
2016	1,665	88.6

출처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국영석유회사(Ecopetrol)

▶ 가스 확인 매장량·생산량

년도	매장량(십억큐빅피트)	일일평균생산량(억큐빅피트)
2012	7,448	11.5
2013	6,851	11.7
2014	6,381	11.0
2015	5,888	11.3
2016	5,696	10.8

출처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석유청(ANH), 국영석유회사(Ecopetrol)

▶ 2016년 자원현황

항 목	확 인 매 장 량	연 간 생 산 량
석 유	16.6억 배럴	88.6만배럴 (일일평균생산량)
천연가스	5,696십억 큐빅피트	10.8억큐빅피트 (일일평균생산량)
석 탄	6,245백만톤(2015년)	9,050만톤

출처 : 콜롬비아 석유청(ANH), 광물청(ANM), 광물에너지기획청(UMPE)

콜롬비아의 석탄, 석유·가스, 전기, 새로운 에너지지원(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의 매장량, 생산량 등은 아래와 같다.

- 석탄 부문
 - 2015년 5월 기준 석탄 확인매장량은 62.4억톤
 - 카리브해에 인접한 베네수엘라 국경지역인 Guajira 주의 Barrancas와 Cesar주의 Ibirico주는 콜롬비아 석탄 생산의 90% 차지
- 석유·가스 부문
 - 2016년 기준 석유 확인매장량은 16.6억배럴이며, 일일평균생산량은 88.6만배럴임
 - 2016년 기준 가스 확인매장량은 5,696십억큐빅피트이며, 일일평균생산량은 10.8억큐빅피트임

- 전기부문
 - 콜롬비아는 물이 풍부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3개의 큰 산맥으로 인해 수력자원이 풍부함
 - 2016년 기준 콜롬비아의 연간 총발전량은 65,940GWh로 이중 수력발전이 67.1%, 석탄·가스 등에 의한 화력발전이 27%를 차지함
-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
 - 바이오에너지(에탄올 10% 혼용 가솔린, 바이오디젤 5% 혼용 디젤)
 - 2005년에 에탄올을 처음으로 생산한 이래, 바이오에탄올 연간 생산량은 2012년 3.62억리터, 2013년 3.55억리터, 2014년 4.06억리터, 2015년 4.46억리터, 2016년 4.28억리터 생산
 - 바이오디젤의 경우, 2012년 48.9만톤, 2013년 46.4만톤, 2014년 51.9만톤, 2015년 51.3만톤, 2016년 44.8만톤 생산

국가기관·법규·정책

(1) 광물부문

중남미의 3대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최근 수년간 광물관련 입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률안정법(Ley de Estabilidad Jurídica para el Inversionista) 등
- 광물업무는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가 관장하고 광산법(Codigo de Minas)에 의거 정책을 추진하는 바, 아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광물청(ANM: Agencia Naional de Minería) : 광물자원현황 전반 및 인허가 담당
 -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구 Ingeominas) :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담당

-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etica) :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 담당
- 현행 광물법상의 양허계약 관련 주요내용 :
 - 광물 양허 독점 계약(탐사·채굴)
 - 내외국인 평등 원칙
 - 먼저 신청자 우선 권리(primer en el tiempo, primero en derecho) 원칙
 - 개천(corrientes), 하상(cauces de aguas) 인 경우 50km²(5000 ha) 까지 허용
 - 여타 지형의 경우 100km²(10,000ha)까지 허용
 - 계약기간은 30년(탐사기간 3년, 건설·시설설치 기간 3년 포함), 1회에 걸쳐 30년까지 연장 가능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계약서에 언급된 광물이외에 합금 등에 대한 탐사권리가 있음.
 - 계약서에 로열티(regalias)와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규정
 - 지상광물조사는 환경허가 불요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로열티(regalias) 및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 광물부문 제세·부담금

제세·부담금	요율	세부내용
로열티	생산량의 1~12%	<p>금·은 : 생산량의 4% (충적토(aluvión)관련 계약은 생산량의 6%) 백금 : 생산량의 5% 에메랄드 : 생산량의 4% 석탄 : 3백만 톤 이상 채굴 경우 생산량의 10% (이하 경우 생산량의 5%) 니켈 : 총생산량 가치에서 총생산비용의 75%를 제한 값의 12% 기타 : 생산량의 1~12% (석회암, 석고, 점토 및 자갈은 1%, 철금속은 5%, 비철금속 3%, 염류 12%, 방사성 10%)</p>
임차료	1일당 「1-3×하루치 최저법정 임금(SMLV)」	<p>탐사단계에서 적용되며, 동 금액은 면적규모에 따라 좌우됨 20km² (2,000 Ha)까지는 1일당 1 SMLV 20~50km² (2,000~5,000Ha) 의 경우 1일당 2 SMLV 50~100km² (5,000~10,000Ha) 의 경우 1일당 3 SMLV ※ 1 SMLV(496,000페소 ÷ 30일)=16,563페소(2009.9월)</p>
추가 지불		정부가 투자한 탐사구역 입찰의 경우, 정부에 대한 지불금액은 입찰공고 때 게시됨.

출처 : 광물지질국(Servicio Geológico Colombiano), 광물에너지기획청(UPME)

■ 개정 광물법(2010년) 주요 요지

- 「법 010 및 법 042 (2007년)」

- 광물법 「법 685(2001년)」 개혁 목적
- 광권계약자는 3년간의 탐사기간 동안 탐사(추가탐사기간 필요시 2년씩 추가하여 총 11년까지 탐사 가능)
- 채굴계약은 20년씩 계속 연장 가능
- 불법채굴자에 대한 양허문호 기회확대
- 탐사작업을 위한 환경허가 획득 의무화
- 광물부문 탐사개발 구획이 민간인 소유의 땅의 경우, 지상사용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타협이 안 되는 경우 판사 참여 하에 해결 가능

- 탐사·개발권자는 용익권(servidumbres)을 근거로 권리주장 가능

※ 동 개정 광업법이 광산개발지역 원주민 공동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내려짐. 이에 국내법에 따라 현재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 판결을 반영한 광업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였으나, 광물에너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동 개정법은 2013년 5월 13일자로 자동 폐지되어 2001년 제정된 광업법 685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됨. 이에 따라 광물에너지부는 4개의 법령(decreto)을 발표, 본 광업법 폐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존 광업법을 보완키로 결정함.

(2) 석유부문

2004년까지는 콜롬비아 민간업체의 석유생산은 전체의 40%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부터 석유정책 개혁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탐사·생산(E&P)계약은 2004년부터 석유청(ANH) 주관 하에 격년으로 시행되는 유전라운드(Rond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탐사기간 6년
- 평가기간(periodo de evaluacion : 탐사 후 매장량에 관한 상업성 평가) 2년
- 생산기간 24년, 필요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로열티(regalias : 원유생산량의 8~25%)와 광구임차료 등 부담

콜롬비아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에 따른 동 분야에 대해 투자 감소로 인한 유전 탐사 감소 등을 극복하고자 2015년 8월 아래와 같은 3가지 신규 조치를 발표하였다.

- 탐사가 이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감소시켜 기업들이 현금 유동성을 개선토록 하였다.

- 유전 발견 가능성이 더 높은 다른 광구로의 탐사활동 이전을 허용하였다.
- 계약서 이행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아울러, 콜롬비아 석유청은 그간 격년으로 진행해온 유전라운드의 시행 간격을 축소시켜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2015년 5월 발표하였다.

▶ 석유부문 제세·부담금

제세·부담금	요율
로열티	8~25%
광구임차료	100,000Ha까지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2.29달러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3.06달러 100,000Ha 추가 때마다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3.06달러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4.59달러 연안 외각지역: 헥타당 0.76달러 첫 탐사 기간 12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동 수수료 면제
	액체 탄화수소 : 0.1162달러/배럴 천연 가스 : 0.1162달러/1000큐빅 피트
고유가치 부담금	생산량이 5백만 배럴을 초과하고 서부텍사스유(WIT)가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계약자는 석유청(ANH)에 미국석유협회(API) 원유기준 중량에 따라 해당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함.
생산량의 일정 비율 지불	계약자는 총 생산량 중 입찰 참여시 합의한 일정 비율을 석유청(ANH)에 지불해야 함.

출처 : ANH

(3) 전기부문

「법 142」(1994년)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광물에너지부 산하에 광물에너지기획청(UPME: Unidad de Planeacion Minero Energelia), 전기가스규제위원회(CREG: Comision de Regulacion de Energia y

Gas), 공공서비스감독청(SSPD: 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Publicos Domiciliarios) 등이 있다.

발전(generacion)과 판매(comercimilzacion)는 경쟁체제이고 송전(transmission)과 배분(distribucion)은 지역별 독점 또는 가격규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 발전·송전·배분·판매에 모두 관여하고 있으나, 콜롬비아에서는 지형이 넓고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발전, 송전, 배분, 판매업체가 관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전과 배분, 배분과 판매 등을 겸하기도 한다.
- 외국 투자가의 경우, 발전부분 참여는 비교적 용이하나, 송전과 배분에는 이미 송전망 또는 배분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 발전·송전·배분·판매업체(2014년 등록 기준)

- 발전(Generadores) : EPM, Emgesa, Isagen, Epsa, Chivor, Gecelca, Colnversiones 등 56개 업체
- 송전(Transmisores) : ISA, Transelca, EEB 등 12개 업체
- 배분(Distribuidores) : EPM, Codensa, EPSA, Emcali, Electricaribe, ESSA 등 31개 업체
- 판매(Comercializadores) : EPM, Isagen, Codensa, Emcali, Electricaribe, Emgesa, ESSA, Comercializar, Dicel 등 93개 업체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부문

- 「법 697(2001년)」은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의한 온열기구(calentadores), 바이오가스 창출 태양열판(paneles solares generadores de biogás), 풍력모터(motores eólicos) 등 부문에서 영업이윤세 면제

- 「법 693(2001년)」, 「법 939(2004년)」에 의거하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디젤 개발·사용 증진
- 「법 1715(2014년)」을 통해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소수력(小水力), 태양광과 같은 비전통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투자절차

(1) 광물부문

광물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on : 독점 형태) 체결이 필요한 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관심지역 선정
- 양허계약서식 작성(위치지도, 기술정보 등 포함)
- 계약·자금조달 등 관련 계약 제안을 작성하여 광물청(ANM)에 제출
- 제안서가 수락되면 계약 체결
- 광물환경보험료(póliza minero ambiental)(계약기간, 연장기간 이외 추가 3년 동안 유효하여야 함.) 제출 : 보험료는 탐사기간과 건축·시설설치기간에는 연간 투자금액의 5%, 채굴기간에는 연간생산량(추정치)의 10%에 해당
- 임차료(canon superficial) 지불
- 작업계획(programa de trabajo y obras : PTO) 및 환경허가요청서(solicitud de licencia ambiental) 제출(환경허가는 건설·시설 설치·채굴과정에서 필요하나, 2010년 광물법 개정안 발효 시 탐사과정에서도 필요)
- 작업계획(PTO) 집행 및 채굴시작
- 노동자 사회보장, 광물보건 등 준수 필요

(2) 석유부문

콜롬비아에서의 석유개발은 석유청(ANH) 주관하에 탐사·생산계약을 체결하면, 특정 구역에서 석유 탐사·생산을 30년간 독점하게 된다.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의 생산은 4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석유청(ANH)설립이래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60%를 콜롬비아 정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석유가격이 높을 경우 75%, 석유가격이 낮을 경우 50%를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입찰 및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 측 몫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2006년 이후 석유정 시추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바, 2007년 70개, 2008년 99개, 2009년 75개, 2010년 112개, 2011년 126개, 2012년 131개, 2013년 115개, 2014년 113개를 시추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유가하락으로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특히 탐사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감한 결과, 2015년 시추된 광구 수는 25개에 불과함.

- 국영석유회사(Ecopetrol)는 콜롬비아 석유매장량(미확인 매장량 포함)을 47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음.

석유 탐사·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석유청(ANH)과의 탐사·생산(E&P)계약을 체결하여 구획지정(asignacion de áreas)을 받아야 한다.

- 석유청의 3가지 구획지정 방안
 - 직접계약(contratación directo) : 우선 신청자, 우선 배정 원칙
 - 공개입찰경쟁을 통한 계약(contratación por proceso competitivo) : 동일 조건하에 다수의 입찰경쟁을 통하여 선정

- 제안신청(sollicitud de ofretas) : 동일한 조건하에 복수의 업체를 초청하여 선정
- 구획지정을 받는 절차
 - 관심구획에 대한 제안서(계약·법률능력, 기술능력, 운영능력, 금융 분석 등 포함) 제출
 - 석유청(ANH)의 제안서 평가 심사
 - 계약체결
 - 환경허가 신청(건설·시설설치·탐사단계)
 - 건설. 시설설치 작업 집행
 - 탐사시작

(3) 전기 부문

- 전기부문 민간참여
 - 발전(generacion) 활동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배분에는 좀 더 제한적 참여 허용, 송전에는 민간참여 제한(「법 142 및 법 143(1994년)」)
 - 광물에너지기획청(UPME)은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작성·배포
- 전기발전부문 참여절차
 -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제출
 - 금융·행정 계획 제안
 - 환경진단승인 요청
 - 토지구입안 통보
 - 송전망연결요청서 제출
 - 화력발전소의 경우, 에너지(combustible)구입 계획 제출
 - 디자인 제출

- 환경허가 신청
- 발전업체는 전기매매등록청(ASIC : Administrador del Sistema de Intercambios Comerciales)에 주요시장 에이전트로 등록
- 수력발전소 건설 참여
 - 콜롬비아 내에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동 참여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4)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부문

- 바이오 에너지부문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작물을 경작, 생산하는 데에는 계약이나 허가는 별도로 필요 없음.
 - 팜 경작의 경우 농림부와 조세청(DIAN)에 등록하면 소득세를 면제함.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을 가솔린, 디젤과 섞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의 파나마 통상환경

파나마 자체 시장은 협소(인구 약405만)하나, 태평양과 대서양 양 대양을 잇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의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에도 적극적이다.

파나마 경제는 2010년대 들어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평균 7.2% 가량의 중남미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2018년 경제성장률은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5.4%(세계은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안정적 제조업 기반 없이 3차 산업 위주(물류, 관광, 금융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자체 수출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며 세계적 경제통합 흐름에도 적극 호응하여 1997년 WTO에 가입하였다. 미국, 멕시코, 칠레, 중미 5개국, EU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콜롬비아, 이스라엘,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와는 2017년 12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로 구성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이며, APEC 가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4년 7월 1일 출범한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정부와 소속 정당인 파나메니스파당(PAN)은 마르띠넬리(Martinelli)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도우파 성향이나 상대적으로 소득분배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서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다소 가미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렐라 정부는 전 정부가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양허계약 체결과정에서 부패소지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무조건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는 파나마 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 측면에서의 선별적 투자 허가로 정책방향을 수정하였으며, 서민생활 개선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파나마는 향후 △인접국 저임금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실업률 상승 및 △전 정부시절 발주된 대형 프로젝트 사업 비용으로 늘어난 재정적자 한도액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여,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콜롬비아의 수입 규제로 인해 악화된 콜론자유무역지대(ZLC)의 교역 정상화, △모색 폰세카 스캔들(2016년 4월) 여파 완화,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2016년 6월 26일)에 따른 통행료 수입 및 물동량 증가 목표 달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제도

(1) 대외통상 정책방향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이후 적극적인 대외통상 촉진 및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에게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자 간 무역자유화협정을 체결하여 수출 진흥 및 생산성 있는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파나마는 2017년 9월까지 총 55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인근 중미국가인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와 1996년 10월부터 파나마-중미 자유무역협정(TLC: Tratado de Libre

Comercio) 체결을 추진하여, 2001년 5월 협정본문(공통규범)에 합의하고, 2003~2009년까지 양자 간 시장접근 교섭을 통해 각각의 국가와 상품, 서비스 및 투자분야 양허사항, 원산지규정 등을 담은 양자 프로토콜을 체결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과는 1987년 이후 양자 간 부분특혜무역협정(Acuerdos Preferenciales y de Alcance Parcial)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 부분 특혜무역협정은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 및 트리니다드토바고와도 체결하였다. 볼리비아, 멕시코, 쿠바,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와는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ALADI) 협정에 의거한 역내 특혜관세 협정(Las Preferencias Arancelarias Regionales que se derivan de los Acuerdos de la ALADI)이 발효 중이다. 2008년 3월 칠레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역외국가로는 대만, 싱가포르와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파나마는 태평양동맹(PA) 가입을 위하여 2013년 7월 멕시코와 FTA 체결을 추진하여 2014년 3월 서명하였고, 2015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한편, 파나마 정부는 2014년 5월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15년 11월 20일 서명하였으며, 2015년 9월 시작(2015년 6월 협상 개시 공식 선언)된 한-중미 FTA 협상에도 참여하여 2017년 12월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다.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2012년 10월 31일에 발효하였다. 캐나다와의 FTA는 2010년 5월 협정에 서명하고, 2013년 4월 1일에 발효하였다. 페루와는 페루-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간 FTA 형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파나마와의 양자협상은 2011년 6월에 완료되었고, 2012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한편, 파나마는 2016년 수출의 29.5%와 수입의 11.03%를 차지한 제2 교역국인 EU 27개국과 중미-EU 제휴협정(Acuordo de Asociación entre Centroamérica y La Unión Europea, ADA)에 2012년 6월 29일 서명하였고, 엘살바도르 국회가 2013년 7월 3일에 중미 6개국 중 마지막으로 동 협정 비준절차를 완료함으로써 2013년 8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13년 6월 서명된 EFTA FTA는 2014년 8월 발효(아이슬란드와는 2014년 9월 발효)하였다. 한편, 파나마는 2010년 경부터 중미경제통합

사무국(SIECA) 가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13년 6월 21일에 SIECA 6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파나마는 '95년부터 콜롬비아와 부분특혜무역협정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동 협정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170개 품목에 한정), 협정의 활용도도 저조하여 새로이 포괄적인 FTA를 추진, 2013년 6월 타결하였고, 2013년 9월 서명하였다. (양측에 민감한 유제품은 FTA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양국간 무역 분쟁이 불거져 아직 발효는 되고 있지 않다. 동 무역 분쟁은 콜롬비아가 2013년 3월부터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ZLC)를 통해 수입 되는 신발 및 섬유류에 고관세를 부과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나마-콜롬비아간 무역은 2012~2015년간 16% 감소하였다. 파나마가 이러한 콜롬비아의 고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WTO 분쟁에서 승소(2016년 6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WTO는 콜롬비아 정부에 2017년 1월 22일까지 고관세 조치를 철폐하라고 통보하였다. 하지만, 파나마는 콜롬비아가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콜롬비아의 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 보상을 이유로 2017년 2월 10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콜롬비아를 상대로 2.1억불 상당의 무역제재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콜롬비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하는 등 양국간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파나마 해외 수출시장 (총 90개국)가운데, 상위 25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 비중은 89.97%이고, 이들 25개국 가운데 파나마와 FTA 등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한 파나마의 수출은 전체 수출중 73.9%에 달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콜론 자유무역지대 제외).

FTA 등 무역협정 체결·이행은 파나마 통상산업부가 중심이 되고, 관세청, 식품안전청, 농축산개발부, 경제재정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이 해당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다.

(2) 관세율 체계 및 관세율 수준

파나마는 1996년 3월 세계관세기구(WCO)에 가입하고, 1998년 8월에 HS협약 당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파나마는 HS협약 가입이전인 1994년 7월 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이미 수입관세 상품분류 체계를 CCCN에서 HS방식으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파나마의 HS코드는 HS협약 분류와 동일하여 총 21개 부(Seccion), 97개 류(Capitulo), 1,224개 호(Partida), 5,205개 소호(Sub-Partida), 9,804개 품목번호(Inciso)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WTO 가입직후인 1998년 1월 1일자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의 판매세인 ITBMS (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es Muebles y Servicios)을 부과한다. 2010년 7월 1일자로 파나마 정부는 ITBMS 세율을 5%에서 7%로 인상하고, 과세대상 품목도 확대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7%이상의 ITBMS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이외에 특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마의 전체 수입관세품목은 8,988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고 260%까지 29단계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7%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6단계(0%, 3%, 5%, 6%, 10% 및 15%)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또한 요트를 비롯한 여가용 선박 28개 품목의 경우에는 선체 크기에 따라 \$100-\$20,000 사이의 고정 관세가 적용된다. 각 관세율 단계별 품목 수 및 비중은 아래와 같다.

▶ 파나마 관세율 구조

관세율(%)	품목수	비중(%)
0	3,173	35.3
1	2	0.02
2	6	0.07
2.5	4	0.04
3	534	5.94
4	1	0.01
5	529	5.89
6	256	2.85
7.5	3	0.03
8	3	0.03
10	2,164	24.08
15	2,125	23.64
20	10	0.11
22.5	1	0.01
25	8	0.09
30	68	0.76
40	3	0.03
50	14	0.16
54	3	0.03
60	5	0.06
70	16	0.18
72	1	0.01
81	6	0.07
90	6	0.07
120	3	0.03
144	3	0.03
155	7	0.08
260	6	0.07
기타	28	0.31
합계	8,988	100

보다 구체적으로,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민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 품목은 관세율이 5~10%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5.1~14.9%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공산품은 10% 단일관세로, 종전에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되던 품목들은 15% 단일 관세로 인하 또는 조정되었다. 따라서 파나마는 최소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선박용 디젤유 30%관세 등)를 제외하고는 경제 개방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對 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4월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관세율이 90%에 달하며 우유를 비롯한 낙농제품에는 최고 15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13부터 2015년간 매년 사료용 옥수수 가격 통제를 위해 40%에 달하는 옥수수 관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에 따라 관세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하기도 한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2010년 제정된 Law 8은 기존의 10~1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폐지하여 무관세화 하였으나,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해 7%의 판매세(ITBMS)를 부과하고, 수입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폐지 이전보다 수입차량에 대한 전체 세율이 더 증가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현황

차량(CIF 가격)		중전	Law 8
승용차	\$8,000 이하	5%	15%
	\$8,000~\$20,000	5%	18%
	\$20,000~\$25,000	5%	23%
	\$25,000 이상	5%	25%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까지)		5%	0%
전기 또는 Hybrid차 (2012년 이후)		5%	5%
상용차 (승객 및 화물)		5%	10%
트랙터		5%	10%
장애인용차		5%	5%

또한, 파나마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차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해 오던 평균 6.82%의 관세를 철폐(무관세화)하였으나(2012.5월 제정 행정명령 No.15), 감소된 세수 충당을 위해 동일 품목에 대해 내국세로 5%의 선택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해당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는 감소하였지만 새로운 내국세 도입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3)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

위에서 상세히 언급한 총 55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양허표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수입규제 제도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대를 기반

으로 중계 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남미 여타국가에 비해 수출입, 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1) 수입허가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1997년 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할당허가위원회(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2) 수입금지 품목

파나마 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파나마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3) 수입제한 품목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 (보건부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 및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 (공공안전부 공공안전국 (DIASP) 사전 수입승인 필요)

(4) 비관세 장벽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동식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인증제도

(1)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 보건 등록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파생 제품 및 하위 제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 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2)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주한파나마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식음료의 경우 별도기구인 식품안전청(AUPSA)을 통해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급하고 주한파나마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샘플 및 기타서류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제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식물위생과(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수입물품 도착 후 역시 품질 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4) 의료기기 인증제도

파나마정부는 의료기기 공공입찰 시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을 요구한다. 의약품이 포함된 의료기기의 경우 추가로 보건등록(Registro Sanitario)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술표준인증을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

요구사항		설명
현지어	국문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신체에 삽입하는 모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절차
Ficha Tecnica Homologada	기술사양서	- 입찰사양 만족여부 심사자료로 활용됨
Catalogo y Literatura Tecnica del Fabricante	제조사 의 카탈로그 및 기술문헌	- 원본, 공증사본, 전자문서(PDF) 형태 가능(스페인어로 작성)
Carta de Compromiso de Fabricante	제조사 의 제품보증서	- 제품의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고 사고/리콜 발생시 보건당국에 보고할 것임을 약속하는 보증서

요구사항		설명
현지어	국문	
Certificado	국제인증서, 판매허가증서	- GMP서류(ISO, EN, QS, TUV등) : 제조방법 및 품질을 보증하는 국제인증 - Certificado de Libre Venta(FDA, CSA, CE등) : 원산지 보건당국이 발행한 판매허가증서
Copia simple u original del instructivo del dispositivo medico	의료기기 사용설명서	- 스페인어 제작 필수(사본 혹은 원본)
Solicitud / Autorizacion	인증신청서	- 보건부(MINSA)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해야 함. -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경우 위임장 (Autorizacion)도 함께 제출해야 함.
기타 Aviso de Operacion, Copia de Registro Publico, Declaracion Jurada		- 현지기업이 직접 작성, 제출하는 서류 일체

추가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기기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잠재위험등급 별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요구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급	위험수준	제품예시	요구자료
A	저	각종 수술도구	- 제품사진 - 제품태그 사본 - QC테스트 결과 - 의료장비 샘플
B	중등	바늘/흡입장치	- A등급 요구사항 - 살균 및 세척방법
C	중상	호흡기/정형외과 이식물	- B등급 요구사항 -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 원재료에 대한 세부설명 - 제3국 판매이력(판매량 포함)
D	고	심혈관계밸브/ 이식용 제세동기	- C등급 요구사항 - 위험성 분석결과 - 임상실험 관련 세부정보 - 안전성 및 효능 관련 임상 전 실험 세부정보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및 가정용품은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도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선적전 검사제도

파나마의 경우 선적전 검사제도가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지식재산권 보호

파나마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음반보호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브뤼셀위성관련협약(Brussels Satellite Convention), 국제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저작권협약(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식물다양성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에 가입하고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1990년대 말부터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 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USTR은 1998년 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위조 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나마 정부가 1998년 3월 콜론 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을 설립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는 1994년 8월 발효된 지적 소유권법(Law 15) 및 1996년 11월 신공업소유권 보호법(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1996년 초에 반독점법을 입법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2012년 미국과의 FTA 발효·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강화되었다. 2012년 10월 5일 법 제61호를 통하여 공업소유권보호법을, 2012년 10월 10일 법 제64호를 통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국(통상산업부)의 처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시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하였다. 아울러, ‘제5차 지식재산권 관련 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장관급 회의’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참석 하에 파나마에서 개최(2017년 7월 17일)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제고를 위한 범지역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경주 중이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콜론 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표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서 일부 업체가 물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위조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관제도

수입자는 반드시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 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을 제출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저축기금(Caja de Ahorros), 파나마 국립은행(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관세 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 액의 10%,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2011년 8월부터 관세청은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비용 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관업무 흐름도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 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도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및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 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세관에 수입관련 서류 제출 → 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 실시(세관원) → 관세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 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소요기간 및 세관 업무시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이다. 세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16:00(점심시간 12:00~13:00)이다. 한편 관세총국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16:30까지 점심시간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일반 수입통관에서는 아무 통관대행사에게나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파나마 국제박람회(EXPOCOMER)의 경우에는 공식통관대행업체인 Auturo Aurauz, S.A.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다.

통관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Declaración Jurada)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Formulario de Liquidación) : 통관사가 작성, 관세총국에 제출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에서 선적서류(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대사관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되면 인보이스금액의 1%(최소 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이고 100,000달러 이상은 75달러이다.

- 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 파나마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 선적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2)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수입업자 납세증명서(Paz y Salvo Certificado)

(4)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

(6)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기타 통관 시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 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칙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아울러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창고료가 가산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상이 조세 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치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 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 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파나마 관세청(Autoridad Nacional de Aduanas)

- Dir. Curundu, Ave. Dulcidio Gonzalez, Edificio 1009
- Tel 507-506-6400 / 506-6406
- Email denuncias@ana.gob.pa
- 홈페이지 www.ana.gob.pa

통관 관련 단체

- 파나마 통관대행사 전국연맹(UNCAP)
 - P.O. Box 5358 Panama 5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3-6090
 - Fax 507-393-6050
 - Email uncap@uncap.org.pa
 - Mr. Obaulio Castro / President

통관대행법인

- Bullen & Bullen, S.A.

- P.O. Via Fernandez de Cordoba, Plaza Cordoba Seccion B - Nivel1 -Local No. 14, Apto. 1060,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29-7565
- Fax 507-229-1922
- Mrs. Carolina Bullen / General Manager
- Agentes Aduaneros Autorizados, S.A.
 - P.O. Box 2653 Panama 9a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2498
 - Fax 507-260-2625
 - Mr. Oscar Hernandez / General Manager
- Servicios Aduaneros Gardellini, S.A.
 - El Carmen, urb. Herhnagner, Edif. Buenaventura, Apt. 1B, Panama City
 - Tel 507-229-4210
 - Mr. Alberto Gardellini / General Manager
- Hugo Arjona y Ci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Centro Comercial Alambra, Local 1, Planta Alt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7557
 - Fax 507-260-2986
 - Mr. Hugo Arjona / General Manager
- Arturo Arauz, S.A.
 - P.O. Via Espana frente al Piex, Edificio Orion, Piso 1, Oficinal-A,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4-6575 / 264-2210
- Fax 507-263-5989
- Mr. Arturo Arauz / General Manager
 - * 파나마 박람회(Expocomer) 공식 지정 통관업체
- De La Rosa y De La Rosa, S.A.
 - P.O. Box 2046 Panama 9a Republic of Panama
 - Tel / Fax 279-1183
 - Mr. Edgardo De La Rosa / General Manager
- ASAP PANAMA, S.A.
 - P.O. Via. Ricardo J. Alfaro, The Century Tower, Piso 15, Oficina 1506, Panama City, Republic of Panama
 - Tel 507-391-4535
 - Mr. Miguel Angel Cuadra / General Manager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미주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파나마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 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17년 8월 기준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한 세계 우수 다국적기업 137개가 파나마 지사를 중남미 지역 본부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분야는 금융, 물류기지, 콜센터, 관광 인프라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파나마 정부는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비자 편의, 면세 혜택 등 각종 정책을 시행 중이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 중심지이며 중계무역지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관산업 투자는 물론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 산업 등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가공단지, 항만시설 및 항구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운영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舊하워드 공군 기지를 개조한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ifico)’을 지정하여 첨단 기술 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 경제 구역은 2016년 8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공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큰 장점이다. 또한, 별도 중앙은행이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다. 미국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낮고,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험도 작다.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 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일 경우 역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호에 의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세계금융·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9%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들어가 2013년에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46.5억불을 기록하여 중미 지역 내 1위를 기록하였으며, 증가율에서도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2위를 차지하였다. FDI는 2014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49.8억불을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50.6억불, 2016년에는 59.8억불(세계은행)을 기록하였다. 이는 파나마 기업 매각 확대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경기 침체로 인해 해외자본들이 높은 정치적 안정성을 지닌 파나마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파나마 FDI 유입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 FDI 규모가 GDP의 3%인 반면, 파나마의 경우 이 비율이 10.8%(세계은행, 2016)에 이른다. FDI의 대부분은 물류, 수출을 비롯하여 호텔, 은행, 부동산, 전력, 상업,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파나마 정부는 관광 투자 인센티브법(2012년 11월 8일자 법률 80호)에 의거 호텔 등 관광 인프라 건설 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큰 변동이 없다. 2015년 기준 미국, 콜롬비아, 남아공, 대만, 멕시코, 스위스, 스페인, 브라질, 영국, 코스타리카, 한국(19위)을 비롯한 국가와 중남미국가 은행 등이 가장 큰 투자자들이다. 2007년 제정된 다국적기업지원법(Law 41)에 따라 새로운 다국적기업지사설립 형태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들은 태평양 경제구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8월 기준 파나마에는 137개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다국적기업들의 파나마 내 투자 금액은 총 8억 2천만 달러에 달하고 5,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상위의 외국기업을 살펴보면 Panama Ports Company(홍콩/항만), Cable & Wireless(영국/인터넷통신), Telefonica

Movistar(스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AES(미국/에너지) 등이 있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파나마에는 2개 공기업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지상사가 진출해 있다. 외환은행이 1969년에 파나마 지점을 설치한 이후 진출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5년에는 포스코대우, 2016년에는 포스코건설과 신스틸, 2017년에는 한라홀딩스가 각각 진출하였다. 진출형태로 보면 판매·서비스 법인(삼성전자, LG전자, 한국타이어, KEB 하나은행 등), 지사/지점(삼성물산, 효성, 금호타이어, 포스코대우, 포스코건설 등)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의 파나마 내 주요 공공투자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 시공을 위한 기업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당시 소형 밸브 및 구동장치 설비 공급(1억 9천만 달러)을 담당하였고, 포스코 건설은 2016년 미국 AES社의 콜론주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에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EPC 계약 하도급을 수주한 바 있으며,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그리고 SK 건설이 컨소시엄을 결성해 메트로 제3호선 건설 입찰에 참여 중이다.

파나마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설립이 간편하고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파나마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은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유치정책 개황 및 주요법규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다만 파나마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나마에 투자 진출한 기업이라도 파나마의 조세구역 밖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년 8월 그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외교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 진흥기구)와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진흥기관(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통상산업부(투자진흥 주무부처)에 대외무역 차관실(VICOMEX: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을 신설하였고, 2010년 6월에는 투자진흥청(Proinvex)을 신설하여 세계 각지에서 'Panama Invest'를 비롯한 각종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 장려 정책에 힘쓰고 있다.

현재 파나마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 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 산업 등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의 투자확대를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한편,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 제54호(1998년 7월 22일 제정)를 공포하여 동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안정성, 관세제도의 안정성, 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2017년 기준 한국 포함 22개국과 체결) 투자보장에 관한 법 제54호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파나마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투자관련 주요 법규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법률 28호; 1995년 6월 20일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5년 8월 26일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법률 29호; 1996년 2월 1일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법률 21호; 1997년 7월 2일 제정)
-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법률 54호; 1998년 7월 22일 제정)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
(법률 41호; 2007년 8월 24일 제정)
- 자유무역지대(Zonas Francas)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32호; 2011년 4월 5일 제정)
-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법률 제32호’를 국제전화 콜센터 서비스 제공
업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2011년 7월 18일)
- 다국적기업 위원회 설립 및 다국적기업의 연간 보고서 제출을 의무에
관한 법(법률 45호; 2012년 8월 10일 제정)
- 관광 투자 인센티브법(법률 80호; 2012년 11월 8일 제정)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을 다국적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13년 4월 9일)
- ‘SEM 라이선스 발급 요건을 명시하는 결의안 20-17호(2017년 9월 11일)

(3) 투자관련 제도

파나마정부는 다수의 법적 레짐을 설립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투자우대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콜론자유무역지대(ZLC) 소재 기업

- 수입세 면제(재수출을 위한 수입물품)
- 소득세 면제(파나마운하를 통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
- 이자소득세 면제(해외활동에 한함)
- 해외지급 로열티에 대한 세금 면제
- 인지세 면제
- 부가세(ITBMS) 면제
- 주식거래로 발생한 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
- 기업별 고용규모에 따라 과세기준소득 인하
- 배당세 5%
- 2016년부터 기업의 자본세를 0.5%로 한정
(최소 100달러, 최대 50,000달러)
- 각종 비자 관련 혜택(ZLC내 영업을 위한 단기 체류 특별 허가증 발급, 외국인 고용 인력에 대해 2년 비자 발급, ZLC 투자자 비자 발급 등)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 외국기업의 파나마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다국적기업 운영을 통해 파나마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배당세 면제 및 자본세, 운영세, 양도소득세 면제
 - 주재원들이 처음 파나마로 부임시 1회에 한정하여 가구, 가정 용품, 차량 수입세, 부가세 면제 및 차량 구매시 특별소비세 5% 적용
(통상적으로 15~25% 수준)
 - 주재원들에게 파나마 외 지역에서 송금된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사회보장제도 가입 의무 면제(사회보장세 면제)
 - 주재원 및 가족(배우자 및 25세 미만 자녀)에게 연장 가능한 5년의 장기비자 부여(5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 가능), 기술고문·연수차

파나마 내 다국적기업 본부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1회 연장 가능한 3개월의 임시비자 부여

- 다국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 한도 무제한(외국 국적의 고급 인력 채용 허용)
-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 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동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특정 분야

이밖에 파나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카지노, 빙고, 복권 등 도박과 관련된 사행성 업종의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일 규정(1998년 2월 10일자 행정 명령 2호)이 적용되며, 경제재정부 도박관리위원회(Junta de Control de Juegos)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지인 고용 의무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파나마 노동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 고용할 수 있고 나머지 90%는 파나마인(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 포함)을 고용해야 한다.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종업원 수의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숙련노동력이 풍부하지 못한 파나마에서 이러한 법정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쉽지 않아 파나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가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06년 제정된 Law 2에 따라 섬, 해변 및 정부소유지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0년간 양허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3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관광개발을 위해 섬의 일부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동 지역은 민간인에게 이전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섬 전체면적의 50%를 넘어서는 안 되는 등 제한조건은 있다.

금융상의 제한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제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서비스 장벽

파나마는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개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도 법률상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애 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동전화 부문을 비롯하여 통신, 항만 등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교육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해 있다.

파나마 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으로 인해 민영화된 상태이며, 외국 선박의 파나마 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8천대 이상(전 세계 등록 선박의 18%)의 외국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 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 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률에 의거,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나마 헌법상 소매유통업은 파나마인에게만 허용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로 미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소매유통업을 허용하였다. 파나마에 3백만 달러 이상 규모로 투자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는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투자허가

(1) 투자형태의 결정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법인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일반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법인 설립이 용이하며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대기업 지분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파나마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 관계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금지 업종인지 사전심사 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금지 또는 사전심사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차관실(VICOMEX) 생산/투자 진흥국 등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지역 및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트너의 선정

파나마에서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검토사항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실제 의도
- 관계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 정부와의 관계

파나마는 인구 약 405만 명의 소규모 국가이며 부의 상속이 상례화한 사회여서 현지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과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파나마에서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는 유태계, 레바논계, 인도계 및 중국계이며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법 제25호(1994년 8월 26일) 및 행정부령 제35호(1996년 5월 24일)에 의거 통상산업부(MICI)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 운하 반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정부 산하 반환재산관리국(UABR)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상산업부 대외 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투자진흥청(Proinvex)에서 투자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 혹은 기업은 향후 최대 2년간의 투자 계획서(투자 규모 최소 200만 달러)를 통상산업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동 계획서에는 활동 내용(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계획안 등 포함), 정확한 투자 금액 및 고용 예정인 인원수가 명시되어야 하며, 투자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집행된 투자 금액 및 활동 내역에 대해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이민, 비자문제

파나마는 2008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 및 비자 관련 제도를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목적의 체류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로 등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1년 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파나마는 비자기간에 따라 각종 신분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부여(비자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운전면허도 6개월)되므로,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도 비자만료 시 다시 갱신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자발급을 위해 변호사 수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근의 제도 개편 등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었다.

한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5년 장기 비자제도와 영주권 신청을 통해 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들은 파나마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레짐법(Law 41)을 활용하여 5년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다국적기업 주재원(및 가족 포함)은 물론이고 일반 교민의 경우에도 2012년 6월부터 경제활동 또는 전문직 종사목적으로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불 능력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제416호)*이 제정됨으로서 영주권 취득을 통해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발급시까지 1년짜리 임시거주허가가 발급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1년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다.

* 2017년 9월 현재 대상국은 총 50개국이다. (2012.6월 최초 제정 당시 한국 포함 24개국)

- 대상국(알파벳순) :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남아프리카, 대한민국, 스웨덴, 스위스, 타이완, 영국(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우루과이

이상과 같이 한국인의 비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과 결부되어 있던 운전면허증의 갱신 문제도 해결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파나마와 우리나라 당국이 상호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파나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입국후 90일 이내에는) 파나마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단속 등의 상황에서 한국 운전 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제시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파나마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5년 장기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파나마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시에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와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체로 신청하는 날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파나마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시 반드시 혈액검사(혈액형 타입 및 혈당 수치) 결과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혈당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순간적 저혈당 증세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운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나마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서한 혹은 아포스티유를 통해 인증 → 한국 운전면허증과 대사관 인증 서류를 지참하여 파나마 외교부에서 공증(비용 \$4) → 장기 비자(혹은

영주권), 여권 및 혈액검사증을 운전면허증 발급기관(SERTRACEN)에 제출 → 시력 및 청력 검사(비용 \$40)

경쟁법

파나마의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법은 1996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Law 45로 일부 개정되었다. 2007년 법개정은 반독점 담당기구인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청'(ACODECO)의 조직구조개편과 범위반에 대한 벌금인상을 통한 제재권한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설립 이후 파나마 반독점청은 많지는 않지만 범위반 사례를 법원에 제소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등 재판 진행이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독점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과점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장벽으로 형성되거나 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독점청은 법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규제 장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정하기도 하지만, 반독점청이 이에 관여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조세제도

(1) 세제 개황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별소비세, 영업세(Franchise Tax), 교육보험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11월 파나마 정부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제도(Flat Tax) 도입을 추진하여 상당 부분 세율을 단일화 또는 단순화하였으나, 완전한 의미의 단일세는 도입하지 못했다. 또한 2011년 1월1일부로 법인소득세사전납부제(AMIR, Adelanto Mensual del Impuesto sobre la Renta)를 시행하고 있다.

(2) 국세

○ 법인소득세

2011년부터 대부분(약 95%)의 경제활동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적용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25% 단일세가 실현되고 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정부가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여전히 30% 세율이 적용된다. 형식적으로는 세율이 단순화되었음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예외조항 및 허점(loopholes: 농업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부(-)의 조세 등)으로 인해 각 산업분야에 따라 세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법인의 소득 결정시에는 감각 상각이 공제되는데 주요 자산의 감가상각율은 다음과 같다.

- 건물(연 2.5%), 기계설비(연 5~15%), 사무기기·가구(연 7~10%), 도구 및 소규모 장비(연 10~50%)

○ 개인소득세

앞서 언급한 단일세율도입 노력으로 개인소득세는 2010년부터 아래 표와 같이 크게 단순화 되었다(Law 8 of 2010). 연간과세소득이 \$11,000이하인 경우는 조세가 면제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세기준소득(US\$)	세율(%)
0 ~ 11,000	0
11,000 ~ 50,000	15 * \$11,000 초과분에 대해 15% 적용
50,000 이상	25 * \$5,850 기본세금 + \$50,000 초과분에 대해 25% 적용

○ 부가세(ITBMS)

파나마에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국영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판매업체는 부가세 징수 및 납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판매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부가세를 경제재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7%의 부가세가 부과되며, 주류 및 숙박시설(호텔, 모텔, 호스텔 등)은 10%, 궤연 및 담배는 15%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파나마정부는 잇따른 재정개혁(financial reforms) 조치를 통해 기존 부가세가 면제되는 분야를 축소하여, 국내은행 및 금융서비스 수수료, 상업용 부동산 임대, 유·무선전화, 케이블 TV, 자동차 등에 대해 새로이 7%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품목은 면제되는데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및 의약품 판매
- 재화의 수출 또는 재수출
-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 파나마운하관리위원회에 납품하는 경우
- 1990년 법령 7호에 의한 리스계약

판매업체는 자신이 받은 부가세에서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경제재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원래 제품 가격이 고시되고, 동 가격에 부가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특별소비세

주로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케이블 TV, 보석류, 모터사이클, 요트 등에 10%의 특수세를 부과한다.

○ 영업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파나마 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의 재산가치, 즉,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영업세를 Franchis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자본금과 전년도 영업수익으로 증액된 순 자본금 증가액을 합산 하여 1%가 부과되는데, 납세 최고 상한선은 2만 달러이며 최저액은 10달러이다.

○ 교육보험세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1.25%를 교육세로 원천 공제하고 근로자 급여의 1.50%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2.7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영업자는 연간 수입의 2.75%를 납부한다. 동 세금은 소득세 납부 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고용주는 동 금액을 매월 사회보장세와 함께 사회보장부에 납부한다.

○ 재산세

파나마에 있는 3만 달러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경제재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산세는 3만 달러 이하는 면세되며 3만 달러 이상 5만 달러까지는 1.75%, 5만 달러 이상 7만5천 달러 이하는 1.95%, 7만5천 달러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9년부터 시행될 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용 부동산의 경우 12만불까지는 면세, 12만불부터 70만불까지는 0.5%, 70만불 이상은 0.7%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가족용(상업용, 공업용, 두 번째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3만불까지는 면세, 3만불-25만불은 0.6%, 25만불~50만불까지는 0.8%, 50만불 이상은 1%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단, 가족용 부동산을 최초로 구매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3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년간 면세 혜택 부여)

- 부동산 거래세

파나마에서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정부 과세표준 가격 중 큰 금액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과세 표준가격이란 경제재정부 고시가격에 개축한 비용 및 보유연도에 매년 5%의 가치 상승분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면세된다.

- 양도세

파나마의 양도세는 4~33.75%의 누진세로 부과되며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관계 및 양도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파나마에 상속세는 없으며 유산 상속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 물품소비세

의료용 및 재수출용, 향수제조용 등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은 내국세가 부과되며 담배에도 소매가의 50%에 상당하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 인지세

파나마정부 공식문서는 페이지 당 4달러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납부된 문서는 증빙서 및 공증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약속어음, B/L 등 상업용 서류에도 정부의 공식 인증이 필요하다. 인지세는 문건의 표시 가격에 따라 다른데 계약서 및 청구서의 경우 표시 가격 100달러 당 10센트로서 인지를 구입하거나 스탬프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스탬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개월, 3개월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 은행 영업세

국영은행을 제외한 파나마 모든 은행들은 매년 은행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 영업세는 일반 상업은행은 2만5천 달러, 역외금융은행은 1만5천 달러, 환전소는 600달러이다.

○ 보험료세

파나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를 보험료세로 부과하고 있다.

동 2%의 기본 보험료세외에 화재보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 농업 및 가축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5%의 추가 보험료세가 부과된다. 동 보험료세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부과하여 경제재정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지방세

지방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빌딩 개축, 시유지 및 건물 사용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규모 기업부터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파나마의 지방세는 사업의 가치 및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 20~500달러까지 부과되며 자동차 라이선스세는 차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30달러 정도이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제8조 국가로서 무역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 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

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 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및 일부 선진국으로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조세피난처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고, 급기야 2009년 4월 OECD로부터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파나마 정부는 회색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12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나마는 2011년 7월에 프랑스와 12번째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기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012년 IMF가 파나마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4년 6월 파나마를 회색국가군으로 지정하였으나, 파나마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 체계 정비 및 각종 제도 확립 등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16년 2월 FATF의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 무기 지원 방지에 관한 법률(2015)’을 마련해 감시 대상 거래 범위를 기존 금융 부문뿐만 아니라 비금융 부문까지 확대하였으며, ‘무기명 주식 보관법’을 개정(2015)해 파나마에 등록된 법인들이 예탁기관에 무기명 주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최종 수익자 추적을 용이화하고, 의심거래보고 제도를 확립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된다.

2016년 2월 FATF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벗어나면서 파나마가 손쉬운 자금세탁 대상국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2016년 4월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로펌이 50여개국 인사들의 돈세탁과 탈세를 도왔다고 폭로한 세칭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스캔들이 터지면서 파나마의 국가 이미지가 훼손

손되었고 프랑스의 조세피난처 명단에 재등재되는 등 후속 여파를 겪게 되었다.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 이후, 파나마 정부는 실추된 국가 이미 지 회복을 위해 △OECD 공통보고기준(CRS) 2018년부터 이행, △미국 및 일본 등 타국과의 금융계좌정보 교환 협정 체결, △OECD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AC) 가입, △금융서비스 관행 개선 국제독립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보고서 발표, △국제 금융 서비스 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고위급 위원회(CANDSIF) 재출범, △해외에서 영업하는 파나마 법인들의 회계정보 등록 의무화, △세금계산서 전산화 제도 도입 준비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파나마는 OECD 글로벌 포럼 동료심사에서 2016년 11월에는 '미이행(Non-Compliant)' 평가를 받았으나, 2017년 6월 실시된 단계적 신규 평가(fast track)에서는 2단계 개선된 '대체로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나마는 아직까지 프랑스 조세피난처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 마약 및 사법집행국(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의 2016년 주요 돈세탁 국가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유럽연합(EU)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도 등재(2017년 12월)되었다.

주요산업분야 현황

물류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및 수출입화물 운송수단 이용분포

1) 파나마 물류산업의 위상

- 파나마는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공항, 파나마운하 확장, 물류단지, 창고시설, 도로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덕분에 2017년 9월 세계경제

포럼(WEF)이 발표한 2017년~2018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항만 인프라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하였으며, 종합 순위에서는 137개국 중 50위를 차지하며 중남미 지역을 통틀어 칠레(33위), 코스타리카(47위)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 물류분야가 파나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3.3%에서 2015년 33%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컨테이너항들은 국제 상품이동 및 분산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고, 연간 물동량은 2016년 기준 약 627만 TEU에 이르며, 파나마 컨테이너항은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화된 항구이자 지역 최대 물류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 2016년 기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과 태평양에 위치한 발보아항은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집계한 중남미 컨테이너 화물물동량 순위에서 브라질 Santos항구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2) 수출입화물 운송수단별 이용분포

- 2015년 수출입 운송수단별 이용 분포는 주로 해상(64.8%), 육로(26.3%), 항공(8.9%) 순이다.
- (수출) 2015년 파나마의 수출량은 1,064,576톤으로, 이용된 운송수단은 해상, 육로, 항공 순이다.

	해상	육로	항공
이용비율(%)	70.9	19.7	9.4

- (수입) 2015년 파나마의 수입량은 7,854,230톤으로, 이용된 운송수단은 해상, 육로, 항공 순이다.

	해상	육로	항공
이용비율(%)	64.5	26.7	8.9

(2) 해상운송

1) 항구 물동량(파나마운하 통행 포함)

- 파나마항구시스템(Sistema Portuario Nacional)에 속한 항구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항구와 정부가 운영하는 항구로 구분된다.
- 현재 파나마에는 총 41개의 항구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파나마해사청(AMP) 항구해운부수산업국*이 운영하는 22개 항구는 연안운송(Cabotage)을 담당하고, 나머지 19개 항구는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운송을 담당한다.
- * Dirección General de Puertos e Industrias Marítimas Auxiliares
- 파나마 해로를 통한 대외교역의 100%는 민간이 운영하는 항구를 통해 실시되며, 총 물동량을 기준으로 컨테이너선이 60%이상을 차지한다.
- 항구 물동량 중 95%는 해외수출입, 5%는 연안운송이다.
- 2016년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9.1% 감소하였다(TEU 기준).

▶ 2016년 파나마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EUS	4,244,739	5,593,172	6,629,943	6,857,724	6,561,396	6,755,019	6,893,886	6,266,502

▶ 2016년 주요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	항구	물동량(TEUS)
1	발보아항(Balboa, 태평양)	2,831,893
2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IT, 대서양)	1,831,595
3	크리스토폴발항(Cristóbal, 대서양)	793,941
4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CT, 대서양)	632,845
5	파나마 국제 터미널(PSA, 태평양)	157,967

2) 파나마 주요 항구

가. 발보아항(Balboa)

- 미국 서부해안, 중남미 서부해안,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자리 잡은 발보아항은 파나마시 태평양 해안에 위치하며, 철도, Transísmica 고속도로(Panama-Colón), Panamericana 고속도로(코스타리카 국경의 Paso Canoas-콜롬비아 국경의 Darien)와 연결되어 있다.
- 동 터미널은 대서양에 위치한 크리스토팔항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 Hutchison Port Holding(HPH)그룹의 자회사인 Panama Ports Company(PPC)가 2022년*까지 운영한다.
 - * 1997년에 항구 운영권을 받았고 2022년 이후 추가로 25년 갱신 가능
- 총면적은 182,000km²이며, 전체 화물 물동량의 약 30%, 파나마 컨테이너 물동량의 45%를 담당한다.
- 발보아항 근처에서는 선박 수리 조선 단지과 유류 기지, 예선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브라스웰 수리조선소는 파나마스급 선박의 수리가 가능한 드라이 독(Dry Dock)을 갖추고 있다.
- 2016년 수출입화물 가운데 양륙은 59%, 선적은 41%이다.
- 2016년 전체 물동량(톤 기준)의 100%가 수출입이다.

나. 만사니요 국제 터미널(Manzanillo Internacional Terminal, MIT)

- 대서양 파나마운하 입구쪽에 위치하면서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접하는 동 터미널은 본래 해군기지였으며, 현재 세계 최대 해운물류 터미널 기업인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SSA Marine)의 자회사 Carriz와 파나마 금융·통신분야 등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Motta家 및 Heilbron家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미국 동부해안, 중남미, 유럽과 연결로에 있는 동 터미널의 면적은 520,000m²이며, 1995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 동 터미널은 2012년 컨테이너선 부두 건설, 포스트 파나막스급 크레인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3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6년 수출입화물 가운데 양륙은 45%, 선적은 55%이다.
- 2016년 전체 물동량(톤 기준)의 100%가 수출입이다.

다. 콜론 컨테이너 터미널(Colon Container Terminal, CCT)

- 콜론주 대서양 해안에 위치하며, 파나마와 카리브해, 북미, 남미의 동부 해안을 연결한다.
- 총 면적 370,000㎡의 동 터미널은 Evergreen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동 터미널은 컨테이너, 벌크선, 로로선(Roll-on/roll-off)*에 대한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
- *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수송하는 화물선
- 2016년 수출입 화물 가운데 양륙은 58%, 선적은 42%이다.
- 2016년 전체 물동량(톤 기준)의 100%가 수출입이다.

라. 크리스토팔함(Cristóbal)

- 파나마운하의 대서양쪽 입구이자 콜론시 남동쪽 Bahía de Limón에 위치하는 동 항구는 약 150년 전 파나마 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 및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건설되었고 1997년부터는 발보아 항을 운영중인 Panama Ports Company(PP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2016년 수출입 화물 가운데 양륙은 83%, 선적은 42%이다.
- 2016년 전체 물동량(톤 기준)의 100%가 수출입이다.

마. PSA 파나마국제터미널(PSA Panama International Terminal)

-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가 운영하는 동 항구는 태평양 쪽 舊 Rodman 해군기지에 위치하며, 2010년에 가동을 시작(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를 위한 자재 공급)하였고 2012년부터 컨테이너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 2016년 수출입 화물 가운데 양륙은 57.5%, 선적은 42.5%이다.
- 2016년 전체 물동량(톤 기준)의 100%가 수출입이다.

(3) 육로운송

- 파나마 공공사업부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도로인프라의 총 연장은 15,667km이며,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판 아메리카(Pan American) 고속도로가 콜롬비아 무장반군 준동지역인 국경밀림지역에서 끊어져 있어 육로 운송은 주로 코스타리카 이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 Panamericana : Paso Canoa(코스타리카 국경)-Darien(콜롬비아 국경)
- Carretera Central : Divisa-Pedasi
- Transistmica : Panama-Colòn
- Corredor Sur
- Corredor Norte
- (수출) 2014년 육로를 통한 총 수출량은 131,985톤이며, 수출된 주요제품은 팜유 등 원유, 바나나, 멜론종자 등 종자, 화학비료(질소, 인, 칼륨), 파인애플이며 동 기간 주요 수출국은 코스타리카(33%), 니카라과(8%), 미국(7%), 과테말라, 페루, 엘살바도르(3%)이다.
- (수입) 2014년 육로를 통한 총 수입량은 2,795,073톤이며, 육로를 통해 수입된 주요제품은 경유, 제트연료유, 부탄가스, 옥탄가 87~91

가솔린, 옥탄가 91 초과 가솔린이며, 주요 수입국은 코스타리카(16.8%), 미국(9.5%), 콜론자유무역지대(3.5%), 엘살바도르(1.8%)이다.

(4) 항공운송

1) 수출 및 수입

- (수출) 2014년 항공운송을 통한 수출량은 18,152톤이며, 1위는 연어류 등 생선(간, 알 제외)이며 다음은 대구과, 가자미과, 송어류 순이다. 동 기간 파나마 주요 수출국은 미국(89.7%), 과테말라(2.3%), 인도(1.7%), 콜롬비아(1.2%), 푸에르토리코(0.75%)이다.
- (수입) 2014년 항공운송을 통한 수입량은 25,786톤이며, 수입품 상위 5가지 품목은 의약품, 폐유, 향수 및 화장품, 기계부품, 잡지 및 일간지이며, 주요수입국은 미국(33%), 콜롬비아(19%), 멕시코(10%), 과테말라, 스페인(4%)이다.
- (토쿠멘국제공항) 동 공항은 파나마의 항공운송을 통한 교역의 100%를 담당하며, 화물전용터미널(720헥타르)을 갖추고 있다.

2) 항공산업 현황

가. 항공산업 규모 : 2017년 기준 파나마 GDP의 14.8%(73억 달러)를 차지한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017년 5월자 통계

나. 공항 현황 : 총 55개(국제공항 5개)

- 국제공항 : 파나마시 3개(토쿠멘, 알브룩, 하워드), 보까스 델 토로주 1개, 치리끼주 1개이다.
- 토쿠멘(Tocumen) 공항이 가장 대표적 국제공항이며, COPA항공사의 허브 공항이다. 신규 남쪽 터미널 공사가 2017년 9월 기준 75% 완성되었으며, 2018년 9월에 운영이 개시될 예정이다.

다. 국제운송 화물·여객 통계

- Tocumen 공항 이용 여객수
 - 연도별(2016년) : 1,474만명
 - 지역별(2016년) : 남미(43%), 북미(28%), 카리브(12%), 중미(12%), 유럽(5%)
 - 항공사별(2016년) : COPA(70.6%), Aero Republica (COPA 항공 콜롬비아)(12.5%), United Airlines(2.9%), American Airlines(2.1%), KLM(1.7%), Lufthansa(1.1%), Air France (1.1%) 등
- Tocumen 공항 화물운송 통계
 - 연도별 : 110,364톤(2016년), 94,721톤(2015년) 110,790톤(2014년), 110,186톤(2013년)
 - 지역별(2016년) : 남미(34.5%), 북미(27.97%), 중미(19.84%), 유럽(14.14%), 카리브(3.55%)
 - 국가별(2016년) : 미국(26.24%), 콜롬비아(18.06%), 코스타리카(10.65%), 베네수엘라(9.17%), 네덜란드(5.48%), 과테말라(5.42%), 에콰도르(5.11%), 스페인(3.62%) 등

라. Tocumen 공항 및 COPA 항공의 연결성

- Tocumen 공항의 연결성 : 직항 연결 83곳
- 취항 항공사 : COPA, United, Delta, KLM, Air France, Lufthansa 등 28개
- COPA 직항 도시 : 미주 31개국 77개 도시
(COPA 항공 자회사인 COPA AIRLINES COLOMBIA社の 운항 노선 포함)

지역		취항 도시
북미	캐나다	Toronto, Montreal
	미국	Boston, Chicago, Denver, Fort Lauderdale, Las Vegas, Los Angeles, Miami, New Orleans, New York, Orlando, San Francisco, Tampa, Washington
중미	멕시코	México City, Cancún, Guadalajara, Monterrey
	과테말라	Guatemala
	코스타리카	Liberia, San José
	니카라과	Managua
	온두라스	San Pedro Sula, Tegucigalpa
	엘살바도르	San Salvador
	벨리스	Belice
카리브	아루바	Oranjestad
	바하마	Nassau
	쿠바	Cayo Santa Maria
	아이티	Puerto Principe
	자메이카	Kingston, Montego Bay
	푸에르토리코	San Juan
	도미니카공화국	Punta Cana, Santiago de los Caballeros, Santo Domingo
	생마르탱	Philipsburg
	트리니다드토바고	Puerto España
남미	퀴라소	Willemstad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Córdoba, Mendoza, Rosario
	볼리비아	Santa Cruz de la Sierra
	브라질	Belo horizonte, Brasília, Manaus, Porto Alegre, Recife, Rio de Janeiro, São Paulo
	칠레	Santiago de Chile
	콜롬비아	Barranquilla, Bogotá, Bucaramanga, Cali, Cartagena, Medellín, Pereira, San Andrés
	에콰도르	Quito, Guayaquil
	가이아나	Georgetown
	파라과이	Asunción
	페루	Arequipa, Chiclayo, Lima
	우루과이	Montevideo
	베네수엘라	Caracas, Maracaibo, Valencia

(5) 파나마운하

1) 운하 통행 물동량

- 2017년 회계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 총 13,548대의 선박이 파나마 운하(확장 운하 포함)를 통항해 총 4억 3,831만톤의 물동량 운송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통행 선박은 컨테이너선(1.43억톤), LPG/LNG선(1.05억톤), 벌크선(0.79억톤), 자동차운반선(0.47억톤) 순이다.
-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2016년 6월)으로 네오파나마스급 선박 및 LNG선의 통항이 가능하게 된바, 확장 운하 개통 이후 2017년 9월까지 운하를 통과한 네오파나마스급 선박이 2,000척을 돌파하였다.
- 2016년 10월~2017년 9월간 확장 운하를 통과한 네오파나마스급 선박(1,829척) 중 컨테이너선은 594척(52%), LPG선은 539척(30%), LNG선은 159척(9%)으로 컨테이너선이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 파나마운하를 통한 주요 통행루트는 미국 동부해안-아시아(34%)로서 미국에서 아시아로 주로 이동하는 상품은 옥수수, 콩 등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상품은 철, 페트로리움 코크(Petroleum Coke)*이다.

*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최종 부산물

2) 운하의 운항요금 및 운하 수입

- 2016년 4월부터 새로운 운하 요금제가 도입되어,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화학물 운반선, LP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Ro-Ro선), 여객선, 냉장선에 따라 요금 부과 기준이 각기 상이하다(예: 최대 적재 용량이 10,000TEU인 컨테이너선의 운하 통행료는 사용률 80%기준 약 78만 달러).
- 한편, 2017년 10월부터 네오파나마스급 컨테이너선 및 가스선(LPG선, LNG선)에 대한 신규 특별 요금제가 시행되어, 네오파나마스급 컨테이너선이 북쪽 방향(태평양->대서양)으로 운하를 통과한 후 28일 내

다시 귀한 통항을 하는 경우 일정 선박 활용률(70%)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별 요금을 적용하고, LPG선과 LNG선의 적재 용량이 각각 2%, 10% 인 경우에는 공선 요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규 특별 요금제 시행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파나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20여일 더 소요)를 선택하는 선박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 1999년 12월 31일 운하반환 이후 운하 수입은 2001년 5.8억 달러에서 2015년 9월 26억 달러로 약 5배 증가 하였으며, 2016년에는 확장 운하 개통(6월 26일)이 계획보다 3개월여 지연됨으로 인해 통행료 수입이 당초 목표치보다 적은 19억 3,31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22억 3,800만불로 증가하였다.
- 운하청의 2015회계년도(2014년 10월 ~2015년 9월) 국고 귀속액은 10억 달러(GDP의 2%)를 기록하였으며 2016 회계년도(2015년 10월 ~2016년 9월)에는 10억 1,310만 달러(GDP의 1.8%)를 기록했고, 운하청은 2017년 회계년도(2016년 10월 ~2017년 9월)에는 확장 운하의 본격적 운영을 통해 운하 통행료의 국고 기여액을 16.6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확장 운하 개통 및 향후 전망

- 2007년 9월 개시되어 당초 운하 개통 100주년인 2014년 준공 예정이었던 확장 운하는 초과 공사비 분쟁 및 기술적 결함(균열·누수 현상) 보수로 인해 개통시기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2016년 6월 26일 확장 개통식이 개최되었다.
- 길이 423m, 폭 55m, 깊이 18.3m의 제3갑문이 새로 가동되면서 선박 적재화물 규모가 약 3배 증가(4,400TEU→14,000TEU) 하였고, 이로 인한 운송비(연료비) 절감 효과 및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LNG 수송선 포함) 통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 2016년 6월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으로 인해 네오파나막스급 선박과 LNG선의 통항이 개시됨으로써 파나마운하의 통항료 수입, 화물 물

동량, 통항 선박수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바, 글로벌 교역량의 증가 및 2017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컨테이너선·가스선에 대한 신규 통항 요금제 덕분에 상기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운하청(ACP)은 2018년 회계년도(2017년 10월 ~2018년 9월)에는 13,000척 이상의 선박(네오파나막스급 선박 2,335척 포함)이 통과하면서 통항료 수입이 23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전력 판매와 식수 판매로 각각 9,560만불과 3,550만불의 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경제재정부는 확장 운하가 파나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와 2017년 국고 기여율 45% 증가, 향후 10년간 물류 부문 투자액 40% 증가 및 2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은 확장 운하 개통으로 인해 △對미주 철강 수출, △對미국 곡물 수입, △對중남미 원자재 수입 등에서 상품 단가 하락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되며, 이를 통한 교역량 증가로 인해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3위 환적항인 부산항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특수경제구역

- 파나마는 다양한 사업 활동 장려 및 국제교역, 제조생산, 서비스업 발달을 위해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세제, 이민, 근로상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특수 구역을 설치하였다.
- 콜론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ón)는 파나마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대서양쪽에 위치하여 아시아, 유럽, 북중남미, 카리브에서 운송되어 온 상품을 대량으로 관세 없이 재유통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동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주로 의약품, 섬유, 제조품, 기계, 전자기기 등이 취급된다. 자유무역지대 규모로서는 세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연 평균 2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과 연간 약 25만명의 인구가 왕래한다.

- 1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ífico)은 태평양 쪽 舊 미군기지에 위치하고, 첨단기술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업 유치에 특화되어있으며 동 지역 내에 친환경 주거단지도 마련되어 있다.

금융

(1) 파나마 금융시장의 특징

- 파나마는 제조업 부문이 매우 취약하나, 서비스업은 GDP의 80%를 차지할 만큼 발달되어 있으며, 금융업은 물류·창고업 등과 함께 파나마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서 금융 분야는 2016년 GDP의 7.9%를 차지한다.
 - 2017년 6월 기준 파나마에는 총 88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고 총 자산은 약 1,188억 달러에 이르며, 중앙은행이 없어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 금융자원이 관리된다.
 - 파나마 은행들은 수출입·기업 금융, 은행간 거래에 특화 되어 있으며, 은행 자산의 72%가 미주·카리브, 유럽, 아시아계 외국 은행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
 - 파나마에서는 파나마운하, 세계 2위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거래가 활발하며, 특히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설립법 발효 후 많은 다국적기업 기업 본사가 파나마에 진출*하여 은행분야는 계속 성장할 분야로 전망된다.
-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설립에 관한 법률 제41호(2007년 8월 24일 제정)는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교육세 등 각종 납세의무 면제 및 SEM 체류비자 제공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며, 동 법이 적용된 2007년부터 2017년 8월 22일까지 총137개의 다국적기업(SEM)이 파나마에 진출

- 파나마는 1904년부터 달러화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국제 달러화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 파나마 금융분야는 외국에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유연한 조세체계*, 고객의 기밀 유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을 장점으로 하여 해마다 성장해 나가고 있다.
 - * 파나마에서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파나마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나마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나, 파나마의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음.
- 2012년 IMF가 파나마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2014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파나마를 회색국가군으로 지정하였으나,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 무기 지원 방지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 △‘무기명 주식 보관법’ 개정(2015년), △의심 거래보고 제도 확립 등의 노력 덕분에 2016년 2월 FATF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 하지만, 2016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2016년 4월 파나마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로펌이 50여개국 인사들의 돈세탁 및 탈세를 도왔다고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위기를 맞았으나, △OECD 공통보고기준(CRS) 2018년부터 이행, △미국 및 일본 등 타국과의 금융계좌정보 교환 협정 체결, △OECD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AC) 서명, △금융서비스 관행 개선 국제독립전문가위원회 구성, △국제 금융 서비스 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고위급 위원회(CANDSIF) 재출범 등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을 도모하였다.
- 그 결과, 파나마는 OECD 글로벌 포럼 동료심사에서 2016년 11월에는 ‘미이행(Non-Compliant)’ 평가를 받았으나 2017년 6월 실시된 단기적 신규 평가(fast track)에서는 2단계 개선된 ‘대체로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을 부여받는 등 긍정적 결과를 얻기도 했지만,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 마약 및 사법집행국(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의 주요 돈세탁 국가 명단(2016년) 및 △프랑스 조세피난처 명단에 아직도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2) 은행업 라이선스 및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

- 파나마에는 은행업 관련 3가지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 일반 라이선스(Licencia General)는 파나마 국내 및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국내외 은행에 부여되고, 국제 라이선스(Licencia Internacional)는 오직 외국에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 부여되며, 대표 라이선스(Licencia de representación)는 외국은행이 실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파나마에 대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 현재 파나마에는 공식 은행 2개(국립은행, 저축기금), 일반 라이선스 은행 45개, 국제 라이선스 은행 27개, 대표 라이선스 은행 13개가 영업중이다.

지역	은행 수
북미	6
카리브	7
파나마	21
중남미	36
유럽	12
아시아·중동	3

- 파나마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KEB 하나은행(일반 라이선스 보유)을 비롯하여 Banistmo*, 시티 은행, BBVA, Scotiabank 등이 진출하여 영업중이다.

* 2013년 콜롬비아 Bancolombia은행이 HSBC 파나마 지점을 인수

- 상기 라이선스를 지니고 파나마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행을 가리켜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entro Bancario Internacional, CBI)*라고 통칭한다.

* 파나마국제은행센터(CBI)란 은행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아니라, ‘파나마 은행업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나마의 국영·민간 은행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단체는 파나마은행협회(Asociación Bancaria de Panamá)

※ 한편, 파나마에서는 각종 은행 관련 통계에서 국가은행시스템(Sistema Bancario Nacional, SB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 라이선스 은행(48개)과 파나마 국립은행인 파나마은행(Banco Nacional de Panamá, 중앙은행은 아님)과 저축 기금(Caja de Ahorros) 및 중남미 수출입은행(BLADEX)이 포함된 개념

- 파나마 국제은행센터(CBI)는 1970년 은행법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이를 규제하는 기관으로 국가은행위원회(Comisión Bancario Nacional)가 설립되었으며, 동 기관은 1998년 현재의 은행감독청(Superintendencia de Bancos)이 되어 파나마 은행을 규율한다.

통신

(1) 파나마 ICT(정보통신기술)시장 개황

▶ 파나마 ICT시장 통계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이동통신 가입자	6,213,564	6,204,636	6,906,090	6,717,252	6,977,701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164.1	161.1	176.5	169.0	172.8
유선라인가입자	569,880	577,028	600,722	630,029	641,688
100명당 유선라인 가입자	15.1	15.0	15.4	15.8	15.9
광대역통신망 가입자	301,361	313,891	315,224	350,000	350,000

자료원 :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

(2) 파나마 통신시장 약사

- 파나마에서 통신서비스가 민영화된 시점은 1997년으로, 영국 Cable & Wireless(CWP)사가 당시 파나마 국영통신공사(INTEL)로부터 유선통신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 ※ 파나마 정부는 49%의 주식을 경매입찰을 통해 매각하였고 CWP사*가 652백만 달러에 낙찰
- * CWP사 지분보유 현황 : 정부 49%, CW 49%, 우리사주 2%
- CWP가 1998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3년까지 유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 보유하였다.
- 미국의 Bellsouth사가 1996년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고, 2004년 스페인 Telefonica(Movistar)에 매각되었다.
- 2009년 자메이카의 Digicel(아일랜드계 기업)과 멕시코의 America Movil(Claro)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였다. (20년의 영업허가 취득)

(3)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 현황

-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통계상 보급률이 100%를 넘는 수준이지만, 사용자 1명이 복수의 번호를 (2~3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활동(inactive) 가입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 인구 및 지역별 보급률은 2016년 각각 95.75%와 37.71%를 기록 했다.
- 사전 지불(Prepaid) 전화 사용자와 사후 지불(Postpaid) 전화 사용자 비율은 약 9 대 1로 사전 지불 방식의 가입자 수가 절대적이다.
- 2011년 번호이동제*가 도입된 이후로 CWP사는 큰 타격을 입었다.
 - * 번호이동제(Mobile number portability, MNP)를 통해 소비자들은 같은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통신사 변경 가능
- 2016년 파나마 이동통신 시장의 총 수입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1억 2천만 달러이다.

(4) 브로드밴드(Broadband) 인터넷 분야

- 파나마 정부혁신청(AIG)은 '2013년~2022년 국가 광대역 인터넷 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현재 100명당 8명에서 47명, 인터넷 이용자 수는 현재 100명당 41명에서 8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에 따르면, 파나마 인터넷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12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 인터넷 접속방식은 CABLE MODEM(59.2% 비중, Cable Onda사 서비스 제공), ADSL(33.5% 비중, CWP사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2016년 파나마 브로드밴드 인터넷 시장의 총 수입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1억 4천만 달러이다.

▶ 파나마 인터넷 이용자 통계

(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이용자	1,522,353	1,583,834	1,649,811	1,656,817	2,007,965	2,033,063
100명당 이용자	40.9	41.8	42.8	42.3	50.5	50.4
케이블 모뎀	138,887	154,439	166,273	168,983	226,171	228,995
ADSL	124,548	118,585	118,602	125,860	127,833	129,429

자료원 :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

파라과이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으로 남미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 산업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 파라과이 수출의 약 절반 정도가 인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2016년 주요 수출대상국은 브라질(총수출 중 35.4%), 아르헨티나(10.0%), 칠레(6.1%)로 나타남.

파라과이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1차 산업(농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제조업 기반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작은 내수시장, 제조업 기반 미비, 숙련된 인적자원 부족 등은 산업발전 및 외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파라과이 정부는 비옥하고 저렴한 토지, 자연재해 없는 온화한 기후환경, 저렴하고 풍부한 인력과 전기공급 능력, 인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낮은 법인세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중이다.

파라과이는 최근 중남미 지역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3~4%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유지 및 조세제도 개선 정책에 따라 재정적자나 외환보유고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파라과이 정부는 '재정책임법'을 통해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정부부채는 23.1% 수준으로 중남미 지역내 최저 규모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2017년 기준 파라과이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8.4% 수준으로, 전체 상품 10,226개(HS 8단위 기준)에 대해 0~30%의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관세 적용은 주로 신발류(18.6%), 섬유류(16.8%), 무기류(20%)에 집중되어 있다.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상호 민감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역내 수입 대부분에 무관세 특혜를 적용하고 있으며, MERCOSUR를 통해 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 인도, 쿠바, 이스라엘, 멕시코,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회원국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회원국으로서 상대 회원국의 경제개발 수준에 따라 차등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MERCOSUR 역외지역 일반 수입대상국에 대해서는 대외공통관세(AEC, Arancel Externo Común)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품목 중 26%를 예외로 설정하고 대부분 AEC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2017년 기준 파라과이 평균 실행관세율(8.4%)은 AEC(11.5%)보다 약 3% 낮은 수준이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 따른 관세율 이외, CIF 기준으로 세관감정세(Servicio de Valoración Aduanera), INDI(국립토착민기구 보조세), 통관서류 영사 확인 수수료(Arancel Consular) 등이 수입부과금명목으로 부과된다.

더불어 국산품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를 부과하며, 음료, 원유, 담배, 생수, 향수 등 특정 품목

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를 부과하고 있다.

※ 주요 상품 특소세율

- 담배 16%, 위스키 12%, 휘발유 24~38%, 디젤유 18%,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상품 1% 등

통관절차상의 장벽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 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관세사를 통해서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선적서류가 필요하며, 전선, 기저귀 등 일부 특정 품목의 경우 품질증명서 또한 요구된다.

통관절차 및 안내 및 문의는 관세청(DNA, www.aduana.gov.py)을 통해 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조치

파라과이는 2016년 3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리스크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AEO 프로그램 이행, 특송절차 도입, 통관서류 디지털화 등을 통해 통관행정의 투명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진행 중이다.

2017년 WTO 무역정책검토에서는 최근 무역원활화 조치 이외에도, 수입자등록, 수입허가 등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수입규제

파라과이는 산업기반이 미미하여 기본적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내·외국인 공히 수출입업자로 등록하면 법인이나 개인 자격으로 자유로이 수입활동이 가능하다.

국가안보, 공공질서, 보건, 동식물위생, 공중도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 수입금지 대상품목 : 아프리카별, 중고 의류 및 신발류, 살아있는 조류 및 그 부산물, 유기염소농약, 마약원료물질(메틸-, 에틸-파라티온, 트리폴리인산나트륨 등), 독성산업폐기물, 10년 이상 중고차, 돼지질병치료의약품(카바독스) 등

상기 규제품목들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 등의 수량제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트,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의류, 신발류, 산동물, 쇠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사전 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위생검역, 환경, 국가안보 등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소관 정부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휴대전화기 및 부속품 관련, 불법복제품 및 병행 수입으로 유통되는 비인증제품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산업통상부(MIC)는 2017년 2월 휴대전화 및 부품 수입자 등록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는 사전수입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는다는 통상 약 10여일이 소요되나, 보건, 위생검역 등 소관당국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1개월 가량 소요될 수도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으며 WTO 등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원산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상대 회원국들에게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 MERCOSUR 원산 품목으로 인정받으려면 역내산 비율 60% 충족 필요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 관련 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파라과이는 단 3건의 반덤핑 절차만을 개시하였으며,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는 전무하다.

※ 파라과이는 1999년 아르헨티나산 살충제, 2004년 브라질산 시멘트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2016년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대한 반덤핑 절차를 개시해 2017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술장벽과 위생검역

파라과이는 산업통상부(MIC) 산하 기관인 국립정보통보시스템(SNIN, Sistema Nacional de Información y Notificación) 관보와 홈페이지(www.snin.gov.py)를 통해 모든 기술 규정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 국립정보통보시스템(SNIN)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종자, 면, 화학제품, 서비스공급자, 식품, 육류, 자동차, 신발, 연료, 철강, 대두, 케이블 등에 대해 총 73개의 신규 및 개정규정을 WTO에 통보했다.

파라과이가 채택한 기술규정 중 상당수는 MERCOSUR 공동시장그룹(GMC) 결의안으로 채택된 역내 규정이다.

기술표준과 적합성 평가

파라과이는 기술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표준원(INTN,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전반적인 인증제도를 관리한다.

라벨링

파라과이 산업통상부가 상표, 특허 등 제반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내외 상품에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상품정보 표기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와이어, 포장식품, 설탕, 철강 봉제품, 시멘트, 신발, 섬유, 가정위생용품, 백열등·형광등, 장난감, 운할제 등 특정제품에는 별도의 라벨링 요건이 적용된다.

위생검역

동물검역청(SENACSA), 식물종자품질관리청(SENAVE), 농축산부(MAG)가 위생검역 관련 절차를 관리한다.

위생검역 관련 파라과이의 주요 법령으로는 농업보호 및 식물 위생검역법(법령 627/24), 보건법(법령 836/80), 식물위생 기준 도입(법령 123/91), 종자 보호 및 재배에 관한 규정(법령 385/94) 등이 있다.

환경 관련 규제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재조림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환경청(SEAM)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293/93).

품목별 장벽

파라과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은 자동차 및 부품, IT 및 가전 제품,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료기기 등 공업상품으로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여타 국가 수입품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 경제대국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산 공업상품들이 남미공동 시장 회원국 간 통상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파라과이 시장에 수입되고 있고, 특히 중국산 상품들이 저가공세로 파라과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파라과이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어 의료기기, IT상품 등 첨단제품 및 자동차, 건설장비 등의 수출전망은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라과이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지향형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를 통해 투자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파라과이 정부가 투자사업 형태에 따라, 60/90호 수출진흥법, 마킬라 보세가공무역법(Ley de Maquila), 자유 무역지대(Zona Franca) 제도 등을 통해 부여하는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라과이는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2017년 WTO 무역정책 검토는 파라과이가 정부조달 절차의 유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생산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조달을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파라과이 정부조달절차상 국내 재화 및 서비스 최소 비중은 20%로 설정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조달시장 관련 일반적 특징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 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ú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 조달청은 공공계약통합시스템(SICP, Sistema Intergrado de Contrataciones Públicas)을 운영(www.contrataciones.gov.py) 하여 모든 입찰 정보는 해당기관 및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등재를 의무화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공개토록 의무화
- 입찰 발주 기관과 참가자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조달청에서 관여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조달 계약 방식은 국내·국제공개입찰(Licitación Pública Nacional e Internacional, 최저임금 일급 10,000배 이상 금액), 가격경쟁입찰(Licitación por Concurso de Ofertas, 최저임금 일급 2,000~10,000배 이상 금액), 수의계약(Contratación Directa, 최저임금 일급 2,000배 이하 금액) 방식 등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정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근에는 도로 정비 등 인프라 사업 위주).

파라과이는 우리 EDCF 차관과 같이 ‘구속성(tied up)’이 있는 차관 공여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은 편이며, 해외 차관으로 시행되는 모든 정부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여·야 정치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파라과이 내에서 가장 많은 국제입찰사업을 발주하는 건설교통부(MOPC) 및 국영전력공사(ANDE)는 각기 최근 추진 중인 신규 도로망 구축사업, 송·배전망 확충 사업 등을 가급적 PPP나 Project Financing 형태로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

외국인업체 입찰 참여제한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정도의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현지 대리점 또는 법인을 통해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파라과이 정부조달 시장 진출시 참고사항

국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찰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안내 자료도 모두 스페인어로만 작성되어 있어 언어장벽으로 인해 우리 업체들의 입찰 참가에 애로사항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입찰 서류제출상의 사소한 오류(서류제출 양식, 서류작성 양식 등)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자격미달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 KOTRA 등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과이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분야 정보수집, 향후 하도급 업체 협력체계 마련 등을 위해서는 현지 우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파라과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및 WIPO 주관하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베른협약, 파리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등) 비준국가이다.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관련 정책이행 및 규정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지식재산청(DINAPI)에서 관장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단속 업무는 검찰청 지식재산권 담당 특별검사 및 통상산업부 산하 지식재산권 단속 특별부서(Unidad Tecnica Especializada)에서 담당

파라과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련 법 제도(상표권 관련법령 1294/98, 특허권 관련법령 1630/00, 산업도안 및 모델 868/81, 저작권 1328/98, 지리적 표시 4923/13)를 정비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전히 저가의 복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법적·행정적 규제력도 약해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타국으로부터 수입된 불법 복제물이 파라과이로 수입되었다가 주변국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많다.

- 파라과이 Ciudad del Este는 불법 복제품을 주변국으로 유통시키고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전자제품, CDs/DVDs, 의류, 명품 약세서리, 신발 등을 수입해오거나 현지에서 제조하여 주변국으로 재수출

※ 일례로 휴대전화기 불법복제품 및 비인증제품의 유통이 지속 이슈화됨에 따라 파라과이 검찰청은 2016년 4월 주요 언론과 외교단을 초청하여 복제품 파쇄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2017.2월 휴대전화 및 부속품 수입자 등록과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인증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

미국 USTR은 과거 파라과이를 불법복제 우선관리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1988년 및 1998년에는 파라과이-미국 간에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6월부터 파라과이는 미국의 통상법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

서비스 장벽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운송분야의 경우, 남미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내륙수로(주로 파라과이강, 파라나강) 운송의 중요성이 크며, 파라과이 국적선에 운항

우선권이 있다. 외국 국적선이 파라과이 내륙수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파라과이 국적 도선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 통신회사(COPACO)가 독점하고 있으나 무선통신분야는 완전 개방(내국인 참여지분을 50% 요구)되어 있다.

※ 이동통신의 경우, Tigo(Millicom International Cellular 의 자회사), Personal (Telecom Argentina사와 ABC Paraguay 합작), Vox(파라과이 국영통신사 COPACO 산하), Claro사(America Movil의 자회사) 4개사가 서비스를 제공중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는 없다.

- 여타 전문 직종은 아순시온 국립대학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도록 요구
- 교육 분야는 외국인도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장을 맡는데 문제가 없으나 단, 파라과이의 국립학교장의 경우 파라과이인으로 제한

파라과이 정부는 국가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근 전력송전망, 주요 고속도로 및 아순시온 공항 운영사업을 BOT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송전망 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한다는 입장이다.

투자환경

내·외국인 투자자 등등 대우 원칙

파라과이는 내·외국인 투자(광산, 농·목축업, 통신, 전력 등)에 대해 매우 개방되어 있어 형식적인 제한은 없으며,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법령 117/91에 의거)를 보장하고 있다.

- 외국인도 자연인(Persona Física) 또는 법인(Persona Juridica) 명의로 특별한 제한 없이 투자 가능
- 단, 부동산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으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의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인들에 한하여, 자국과 인접한 국경지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

각종 세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및 경제 개방 지향

파라과이는 소위 ‘10/10/10 정책’을 통해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10%로 설정하고 있어, 여타 중남미국가들에 비해 조세부담이 매우 낮은 편이다.

- 조세부담율은 14.5%(브라질 29%, 아르헨티나 21%)
- 법인세율은 10%(브라질 25%, 칠레 17%)
- 부가가치세 10%(브라질 최고 20%, 아르헨티나 21%, 칠레 19%)

2004년 최초 제정되었으나 이후 의회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었던 개인소득세는 납세대상 및 부과세율(8~10%)에 대한 승인을 거쳐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개인소득세 납세 대상은 2016년 기준 연간 131백만 과라니(약 24,000달러 상당)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이며 2017년 현재 약 53,867명이 납세대상이다. 파라과이 정부는 2013년부터 동 소득세 납세 기준 상향선을 점진적으로 낮춰 나감으로써 조세 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호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공

국내생산 증진 및 고용촉진을 위해 1990년 도입된 투자진흥법(법령 60/90)에 의한 내·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회사설립 및

등록비, 회사채 발행 및 양도 시 소요되는 각종 제세를 면제해주며, 투자 계획서 상에 포함된 자본재, 중간재 등 원자재 수입 시에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5백만달러 이상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 및 이익금에 대한 해외 송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2015년 도입된 투자보호법(법령 5542/15)은 자본금 및 수익의 본국 송금을 보장하고, 특히 산업 프로젝트로 1억달러 이상 투자시 최고 20년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미국 Heritage Foundation 2017 세계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전세계 180개국 중 80위(중남미 29개국 중 14위)로 '다소 자유롭다(moderately free)'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중남미 주요국 2017 세계경제자유지수 : 칠레(10위), 우루과이(38위), 파라과이(80위), 브라질(140위), 아르헨티나(156위), 베네수엘라(179위)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파라과이는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나 마킬라 제도와 같은 특별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Ciudad del Este에 Zona Franca Global del Paraguay, Zona Franca Internacional 2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기업들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3국으로 수출시 소득의 0.5%에 해당하는 단일세(IZF, Impuesto Zona Franca)만을 부과된다. 반면, 국내 판매시에는 매출소득의 최대 10% 세금이 부과되고, 생산에 사용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세금도 부과된다.

내륙 국가인 파라과이는 주변국 해안 항구에 자유무역지대와 물류보관창고를 갖고 있어 물품 입고, 보관, 매각, 환적 등이 가능하다.

- 아르헨티나(Buenos Aires, Rosario), 브라질(Paranagua, Santos, Rio Grande do Sul), 칠레(Antofagasta, Mejillones), 우루과이(Montevidio, Nueva Palmira)에 자유무역지대 및 물류보관창고를 운영

- 최근 대만정부와 상호 물류보관창고 개설에 합의

보세가공무역제도인 ‘마길라 제도(Régimen de Maquila, 법령 1064/97)’는 1997년 제정된 이후 2001년부터 동 제도를 활용한 제품 생산이 본격 개시되었다.

마길라 제도는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자재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수출시 전체 매출액의 1% 상당액만 징수하는 수출 촉진·장려제도이다. 사업규모, 투자자의 국적, 유효기간, 투자지역,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나,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며, 현지 법적 대리인은 파라과이 국적 또는 영주권자여야 가능하다.

마길라 제도 시행 초기 이를 활용하는 업체는 40~50여개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15개까지 증가해 10,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해당 수출은 3.1억불까지 급증하였다.

※ 최근 5년간 마길라 제도 활용 수출 추이

2012년 150백만불 → 2013년 159백만불 → 2014년 251백만불 → 2015년 285백만불 → 2016년 314백만불

마길라 제도를 활용한 주요 생산 품목은 자동차 부품, 의류 및 신발, 플라스틱 제품 등이며, 주로 MERCOSUR(남미공동시장)로 수출되며,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프랑스 등지로도 일부 수출된다.

또한, 파라과이는 자동차, 트랙터, 기타 육상 운송기구 조립 및 부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조립제도(Régimen Automotor Nacional)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원자재에는 면세 조치(CIF 기준 5,000달러 이상)를 취하고 있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법제 정비

2013년 프로젝트 파이낸싱법(PF)을 개정하고 민관합작투자법(PPP)을 제

정해 정부 재원 부족시 외국인 민간투자를 통해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다.

다만, 해외 차관으로 진행되는 정부 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나 신규 제도에 대한 행정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상의 제한, 세제상 제한

파라과이는 금융 및 환율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실 송금관련, 송금 및 재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없다.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

파라과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경우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에 한하여 외환구좌를 개설해주며, 1만 달러 이상을 예탁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국 및 제 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역시 특별한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단, 본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할 시에는 다소 고율의 세금 부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데는 시중 이자율이 높고 은행권이 대체로 단기 대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전무하나, 파라과이 정부는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일정기간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운영중이다.

국산화 의무 부가 및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라과이는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며, 파라과이산 완제품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아 여타 MERCOSUR 회원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도록 60:40 역내산 비율을 충족시키길 권장하고 있다.

법인·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행정절차도 간소하며 투자 대비 특정인원의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도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 없으면 주주는 될 수 있으나 경영진이 될 수는 없으며, 대표이사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을 이용하여 모든 수속을 한곳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자세 사항은 후반부 창업절차통합시스템 내용 참고).

일부 서류는 우리 정부의 확인(아포스티유)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설립 설립 시 창업절차통합시스템(SUAE) 운영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는 투자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형태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적인 구비조건만 갖추면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 법인·지사·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 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 이용 가능

단, 현지에 연고(영주권 소지 등)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를 주주로 영입해야 한다. 설립절차 및 비용은 법인의 형태, 설립자본 규모 등에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반 절차는 간소한 편이다.

특히, 파라과이 정부는 사업자등록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법인등록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창업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s, SUAE)' 제도를 마련,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바, 비자 업무, 세금 납부 등을 포함하여 단시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동 제도를 활용하면, 법인설립부터 회사개업까지 보통 3달이 걸리던 소요시간을 15일로 단축 가능
- 동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해당 웹사이트(www.suace.gov.py)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증인을 통해 설립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사정관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해당 법률기관에 법인등록절차를 밟는다. 해당 법률기관으로부터 정관이 승인되면, 대법원 산하 문서등록청(Dirección General de Registro Público)에 동 정관을 등록함으로써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 정관 작성부터 법인설립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2달이며, 공증인 수입료(설립자본에 따라 0.75~2%를 지불토록 법으로 규정) 및 법인등록 관련 일련의 소액 세금만 지불

법인설립 완료 후 사업 활동 개시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무부와 법인 소재지 관할시청에 사업자 등록증(Patente Comercial)을 신청해야 한다.

- 현지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파라과이 내 소재지가 있어야 함.

그러나 투자자가 각 부처를 직접 상대해야하는 경우 발생시, 행정서비스망 낙후 및 관료주의로 인해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고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편이다.

- 파라과이는 UN 부패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국이나, OECD 뇌물수수금지협약(Covention on Combating Bribery)에는 미 가입

외국인 투자 동향 (2015년)

세계은행(World Bank)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의 대파라과이 투자는 315백만 달러로 전년 459백만 달러에서 144백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 브라질, 스페인, 파나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금융중개업, 식물성유지 및 육류 생산, 상업, 운송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파라과이는 아래 국가들과 양자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1969), 오스트리아(2000), 벨기에, 룩셈부르크(2004), 볼리비아(2003), 칠레(1997), 코스타리카(2001), 쿠바(2002), 체코(2000); 엘살바도르(1998), 프랑스(1980), 독일(1998), 헝가리(1995), 이탈리아(2013), 한국(1993), 네덜란드(1994), 페루(1994), 포르투갈(2001), 루마니아(1995), 남아공(1974), 스페인(1996), 스위스(1992), 대만(1992), 아랍에미리트(2016), 영국(1992), 베네수엘라(1997)

파라과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식 회원국이므로 만약 외국 투자자와 파라과이 정부간 분쟁 발생 시에는 국제적 분쟁조정 요구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 부정부패, 치안 악화,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법치주의 부재

파라과이 내수 시장 협소, 밀수 성행, 숙련된 노동력 부족, 인프라 취약 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여 법치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시장

파라과이 노동법은 고용주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수의 종업원을 의무 고용토록 하는 등의 까다로운 규정이 없으며 고용, 해고 등에 대한 규정도 상당히 유연한 편이다.

파라과이 통계청 2015년도 자료에 따르면, 파라과이 총인구 693만 명 중 노동 인구는 61.6%에 해당하는 약 349만 명으로서 그 중 30.6%는 자영업, 7.1%는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공무원 10.97%, 사기업 37.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동인구의 20.1%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2차 산업에 19.0%, 3차 산업에 60.9% 종사

최저임금

헌법 및 노동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내·외국인,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최저임금은 2,041,123파라니(약 380달러, 2017년 9월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노동인구의 28.3%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

근로시간

노동법이 정한 근로시간은 주 48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초과 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주간노동자 : 일급+일급의 50%
- 야간노동자 : 일급+일급의 30%
- 공휴일 노동 : 일급+일급의 100%

고용계약조건

고용계약을 체결 시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허용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수습기간

- 숙련직 또는 견습노동자 : 60일
- 비숙련직 또는 가사노동자 : 30일

고용자 해고 시에는 근속 연한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에 대해서는 연 15일치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근연한에 따라 퇴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해고통지 기간

- 1년 이상 상근자 : 30일전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 45일전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 60일전
- 10년 이상 상근자 : 90일전

사전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처리되는 경우, 상근연한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 보상금 지불금액

- 1년 이상 상근자 : 30일치 일급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 45일치 일급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 60일치 일급
- 10년 이상 상근자 : 90일치 일급

고용주는 1년 이상 근속한 정식 고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이외 매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상여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당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1년 근무 이상 근로자는 매년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아래와 같다.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 공휴일을 제외한 18일
- 10년 이상 상근자: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 출산휴가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90일까지 부여

사회보장제도

파라과이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가 국가의료보험 및 연금 보장기관인 사회보장청(IPS)에 의무적으로 고용자들을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비율로 고용자 임금의 25.5%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 명목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 고용주·고용자간 보험료 납부 부담비율

- 고용주 : 고용자 월 임금의 16.5%
- 고용자 : 월 임금의 9%

그러나 실제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총 노동 인구 346만 명의 21%(약 72만 명)에 불과한 바, 공공기관, 규모 있는 민간기업들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서는 대체로 사회보장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파라과이 근로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사회보장기구 보험료 지불을 꺼려하고 있고 정부의 보건 의료 및 연금체제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정책

파라과이는 2013년 경쟁보호법(법령 4956/13)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립경쟁위(CONACOM)를 설치하였다. 경쟁보호법은 민간, 중앙정부기관

및 자치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제한적 관행이나 협약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반경쟁 행위를 검토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합병·인수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철근회사, 시멘트 공장, 유선통신회사, 정유회사, 전력회사(송배전) 등으로 노조의 압력으로 인해 민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생산성과 채산성 악화로 인한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 회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하지만, 송전선 운영부문, 정유부문 및 인터넷 해외접속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환영).

- 파라과이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Itaipú 수력발전소의 경우, 생산 전력의 45% 정도를 브라질에 헐값에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력공사의 투자 미비로 인한 송배전설비 부족으로 정전이 빈번히 발생, 산업 발전에 크게 지장 초래
- 철근 및 시멘트 회사의 경우 역시, 원자재는 풍부한 편이나 생산설비 노후 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재 품귀 현상이 빈번히 발생

기타 장벽

입국사증

파라과이는 2006년 4월부터 우리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들에게도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30일 초과 체류시에는 출국 전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 비영주목적/관광비자(입출국이 한번만 가능한 단수비자) 또는 복수비자(유효기간 내 입출국

횟수에 제한이 없음)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는 보통 최대 3개월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단, 주한파라과이대사관측이 비자신청자들에게 대해 은행계좌 내역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소득증명서, 왕복 항공권 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문으로 된 구비서류들은 스페인어로 공증번역까지 요구하는 등 제반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비자발급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영주권

파라과이에는 장기체류 비자제도가 없으므로, 상사주재 등 장기간 파견 업무 수행시에는 현지에서 유효기간 6개월의 임시체류허가연장(Radicación Precaria), 유효기간 1년의 임시거주권(Carnet de Admisión Temporalia) 또는 유효기간이 영구적이어서 한번 취득하면 갱신할 필요가 없는 영주권(Carnet de Admisión Permanente)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주권 관련 업무는 파라과이 내무부 산하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에서 관장하고 있다.

- 주요 구비서류 : 한국여권, 파라과이 입국사증 사본, 한국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의 경우)혼인관계증명서 등(모든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또는 공증) 필수)
- 예치금 : 이민청에서 지정한 파라과이 국내 금융기관(국립진흥은행: Banco Nacional de Fomento)에 영주권 절차완료까지 24,554,600 과라니(약 5,000달러)를 예치해야 함(영주권 취득 후 환불).

구비서류 제출시 90일 기간의 접수증(Contraseña)을 발급하며, 90일 이후 까지 발급이 안 되었을 경우 이민청을 방문해 접수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도장을 받아야 한다. 접수증은 검찰 검문시 불법체류가 아님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상사 주재원이나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이민청을 방문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산업통상부의 ‘창업절차통합시스템(SUACE)’을 이용할 수 있다. SUACE 사무실을 방문하면, SUACE에 파견된 이민청 직원을 통해 영주권 신청부터 회사 등록까지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협의 및 처리가 가능하다.

※ 창업절차통합시스템(SUACE)

- 성격 : 외국인 투자유치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파라과이 범정부기관
- 구성 : 산업통상부, 재무부, 법무부, 이민청, 고용노동부, IPS(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해당), 아순시온시청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
- 주소 : Cap. Villamayor c/ Del Puerto(아순시온시청 인근)
- 전화 : +595-(0)21-505-000(대표), 525-884~5
- 홈페이지 : <http://www.suace.gov.py>
- 근무시간 : 07:00~13:00(월요일~금요일)

운전면허

파라과이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간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인정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내무부 산하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Carnet de Administración Permanente) 및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Cédula de Identidad)을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소재지 관할지역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 주민 등록증 사본, 혈액형검사서(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으면 가능), 의료기관의 시력·청력검사서를 주요 구비서류로 제출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현지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 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양국간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6				
국가 일반	인구	(명)	31,488,625				
	면적	km ²	1,258,000				
	한반도 대비면적	배	6				
	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6.0	5.8	2.4	3.3	3.9
	1인당 GDP	US \$	6,281	6,797	6,589	6,176	6,198
	명목 GDP	백만솔	526,286	558,056	576,118	611,996	659,249
	정부부채/GDP	%	19.8	19.2	20.1	23.3	
	소비자물가상승률	%	2.65	2.86	3.22	4.40	3.59
	민간소비증가율	%	5.8	5.2	4.1	3.4	
	실업률	%	8.3	7.4	5.9	6.2	6.7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 \$ 백만	46,367	42,177	38,162	34,157	36,838
	수입실적	US \$ 백만	41,135	42,217	40,807	37,363	35,107
	무역수지	US \$ 백만	5,232	-40	-2,645	-3,206	1,887
	민간투자증가율	%	13.6	3.9	-2.2	-4.4	
	외국인투자금액 (당해년)	US \$ 백만	12,297	10,037	7,885	7,817	6,860
	총외채	US \$ 백만	58,830	60,329	64,355	68,244	74,651
	외환보유고	US \$ 백만	63,991	65,663	62,308	61,485	61,686
	이자율	%	4.25	4.25	3.75	4.25	4.44
	환율	US \$	2.550	2.803	2.84	3.19	3.38

자료 : 페루 중앙은행, 세계경제은행

수입 제도

수입 제도 개관

페루는 후지모리 前정부가집권한 1990년 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 수입 자유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6년 제2차 알란 가르시아 前정부가 들어서도 유지되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제1차 집권 때인 1980년대 후반 많은 수입 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6년 재집권한 후 2011년 7월 28일 퇴임할 때까지 개방 및 수입자유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수입관세율을 3가지로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2007년 10월 15일 9, 17, 20%로 대규모 개편하였고 2010년 말에 다시 여러 품목에 걸쳐 관세를 인하했다.

이러한 관세 인하 기조는 우말라 정부에 이어 쿠친스키 現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세 인하의 결과, 2016년 현재 수입관세율은 0%, 6%, 11% 등 3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페루는 안데스 회원국 생산 제품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 생산품 수입에 대하여 특혜관세(무관세)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수입 금지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동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다.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피스코(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5년 이상 수령의 중고승용차, 8년 이상 수령의 3톤 이상 트럭 및 중고자동차 부품

수입 규제 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非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제한이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수입 시 요구 조건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지도 및 지형 연구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수의학과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 수입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일자

품목	수입 시 요구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기간 ○ 수입업체회사명 및 납세번호 신고 필요 ○ 세계보건기구 품질보증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해당 물품이 자유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

기타 수입제한 법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 상품 또는 제조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비상업적성격을 가진다.
- 천 달러 이하의 선물과 이천 달러 이하의 비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FOB 가격으로 이천 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 단일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쿼터

전체 품목별 수입쿼터는 페루관세청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에서 세관업무(Operatividad Aduanera)를 클릭한 후 잔여 할당량(Saldo Contingentes Arancelar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관세 장벽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17년 현재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정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정부 차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산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1일부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한 이후로 양국은 쌀 관련 일체의 제품에 대한 양허 제외를 규정했다. 페루는 한국산 수입제품의 0.1%를 제외한 품목에 최대 10년내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페루 FTA에서 페루측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8.1%이며 일-페루 FTA의 양허 제외 품목 비율은 약 5.1%인 것에 비교하였을 때 페루가 중국과 일본상품 양허에 비해 한국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을 양허하였다. 2016년 6월말 현재 페루 공정위원회에 제소된 품목중 한국제품은 없다.

페루 관세 제도

개요

페루의 관세제도는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명명법(Nomenclatura Común de los Países Miembros de la Comunidad Andina, NANDINA)에 기초, 이외 추가적 세부사항을 골자로 만들어졌으며 페루 관세청 SUNAT에서 관세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관세율 종류, 관세 및 비관세

1997~2013년 관세제도 주요 변화 추이

페루는 1997년 4월 14일부터 종전의 15%, 20% 2단계 관세율 체제를 12%와 20% 관세율 체제로 변경하여 시행했으며 2001년도 들어 공업용 원부자재류 1,936개 품목(HS 6~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4%로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2년도 들어서는 일부 산업용 기계류 및 공업용 원자재 일부의 관세를 12%에서 7%로 인하 적용해 왔다.

이러한 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 2005년 10월 14일부터 일부 소비재, 중간재, 기계류를 포함한 총 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였고 특별소비세(Sobretasa)도 폐지하였다. 이후 2012년 1월부터 발효된 법령(238-2011-EF) 조치로 총 604개 품목이 새로운 관세를 적용 받게 되었으며, 2016년 12월 16일자 법령 개정(342-2016-EF)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관세율표에 따르면 기준 품목 수(7,789개)를 기준으로 2017년 현재 70.4%(5,486개)가 0%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20.8%(1,621개)가 6% 관세를, 8.8%(682개)가 11%의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2016년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율 0% 적용의 5,486개 품목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 508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 3,298개 품목, 자본재(기계, 수송장비 등) 및 건축자재 1,680개 품목이다. 페루 평균 관세는 2010년 5%에서 2011년 3.2%로 하향 조정되었고, 2017년 현재 2.2%이다.

현행관세율

페루 정부는 법령개정(342-2016-EF)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입관세율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 페루수입 관세율 구조

관세율 (종가세+추가관세)	품목 수		2016년 수입액(CIF US\$ 천)	
	품목 수	비중(%)	금액	비중(%)
0	5,486	70.4	26,370.1	72.9
6	1,621	20.8	8,127.8	22.5
11	682	8.8	1,677.2	4.6
계	7,789	100.0	36,175.1	100.0
명목평균관세율(%)			2.2	
관세율 평균편차(%)			3.6	
실효 관세율(%)			1.1	
가중평균수입 관세율(%)			1.9	

자료 : 페루재정경제부, 페루 관세청

한국 및 인접 국가간 관세제도

가. 한국-페루 간 관세 제도

시장개방 정책 견지와 이로 인한 관세인하 조치에 대하여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띠는 산업계·생산업체는 앞으로 페루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제조업이 더욱 약해질 것이며, 고용 촉진도 둔화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입 업계·상업계 및 페루정부는 개방정책으로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고 무엇보다도 산업 기반이 되는 기계 플랜트 및 원 부자재 수입이 더욱 촉진되어 그 비용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페루 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로 對페루 수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인 승용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제품, 의약품 등의 수출이 크게 신장되었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율은 품목 수를 기준으로 페루 양허품목 가운데 즉시 철폐 67.9%, 조기(5년 내)철폐 81.3%, 10년 철폐는 98.9%이며, 양허 제외는 0.1%로 99.9% 품목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한국 양허품목은 즉시 84.5%, 조기(5년 내) 철폐 91.5%, 10년 내 97.4%, 양허 제외 0.9%로 99.1%의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교역액 기준으로는 페루의 경우 즉시 74.2%, 조기 철폐 88.6%,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0%이고 한국의 경우 즉시 94.2%, 조기 철폐 96.2%, 10년 내 철폐 비율이 100%이다.

나. 안데안공동체(CAN) 회원국 간 관세제도

안데안공동체(Comunidad Andina,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는 불완전 관세동맹(Unión Aduanera) 대외공동관세(El Arancel Externo Común)가 모든 국가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세구조는 5%, 10%, 15%, 20% 4단계(평균 13.6% 수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5%는 기초원자재와 자본재에 적용되며, 10%는 낮은 수준으로 가공된 기초원자재 및 소모품에, 15%는 중간재 및 일부 소비재에 적용되며, 20%는 최종 소비재에 적용되고 있다.

대외공동관세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베네수엘라에 적용되고 있으며, 볼리비아는 특별우대를 받고 있다. 페루에 대하여는 적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양자 간 무역 협상을 통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과 별도의 특별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간 관세제도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ALADI)는 역내 특혜관세, 역내 포괄협정 및 회원국간 양자다자간 협정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페루 포함 12개국)간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인정하고 있다.

ALADI 회원국에 대하여는 개별 회원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존 관세율에서 20~100%포인트 인하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 수입물품의 수량, 품질, 형태 및 용도 등에 대해 허위신고 시: 0.1UIT
- 통관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모든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FOB가격을 부정확 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 차액의 5배
-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 가액간 관세차액의 2배

관세 책정 및 부과과정 참고사항

이 경우 상업송장 등 수입서류와 관세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평가 제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자동차 등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각 모델 별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자체 보유 과세기준을 병행, 기준가격을 산정 하고 있다.

관세부과 기준가는 CIF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선임, 보험료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제비용 즉, 커미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8%의 부가 가치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편의상 부가가치세 18%로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가가치세는 16%이며, 나머지 2%는 지방 정부 재정 목적의 지방세이다. 페루의 가공 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 시 이를 환급 받는 관세환급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2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년 한도 내(동일 기간 1회 연장 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기되며, 재수출 시 관세 납부 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 공을 위한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수입 시 적용되고 있다. 이 법령이 부여하는 기한 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또한 보세물품의 사전신고 없이 제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이를 이용, 물품을 생산 수출하였을 경우 관세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 관세 환급 제출서류

- 관세환급요청서, 관세환급대상 원자재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 신고서 사본
- 기 수입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사본
- 관세 환급을 수출 다음날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 첨부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WTO, RTA, FTA/기타 협정가입 및 체결현황

▶ 페루의 무역협정체결 요약표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세계무역기구 (WTO)	-	가입	- 1995년 1월 1일
2	안데스공동체 (Comunidad Andina- CAN)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창설 협정	발효	- 1969년 카르타헤나 협정으로 탄생 - 1993년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대외공동관세 적용으로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설립 - 페루는 이 자유무역협정에 1997년에 가입하고 2005년에 안데스동맹 회원국에 대해 일반관세 철폐 완료
3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3월
4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8월
5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2월
6	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09년 8월
7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년 3월
8	태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12월 31일
9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02.28 브뤼셀에서 협상 - 2011.3.23 계약 법적 검토 완료 - 2012.6.26 협정 체결 - 2013.3.1 발효
10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서 발효(2011.6.1) - 아이슬란드 발효(2011.10.1) - 노르웨이 발효(2012.6.1)
11	일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31일 체결 - 2012년 3월 1일 발효

	대상국(지역) 또는 기구명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2	한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0년 8월 30일 협상 타결 - 2011년 3월 21일 체결 - 2011년 8월 1일 발효
13	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26일 협정 체결 - 2013년 6월 1일 발효
14	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2011년 5월 26일 협정 체결 - 2012년 3월 9일 발효
15	베네수엘라	부분적 무역협정	발효	- 2012년 1월 7일 협정 체결 - 2013년 8월 1일 발효
16	과테말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전	- 2011년 12월 6일 체결 - 발효 전
17	온두라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전	- 2015년 5월 29일 체결 - 2017년 1월 1일 발효
18	엘살바도르, 터키, 인도, 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	- 협상중

자료 : 통상관광부(MINCETUR), 페루 FTA(Acuerdos Comerciales del Peru)

➡ 무역 보완 협정 체결 내용 등

	대상국 또는 대상지역	협정의 종류	현황	협정 발효일
1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경제보완협정 제58호(ACE 58)	발효	- 2003년 8월 체결 - 2006년 1월 발효
2	멕시코	경제보완협대 (ACE 8)	발효	- 1987년 멕시코와 페루 간 관세인하 실시 - 2000년 2월 협정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2000년 8월 발효 - 2006년 상품을 추가해 경제보완협정 제8호 출범 - 2011년 4월 6일 서명 - 2012년 2월 1일 발효
3	쿠바	경제보완협정 (ACE. 50)	발효	- 2001년
4	브라질	경제협력확대협정	발효전	- 2016년 4월 29일 체결 - 발효전

자료 : 통상관광부(MINCETUR), 페루 FTA(Acuerdos Comerciales del Peru)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 통관절차 개요

페루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통제, 화물의 양하, 포장의 개방 등에 관한 책임은 페루 세관의 배타적인 권한이며 다른 어떤 당국도 동일한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는다.

페루정부는 통관 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차 마련, 법령 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환경 개선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정책도 정비하고 있다. 2017년 현재 SIGAD(Sistema Integrado de Gestión Aduanera)이라 불리는 통관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 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개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 참고 1 : 수입 검사 제외 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 참고 2 : 수입 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 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 지방 세관
 - 1일 접수가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 TACNA 세관

-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 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 고지서를 전산 출력하고 이에 검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 여부 및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동 검사 확인서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검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관 별 세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데 24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입 검사 대상품목은 1~2일 간의 검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세관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1주일 내외이며 세관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12:30, 14:00~16:00 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수입신고의 57%는 5일, 16%는 5.6일, 13%는 7.2일, 나머지는 9일 이상의 통관 소요시간이 걸린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품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 0.1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1UIT=S/4,050(1,246달러 상당, 2017년)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 탈세기도 금액의 5배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를 안데안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포탈)을 기도한 경우
 -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 지방 세관이 부여한 봉인물 또는 기타 안전장치를 파손했을 경우
 - FOB기준에 따른 화물가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벌금형에 처한 업체는 페루의 외국 무역업자 등록부상에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되기도 한다.

통관절차 순서

세관에 수입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Declaracion Unica de Aduana)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1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해 전산 처리 반에 전달한다. 이후 전산 처리 반에서는 받은 자료를 전산상에 입력하게 되는데 우선 서류 내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며 만약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익일 다시 접수하도록 조치한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뒤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에 전자 전송되며 수입 신고서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SIGAD시스템의 정보 기입란에 목

적지(Destinacion)라고 표시된 네모에 10자리 수입신고 코드를 입력하면 화물도착 유형별로 기입된다.

통관 시 품목 설명, 분류, 원산지, 수량이 표기된 (인보이스 류) 문서로만 검사되나 무작위로 선별하여 컨테이너 오픈 작업을 시행할 물품을 선별한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나올 시 그대로 진행되나 빨간색이 나올 경우 총 물품의 20%까지 검열을 받게 된다. 만약 이 20%의 화물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전체 화물을 열어볼 수 있다.

동시에 부과대상 관세산정,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 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페루 관세청(SUNAT)의 통관자동관리시스템상에 적하목록 번호를 입력할 시 선하증권(B/L)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수입 시 요구되는 제출 서류는 수입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명	필수 여부	원어명(스페인어)
1. 수입 신고서	필수	Declaración Unica de Importación
2. 선적 증명서	필수	Conocimiento de Embarque
3. 상업 송장	필수	Factura Comercial
4. 원산지 증명서	안데안 회원국 및 LAIA회원국 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할 경우, FTA 협정세를 적용 품목에 포함 될 시 요구	Certificado de Origen
5. 보험 증권	필수	Póliza de Seguro
6. 세금 납부 영수증	필수	Recibo de Pago de Impuestos
7. 검역 증명서	동식물의 경우	Certificado de Inspección
8. 품질증명서	의약품의 경우	Certificado de Calidad

페루 무역항 및 공항개황

(1) 공항

페루의 국제공항으로서는 리마 소재의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 공항과, 칠레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Tacna 공항, 그리고 관광지이면서 볼리비아 방향 항공편의 국제공항으로 사용 되는 Cusco 공항이 있다. 이 중 Tacna 공항은 인근국의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Jorge Chavez는 2001년도부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리공단이 30년 양허(Concession)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미지역의 관문 공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항구

페루의 대표적 국제항구는 까야오(Callao) 항구로 Callao는 리마 시와 광역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리마 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Callao 항구는 현재 페루에서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구로 한국에서 선편으로 수출 시 보통 까야오 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이 외에 페루 남부에서는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Matarani, Ilo, Tacna항이 대표적이며 북쪽으로는 Paita, Chimbote항을 국제항구로 손꼽을 수 있다.

운송비용

▶ 페루 무역 분야 비교

구분	페루	중남미 평균	OECD 평균	칠레	멕시코	한국
수출소요시간	48.0	86.1	15.2	60.0	20.0	14.0
수출소요비용 (달러)	460.0	492.8	159.9	290.0	400.0	185.0
수입소요시간	72.0	106.8	9.4	54.0	44.0	6.0
수입소요비용 (달러)	583.0	665.1	122.7	290.0	450.0	315.0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주요인증제도

개요

INDECOPI는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품질 규격 표준 승인 기관으로 이 기관에 속한 ICONTEC 연구소에서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을 국제 규격 품질경영시스템 ISO에서 지정한 'ISO 9100'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마시의 대표 항구와 공항인 까야오(Callao)항과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공항에서도 또한 같은 인증서에 기초하여 이에 준하는 수출입인증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INDECOPI는 이 외에도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한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하고 승인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 1030)'에 따라 약 4천 여 개의 승인 규정을 보유 중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및 검사제도

(1) 강제인증

1) 생산부(PRODUCE) 인증

생산부 산하 시험/인증 관리기관은 4개 나뉘며 수산물의 경우 법2859에
기준하여 보건국(DIGESA)이 아닌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ógico
de la Produccion)발급 인증을 필요로 한다. 하위 제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시 해당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농림수산물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광산물 : 금속광물, 광물성 원료
- 화학공업제품 :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화장품), 정밀화학제품
(의약품)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 섬유제품
- 생활용품
- 철강금속제품 :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기계류 :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 전자전기제품 :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충전기기, 전선

2) SENASA 인증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 발급 인증은
SENASA로 통칭하며 세부 종류는 농업/축산업용 원료 및 동생물/식물
검역으로 총 4가지가 존재한다. 비료를 포함한 농업용 원료는 법령 D.S.
016-2000-AG; R.J. 119-2002-AG-SENASA에 근거하며, 사료와 같은

축산업용 원료는 N°053-85(1985년)과 N°0026-95(1995년) 제정된 두개의 법령이 1998년 D.S. 015-98-AG 으로 통합되었다.

동생물 검역관련법은 R.D. 12-2007-AG-SENASA-DSA; D.S. 051-2000-AG, 식물 검역의 경우 해충 도입, 확산을 방지하고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N° 032-2003-AG이 2000년에 제정되었다. 대상 품목으로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기제품, 식물성 기름, 통조림, 파스타, 야채, 향미료, 과일/견과일 및 살아있는 동생물이 있다.

3) SUCAMEC 인증

반정부 조직(테러리스트), 범죄 예방관련무기 및 특정용도 탄약의 판매, 소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대법원 법령 N° 007-2000-IN에 근거한다. 대상 품목으로는 호신, 스포츠, 사냥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무기류가 포함되며 무기 반입 시 관련 인증 소지가 필수적이다.

4) 보건부 인증

보건부(DIGEMID) 인증은 국내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1997년 보건일반법 N°26842가 제정되었으며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장난감, 문구용품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N°28376이 제정되었다. 모든 관련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DIGEMID과 DIGESA 인증을 필요로 한다. DIGEMID 인증은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의료/제약시설 등의 수입 및 도입을 위해 필요로 하며 해당 인증은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5) 교통통신부 인증

최고시행령 N°013-93 TCC와 각료결의N°204-2009-MTC/03에 근거하며 통신장비 표준화관련 인증, 6개월 미만의 임시 반입(샘플, 전시회 진열용도, 테스트용등) 허가과 무기한 반입허가 인증으로 나누는 필수 인증이며 인증 대상으로는 휴대폰, 통신장비, 라디오, 무선마이크, 레이더 등 통신관련 장비전반이 있다.

6) 외교부 인증

페루의 국경관련 표기 문자, 페루 지도 포함 인쇄물 통제목적으로 1993년 법령 N° 26219 제정되었으며 지도, 도면 등이 포함된 출판물, 인쇄물 전반이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판, 수입 30일 전에 샘플과 함께 외교부 문서사무국에 제출하며 통상 7일정도 소요된다. 인증절차 미이행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7) 에너지광업부 인증

방사선 사용제품 전반 수입 및 유통 필수 인증이며 대상품목은 X-ray 등 방사선사용 전 품목 해당된다.

8) 통상관광부 인증

카지노기계 등 사행성 기기의 경우 통상관광부 발급 인증이 필요하다.

(2) 임의인증

1) 국제 수출입통합관리체제(ICS)

INDECOPI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입 시 기본적으로 제품이 갖추어야 할 페루 품질 기술 규정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전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두었으며 이는 국제 수출입통합관리체제(ICS)를 따라 권장하고 있다.

2) 상세 정보

주소: http://www.indecopi.gob.pe/0/home_normalizacion.aspx?PFL=6

페루 기술 규정 포털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MYPE Competitiva 프로젝트'를 통해 동 기관의 협력을 받아 페루 기술규정

포털 및 규정들을 (El portal de Reglamentos Tecnicos Peuanos)을 제정했으며 포털을 통해 페루 기술 규정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주소: <http://www.mincetur.gob.pe/newweb/Default.aspx?tabid=3135>

정부조달관련

페루는 WTO 정부조달 협정(GPA) 비회원국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개방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조달 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재정경제부 (MEF) 산하에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한 조달청 (국가계약 최고감독청 / OSCE ;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을 두어, 이전의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 (CONSUCODE :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 를 대체, 강화하였고, 2014년 개정법률 제30225호 제4조에 규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국가 및 지방정부, 국공영 기업의 계약내용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조달시행기관 (법률 제30225호 제3조 참조)

-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 입법부, 사법부 및 헌법상 독립기관
- 지방정부
- 국공립대학
- 공익기관 및 사회참여조직
- 국공영기업
- 전액 또는 부분적 공적자금으로 설립된 재단

조달관련 법령 및 관행

(1) 조달법령

- 페루 상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 관련 사항
 - 헌법 76조, 정부예산법 No 27209(Ley del Presupuesto del Sector Público, 99.12.3), 공공부문 예산법 No 27212(Ley del Presupuesto del Sector Público)에 명시
 - 2014년 개정 조달법 (Ley No. 30225 :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및 시행령 (Reglamento)

(2) 조달관행

페루 조달시장은 기계류, 수송기기, 화학 및 철강제품 등과 같은 자본재 조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주요 국제 입찰 시행 시에 공급자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등에서도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시 공개입찰 발주가 잦은 편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공사 참여 업체가 공사를 마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양허 받아 운영한 후 정부에 동 운영권을 반납하는 입찰 방식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조달 방법 :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 제도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부터 페루 정부기관에 서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 외기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OSC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 등록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벤더등록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조달 시에 단순히 시장에서 즉흥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제품(검증된 회사)만을 구매하여 잘못된 공급자 선정으로 인한 향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검증절차(Evaluation)를 통해 정부의 정식 벤더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발주처가 돼 벤더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관례적인 통념상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사전심사 받은 후 모든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항시적인 “기관벤더”와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서 벤더로 등록하는 일시적인 개념의 “프로젝트 벤더”가 있다.(2017년 4월 3일 이후 RNP 갱신제도 폐지)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페루 조달청이 도입한 소액입찰에 대한 전자입찰제도(홈페이지: <http://www.seace.gob.pe>)와 함께 정부조달시장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페루 정부조달 참여희망 외국기업은 모두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페루 내 지사나 법인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 페루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국기업의 대리인 선임제도)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

RNP제도 등록 자격 요건은 자연인/법인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품질 및 가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납기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내외국인 업체 관계없음)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계약 체결일 전월까지 세금 미 납부했거나 페루 정부조달에 낙찰되었으나 해당 의무를 미 이행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기타 특기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도 한다.

- 자연인
 - 당국과 계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성인이어야 한다.
 - 사법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법인
 - 기업으로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 페루 상업등기청(SUNARP)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효력 있는 사업자등록번호(RU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등록 양식에 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를 언급해야 한다.
- RNP 등록비용

종류	비용
상품(bienes)	160솔
상품 및 서비스(bienes y servicio)	160솔
서비스(servicio)	160솔
법인 컨설턴트(consultoria) 등록	490솔
자연인 컨설턴트(consultoria) 등록	325솔
법인 시공(ejecutor) 등록	490솔
자연인 시공(ejecutor) 갱신 등록	325솔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비용 및 지불방법

모든 입찰 참가인(업체)은 입찰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입찰등록비는 입찰공고 다음날부터 입찰서류 제출 마감 하루 전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입찰설명서 가격은 각 입찰시행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입찰설명서 복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입찰 등록 갱신의 경우, 입찰 효력 만기일 60일 전에 갱신 가능하다.

○ 입찰등록비

- 자연인 입찰등록비 : 최소S/.약 달러), UIT의 4.41%
- 법인 입찰등록비 : 최소S/.약 달러), UIT의 8.3%
- 연매출 13UIT 이하 공급자 : 최소 S/.약 달러), UIT의 0.96%

입찰등록비는 상업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지불 가능한 상업 은행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입찰등록비 지불 가능 상업은행

- 페루 신용은행(Banco de Crédito del Perú)
- 스코티아 은행(Scotiabank)
- 콘티넨탈 은행(Banco Continental)
- 국민은행(Banco de la Nación)
- 페루 금융은행(Banco Financiero del Perú)
- 페루 조달청(OSCE) 본청 창구

주요 조달 방법(입찰)의 절차

(1) RNP 제도에 등록

RNP 등록은 페루 조달청 홈페이지(<http://portal.osce.gob.pe/osce>)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 오른쪽 상단 'RNP'배너를 클릭하면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방법은 조달 희망 분야가 '물품 및 서비스'인지 '공사의 수행 및 자문'인지에 따라 다르다. 지침에 따라 진행하면 '물품 및 서비스'벤더 등록 과정은 '자동 승인'으로 진행되며, '공사의 수행 및 자문'은 갱신제도가 폐지된 반면, 서류심사의 요건이 강화되었다.

조달 희망 분야별 RNP 등록 방법 상세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물품 및 서비스’ RNP 등록 방법
 - http://www.rnp.gob.pe/docs/guiarapida_insc_bys_2011.zip
- ‘건설공사 및 컨설턴트’ RNP 등록 방법
 - http://www.rnp.gob.pe/docs/guiarapida_insc_eyc_2010.zip

(2) 유효한 입찰정보 찾기

주요 입찰정보는 전자입찰제도SEACE(Sistema Electrónico de Contrataciones del Estado)의 홈페이지(www.seace.gob.pe)에서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상단 카테고리 중 ‘3. 선정 과정(Procesos de Selección)’을 클릭한 후, ‘거래 기회(Oportunidad de Negocio)’을 클릭한다. ‘검색창(Buscador de Procesos de Selección)’을 통해 ‘기관 또는 기업명’, ‘절차과정 목적’, ‘조달 목적(건설, 서비스, 재화 등 선택 가능)’, ‘조달 방법(입찰, 선발 경연 등 선택 가능)’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아이템’을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절차 과정 참가

- 인터넷을 통한 절차
 - ① 전자입찰제도 SEACE 홈페이지(www.seace.gob.pe)에 접속
 - ②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등록 회원 접근(Acceso Usuarios Registrados)’ 클릭
 - ③ 홈페이지 내 상단 카테고리 중 ‘3. 선발 과정(Procesos de Selección)’ 클릭 후, ‘거래 기회(Oportunidad de Negocio)’ 클릭
 - ④ ‘검색창(Buscador de Procesos de Selección)’을 통해 유효한 조달 정보 검색

- ⑤ 결과 내 관심 조달 정보 ‘상세사항(Detalles)’ 클릭 후, ‘전자조달 과정 등록(Inscribirme en Proceso Electrónico)’ 선택
- ⑥ 입찰 등록한 기업들 리스트 확인 및 ‘Ingresar Propuesta’클릭하여 입찰가 제시
- ⑦ 평가를 거친 후 입찰자(Buena Pro) 선정
- 일반 입찰 절차
 - ① 기본자격요건 충족 확인
 - ② 절차과정(입찰) 참가자로서 등록
 - ③ 입찰 기준 상담 및 관찰
 - ④ 입찰 기준 상향 조절 가능
 - ⑤ 입찰 기준 결정 후, 특별위원회 기준 통합
 - ⑥ 입찰 기준 통합 후, 참가자 제시
 - ⑦ 모든 제시 후 특별위원회 평가 실시
 - ⑧ 평가 후, 특별위원회 입찰자(Buena Pro) 결정

(4) 계약 서명

계약 서명을 위해서는 입찰 자격요건과 조달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조달계약요인(진출 애로사항)

입찰설명서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있고, 페루 영사관 공증을 획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일정규모의 정부구매는 대부분 공급자 파이낸싱 조달입찰로 시행하고 공급자가 장기 조달을 요구한다.

주재국내 업체들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진출하여 투자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업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섬유 등)을 제외하고는 주재국 시장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인 바, 지속적으로 스페인어로 제작된 상품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야 될 필요성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요인이 낙찰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페루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등한시해 왔으나,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하면서 해적물 및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추세이다.

이에 지적소유권 보호법도 강화되었으며, 위조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도 정부차원에서 있으나 아직 법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위법자 처벌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경우 아직 페루를 저작권, 지적소유권 보호 요주의 국가명단에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책을 원본으로 사서 보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며 유명한 외국 서적을 복사하거나 시중에 떠도는 해적판 복제 서적을 싼 값으로 사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5년 기준 컴퓨터 이용자의 63%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품을 사용하였다고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 금액은 2.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2013년(65%, 2.49억 달러) 대비 개선되고는 있으나, 중남미 평균(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상표 소유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한 예로, 한국의 A사가 등산장비를 수출하려고 등록 절차를 밟는 도중 그 상표가 이미 페루에 등록되어 있어 수출에 난항을 겪은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후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페루로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직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 주로 칠레의 이끼께(Iquique) 자유무역지대를 통하거나 페루 내의 Tacna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

또한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의 발표에 따르면 페루의 2016년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는 4.80으로 2012년 5.0보다 더 낮아져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재산권지수는 법률 및 정치 환경, 물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 세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 법률 및 정치 환경 : 사법권의 독립성, 법률규범, 정치적 안정도, 부패 방지
- 물적재산권 : 물적재산권 보호, 재산 등록의 수월성, 금융 대출의 용이성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보호, 저작권 보호

2017년 재산권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127개국) 중에서 65위이며 중남미 및 카리브해(23개국) 중에서는 8위에 해당된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보호대상 및 보호제도

페루의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기관인 INDECOPI는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으로, 법령 제1033호에 따라,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INDECOPI 내에 지식재산 관련 부서는 총 3개로 구성되며 부서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작권부(Dirección de Derechos de Autor)’는 저작권 및 저작권 접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새 저작권 등록과 기 등록된 저작권의 무효 및 취소,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소송 등을 해결한다.
- ‘발명품 및 신기술부(Dirección de Invenciones y Nuevas tecnologías)’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디자인, 보안인증, 토착민의 집단 지식,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식물의 새로운 품종개량 인증, 외국 기술 계약 등에 대한 권리의 등록 및 수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또한 기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위반 및 무효 소송을 담당한다.
- ‘식별기호부(Dirección de Signos Distintivos)’는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 상품명, 상업용 슬로건, 증명표장, 상표 인증, 원산지 명칭 등의 등록 수속을 담당하는 부서로 등록 요청에 대해 거절, 취소, 무효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동 3개 부서는 지식재산권의 소송 및 비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법원(La Sala Especializada en Propiedad Intelectual)은 제1심 중급 판결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2심 및 최종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신정보

(1) 불법 소프트웨어 증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맹(BSA, The Software Alliance)의 소프트웨어 글로벌 설문조사(Encuesta Global de Software, 2016.5월)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페루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63%가 불법인 것

(지방의 경우 55%)으로 나타나 4년간 4%가 감소(2011년 67%→2015년 63%)한 것으로 발표함. 저작권법(법률 822호)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693.000솔(약 23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 8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10%줄어들 경우 4년간 3,593개의 고급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241백만 달러가 창출되며 26백만 달러의 세수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페루인 특허출원 신청 2016년 402건으로 전년 대비 37.2% 증가

INDECOPI의 신기술발명국(DIN)에서 2016년 동안 접수한 특허출원(Patentes de Invención) 신청은 총 402건이며, 실용신안 (Modelos de Utilidad)은 83건임.

(3) 페루 내 특허 문화 진흥을 위한 INDECOPI 프로그램

- ‘신속 특허(Patente Rápida) 프로그램’
 -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특허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일반 특허출원 소요기간보다 단기간에 특허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기존의 발명특허 등록소요기간은 평균 50개월이나 이 프로그램 이용 시 평균 26개월 내에 해결되며 실용신안특허는 평균 20개월에서 평균 12개월로 기간이 줄어든다.
- ‘발명자의 목요일(Jueves del Inventor) 프로그램’
 - 페루 내 특허 문화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격주마다 INDECOPI 강당에서 개최되는 무료 강연 행사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시스템의 여러 측면과 주제를 대상으로 개념, 정보, 경향 등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한다.
- ‘페루 발명대회(Concurso Nacional de Invenciones)’

- 1996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대회와 주목적은 페루 내 특허시스템 사용을 통해 페루인들의 창조력, 독창성 및 발명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이를 포상하기 위함이다.
- 2015년 총 127건의 특허출원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투자 환경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 우대 정책

페루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을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이 있다.
 - 외국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로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자유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 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 투자 외국인 기업의 준수사항(4개)
 - 광업과 석유산업 제외분야 투자기업으로 2년 안에 최소 US\$500만을 투자하는 경우
 - 광업과 석유 산업 투자업체로서 2년 안에 US\$1,000만 투자하는 경우
 - 민영화 참가사로서,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 주식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 페루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 수혜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 수용기업 충족 조건
 - 회사 주주 중 한 사람이 해당 안정성 보장 협정을 맺어야 한다.
 - 조세 납부 안정성 신청의 경우 새로운 투자 금액이 기존 자본금 또는 자본 준비금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투자금은 회사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민영화의 경우 회사 주식 50% 이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의 수혜자여야 한다.

-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의 유효기간
 - × 일반적으로 10년
 - × 권리 양허의 경우, 유효 기간은 권리 양허 유효기간까지 지속
- 분쟁 해결 : 법적 안정성 보장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한다.
- 외국인투자 우대 정책
 - 비차별 대우 :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에게 동등한 법적 대우를 부여한다.
 -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외국인투자에 개방
 - ×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의 부동산 취득, 무기 및 폭발물 산업 투자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며 공중파 라디오 및 TV 방송, 항공산업에의 투자에는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되 내국인의 지분이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 자유로운 자본 송금, 사유재산권,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 자유 보장
 - 다양한 투자협정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다자간투자보장 기구 회원국, OECD투자위원회 가입
- 법적 안정성(judicial stability) 보장 협정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와 법 계약 성질을 띤 협정을 체결하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 부분을 적용한다.

 -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 국내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 외국 투자자의 자유로운 외환 소지, 이윤, 이익배당금, 로열티를 해외 송금

-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는 회사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노동법 안정성
 -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수출 장려 제도 안정성
 - × 협정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자격
 - ×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내기업 모두 협정 체결 가능
 - ×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증자 형태나 관계없음
 - × 민영화나 정부양도 개발권 참여회사 또는 이 과정과 관계있는 회사
 - ×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회사만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가능
- 페루정부는 외국인투자자와 관련, 다음의 법적 안정성 관련 사항을 보장한다.

투자자	현지 설립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의 안정성 - 이윤 세 및 이윤배당의 안정성 -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을 사용해 투자할 권리의 안정성 - 외환 거래의 자유 -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 로열티의 자유로운 송금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계약 제도의 안정성 - 수출촉진 제도의 안정성 - 이윤 세 제도의 안정성

제한분야 및 금지분야

페루는 일부 산업부문을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개방되어 있다. 그 예로 1991년 11월 13일부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 이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호를 들 수 있는데 내외국을 불문하고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 1조)

그러나 투자분야에 따라 일부를 제한 또는 금지하며 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 국민보건위생에 이해를 야기 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용역 및 경비 회사 설립 시 내무부 관련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 회사설립 시 관광자원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운송업 관련 회사설립 시 교통통신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 시키는 경우는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투자가능분야

투자 가능 분야는 공공질서 유지, 국가안전에 관련된 극소수 분야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 개방 상태로 투자에 있어 제한이 없다. 내국인 소유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내국인과 똑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의 지역에서는 광산, 땅, 숲, 물, 연료, 에너지원 등을 소유하지 못한다. 단, 공공의 필요로 예외를 둘 경우 국무회의 승인 법령으로 예외 인정한다.

정부 간 협정 수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대등한 요구 조건 적용한다. 기업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계획 실행할 권리 보유한다. 위생, 공업 안전, 환경 보호, 보건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에 생산 방법, 생산 지수 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원자재나 생산 기술 과정을 금지 또는 강요하는 것, 회사 활동에 간섭하는 법 모두 폐지한다. 외국 투자가는 법이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회사이든 자유롭게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 자본금 투자(직접 투자)

- 합작투자(Joint-venture)
- 페루 영토 내의 소유물, 동산
- 유가증권의 투자
- 무형의 기술 제공
- 페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투자

아르헨티나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7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정부조달 및 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대부분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관세 및 수입허가와 같은 전통적 무역장벽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여, 비교적 개방된 경제중 하나로 평가되었었다.

그러나, 2003년 서민대중과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표방한 페론당의 키르츠네르 대통령에 이어 2007~2015년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12년간 아르헨티나는 국가의 시장 간섭을 정당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등 내수중심의 보호주의 경제로 회귀하였다. 특히 2011년 10월 23일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페르난데스 정부는 2012년 2월 신규 사전수입신고제도 실시, 2012년 4월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회사인 YPF사의 국유화 및 외환규제 강화 등 극단적인 국가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국가개입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인해 2012년 EU, 미국 및 일본 등이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제도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는 등 아르헨티나와 주요 협력국간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었다. 아울러,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2기에는 헤지펀드와의 법적 분쟁에 패소하여 기술적 디폴트에 직면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았다.

2015년 12월 집권한 마끄리 대통령은 페르난데스 前 정부의 보호주의와 내수중심주의로 왜곡된 아르헨티나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외환시장 자유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점진적 완화, 헤지펀드와의 채무상환 협상, 기업친화적 정책 시행 등 개혁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환거래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외환시장을 자유화하여 시장환율과 괴리된 정부 공식

환율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한편, 해외 수입대금 지불 제한, 사전수입 신고제 등 무역규제를 줄여가면서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아르헨티나 농산물 수출세 폐지 또는 감면을 통해 농업 수출 확대를 도모해 오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2월 WTO로부터 불공정무역장벽으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사전수입허가제(DJAI)를 폐지하고 새로운 수입모니터링통합시스템(SIMI)을 도입하여 19,000여개의 통관품목 중 18,000개의 품목을 '자동 수입승인품목'으로 분류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0일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나머지 1,300개 민감 품목(에어컨, 냉장고, 장난감, 신발, 타이어, 의류,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은 '비자동수입 승인품목'으로 분류하여 60일내에 통관 승인을 결정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아르헨티나 통상환경은 2015년 12월 마끄리 정부의 출범으로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개혁, 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1991년 창설된 MERCOSUR는 회원국들(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2016년말 현재 역내 교역의 99%가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다. 설탕은 MERCOSUR 자유무역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 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율은 0~20%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MERCOSUR 회원국 간 의견조율이 어려워 별도의 관세 체계가 적용되므로 최대 3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1995년 1월 1일부터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MERCOSUR Common Nomenclature)를 준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혼합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MERCOSUR는 2007년 9월 27일 1,200개 품목에 대한 대외공동관세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10.8일부로 상향 조정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아르헨티나 평균관세율은 13.6% 수준이다.

MERCOSUR 개별 회원국들은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되는 10,759개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최대 35%한도 내에서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별 면제품목리스트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매 6개월마다 동 면제품목 중 20%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세는 대외관세보다 높거나 낮게 부과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면제품목은 국내제조업의 투입요소에 대해 관세를 낮게 부과하는 품목으로 △화학제품(0~6% 관세/CET 12%), 기계류(0%/CET 14%), 일부 철강제품(0~8%/CET 14%), 합성섬유(0~10%/CET 16%)가 있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으로 △올리브유(31%/CET 10%), 마늘(25%/CET 10%), 너트 및 볼트(26%/CET 16%), 컴팩트디스크(26%/CET 16%)가 있다.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는 아르헨티나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본재 및 신기술 제품 710개 품목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 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바 있으나, 2012년 대통령령 1026을 통해 2012년 6월 1일자로 동 품목들에 대해 2-1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변경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부로 10%와 14%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단, HS CODE 9030.32.00은 관세율이 2%에서 0%로 변경됨). 그 밖에 중고 자본재의 수입은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2008년 1월 1일부로 금지되었으나, 대통령령 2646/12를 통해 직접 사용자의 국립 산업기술원의 수입자 등록절차 후 종류 별로 28%, 14%, 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2년 핸드폰, 데스크탑, 태블릿, 신발, 동물사료, 타이어, 오토바이, 가구, 세탁기 등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2021년말까지 점차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대외공동관세의 예외품목 리스트에는 우리의 對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칠레, 멕시코, 안데스 공동체회원국 등에게 양자적 또는 MERCOSUR 차원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수입 정책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 22415/81(관세법)에 따르고 있으며 수입 관련 주무부처는 생산부 대외무역차관실이다. 실무 담당기관은 세입청(AFIP: Administracion Federal de Ingresos Publicos)이며 행정시행령 599/76과 695/77에 의거 정책결정을 제외한 관세법의 적용과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세입청(AFIP)은 2005년 제정한 AFIP 훈령(resolution 1907/2005) 및 2009년 개정된 AFIP 훈령(resolution 2730/2009)을 통해 최저수입가격제도를 발표하였다. 신고 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토록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규제 관련 법령(Law 26473, 25426, 24051), 대통령령 및 부처 훈령을 통해 일정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하고 있다. 현행 수입규제 품목에는 프탈레이트가 고농축 함유된 장난감 및 유아용품(보건부 훈령 583/2008), 활성성분으로 니메솔리드(Nimesulide)를 함유한 의약품

(보건부 고시 4430/2009), 백열등(Law 26,473), 특정 중고기계, 장비, 장치 및 그 부품(경제부 훈령 909/1994), 올라킨독스(Olaquinox)를 함유한 식품 및 의약품(SENASA 훈령 84/2007), 납 함유 페인트(100g 당 0.06 그램 초과)(보건부 훈령 7/2009), 중고 자동차(대통령령 110/1999), 중고타이어(Law 25626), 중고 의료기기(대통령령 509/2007-Anexo X), 위험폐기물(Law 24051), 특정 위험물질(훈령 750/2000, 845/2000, 182/1999)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 및 보건제품 수입 시는 수입업자 상품등록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제품 수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취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미국, EU 국가 등의 제품의 경우 1년 미만이지만, 한국 등 여타국가 제품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이에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사전승인절차 간소화(임상절차 면제 등)를 위한 부속서I(Anexo I) 등재를 위해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농수산물,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나, 수출국의 품질, 규격 및 위생수준이 아르헨티나보다 높거나 엄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는 형식적으로 행해지며 자동으로 승인이 부여된다.

수입부과금

수입 시 부과되는 각종 명목의 제세공과금으로는 관세 외에도 통계세, 부가가치세, 이윤세, 내국세 등이 있으며,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CIF 가격 기준으로 0.5%의 통계세가 부과되나 남미공동시장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계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부과되며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통계세(0.5%)]에 대해 21% 또는 10.5% 및 추가 부가가치세 10% 또는 5.5%를 부과한다.

소비재 수입에 대해서는 3%의 이윤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주류, 담배, 음료수 등 대부분의 소비재에 대해서는 최대 60%에 이르는 내국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2009년 가전제품세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주요 가전제품에 부여되던 내국세 면제 혜택이 일부 품목(에어컨, 휴대전화, 컴퓨터, TV, 홈시어터 세트, 내비게이션 장치, 자동응답기, 음향장치, 카메라, 영상재생장치, 라디오, 전기스토브, 헤어드라이어, 다리미 및 여타 가정용 전열기)에 대해 폐지되고 20.48%의 내국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1%로 인상되었다. 다만, 2017년 2월 17일 대통령령(Decree 117/2017)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35% 관세 및 가전제품 부품에 대한 12%의 관세는 폐지되었다.

최저 수입가격 제도

아르헨티나 세입청(AFIP)은 송장조작을 통한 관세 등 세금포탈 행위 근절을 위해, 2009년 훈령(resolution 1970/2005 및 2730/2009)을 통해 최저 수입가격제도를 재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고 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토록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10월 17일 세관 훈령 91/2008을 통해 최저수입가격 기준을 재조정하고 수입물품의 FOB 가격이 최저수입가격의 80% 이하인 경우 과세 조건을 보다 엄격히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대 21%까지, 소득세는 최대 11%까지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유예 및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세관에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도 현금, 은행 담보 및 공채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최저수입가격제도에 적용되는 한국산 제품은 성냥, 살균제, 테레프탈염산,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의 관·파이프, 타이어, 고무장갑, 가방(플라스틱,

가죽, 섬유), 섬유(원사, 원단, 의류), 신발, 주방·생활용품, 철강제품, 사출 성형기, 밸브, 플라이휠, CD, 퓨즈, 전선, 자동차부품, 모터사이클, 자전거, 안경렌즈 등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수입물품의 성격에 따라 Canal Verde (녹색 채널: 즉시통과), Canal Naranja(주황색 채널: 서류심사 후 통과, 1~2일 소요), Canal Rojo(적색 채널: 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의 3가지 과정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

녹색 채널 및 주황색 채널의 경우, 수입 물품은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아르헨티나 세관은 이러한 물품이 수입업자의 창고로 운송된 후에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적색 채널에는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과 공탁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아르헨티나 세관이 설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 되어 있을 때 적용되며 허위가격 신고(under-billing) 방지를 위한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치금의 규모는 세관당국이 설정한 최저수입가격과 신고가격간의 차액 만큼이며, 현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서 공탁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반덤핑 관세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자국 업체의 보호를 위해 뚜렷한 덤핑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수입물량이 증대된 경우 일단 조사에 착수하여 수입을 규제시키는 경우가 많다. WT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08년 10월 이후 30개 이상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대부분은 주요 교역 상대국인 브라질 및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신발, 금속 제품 등이 해당되며, 몇몇 조사건에 있어서는 잠정관세를 부과하였다.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 PET 제품, 에어컨 및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경우,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한 결과, 가격 인상 및 무협의 판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9년 11월 한국산 냉연강판과 아연철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고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는 2008년 8월 22일에 종료되었다. 2010년 2월 16일에는 국산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2011년 7월 18일 조사가 종료되었다. 2010년 12월 15일은 한국산 코팅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고, 2011년 12월 1일 한국산 코팅지는 수입물량이 미소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2013년 1월 4일 한국산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4년 9월 24일 한국산 유압식 변압기에 대해 52%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012년 4월 25일 한국산 PET 제품 원료(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테)에 대해 조사가 개시되어 2017년 10월 3일 한국산 PET제품에 대해서는 17.61%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2017년 4월 4일 한국산 화학제품(2종: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디옥틸 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고,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이다.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결 사례

- 1994년 8월 11일 한국산 컬러 TV(14인치, 20인치) 반덤핑 판정, 관세 부과
- 1996년 9월 3일 한국 가전 3사의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 판정
- 1998년 1월 20일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 조사 실시
- 2000년 6월 22일 폴리에스터, 나일론에 대해 향후 3년간(2000년 6월 23일~2003년 6월 22일) FOB 기준으로 kg당 최저가격을 9.5달러로 정하고 이하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덤핑세율(나일론: 97.78%, 폴리에스터 : 46.075%) 적용
- 2001년 5월 31일 재생식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결정하고 향후 5년간 8.73달러/kg의 최저 수입가격 적용

- 2001년 6월 2일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직물에 향후 5년간 최저가격 kg당 8.73 달러 부과 판정
- 2001년 6월 21일 1,000cc 소형오토바이 및 스쿠터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 향후 3년간 최저 수입 관세 부과기로 최종 결정
- 2002년 12월 5일 일회용 주사기 덤핑 무혐의 판정
- 2003년 1월 11일 냉연강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60.46%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 2003년 5월 28일 아연철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49.67%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 2002년 11월 15일 폴리에스터 화이버에 대한 반덤핑 판정(3년간 \$1.85/kg의 최저수입가격 부과)
- 2005년 8월 22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기로 판정하였으나, 한국의 주요 5개 업체와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가격인상에 합의함으로써, 가격인상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들에게 특혜 부여
- 2005년 9월 28일 한국산 PET chip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08년 1월 10일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08년 1월 10일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연장
- 2008년 4월 2일 한국철강협회로부터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아르헨티나 측의 반덤핑 조치 관련 대응 불요 입장 접수
- 2008년 5월 29일 아연철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08년 8월 22일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10년 2월 16일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0년 12월 15일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1년 7월 18일 에어컨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12년 12월 1일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대상 제외

- 2012년 4월 25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3년 1월 4일 유압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3년 9월 10일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 종료
- 2014년 9월 24일 유압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판정(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52% 반덤핑 관세 부과)
- 2015년 2월 2일 유압 변압기(단락 용량 1만 KVA~60만 KVA)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기(2년간 부과 유예)
- 2016년 4월 6일 PET 제품에 대한 반덤핑 일몰 재심 개시
- 2017년 4월 4일 화학제품(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한국/멕시코산), 디옥틸 프탈레이트(한국/칠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17년 10월 3일 PET제품에 대한 반덤핑 재심 판정(반덤핑 관세 17.61% 부과, 다만 한국의 주요 2개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세 판정)

세이프 가드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이래 아르헨티나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는 3건으로서, 2004년 컬러 TV(브라질 마나오스), 2006년 CDR (MERCOSUR 지역 제외 전지역), 2007년 컬러 TV(브라질 마나오스, 再 개시)가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이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3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거쳐 2건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05년부터 3년간 컬러 TV, 2007년에는 3년간 CDR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아르헨티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고,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는 對아르헨티나 수출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또는 섬유제품, 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인증 및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남미 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이 MERCOSUR 협정에 따라 역내제품으로 간주,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60% 이상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었다는 원산지 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률 제11275호(Merchandise Marketing Act), 법률 제22802호(Commercial Loyalty Act)에 의거하여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은 표준 인증기관으로서 규격 제정 및 규격에 따른 제품 및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승인하고 인증하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표준화 담당 기관이다. 아울러, OA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는 표준 인정기관으로서 적합성평가기관(시험소, 인증기관)이 국제규격 또는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관리 감독하여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표준 규격을 비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안전·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에서의 규격 및 안전 검사를 요구하는 품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행정 지침이 수시로 변하므로 규격 및 안전 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은 생산부 산하 국립산업기술청인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로서, 국내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필수/자발적 인증대상을 규정하고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품질 인증 업무, 자체 검사소 보유, 품목에 따라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해 검사를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라벨 명시내용은 원산지, 수량, 질, 혼합물(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제품은 사용전력표시(Ac.1. 3 Phase, 2.4 wires, 50 Cycle, 220/380 Volt)가 요구되며, 기계류는 금속라벨판을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볼트를 사용하여 영구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보호관련, 1993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Law 24440)은 섬유, 가전제품에 대해 라벨부착, 품질표시, 안전표시, 보증서의 첨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내 소비자 보호정책은 이를 따르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제정된 소비자와 판매자간 분쟁해결조정에 관한 법률(Law 26993)은 분쟁발생시 조정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MERCOSUR 회원국들의 표준 담당 기관들로 구성된 MERCOSUR 지역 표준화기구인 AMN에서는 회원국간 표준 및 관련 규제의 조화 및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AMN은 ISO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MERCOSUR 지역 전체 규격을 제정한다. 아르헨티나 표준인증기관인 IRAM도 역시 AMN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MERCOSUR에서 승인된 규제는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에 유해한 품목 등(예: 독극물, 폭발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품목 내지 허가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한 법률(Law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느슨하였으나, 2016년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환경관련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환경관련 다양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입할당제가 가장 큰 비관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양국의 자동차 시장 접근시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양자 협약을 통해 MERCOSUR 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당초 MERCOSUR 회원국들은 2000년까지 역내 통합 자동차 시장 창출을 위한 자동차시장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해가 상충(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 갈등)됨에 따라 합의가 무산되고, 회원국 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교역을 규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02년 11월 및 2003년 5월에 자동차산업 공동정책에 합의, 대외공동관세를 완제품에 대해 35%, 자동차 부품에 대해 14%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 간 자동차 교역의 경우, 2016년 6월자동차 교역협정 개정에 서명, 양국 간 자동차 수입과 수출의 비율이 1.5:1(일국의 자동차 수입량의 1.5배 넘지 않도록 규정)을 2019년 7월부터는 1.7:1로, 2020년 7월부터는 완전 자유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020년 이후에는 양국 간 교역쿼터가 없어질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2017년 4월 콜롬비아와도 양국 간 비관세 자동차 교역 규모와 관련, 2017~2018년 연간 12,000대에서, 2018~2019년간 21,000대,

2019~2020년간 28,000대, 2020~2021년간 42,000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그간 사실상 자동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해온 ‘고급자동차에 대한 특별세’를 전면 인하였다. 인하 조치로 인해 공장도가격(수입차는 관세 포함 가격) 35만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10%의 특별세를 부과, 80만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20%의 특별세를 부과기로 하였다. 특별세는 국내산 차량과 수입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세 대상 차량은 대부분 관세(35%)를 부담하는 수입 차량이며, 아르헨티나 국내 생산 차량중에는 토요다 SM4 픽업 차량과 벤츠 Vito 픽업 차량만 해당된다.

자동차 부품

아르헨티나는 2016년 8월 2일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Law 27263)을 발표하면서, 아르헨티나 자동차 사업 부품에 대한 간접세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은 일정 한도의 현지 자동차 부품을 활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tax credit)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지 생산 부품 20%이상을 활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치의 4%, 30%이상 사용차량에 대해서는 10%, 40% 사용차량에 대해서는 15%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국산 차량 요건이 되기 위해서 상용차의 경우 현지 생산 자동차 부품의 30%이상, 경차의 경우 25%이상, 차량엔진의 경우 15%이상을 현지부품 사용토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대해, 2016년 11월 6일 및 2017년 9월 22일 개최된 WTO 무역관련투자조치위원회(TRIMs)에서 EU, 미국, 멕시코 등 일부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의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이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 수입대체를 촉진하는 차별적 조치로서, 내국민대우 등 WTO 규범을 위배함을 지적하고, 아르헨티나에 국내산 부품비율 지정에 있어 참고할 만한 법적 근거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전기·전자제품

전기공업제품 표준규격제도(IRAM)를 강화시켜 모든 수입 전기, 전자제품들은 공업규격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물·식품·의료품

농산물 및 보건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아르헨티나 식품 코드(CAA: Código Alimentario Argentino)에 따라 위생, 품질,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립 농식품품질관리원(SENASA), 연방식품관리원(INVAL), 연방포도주관리원(INV)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아르헨티나는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케언즈 그룹의 회원으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이므로 보조금 지원 제도는 없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대부분 미주개발은행(IDB)의 회원국 기업에게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봉쇄되어 있었으나, 2005년 우리나라의 IDB가입으로 이러한 진입장벽이 없어져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국산품은 수입제품과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경쟁 시, 아르헨티나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 조달 및 공공 서비스 사업권 제도”가 2001년 법률 제25551호로 법제화(실업률 축소 및 내국기업 활동 촉진이 주목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품의 조달가격이 동종 수입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이상 높지 않을 경우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는 약한 수준이며, 2016년에 미국 정부가 작성한 저작권 및 특허권 관련 요주의국가 목록(Notorious Markets Report)에 아르헨티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허권 및 제조 공정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약하여, 1997년 4월에는 아르헨티나의 로열티 관련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품 중 113개 품목에 대해 GSP 혜택을 중지하였다가 2002년 8월에 이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 저작권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1999년에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 저작권 협약과 WIPO 공연 및 음반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관련 법규를 구비하였으나 집행이 미약한 실정이었다. 2015년 12월 마끄리 정부가 집권하면서 INPI(Instituto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중심으로 산업부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를 중심으로 불법 상표 부착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비스 장벽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경제개혁을 통해 서비스 시장장벽을 대부분 해소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인 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공약하였다. 단, 외국인 소유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건설의 경우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까지 BOT 방식으로 입찰하고 있다. 즉,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경우 對아르헨티나 진출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추가 공사수주 가능성이 저조해 관련 장비의 계속적인 활용이 곤란한 점 및 건설장비 투입, 전문인력 수송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주 받을 필요가 있다.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對아르헨티나 건설 진출을 위해서는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건설회사와 합작 또는 국제다국적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아르헨티나의 투자법(Law 21382/1993) 및 대통령령(Decree 1853/1993)에 따르면 투자 금지 산업은 없으나, 방위산업, 공공서비스, 우편 및 전기, 가스, 교통 및 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분야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등록소(Registro de Inversiones de Capitales Extranjeros)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권 제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이윤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의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도 없다. 내국

기업의 주식 취득도 100% 가능하다. 금융기관 진출 시에는 현행법에 의해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나, 주식투자에는 사전허가가 필요 없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이나 투자절차상의 제약은 없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본사의 재무제표 및 타국 지사보유 여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국산의무화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는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2016년 8월에 발효된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법에 의무비율 규정이 있다.

- 승용차 : 30%까지
- 경차 및 트럭 : 25%까지
- 차량 엔진 : 15%

2000년 8월부터 시행 중인 MERCOSUR 공동자동차정책에 의한 회원국 간 무관세 수입대상 차량에 대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자동차 30%, 트럭 25%이다.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요하다. 법인설립 절차는 생산법인의 경우

평균 3개월, 판매법인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제도 변경의 우려가 있어 현지를 방문하여 정부기관, 유관협회, 진출업체, 경쟁업체, 수요업체, 공급업체 등에 대한 직접 상담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시장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 및 무역진흥을 위해 2016년 2월에는 KOTRA와 유사한 형태의 무역투자진흥공사(Argentina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Agency)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모색 중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국경지역에서의 토지취득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환거래 상의 제한

아르헨티나는 2015년 12월 이후 전격적으로 외환거래 통제를 해제하고 외환시장을 자유화하여 시장환율과 괴리된 정부 공식환율 시스템을 정상화 조치하였다. 2015년 12월 외환매입 제한 폐지와 환율 단일화를 공식 발표하고 개인과 기업의 외환구매 한도를 매월 2백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로 조정하였다가 2016년 7월에는 최종적으로 외환거래 한도마저 철폐하였다. 2016년 8월 8일 중앙은행 규정 6037을 통해 그동안 존치되었던 외환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수입대금송금 및 배당금(과실금) 송금 금액의 제한을 없앴다.

2005년 도입된 바 있는 아르헨티나 유입 외국자본의 120일간 국외반출 금지조치도 2016년 12월 완전히 철폐됨으로써, 과거 페르난데스 정부의 투기자본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고 유입외환의 30%를 일정 은행에 강제예치토록 함과 함께 365일간 유입된 외환의 국외반출을 금지시킨 외환규제 조치가 모두 철폐되었다.

아울리, 외환규제 조치를 철폐하는 동시에 음성적인 달러화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2017년 3월말까지 은닉자산에 대한 자진 신고(blanqueo)를 독려한 바, 이를 통해 지하 은닉 달러화 등 미신고 자산 1,168억불 규모를 양성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세제상의 제한

아르헨티나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우리 진출기업의 지상사 직원 및 수산회사 선원의 경우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수산회사 선원의 경우 본봉의 50%(본인+회사부담)를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상사 및 선원들은 1~2년간 단기 체류하고 있으므로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협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아르헨티나와 체결을 협의중이다.

경쟁정책

아르헨티나의 주요 공산품의 경우 독과점이 많으며, 특히 유통망의 경우 외국대형 유통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나 규정은 특별히 없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쟁정책 관련 규정으로는 법률 제25156호와 대통령령Decree 1019/1999가 있다.

기타 장벽

2003년 11월 28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내무부 행정령 제362호(2003년 11월 26일)로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뿐만 아니라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지사원 등이 발급 받는 거주비자가 있으며 통상 비자 신청 시 아르헨티나 기업의 초청장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주비자의 체류 허가기간은 1년이며, 1년 이후는 매년 이민청으로부터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신분증명서)의 갱신 허가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나 1년 단위의 연장 절차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개선실적

아르헨티나의 통상장벽은 2015년 12월 마끄리 정부의 출범이후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개혁, 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 외국의 통상환경

－ 아메리카 －

◆ 인 쇄 | 2017년 12월

◆ 발 행 | 2017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주)나모기획 (044-998-6998)